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182-10

201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2016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6.9.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2-225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목 차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6년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1
2. 2016년도 정책 추진방향	4
II.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9
1. 보건복지부 일반현황	19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23
III. 세부 추진계획	34
전략목표 I	34
전략목표 II	145
전략목표 III	288
IV. 환류 등 관련계획	396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396
2. 평가결과 환류체계	399
3. 변화관리 계획	400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402
【붙임】	
1. 성과지표 현황	403
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419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6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1 사회복지 분야

- **촘촘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 도출
 -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15년 만에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15.7),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제도적 틀 완성
 - 신규 복지직 1,660명 등 복지인력 **확충** 및 업무 전문성 강화
 -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5.11월) 및 **장애등급제 개편안 시범사업** 시행('15.6월)
-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및 복지재정효율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구축** 노력 추진
 - 중앙부처 유사·중복사업 정비로 305억원 재정절감('16년 예산 기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수립, 54개 과제 중 중장기 과제를 제외한 39개 과제 추진 완료
- **공공·민간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적극 추진**
 -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14.12~'15.2)를 통해 21만명 발굴·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개발·활용('15.12)
 - **지역주민과 협업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망 구성 및 **민간자원 발굴**
 - * 복지통장제(7만명), 읍면동 민관협의체(7.1만명), 좋은이웃들(1.2만명) 등

2 보건의료 분야

- 「'14~'18 건강보험 증기보장성 강화 계획」 등 국민의료비 경감
 - * 고위험 임신부 본인부담 경감('15.7월), 재가 당뇨병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 확대('15.11), 장애인 보장구 지원확대('15.7, '15.11) 등
- **4대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축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 **감염병 관리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기반 확충**
 - 메르스 확산 상황의 종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마련**('15.9.1.)
 - 농어촌 군 단위에 분만 등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및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권역센터 확충 등 인프라 구축
-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 구축**
 - 보건소의 건강증진 기능 강화, 구강보건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보건법 및 구강보건법 개정(4.30) 및 시행(11.19)
 - 자살예방법 제정('11년) 후 본격적인 자살예방사업 추진 결과, '11년 대비 '14년 자살률 13.8% 감소
- **한국의료의 세계화 성과 창출** 가시화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5.12.22), 외국인환자 유치('15. 28만명)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15. 141개) 증가
 - 한미약품 대규모 기술수출('15년, 8조원)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높은 경제적 부가가치** 입증

3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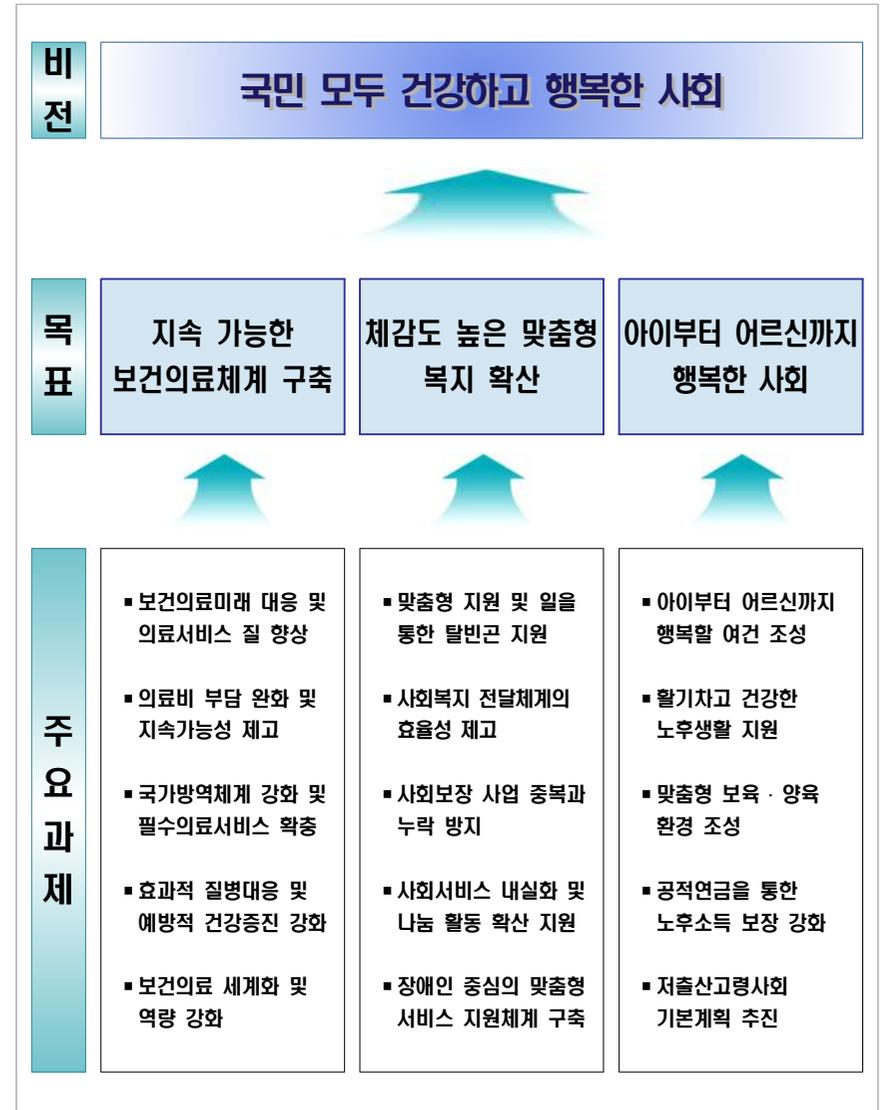
- 인구, 아동에 대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임신·출산 지원 관련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 *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15~’19)」 및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 수립
-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임신·출산지원 관련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 아동학대(’15.1월) 관련 CCTV의무화, 교사 전문성 강화 등 ‘보육 서비스 개선대책’ 대책을 추진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9.19 시행)
 - *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 272억원 편성(지방비 등 포함 총 681억원) 및 집중점검을 통한 연내 설치 완료

□ 고령사회 대응

- 장기요양 평가제도 개편 등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치매 환자·가족의 돌봄 강화 및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대상 확대(’14년 36만→’15년 45만)
- 노인일자리 확대(’14년 31만→’15년 33.7만)로 저소득층 노인 사회 참여 및 소득보장
- 기초연금의 안정적 시행으로 저소득 어르신 소득 개선(448만명 기초연금 지급)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대책 추진
- 길어진 노후에 대비하여 소득, 건강, 여가 등 종합적 노후준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지원법」 제정(’15. 12월 시행)

2. 2016년도 정책 추진방향

1 향후 추진방향



2 분야별 정책추진 현황

(1)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 확산

1 맞춤형 복지지원 내실화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
 - 중위소득 기준 및 선정기준 인상 등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강화
 - '15년 대비 생계급여 7.7%, 주거급여 23%, 교육급여 14% 인상
 -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4인가구) 118만→127만원, 현금급여액 월 45.6만→51.7만원
 -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정책효과 확인 및 내실화 방안 모색
 - * 수급자 규모 및 생활실태 변화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 실태조사 실시
 - 4대 중증질환 보장, 3대 비급여 개선, 중기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맞추어 의료급여 보장성 지속 강화
 -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통일 등 사회복지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 사회복지 과제 발굴 및 전략 수립
-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강화
 -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내일키움통장 정부지원액(내일근로장려금)을 추가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자활근로사업단까지 가입대상 확대
 - * 7천 가구에게 월 5만~35만원 매칭 적립, 최장 3년 (정부 최대 10만원 추가지원)
 - 일반노동시장 참여자의 희망키움통장은 가입가능 소득기준 완화
 - * 37천→43천 가구, 3인가구 기준 826천~1,377천원 → 859천~1,432천원

2 사회복지 전달체계 효율화

- 주민 점점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 읍면동을 공적부조의 신청·처리 중심에서 다양한 서비스로 복합욕구를 해결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담당기관으로 재편
 -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설치하여 방문상담, 통합적 복지지원, 민간자원 연계·활용 등을 전담
 - 시도에는 맞춤형 복지 총괄·관리 전담기능을 부여하고,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의 읍면동 평가·조정 기능* 강화
 - * 정신질환·법률문제 등을 포함한 고난이도 사례관리, 자원관리·조정 등
- 정부 3.0을 활용한 위기가구 선제 발굴
 - 단전, 단수 등 취약계층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위험 가구를 선별하고, 읍면동에서 신속히 현장확인 및 통합지원
 - * 한전, 사회보장정보원 등 13개 기관, 24종 정보 연계
 - 신청 탈락한 분이 선정기준 개선 등으로 수급이 가능해진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복지급여 이력관리제' 도입(기초연금 우선도입)
 - * 급여 신청시 이력관리 신청 → 최장 5년간 수급가능여부 이력조사
 - 국민포털 '복지로'에서 나의 '복지서비스 찾기' 기능을 중앙부처 쏠 복지사업으로 확산(207→360개), 온라인신청 사업 확대(8→10종)
- 고용복지+ 센터 서비스 품질 제고
 - 복지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고용지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고용복지+센터로 연계

3 사회서비스 내실화 및 장애인 지원 강화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나눔 확산 지원
 - **균등한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 **사회서비스 공통품질기준(안)** 마련(7월) 및 개별 서비스 별 평가에 적용·시행('17년)
 - 봉사활동을 통해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확대 시행**(2→17개)
 - **푸드뱅크(437개소)**에서 식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도 기부** 받아 **저소득층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위법령 개정)
- 장애유형 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밀착형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모형을 개발·보급하고, IT 기술을 활용하는 **응급안전서비스 확대**(80백→100백명)
 - 발달장애인에게 **사례관리, 문제행동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 및 **행동발달증진센터(2개소)** 설치·운영
- 장애인 서비스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장애등록시 장애인복지서비스 욕구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는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지역 확대(6→10개 지자체)
 - **장애등급(1~6급)을 대신하여 중·경증, 종합판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17년)
-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 및 운영** 등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12월)

(2) 생애맞춤형 건강사회 실현

1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 **4대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보장성 확대**
 - 고가 약제(생명위협질환 치료제 등), 다빈도 필수 검사(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등) 등 **200여 항목 급여 확대**
 - * 비급여 환자부담 2,200억원 추가 경감('15년 6,150억→'16년 8,350억원)
 - **일정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 적용**(3월)
 - * 수가 매우 적거나, 질병코드 없는 질환/ 병명 확정 곤란 또는 진단이 불명확한 질환
- **고부담 비급여(선택진료, 간병) 부담 완화**
 - 병원의 선택의사 비율 조정*을 통해 **선택의사 수를 축소**하여 **원치 않는 이용에 따른 부담 완화**(9월)
 - * 병원별 67% → 진료과목별 약 33% 축소, 환자부담 4,300억원 추가 경감
 -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비용은 **의료서비스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의료질 평가수가(연간 1,000억→5,000억원)를 통해 보상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인력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서울·상급 종합병원 조기 도입**('18→'16년) 등 제공기관 지속 확대
 - * 간병부담 감소 : 일반병동 대비 1만원 정도 추가 부담(간병인 고용시 1일 8만원 수준)

- (가칭)미래여성건강클리닉 신규 지원
 - 여성청소년(12세, 23만명)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 및 1:1 의사 건강상담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6월)
-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2014~2018) 이행
 - 임신·출산, 노인, 환자안전, 취약계층, 중증질환 등 생애주기에 따른 필수 의료비부담 경감 지속 추진
 - 산전초음파(48만명), 결핵치료(7만명), 장기이식(3천건), 장애인 보장구(3.3만명), 틀니·임플란트(70만명) 등 지원 대상

2 |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제공

- 의료기관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 강화
 - 감염관리실 확충(318→1,470개소), 감염관리·협진, 음압격리실 및 응급실·중환자실 격리수가 등 감염 관련 수가개편안 마련·시행
 -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일정 규모 이상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추진
 - * 종합병원 및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
 - 의약품 중복·과다투약 방지를 위해 개인별 의약품 투약정보 실시간 조회 강화 시범사업 실시(1~3월)
 - * 의·약사에게 처방·조제시 의약품정보 확인을 의무화, DUR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등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시행(12월)

- 의료인력 역량 강화 지원
 - 의료인 면허신고 개선 협의체 운영을 통해 면허관리제도 개선 및 보수교육 내실화 등 관리 강화
 - 내과, 외과 등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입원전담 의제 시범사업을 정부 주도로 추진
 - 간호사 활동비율 증가(15년 45%→18년 48%)를 위해 취업지원센터(6개소)를 통한 유휴인력 활용 및 이·퇴직 방지 지원 강화(취업교육 12백→24백명)
- 한의약 진료 표준화
 - 다빈도 또는 한방 강점분야 등 개발이 시급한 20여개 질환 대상으로 한의약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확산
- 의료전달체계 개선
 - 지역 내 의원·병원, 협력네트워크를 갖춘 상급종합병원·협력기관 등 의뢰·회송절차 강화 및 수가 시범사업 실시
 - * 진료의뢰 수가, 상급종합병원-협력기관 간 회송수가 등 시범적용
 - 일차의료 역할 강화, 중소병원 육성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3 필수의료 확충

-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 **Health Map**을 활용해 의료취약지 선정, 공공보건의료인력 배치 등 **과학적·효율적**으로 필수의료 지원 강화
 - * 지역별 의료수요·공급·이용, 병상수급상황 등을 지도 형태로 시각화
 - **고위험 산모·신생아 및 분만지원** 의료기관 간 **응급이송 및 진료연계**를 강화하여 **모아(母蛾) 의료전달체계** 확립
 - *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6 → 9개소),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46 → 51개소), 분만취약지 거점의료기관(31 → 34개소)
 - **도서벽지, 격오지 군부대, 원양선박** 등에 원격의료를 확산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 법정기준에 따라 **시설·인력을 확보한 권역응급센터**가 권역내 최종 치료기관으로 운영되도록 **평가·지원**(20→40개소, 9월)
 - 소아환자에 특화된 **소아전문응급센터**를 운영(10개소 이상, 6월)하고, 응급의료 보상 및 취약지 지원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수가 개선**
 - * 응급의료 시설·인력 적정보상, 응급진료 질 제고 등 응급의료수가 시행(1월), 농어촌 취약지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100→35~50%, 1월)
 - **대도시 거점병원-농어촌 응급실** 간 영상, 진료기록 등을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도록 '**원격협진네트워크**' 확대(7→10개 권역, 30→70개 응급실)
 - **요양병원의 입원형 말기암환자(3월), 비암성 말기환자*** 대상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 도입(10월)** 등 시범사업 추진
 - *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 질병대응 및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 국가방역체계 개편 후속조치 이행
 -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격상 등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24시간 긴급상황실(EOC)** 및 **즉각대응팀** 운영
 - **국내외 감시체계 및 중앙-지방 간 소통**을 강화하고, 음압격리병상, 대응매뉴얼 등 **감염인프라 확충** 및 **검역시스템 효율화**
 - 결핵 퇴치를 위해 교직원, 산후조리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검사 의무화(7월)**, **고등학생 1학년** 잠복결핵 검사·치료 지속 실시
 - * 검사 결과와 치료 이력은 **전산으로 등록·관리**(3월)
 - **결핵 다발생 18개 국가 출신 외국인**의 장기체류 비자신청 접수시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화**(3월, 법무부 협조)
 - * (현재) 일부 비자, 입국 後 결핵검진 → (개선) 모든 비자, 입국 前 사증 발급 단계에서 결핵검진
- 효과적인 만성질환 체계 구축 및 건강위해요인 관리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일차의료 중심의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모형**을 개발하고, **건강보험 시범수가 도입**(12월)
 - **제3차 자살예방기본계획('15.12월)**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 수립(2월)
 - **흡연 경고그림 제작·고시, 가향첨가 금지 및 소량포장** 규제 등 규제 강화와 함께 **군대·학교·직장 등 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내실화
 - **주류광고에 임신부 대상 음주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대학교 절주동아리 활성화, 음주폐해 예방의 달** 등 **건전여가 문화 확산**

5 보건의료 세계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추진

-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40만명), 지역맞춤 전략으로 해외진출 확대(155개), 디지털헬스케어의 해외 성공사례 창출 등 한국 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추진

* '의료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6월)

- 취약지 및 국민생활 중심 원격의료서비스 확산(278개, 1만 2백명),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등 ICT 융합 기반 의료서비스 창출
- 신약 및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 정밀·재생의료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제약·의료기기 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 저소득취약계층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정밀한 분석을 실시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합리적 개선
- 사무장병원,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상시점검 지속 추진

(3) 아이부터 어른까지 행복한 사회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

□ 제3차 기본계획(2016~2020) 차질없이 실천

-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평가하여 공개하고, 연말 성과보고 대회 개최, '목표 출산율'을 핵심지표로 관리 등 다각적 독려 추진
- 종교계, 기업, 시민단체 등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를 지속 강화하고, 인구주간(7.9~7.17일) 운영 등 전 사회적 인식 개선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추진(2~12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사무국 설치 등 지원인프라 확대
- 중장기 핵심과제, 성과평가 등 위원회 중심의 사회적 논의 활성화

2 임신·출산, 노후준비 지원 강화

□ 맞춤형 임신·출산 지원 강화

- 체외수정 시술 지원건수 확대(38천→41천건), 난임부부 심리·의료상담 제공 등 난임부부 지원 지속 확대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 관리 강화(모자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지원대상 추가확대 검토를 위한 효과성 분석 추진(8월)

* (기저귀) 월 32천 → 월 64천원, (조제분유) 월 43천 → 월 86천원

□ 전국민 노후준비지원 강화

- 노후준비지원 **5개년 계획** 수립,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153개소) 운영, **연금포털** 확대 등 노후준비 정책 추진기반 강화
 - * 서비스 대상자를 국민연금 수급자, 가입자 등에서 전국민으로 확대
- **맞춤형 노후준비 진단서비스** 실시, 외부 **전문기관과 실질적 연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 종합적·체계적으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 * 재무, 건강, 사회참여, 대인관계 등 맞춤형 상담 및 해결방안 연계

3 아동보호 및 권익증진 강화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 **중앙정부 아동학대 컨트롤타워** 설치하여 범부처 아동학대 대책 수립 및 긴급 현안 점검
 - * 범정부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위원장: 복지부차관, 국조실·교육부·법무부·여가부·경찰청 등 참여)
- 위기아동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안전확인 등 **이웃, 학교 등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구축

□ 아동 놀이현장 및 놀이정책 마련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현장을 **11월 아동학대예방주간에 발표** 하여 아동기 놀이·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놀이현장 실천을 위해 인식개선, 놀이시간 및 기회보장, 놀이공간 확보, 놀이유형 다양화 등 **분야별 추진정책 과제** 제시

4 맞춤형 보육·양육 환경 조성

□ 맞춤형 보육 개편

- **아이와 부모의 보육수요에 맞춰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육**으로 개편(7월)
 - * ① **종일반**(약 80%, 60만명) : 맞벌이 등 **장시간 보육**(07:30~19:30)이 필요한 가구
 - ② **맞춤반**(약 20%, 15만명) :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으로 충분한 가구
(0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月 15시간)
- 야간 보육과 24시간 보육 등 **시간연장보육을 실시**하고, 가정양육 중에도 긴급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제보육** 확대(230→380개)
 - * 시간연장보육은 야간근무, 응급실 방문 등 긴급상황에 처한 가구 대상 시간제 보육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재택근로자 등 대상

□ 보육서비스 질 제고

-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 등 부모의 선호가 높은 어린이집 지속 확충(국공립·공공형 각 150개, 직장 80개소)
 -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제도*** 신규 시행으로 설치의무 이행 강화
 - * 설치의무 미이행시 1년에 2회, 회당 최대 1억원까지 강제금 부과
- **CCTV 의무 설치***(‘15.12월 전면시행), 부모 열람권 보장 등 **법규정 이행실태 집중점검**
 - * 설치대상 어린이집(38,607개소) 전수 설치 완료
- **보조교사(0~2세) 및 대체교사**를 확대지원하고, 보육교사(0~2세)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액** 인상
 - * 보조·대체교사 13,146 → 13,380명, 근무환경비 월 17만 → 월 20만원

5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 취약노인 사회안전망 강화
 - 민간기업, 노인일자리, 읍면동 인적안전망 등을 활용해 **공백없는 안부·안전서비스** 제공(돌봄받는 독거노인 '15년 45만→'16년 47만명)
 - 독거노인의 우울감, 고독사 방지를 위하여 독거노인 간 **공동거주가** 가능한 **'공동생활홈'** 모형을 개발·보급
 - * 저소득 독거노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적정 주거공간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모델 개발
- 치매노인·가족 지원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 치매 정밀검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중증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에게 **방문형 24시간 요양서비스 제공**(9월)
 - 치매 5등급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일상생활 함께하기 **제공시간 확대**(1일 1시간→2시간)
 -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도입**(7월)하고, **간호사 중심의 전문 요양실 모델** 개발(12월)
 - 요양, 의료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재가노인을 위한 **방문요양-간호 통합서비스**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8월)
- 맞춤형 노인일자리 확대
 -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 제공('15년 33.7만→ '16년 38.7만명)하고, 취업교육센터(6~8개소)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직무설계 및 직무교육** 실시

6 노후소득보장 강화

- 기초연금 보장 강화
 -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16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 인상(1월)
 - * 단독 93만원, 부부 148.8만원 → 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
 - **만 65세 도래 어르신**(51년생, 41만명) **사전신청 안내 및 거동불편 어르신 대상 찾아뵙는 서비스** 등 수급대상자 발굴·신청 지원 강화
-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
 -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보험료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구직급여 수급자의 **보험료 75% 지원** 추진(실업크레딧)
 - 복수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근로한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허용**, 두루누리 지원의 **신규가입자 지원비율 상향** 조정(50→60%)
-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성·안전성 제고
 - **장기 재정목표**에 따라 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운용체계의 **전문성, 독립성 및 책임성** 제고
 - 해외·대체투자 확대, 헤지펀드 신규투자 등 **적극적 투자다변화**를 지속 추진하고, 환위험 등 **위험관리체계 정비**
 - 기금운용인력 **조기확충**, 시장대비 **상대적 보수수준 향상** 등을 통해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지방이전 이행**
 - * '16년 기금운용인력 증원 47명 조기확충, 기본급('16년) 10%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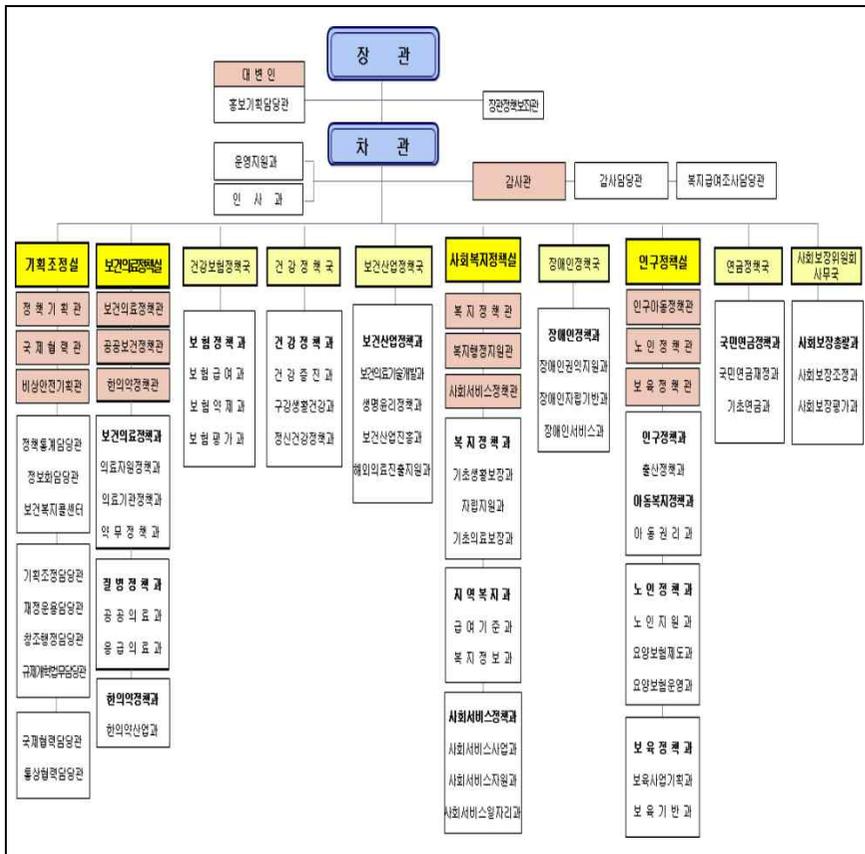
II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보건복지부 일반현황

(1) 조직

- 본 부 : 4실 6국 13관 1대변인 68과(11담당관, 1센터 포함)
- 소속기관 1차 12개, 2차 17개, 3차 11개



일반 현황

(2) 인원(2016. 3. 기준)

○ 부서별 현황

구분	내용
직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실(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 6국(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장애인정책국, 연금정책국,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 13관(감사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비상안전기획관,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현의약정책관, 복지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사회복지서비스정책관, 인구이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보육정책관) • 1대변인(대변인) • 68과(11담당관, 1센터 포함) •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검역소 13개포함) 정신병원(5), 소록도병원, 재활원, 결핵병원(2), 오송생명과학지원센터, 망향의동산관리원
정원	총 3,111(본부 753, 소속기관 2,358)

○ 정원현황

구분	총계	정무직		고위공무원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직수연	전문직	임기제(고공)	정정직(고공)
		장관	차관										
총계	3,111	1	2	35	25	172	69	348	2,132	229	54	39(9)	5(1)
본부	753	1	1	23	18	51	59	242	347	1	4	1(1)	5(1)
소속기관	2,358		1	12	7	121	10	106	1,785	228	50	38(8)	

* 소속 : 질병관리본부(736), 국립정신병원(898), 국립소록도병원(205), 국립재활원(314), 국립결핵병원(17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26), 망향의동산관리원(7)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5	'16	'17	'18	'19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534,725	558,436	588,126	619,687	651,145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1,344,116	1,420,989	1,427,529	1,472,729	1,490,009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전년대비증가율, %)	5,799	6,113	6,541	6,999	7,489
○ 기본경비 (전년대비증가율, %)	1,897	1,921	1,979	2,038	2,099
○ 주요사업비 (전년대비증가율, %)	527,030	550,402	579,606	610,650	641,557
□ 예산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332,300	331,784	362,338	379,238	391,089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336,016	335,247	365,973	383,073	395,108
【일반회계】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327,236	326,938	357,058	373,733	385,295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330,864	330,304	360,590	377,459	389,19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487	398	410	423	435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487	398	410	423	435
【지역발전특별회계】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2,720	2,682	3,060	3,152	3,246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2,720	2,682	3,060	3,152	3,24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1,856	1,766	1,809	1,930	2,112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1,945	1,863	1,913	2,040	2,228

일
반
현
황

□ 기금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202,426	226,652	225,787	240,450	260,056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1,008,100	1,085,742	1,061,555	1,089,656	1,094,901
【국민건강증진기금】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27,358	31,834	29,233	30,083	30,435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32,762	37,639	37,479	35,537	37,314
【응급의료기금】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2,293	2,311	2,519	2,649	2,781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2,423	2,485	3,326	4,099	4,185
【국민연금기금】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172,775	192,507	194,035	207,717	226,840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972,916	1,045,619	1,020,751	1,050,019	1,053,402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① 정책 여건

- 현재 우리나라는 ①저출산·고령화, ②잠재성장률 저하 및 고용없는 성장, ③사회통합 약화의 세 가지 주요 도전에 직면
- 위기 요인을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적 복지” 추진

② 추진방향

- 전 생애에 걸쳐 안락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포괄적·예방적인 보건복지서비스
- 국민 중심의 맞춤형·통합적·효율적 보건·복지 전달체계
- 보건의료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두터운 중산층을 형성하고 미래를 대비

③ 추진전략



일
반
현
황

④ 주요 전략목표 및 '16년 시행계획과의 연계

○ (목표 1) 맞춤형 복지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

-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활성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탈빈곤 지원 강화

☞ (시행계획) 2016년도 농어촌보건복지 추진계획을 수립,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기초생활보장 정책 대상 확대, 탈빈곤 지원을 위한 맞춤형 자활경로 설계, 의료급여 관리운영 체계 개선

- 효율성 높은 복지전달체계 구축 운영으로 국민 중심의 복지행정 구현

☞ (시행계획) 주민센터를 복지허브 기관으로 단계적 개편 추진, 복지 담당인력 확충, 희망복지지원단 통합 사례관리 강화, 사회보장 사업의 표준사업 기준 정립,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및 고도화

-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시행계획)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바우처 제도 개선, 사회서비스 품질제고 및 투명한 관리 강화, 나눔문화 확산으로 민간자원 활성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확대 및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추진

☞ (시행계획) 장애등급제 개편 등의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및 편의 증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확대 및 지원 강화, 공공형 일자리 제공 등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사회보장제도 총괄, 조정 강화**를 통한 효과적 **사회안전망 구축**

☞ (시행계획) 사회보장제도 지원체계 강화,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통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목표 2) **보건의료체계 개혁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보장**

- 미래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 추진

☞ (시행계획)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병원간 진료정보교류를 통한 의료전달 체계 확립, 미래 환경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의약품 유통 구조 선진화, 의료질평가 체계구축,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을 높이고**, **보험급여제도 개선**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시행계획)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보험급여제도 개선, 약가제도 개선,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 **질병관리체계 강화** 및 **필수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건강 **안전망 강화**

☞ (시행계획) 국가암검진 제도 정비,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분만취약지 지원 등을 통한 균형잡힌 공공의료 제공체계 구축,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도모**

☞ (시행계획) 흡연예방 및 담배규제 강화, 정신건강증진체계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

-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

☞ (시행계획)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한국의료의 글로벌 진출 강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적 보건의료(HI) R&D 강화, 인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한의학산업 육성 기반 마련** 및 **한의학 세계화 추진**을 통해 한의학의 국제의료경쟁력 강화

☞ (시행계획) 한의학 과학화 및 표준화 추진, 한의학분야 고유 콘텐츠 개발·보급, 한의학 ODA 사업 추진, 한의학 해외환자 유치

○ (목표 3) **저출산 극복과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을 구축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추진

☞ (시행계획)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 이행, 난임가정 제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등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추진

- **치매질환**에 대한 **범국가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노인의 역할 및 가치 제고**를 통해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 (시행계획) 치매질환의 조기발견 체계 및 맞춤형 치료·보호 강화, 노인 일자리 확대, 장기요양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추진

- **국가 책임 보육 강화**를 통해 **영유아가 즐겁고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

☞ (시행계획)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등의 무상보육 기반강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등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

-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운영**으로 **안정적인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 (시행계획) 수급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급여의 형평성 강화를 위한 급여 제도 개선 추진, 국민연금 신규가입 및 가입기간 지원을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장기적 관점의 기금운용체계 구축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 기관의 임무

- 빈곤·질병·노령 등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일자리와 균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복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비 전

-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희망 사회 실현

※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전 국민을 사회적 위협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로 특정한 사회안전망 구축

□ 전 략 목 표

- 맞춤형 복지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
- 보건의료체계 개혁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보장
- 저출산 극복과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일
반
현
황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16	19	71	139

일
반
현
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초 연계
I. 맞춤형 복지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		
1.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① 복지정책 총괄·조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②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강화	국정 43
	③ 맞춤형 자활경로 설계를 통한 탈빈곤 지원	국정 57
	④ 의료급여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보장성 강화	
2. 효율성 높은 복지전달체계 구축 운영으로 국민중심의 복지행정 구현		
	① 수요자 중심의 지역복지전달체계 구축	국정 44-2, 44-4
	② 복지사업 기준관리	국정 44-3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및 고도화	국정 44-3, 44-4
3.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		
	①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활성화	국정 60-1, 60-2, 60-3
	②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확충 및 포괄보조 내실화	국정 60-3
	③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④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민간자원 활성화	국정 44-4
	⑤ 사회서비스 일자리확충 및 질 제고	국정 60-1
4.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① 장애인 등록제도 개선 및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국정과제 50-1
	②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인편의 증진	국정과제 50-5
	③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확대	국정과제 50-4
	④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확대	
	⑤ 발달장애인지원체계 구축	국정과제 50-3
	⑥ 중증장애인 돌봄체계 구축	국정과제 50-2
5. 사회보장제도 총괄, 조정 강화를 통한 효과적 사회안전망 구축		
	① 사회보장제도 지원체계 강화	국정 44-1, 지시15-21-070, 업무 2-1
	②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국정 44-1
	③ 사회보장제도 평가	국정 44-1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초 연계
II. 보건의료체계 개혁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보장		
1. 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① 원격의료 확산 및 활성화 추진	국정 9-3
	②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③ 미래 환경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	
	④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⑤ 의약품 유통 구조 선진화	
	⑥ 의료질평가 체계 구축 및 확산	
	⑦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	
	⑧ 의료기관내 환자안전 제고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추진	
2.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국정 48-5
	②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국정 48-1, 업무 12
	③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및 보험급여제도 개선	국정48-1, 국정48-2, 지시15-21-042, 업무-11,12
	④ 보험약품비의 적정관리 및 약가제도 개선	
	⑤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3. 질병관리체계 강화 및 필수 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건강안전망 강화		
	① 체계적인 국가암관리 정책 구현	
	② 국가예방접종 지속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③ 균형잡힌 공공의료 제공체계 구축	
	④ 응급의료 서비스향상 및 인프라 강화	
4.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① 흡연 예방 및 담배 규제 강화를 통한 흡연율 감소	국정 49-1
	② 정신건강증진체계 강화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국정 49-1
	③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국정 49-1
	④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	국정 49-2
	⑤ 건강한 구강보건 인프라 환경 조성	
5.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국정 9-5, 혁신 21, 경제 48, 업무 5-가-①
	② 한국의료의 글로벌 진출 강화	국정 9-6, 혁신 21, 경제 48, 업무 5-가-②
	③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정 9-1, 업무 5-다-①
	④ 전략적 보건의료(HT) R&D 강화	국정 9-4
	⑤ 효율적 인체자원 관리	업무 5-다-②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초 연계
	⑥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추진	
	⑦아시아·미주 보건의료서비스시장 진출 지원	
6. 한의약 산업육성과 세계화		
	① 한의약의 국제의료경쟁력 강화	국정 9-7
	②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국정 9-7
Ⅲ. 저출산 극복과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①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마련	국정 62-9, 국정 47-3 지시 15-21-050
	② 임신·출산 지원 강화	국정 62-1, 국정 62-2
	③저출산·고령화 대응 체계 추진기반 조성	
2.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		
	①아동행복도 제고를 위한 공적책임 강화	
	②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공적책임 및 입양인 사후관리 강화	국정 80-4
	③취약아동 돌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	국정 80-2
	④아동권리 및 아동안전 증진	국정 80-1
3.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① 국가치매관리체계 구축	국정 48-7
	② 독거노인 돌봄 강화	국정 48-8
	③ 노인 사회참여 확대	국정 47-2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	국정 48-7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제고	
4. 맞춤형 보육지원 강화 등 무상보육 정책의 내실화		
	①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강화	국정 63-1, 64-1, 지시 0006865 업무 12-1, 12-2
	② 효율적인 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정 63-1,업무 12-3
	③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국정 63-1,국정 64-1 지시 0006865,업무12-3,4
5.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구축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①국민연금 신뢰 기반 구축	
	②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국정 57-1, 업무3-2-3 업무3-2-4, 업무3-2-5 업무3-2-6
	③장기적 관점의 기금운용체계 구축 및 운용역량 강화	업무3-2-2
	④기초연금제도 내실화	국정 47-1 업무3-2-1

일
반
현
황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1 | 맞춤형 복지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평생 사회 안전망 구축

기본 방향

- ◇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활성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복지사업 연계·조정,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수립,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 내 지속적 관심 제고를 위한 “좋은 이웃들” 사업 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맞춤형 급여체계 활성화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정책 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수준 현실화 및 탈빈곤 지원 강화
 -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편 및 다양화, 종합적 사례관리 강화
 -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의료급여 총 진료비 알림서비스 도입 등 개선 추진 등 의료급여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탈빈곤 지원
- ◇ 효율성 높은 복지전달체계 구축 운영으로 국민중심의 복지행정 구현
 -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기관으로 단계적 개편 및 복지 공무원, 서비스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한 복지체감도 제고
 - 사회보장사업 확대 및 전산시스템의 본격 활용에 따라 복지사업 기준관리를 통한 전달체계 효과성 증대, 사업간 형평성 제고, 행정효율화 강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전부처 복지사업 정보 연계와 업무처리 지원 확대를 통한 맞춤형 복지 기반 강화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

- 사회서비스 품질 수준 향상과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활성화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확충 및 포괄보조 사업 내실화를 통한 지자체 사업기획 능력 향상 및 성과관리체계 확립
-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사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품질제고 및 관리 효율화
-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민간자원 활성화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및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

- 장애인등록제도의 개선 및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사업 내실화
-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근로조건 개선, 장애인연금 급여 확대를 통한 소득보장 강화 등 장애인의 실질적 생활안정 도모
-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호 강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내실화

◇ **사회보장제도 총괄, 조정 강화를 통한 효과적 사회안전망 구축**

- 사회보장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실질적 기능·역할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및 사회보장제도 지원체계 강화
-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을 통한 중복·누락·편중 없는 사회보장제도 설계 및 중앙과 지방정부 간 효과적 역할 분담 달성 유도
-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 실시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사회보장제도 구축

전략
목표
I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5	5	21	39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1.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활성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① 복지정책 총괄·조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전국 세대 수 대비 복지수혜 세대수 비율	
		복지정책 총괄·조정 건수 복지사각지대 발굴건수	
	②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강화	신규 수급자 발굴률 평균 생계급여 증가액 긴급복지 지원건수 긴급지원의 신속성	
		③ 맞춤형 자활경로 설계를 통한 탈빈곤 지원	자활성공률
		④ 의료급여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보장성 강화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진료비증가율
I-2. 효율성 높은 복지전달체계 구축 운영으로 국민중심의 복지행정 구현	① 수요자 중심의 지역복지전달체계 구축	행복e음을 통한 복지급여서비스 지급건수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연계 가구수 사례관리대상자 만족도	
	② 복지사업 기준관리	사회보장사업 표준사업 지침 마련 추진율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 서식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율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및 고도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부적정 급여 절감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적기 처리율
I-3.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	①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활성화	사회서비스고용비중 사회서비스품질관리 바우처카드 통합건수	
		②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확충 및 포괄보조 내실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제공일자리수

③ 사회서비스 품질제고 및 관리 효율화	사회복지법인·시설 예결산 공시 비율
	보조금 투명화율
	품질관리 평가개선율 사회복지분야 사회복 무요원 배정 비율
④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민간자원 활성화	기부식품 등 모집 환산액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적립 포인트
⑤ 사회서비스 일자리확충 및 질 제고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개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I-4.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① 장애인 등록제도 개선 및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②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인편익 증진 ③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확대 ④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확대 ⑤ 발달장애인지원체계 구축 ⑥ 중증장애인 돌봄 지원체계 구축	장애등급제 개편시범사업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사업 추진율
	장애인 차별 인지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관광숙박시설)
	장애인연금 수급률
	중증장애인 취업률
	장애인 일자리지원 만족도
	발달장애인지원 공적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활동지원 내실 운영 기여도	
I-5. 사회보장제도 총괄, 조정 강화를 통한 효과적 사회안전망 구축	
① 사회보장제도 지원체계 강화 ②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③ 사회보장제도 평가	사회보장(실무)위원회 개최 건수
	민간위원 제안 아젠다 건수 사회보장통계 발굴건수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조정 건수
평가 결과의 위원회 상정 여부	
평가결과 부처 권고 이행률	

전략
목표
I

성과목표 I-1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활성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복지정책 총괄·조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복지정책 조정·연계, 복지제도 홍보, “좋은 이웃들 사업” 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2016년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계획(‘15.12~’16.2월)」 후속조치로 추진실적 점검 및 분석
 -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실적, 우수사례 발굴 등
- 대국민 보건복지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홍보 실시
- 「제3차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15~’19)」에 따른 ‘16년 농어촌 보건복지 추진계획 수립
- 국제 사회보장정책 현황 및 개혁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장기적 정책방향 수립 지원을 위해 주기적으로 자료를 정리·공유하고, 연차보고서를 발간

□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강화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안착 및 내실화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일을 통한 자립 유도
 - 개편 효과를 분석·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중·장기 제도 발전 방안 모색
 - 맞춤형 급여 시행 1주년을 계기로 현장 중심의 성과 홍보를 강화하여 대국민 정책 체감도 제고

- (긴급복지) 위기가구 적극 발굴·지원을 위한 그간의 제도 개선사항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속 점검·독려

□ 맞춤형 자활경로 설계를 통한 탈빈곤 지원

- (프로그램)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편 및 다양화, 종합적 사례관리 강화
- (전달체계) 윈스톱 상담 창구를 통해 근로빈곤층 및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 구축
- (인프라) 자활센터 기능개편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자활인프라 구축하고 자활연수원 개원·운영을 통해 자활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 의료급여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보장성 강화

- 의료급여 제도운영의 합리성 확보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법령 개정
- 입원정보 실시간 알림서비스 도입, 급여일수 관리체계 등 제도 개선 추진
-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당이득 징수 등 사후관리 체계 강화 추진
- '16년부터 부적정 장기입원자 관리 강화를 위한 합동방문 중재(사례 관리-심사연계) 사업 전국 확대 추진

전략
목표
I

성과목표·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활성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전국 세대 수 대비 복지 수혜 세대수 비율(%)
(관리과제) 복지정책 총괄·조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정책 총괄·조정 건 수 복지사각지대 발굴건수(명)
(관리과제)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강화	신규 수급자 발굴률(%) 평균 생계급여 증가액(만원) 긴급복지 지원건수(천건) 긴급지원의 신속성(%)
(관리과제) 맞춤형 자활경로 설계를 통한 탈빈곤 지원	자활성공률(%)
(관리과제) 의료급여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보장성 강화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진료비 증가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전국 세대 수 대비 복지 수혜 세대수 비율 (%)	-	-	-	5.5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의 5.5%이나, 매년 0.1%씩 감소 추세에 있는 지표임에도 성과제고 노력 등을 반영하여 설정 * 목표 5.5%는 단순 3년 평균이 아닌 적극적 목표치 설정에 해당 <'12~'14년 전국 세대수 대비 복지수혜 세대수 비율>	(전국 세대수 대비 복지수혜 세대수 비율(행복e음상 복지수혜 세대수/전국 세대수**)*100 * 기초생활보장 수급 세대수+본인부담 경감대상 세대수(중위소득 50% 이내)+차상위자활 세대수(중위소득 50% 이내) (행복e음) **행정자치부 발표 전국 세대수	행복e음시스템, 안전행정부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년도</th> <th>2012</th> <th>2013</th> <th>2014</th> </tr> </thead> <tbody> <tr> <td>합계 (=1+2+3)</td> <td>1,127,810</td> <td>1,133,046</td> <td>1,126,278</td> </tr> <tr> <td>1. 기초생활보장</td> <td>907,142</td> <td>889,639</td> <td>884,623</td> </tr> <tr> <td>2. 차상위본인부담경감</td> <td>203,679</td> <td>227,924</td> <td>225,879</td> </tr> <tr> <td>3. 차상위자활</td> <td>16,989</td> <td>15,483</td> <td>15,776</td> </tr> <tr> <td>4. 전국세대수</td> <td>20,211,770</td> <td>20,456,588</td> <td>20,724,094</td> </tr> <tr> <td>5. 전국세대수 대비 복지수혜 세대수 비율 (단위:%) = (1+2+3)/4*100</td> <td>5.6</td> <td>5.5</td> <td>5.4</td> </tr> </tbody> </table>	해당년도	2012	2013	2014	합계 (=1+2+3)	1,127,810	1,133,046	1,126,278	1. 기초생활보장	907,142	889,639	884,623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03,679	227,924	225,879	3. 차상위자활	16,989	15,483	15,776	4. 전국세대수	20,211,770	20,456,588	20,724,094	5. 전국세대수 대비 복지수혜 세대수 비율 (단위:%) = (1+2+3)/4*100	5.6	5.5	5.4			
해당년도	2012	2013	2014																																	
합계 (=1+2+3)	1,127,810	1,133,046	1,126,278																																	
1. 기초생활보장	907,142	889,639	884,623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03,679	227,924	225,879																																	
3. 차상위자활	16,989	15,483	15,776																																	
4. 전국세대수	20,211,770	20,456,588	20,724,094																																	
5. 전국세대수 대비 복지수혜 세대수 비율 (단위:%) = (1+2+3)/4*100	5.6	5.5	5.4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양극화, 불평등 심화에 따라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구 고령화 등으로 복지비용 부담 또한 급증할 전망
 - 중산층 가구 비중은 지속 감소하고, 가계부채 급증·사교육비 부담으로 적자가구 비중은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 등 위험요인 증가로 복지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논란 지속
 - 그럼에도, 사회보장제도가 분야별·부처별 각개 약진(各個躍進) 식으로 도입되어 중복과 누락, 집행단계에서의 과부하 등 비효율성 발생
- 새정부 4년차를 맞아 복지분야 주요 과제의 성과를 국민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도록 정책과제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할 시점
 - 빈곤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시행(15.7월)됨에 따라,
 - 기초생활보장 정책 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 수준 현실화 및 탈빈곤 지원 강화
 -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복지정책 주요 과제들 간 협업, 연계를 통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복지정책 총괄·조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I-1-①)

□ 추진배경 (목적)

- 보건복지정책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틀로 재구조화하여 홍보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시행의 계기로 활용
-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新 취약계층으로 대두되고 있는 1인 취약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마련 필요
 - 1인가구 비율이 '90년 9.0%에서 '10년 23.8%, '25년은 31.3% 까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대표적 1인가구인 독거노인 뿐 아니라 중년층, 청년층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빈곤, 정신건강 등의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
 - *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 복지 사각지대"(16.1.14일, YTN)
- 아울러, 고령화, 저성장, 통일 등 미래 복지 도전 과제에 대한 적극 대비 필요
- 복지정책 관련 부내·외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정책 칸막이 제거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복지정책 조정·연계, 제도 홍보, 좋은 이웃들 사업 등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15.12~'16.2월) 및 복지제도에 대한 적극 홍보 실시

-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소외계층 발굴시스템 구축 및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 내 지속적 관심 제고를 위한 **‘좋은이웃들’** 사업 실시
- 「2016년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계획(‘15.12~’16.2월)」 후속조치로 **추진 실적 점검 및 분석**
 -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실적, 우수사례 발굴 등
- **생애주기별 1인 취약가구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비**
 - 다양한 복지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1인 취약가구의 생활실태·위험유형 등을 분석, 정책대상화
 - * 복지사각지대 관리시스템, 각종 복지분야 실태조사 등
 - 각 부처가 시행중인 사회보장사업이 1인 취약가구를 중점 대상화하도록 **관계부처합동 종합대책 수립**
- 사회복지 법적·제도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사회복지사업법」 정비**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8.4.) 대비 **하위법령 개정**
 - * (개정안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과태료 기준마련(시행령), 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절차, 사회복지사 자격정지·취소 처분기준 마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기관 확대 등(시행규칙)
 - 사회복지 법 전문가, 부내 관련부서 등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발전포럼’** 구성, 운영을 통해 개정쟁점 검토 및 정리
 - * (운영방안) 주요 개정쟁점별 전문가 발제 및 토론, 개정안 논의

- 시행령·시행규칙 **주기형(3년 주기) 일몰규제 개선 검토**

<p>< 대상규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시행령 제2조제1항), △ 사회복지관 설치기준(시행규칙 제23조)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기준(시행규칙 제13조) △ 사회복지시설 휴지·제개·폐지신고 제출서류(시행규칙 제26조) △ 사회복지시설 평가주기(시행규칙 제27조의2) △ 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제26의2 및 별표4) 등
--

- 통일 대비 사회복지제도 구성 연구 추진
 - 현금급여 제도(전달체계 포함) 등 비교분석
- 통일 사회보장 전문가, 부내 주요 부서 과장·실무자가 참석하는 **‘통일 사회보장포럼(보건복지부)’** 구성 및 운영(연중)
 - 보건복지분야 통일 대비 이슈 공유
-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관리
 -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교육계획 승인(1월)
 -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및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 승인(2월)
- 공공자원의 제약을 보완하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산하기관 관리
-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활성화
- ‘16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지원사업 조사 및 대국민 안내(6월)

- 「제3차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15~’19)」에 따른 ‘15년 추진 실적 점검 및 ‘16년 농어촌보건복지추진계획 수립(6월)
- 사회복지분야 장기 정책방향 모색 및 주요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 포럼 구성·운영
- 대국민 보건복지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홍보 실시
 - 일반 국민 대상 복지정책 사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집 발간 및 배포
 - 생활속에서 복지정책을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매체홍보, 사례중심 콘텐츠 홍보 추진
- 국제 사회보장정책 현황 및 개혁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장기적 정책방향 수립 지원을 위해 주기적으로 자료를 정리·공유하고, 연차보고서를 발간
 - (주간 모니터링) 주간 ‘국제 사회보장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 주요국 및 국내 주요 연구기관 등의 최근 사회보장정책 동향을 정리·보고
 - (연차보고서 발간) 모니터링 결과 및 관련 부서 의견을 바탕으로 “2016년 국제 사회보장정책 동향” 발간(‘16.12)

전략목표 I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분기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안내(지침) 개정	'16.1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지침) 개정	'16.2월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교육계획 승인	'16.1월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결과 분석	'16.3월	
	'통일사회보장포럼'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16.3월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사례집 발간	'16.3월	
2분기	'16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지원사업 조사 및 안내	'16.6월	
	'16년 농어촌보건복지 추진계획 수립	'16.6월	
3분기	'16년 상반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실적 분석·보고	'16.7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16.8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브랜드 홍보 실시	'16.9월	
4분기	'1인 취약가구 사회보장 종합대책' 수립 및 발표	'16.10월	
	통일 복지 연구	'16.11월	
	'16년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승인	'16.11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몰규정 개정	'16.12월	
	국제 사회보장정책 동향 모니터링 연차보고서 발간	'16.12월	
	'16년 하반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실적 분석·보고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복지정책 수혜자,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 사회복지사, 복지정책 관련 부내·외 업무 담당자
- 이해관계자 : 복지정책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 사회복지 관련 단체·협회,

□ 기대효과

- 생애주기별 맞춤형 홍보로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효과 기대
- 다양한 사회보장사업을 분석하여, 1인 취약가구가 처한 사회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연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
-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의 환경적 변화를 반영한 사회복지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복지정책 기반 마련
- 복지정책 관련 부내·외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정책 칸막이 제거 및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제도 구축
- 복지제도 홍보 강화, 복지제도 소외계층에 대한 발굴·지원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 해외 사회보장 동향 및 개혁 사례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정책 수립의 기반 강화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및 보수교육 개선을 통하여 자격제도 안정성 확보 및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억원)

	회계구분 ¹⁾	'15	'16
사회복지사업지원(I-2-일반재정②)			
① 사회복지사업지원(2631)	일반	69	69
▪ 사회복지사관리(300)	일반	9	8
▪ 사회복지협의회운영(302)		21	21
▪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연계지원(303)		21	21
▪ 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관리활동(305)		5	7
▪ 사회복지중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326)		13	1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복지정책 총발·조정 건수	-	10	10	10	사각지대 발굴, 부정수급 관리 등 급년도 추진업무 등을 고려	관계부처 회의 안전·상징 및 종합 보고서	OECD 등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정책 동향 모니터링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단위:명)	-	51.8 만명	103.8 만명	120 만명	송파 세모너 사건('14.2월)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관심 증가, 발굴 시스템 정비 완료 등 효과로 '14년 및 '14년 대비 '15년 실적치가 급격히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최근 2년 평균 및 '14년 대비 '15년 증가 실적분을 반영하여 설정함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 +복지담당공무원의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통해 복지지원 요청 접수한 건수	행복 e-음

전략
목표
I

②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강화(I-1-②)

□ 추진배경 (목적)

- '15.7월, 저소득층 자립 유인 제고 및 실질적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통합급여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개별급여로 개편
 -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다층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 확대* 및 급여 보장성 강화**
 - * 수급자 규모 : ('15.6)132만명 → ('15.12)165만명(신규 39만명, 탈수급 6만명)
 - ** 월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 : ('15.6)40.7만원 → ('15.7)45.6만원 → ('16.1)51.7만원
- '16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안착 및 내실화 집중
 - 맞춤형 급여 개편 효과를 분석·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장기 제도 발전 방안 모색
 - 맞춤형 급여 시행 1주년을 계기로 현장 중심의 성과 홍보를 강화하여 대국민 정책 체감도 제고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가정 해체,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지원 강화 추진
 -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내실화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역할 강화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총괄 기능 강화 및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특성을 고려한 심의 체계 구축
 - * 분야별(급여, 기능 등) 소위원회 구성 및 관련 운영규정 개정 추진(~'16.4)

- 現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임기 만료('16.8.22)에 따라 전문성 및 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 선임* 추진

* 총 16인 중 당연직 6인(위원장 및 정부위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10인

○ 맞춤형 급여 운영의 정합성 제고

-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수급자 규모 및 생활실태 변화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해 실태조사 추진
- *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중·장기 제도 개선안 검토 및 종합계획 수립(~'17.6)

② [기초생활보장] 정책 체감도 제고

- '16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인상 등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등 지원 대상 추가 발굴·지원
- 맞춤형 급여 시행 1주년('16.7.1) 전후 실 사례 중심의 기획 기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제도 개편 효과 집중 홍보 추진
 - (정책 토론회) '16.7월, 전문가 중심의 세미나 등을 통해 맞춤형 급여 개편 1년을 평가하고, 제도 발전 방안 모색
 - (언론매체) '16.6~7월, 전문가(중생보 위원 등) 기고를 통해 관심을 제고하고, 사례 중심의 기획기사도 추진
 - (현장 방문) '16.7.1일 전후로, 수급자 가구 방문 및 지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성과 홍보 강화

③ [긴급복지] 제도 활성화

- 긴급복지 업무 관련 행복e음 시스템 개선·보완, 현장점검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강화를 통한 긴급 복지 내실화 추진
 - (시스템) 개선·보완사항 의견 수렴('16.3) 등을 통해 개선안 마련('16.4~5), 시스템 개선·보완 추진(~'16.12)
 - (현장점검) 집행실적 등 지자체 현장점검을 통해 제도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제도 개선사항 검토('16.6, '16.10)
 - (교육) 위기상황 적극 발굴,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지자체 담당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16.4~10)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16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발굴·지원	'16.1월
	생계·주거·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 인상	'16.1월
	긴급복지 업무 관련 시스템 개선사항 의견수렴	'16.3월
2/4분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개정	'16.4월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16.5월
	긴급복지 집행상황 상반기 현장점검	'16.6월
3/4분기	'17년 기준 중위소득·급여별 최저보장수준 결정(중생보 의결)	'16.7월
	맞춤형 급여 개편 1주년 집중 홍보	'16.7월
	제8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선임	'16.8월
4/4분기	긴급복지 집행상황 하반기 현장점검	'16.10월
	긴급복지 지자체 담당자 교육	'16.4~10월
	실태조사 점검 및 적정성 평가 시행	'16.12월
	동절기 취약계층 발굴	'16.12월~'17.2월

전략
목표
I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긴급복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 이해관계자
 -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차상위계층 등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의료·주거 등 서비스 제공자
- *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위원 등 누구든지 신고 가능

□ 기대효과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안착 및 내실화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 실질적 지원 강화
- (긴급복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 방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기초생활급여(I-1-일반재정①)			
① 기초생활급여(1131)	일반회계	39,646 (40,564)	32,948 (33,883)
▪ 생계급여(300)		26,988	32,728
▪ 주거급여(301)		11,073	-
▪ 교육급여(302)		1,353	-
▪ 해산장제급여(303)		214	220
▪ 기초생활보장관리(310)		18	-
긴급복지(I-1-일반재정③)			
① 긴급복지(1133)	일반회계	1,013 (1,313)	1,013
▪ 긴급복지(300)		1,013	1,01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신규수급자 발굴률 (%) (광동)	9.97	9.85	11.17	9.92	과거 실적치 증감율(△1.2%), 2년 평균 실적치(9.91%), 수급자 수 감소 추이(△2.5%)를 고려하여 9.78%를 기준으로 하되, 성과제고 노력 등을 반영하여 0.13% 상향	(신규수급자수 / 총 수급자수) ×100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평균 현금급여 증가액 (만원)	-	-	4.9	6	중생보 논의를 통해 결정될 기준 중위소득 및 현금급여 보장수준을 고려하여 개편시 현금급여 증가액 추정	연간 현금급여 총 지급액 / 해당 가구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긴급복지 지원건수 (천건)	83	107	251	184	'16년 예산규모('15년 대비 300억원 감소) 등을 감안하여 '16년 예산사상 지원건수로 설정	긴급복지 지원 건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긴급지원의 신속성 (%)	91	92.6	96.5	93.5	'15년 지원기준 완화 등 제도개편' 효과로 인해 '15년 실적치가 급격히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최근 3개년 실적치의 평균을 감안하여 설정함 · 위기상황 인정사유 확대, 소득기준(최저생계비 120~150%→185%이하), 금융재산기준(300→500만원 이하 완화	총지원 건수 중 3일 이내 지원 결정 비율 (단, 의료지원은 5일 이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전략
목표
I

③ 맞춤형 자활경로 설계를 통한 탈빈곤 지원(I-1-③)

□ 추진배경 (목적)

- 다변화되는 자활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으로 개편 필요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자활사업의 주요 대상이 되는 수급자가 중위소득 50%까지 확대
-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에 따라 자활근로에 배치되는 대상자는 일반시장으로 취·창업하기 어려운 복합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비율이 높아짐
-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편 및 지역자활센터 전문성 강화 지원 필요

○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제공 체계 강화

- 근로빈곤층 전체에 대한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제공강화를 위해 고용복지+센터 확대와 함께 서비스 연계 내실화 기반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고용(취업지원 및 취업연계, 직업훈련 등) 뿐만 아니라 복지(사회 서비스 연계), 금융(창업지원, 자산형성지원) 서비스 등 자활을 위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사례관리 실시**

- 전담 사례관리자 배치 기관 확대 (60→70개소 이상)
- 사례관리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성과 평가 항목 중 “사례관리 체계화 수준” 지표 배점 강화
- 자활연수원을 통한 자활 사례관리 교육 체계화, 전문화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건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법령상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조건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서비스 연계 확대**
 - 고용복지+센터 내 전체 서비스 연계건수 43,000건, 복지→고용 서비스 연계건수 7,000건 달성 목표
- 근로빈곤층에 대한 통합 사례관리기관으로서의 **자활센터 유형 다변화 및 교육 지원**
 -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등 취약계층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 자활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자활기업 종사자 등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한국자활연수원 운영
- **자산형성지원사업(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 및 추가지원에 따른 사업 확대 운영**
 - * 매출 미발생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도 가입 가능, 정부에서 5 또는 10만원 추가 지원
 - 내일키움통장 사업 운영현황 점검 간담회 2회 실시(6월,11월)
 - 가입수요 증가*에 따라 목표 인원 조정 등 탄력적 사업 추진
-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자활기업 활성화 제고**
 - 자활기업 인정 현황, 지원 종류 및 규모, 사업유형 및 매출액, 인정 자활기업의 운영여부 등 **자활기업 현황조사** 실시

- 자활 현장 및 외부전문가로 **‘자활기업 지속발전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자활기업 운영방안 모색
- 인정기간을 명시한 자활기업 인정서 발급, 우수 자활기업 인센티브 부여, 인정제도 개편 등 **자활기업 관리체계를 정비**
- **신뢰받는 근로능력평가 제도**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 추진
 - ‘근로능력 없음’ 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정기평가 대상자의 **판정주기 조정**으로 취약계층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 경감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16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통보	'16.2월	
	○ 2015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실시	'16.3월	
2/4분기	○ 신규 지정 3개소 지역자활센터 개소	'16.4월	
	○ 자활기업 현황조사	'16.4-5월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6.5월	
	○ '자활기업 지속발전 자문회의' 구성	'16.5월	
	○ 자산형성사업 추진현황 점검 유관기관 간담회	'16.6월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를 위한 기초법 시행령 개정	'16.6월	
3/4분기	○ 자활기업 인정제도 개편 방안 마련	'16.9월	
	○ 신규 조건부 지정 3개소 지역자활센터 개소	'16.9월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관리 강화를 위한 자활지침 개정	'16.9월	
	○ 자활사례관리 전문기관 확대(60→70개소 이상)	'16.9월	
4/4분기	○ 자산형성사업 추진현황 점검 유관기관 간담회	'16.11월	
	○ 복지-고용-금융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 컨퍼런스 개최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자
- (이해관계집단) 국민연금공단, 지역·광역·중앙자활센터 종사자

□ 기대효과

-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통한 근로의욕·직업역량 향상으로 근로 능력있는 자활참여자의 탈빈곤·탈수급 촉진
-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용·복지·금융 통합서비스 제공 하여 정책 만족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5	'16
맞춤형 자활경로 설계를 통한 탈빈곤 지원(I-1-일반재정④)			
① 자활지원(1137)	일반회계	3,876 (3,868*)	4,029 (4,022*)
▪ 자활사업(300)		3,666	3,802
▪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306)		8	7
▪ 근로능력이 있는 탈수급자 지원(309)		101	110
▪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311)		101	11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자활성공률(%)	28.3	35.1	33.3	34.3	전년 대비 3% 인상 목표	[탈수급자(자활특례포함)+취업·창업자]/자활사업참여수급자(근로유지형 제외)	시도별 자활사업 통계자료 취합

④ 의료급여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보장성 강화(I-1-④)

□ 추진배경(목적)

- 수급권자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필수적인 의료이용 보장을 위해 의료급여 보장범위 및 수준을 지속 확대
- 의료급여 관리운영 체계 개선을 통한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 및 재정 지출 효율화 도모
- 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지지체계 구축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의료급여 제도운영의 합리성 확보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 급여법령 개정
- 입원정보 실시간 알림서비스 도입, 급여일수 관리체계 등 제도 개선 추진
-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당이득 징수 등 사후관리 체계 강화 추진
- '16년부터 부적정 장기입원자 관리 강화를 위한 합동방문 증제(사례관리-심사연계) 사업 전국 확대 추진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의료급여제도 주요변경 사항 안내 및 지침교육 실시	'16.1월	
	'16년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계획 수립	'16.1월	
	의료급여사업 지자체 등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16.3월	
2/4분기	요양병원-시설 연계 방안 마련 관련 연구용역 진행	'16.6월	
	사례관리-심사연계 관련 교육 실시	'16.4~5월	
3/4분기	행정처분 실효성 제고 및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법령 하위법령 개정	'16.8월	
	의료급여제도 운영의 합리성 확보 및 수급권자 권익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정부입법) 국회 제출	'16.9월	
	입원정보 실시간 알림서비스 시행	'16.8월	
	급여일수 관리체계 개선안 마련 및 법령개정	'16.9월	
	의료급여 사후관리 강화 개선방안 마련	'16.7월	
	의료급여 자격관리 매뉴얼 마련	'16.9월	
4/4분기	의료급여사업 사업안내 지침 개정	'16.12월	
	의료급여 사례관리 우수기관 평가	'16.12월	

전략
목표
I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북한 이탈주민 등 타법에서 정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이해관계집단) 보장기관(시도 및 시군구), 의료기관,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의약품·치료재료 및 보장구 제조업자 등

□ 기대효과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보장성 및 건강권 강화
- 의료급여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통한 의료급여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의료급여지원-수급자 건강상태 접수 (I-1-일반재정(2))			
① 의료급여(1132)	일반회계	45,339	47,224
▪ 의료급여관리(300)		5	
▪ 의료급여경상보조(302)		45,334	47,22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진료비증가율 (감소지표)	6.07	7.47	5.31	5.31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1인당 진료비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작년도 실적 수준(목표: 7.47%, 실적: 5.31%) 이하로 '16년도 목표치 설정	(('16년 1인당 진료비/ '15년 1인당 진료비) -1} × 100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진료비 현황) 자료
						* 진료비는 기관 부담금기준	

성과목표 1-2

효율성 높은 복지전달체계 구축 운영으로 국민중심의 복지행정 구현

(1) 주요 내용

□ 수요자 중심의 지역복지 전달체계 구축

- 읍면동 복지허브화 기반 조성 및 본격 개편 추진
 - '16년 700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사례관리, 찾아가는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 사례관리 강화
 - 읍면동의 사례관리 지원 및 고난이도 사례 관리 집중, 지역 자원 총괄 조정 업무 강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민관협력 활성화 추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체계 정비 및 우수사례 확산 등으로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및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 '1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를 통한 우수지자체 발굴·확산 및 미흡지자체 컨설팅 추진,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 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관 선정 및 운영 지원

전략
목표
I

□ 복지사업 기준관리

- 사회보장사업에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 사업 기준' 정립
 - 분야별(프로세스별) 표준 사업 기준을 단계적으로 정비
 - 사회보장사업 설계·재설계 시 준수해야할 표준사업지침 마련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프로세스 방향 설정
 - 사전 상담기능 강화, 사례관리 내실화를 위한 표준 업무 프로세스 방향설정 및 시스템 기본모델 마련
 - 사회보장급여법('15.7월 시행) 시행에 따른 사회보장정보 이용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추진
- 사회보장사업 공통서식 간소화 추진
 - 통합신청서, 결정통지서 등 공통서식 간소화 및 현장에서 필요한 서식 마련 등을 통한 대국민 접근성 제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및 고도화

-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
 -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
-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기능 강화
 - 고용복지+센터의 고용-복지 담당자간 정보공유, 복지서비스 지원 기능 확대를 위한 각 전산망 연계·개선

○ 민·관 협력 연계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 공공과 민간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 개선

성과목표·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효율성 높은 복지전달체계 구축 운영으로 국민 중심의 복지행정 구현	행복e음을 통한 복지급여서비스 지급 건수(만건)
(관리과제) 수요자 중심의 지역복지전달체계 구축	①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연계가구수 ② 사례관리대상자 만족도
(관리과제) 복지사업 기준관리	① 사회보장사업 표준사업지침 마련 추진율 ②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율
(관리과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및 고도화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부적정 급여 절감액(단위:억원) ②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적기 처리율 (단위:%)

전략
목표
I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행복e음을 통한 복지 급여서비스 지급건수 (만건)	8,887	9,040	9,725	9,457	- 목표치를 과거 3개년('13~'15) 실적치 평균 대비 3% 상향 조정 - 행복 e음에서 지급한 교육 급여(35만건)를 '16년부터 교육청으로 이관(나이스시스템) 됨에 따라 3개년 평균실적 산출시 이를 반영(△35만건)	행복e음 통한 복지 급여, 서비스 지급 건수 누계(월단위)	행복e음의 복지급여 서비스 지급실적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복지전달체계 개편 추진

- 복지전달체계 개편 추진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전환 및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
 - 복지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일선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 지자체 조직·인력 등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 필요
- 복지허브화를 위한 충분한 인력 확충 필요
 - '17~'18년 복지허브화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 방안 중요, 시군구 읍면동 간 기능조정, 읍면동 내부의 업무 조정,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 협업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임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지역복지전달체계 구축(I-2-①)

□ 추진배경 (목적)

- 상담 및 찾아가는 서비스,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동 복지전달체계 개편 추진
- 민간 자원의 적극 활용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네트워크 강화하여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원
- 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원 및 평가체계 마련, 복지서비스 취약 지역 선정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및 균형발전 지원방안 모색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읍면동 복지허브화 기반 조성 및 본격 개편 추진
 - (30개 선도 지역) 전국 30개 지역을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선도 지역으로 선정하여 후발지역의 벤치마킹 기회로 제공 (‘16. 3~12월)
 - 관내 타지역 확산을 위한 거점 성공 모델 역할을 수행토록 중점 관리 및 지원
 - (700개 지역 확산) 사전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추진여건, 복지 수요 등을 고려하여 ‘16년 700개 지역 확산
 - 공공-민간 자원 활용, 주민 개개인의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토록 관리·지원
 - (지자체 지원) 조직·업무지침 안내, 재정 지원, 담당자 맞춤 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 정착 지원

○ 복지 담당인력 확충 및 인력 관리 지원

-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맞춤형 복지팀 신설을 위한 사회복지 공무원 1,600명 확충
 - * 신규 복지직 960명 채용·배치(~7월), 인력구조 개선 320명 및 신규 행정직 320명 채용·배치(연내)

- 전담팀 배치 현황 및 담당 업무 추진 현황 등 현장 점검 (‘16.하반기)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강화

-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실시 하던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읍면동 단위로 확대 실시
- 이에 희망복지지원단은 고난이도 사례관리에 집중하고 지역 자원 총괄 조정 업무 강화

* 통합사례관리 역량·서비스 수준 제고로 이용자 만족도 지속향상(‘13.1~계속)
· ‘13년 83.3점 → ‘14년 84.9점 → ‘15년 86.9점(‘13~’15 동일문항(8), 지역 비례할당추출, 전화설문(리서치&리서치, 12월))

- 주요 사업영역 매뉴얼(통합사례관리·수퍼비전·자원관리) 수립, 현장중심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수퍼비전 체계 구축 등 서비스 수준 지속발전 기반 마련

○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통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역사회보장 계획 평가 및 지역사회보장 수준 균형발전 지원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정비 및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및 우수사례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 사회보장 분야별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포함한 '16년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계획내용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체계를 마련, 서비스 취약지역 선별 및 균형발전 지원방안 모색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읍면동 복지허브화 기본 계획 수립	'16.1월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30개소 선정	'16.2월	
	읍면동 복지허브화 업무 매뉴얼 작성 및 배포	'16.3월	
	시·도 설명회 및 선도지역 부단체장 워크숍 실시	'16.3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명칭변경	'16.3월	
2/4분기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모니터링 및 현장 컨설팅	'16.4~6월	
	읍면동 사례관리 실무자 교육 (지속)	'16.4~6월	
	읍면동 복지허브화 세부지침 마련(관계부처 합동) 및 배포	'16.4월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추진상황 현장점검	'16.4~6월	
	희망복지지원단 전문가 자문 및 수퍼비전 체계 구축	'16.5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수정·보완	'16.6월	
3/4분기	사회보장기본계획 '16년 시행계획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16.5월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모니터링 및 현장 컨설팅	'16.7~9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및 배치	'16.7~9월	
4/4분기	통합사례관리 지자체 컨설팅 실시	'16.9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역 현장점검	'16.10~12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성과평가	'16.11월	
	읍면동 복지허브화 우수지역 포상	'16.12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만족도 조사	'16.12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공모 및 포상	'16.12월		

전략
목표
I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복지대상자 등 지역 내 복지서비스 수요자,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
- (이해관계자) 복지사업 수행 중앙부처, 지자체,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기관 등

□ 기대효과

- 종합상담·안내, 신청·접수, 찾아가는 서비스, 복지사각지대 발굴, 보건 등 필요서비스 기능강화를 통한 수요자 욕구 기반의 윈스톱 맞춤 서비스 제공
 - 충분한 상담·안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서비스의 신청 지원 및 정보 제공을 통한 복지체감도 제고
 - 복지사각지대 발굴, 보건·복지연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역 자원 활용 등 읍면동의 복지기능 대폭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5	'16
사회복지전달체계(I-6-일반재정⑥)			
① 사회복지전달체계(2639)		1,008	883
		(1,701)	(1,604)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301)		875	883
▪통합사례관리사지원(311)		133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연계건수 (가구)	243,941	348,243	488,788	378,340	13~'15년 실적치 ('13년 243,941가구, '14년 348,243가구, '15년 488,788가구) 평균(360,324가구) 대비 5%상향한'16년 목표치 상향 조정 (378,340가구)	각 지자체에서 행복e음 시스템에 자료 입력 및 자료 추출	행복e음 시스템의 입력자료 추출
사례관리 대상자 만족도 (공통)	83.3	84.9	86.9	88.63	15년 만족도 조사 실적치(86.9점) 대비 2% 상향조정	사례관리 대상자 샘플 추출 후 전화 만족도 조사 실시	사례관리 대상자 샘플 추출 후 전화 만족도 조사 실시

전략
목표
표 I

② 복지사업 기준관리(I-2-②)

□ 추진배경 (목적)

○ 사회보장사업의 확대, 전산시스템의 본격적 활용에 따라, 전달체계 효과성 증대, 사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준 표준화 필요성 증대**

- 사회보장사업의 다양한 기준들이 제각각 설계되고 운영됨에 따라 유사 사업간 기준이 상이한 불합리성 및 관리의 비효율 문제 발생

* 복잡·다양한 기준은 국민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정보의 공동활용과 업무 효율화 저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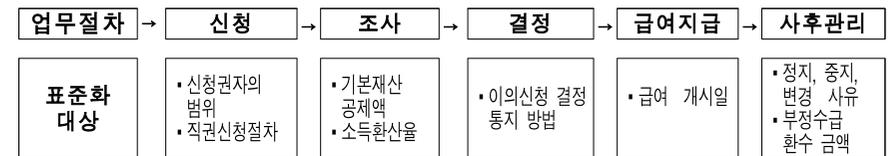
○ 사회보장사업에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 사업 기준' 정립

- 건별 과제 발굴 방식을 탈피하여, 분야별(프로세스별) 표준 사업 기준을 단계적으로 정비

* 업무 단계별 적용되는 기준을 전수 조사하여 표준화 대상이 되는 '핵심 기준'과 '사업별 재량 기준'을 구분·분류

- 사회보장사업 설계·재설계 시 준수하여야 할 표준사업지침 마련

< 프로세스별 표준화 대상(예시) >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프로세스 방향 설정

* 현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추진 중('15.10~'16.6)

- 사전 상담 기능 강화, 사례관리 내실화를 위한 **표준 업무 프로세스 방향을 설정**하고 **시스템 기본 모델 마련**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5.7월 시행)」 시행에 따른 **사회보장정보 이용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 공공기관 간, 공공-민간 간 정보 제공·이용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 **사회보장사업 공통서식 간소화 추진**

- 통합신청서, 결정통지서 등 **공통서식* 간소화** 및 **현장에서 필요한 서식 마련** 등을 통해 **대국민 접근성 제고**

* 사회보장사업 공통업무 서식 마련·운영 중

'10년 16개 사업 신청 서식 통합 → '16년 현재 20개 사업이 통합신청서 사용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BPR 추진과제 중간보고	'16.2월	
	사회보장사업 신청·조사 분야 기준 조사 및 표준화 방안 검토	'16.3월	
	사회보장사업 현장자문단 및 기준검토반 1차 자문회의 실시	'16.3월	
2/4분기	사회보장사업 조사 결정 분야 기준 조사 및 표준화 방안 검토	'16.6월	
	사회보장사업 현장자문단 및 기준검토반 2차 자문회의 실시	'16.6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BPR 추진과제 이행계획 마련	'16.6월	
3/4분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BPR 추진과제 최종보고	'16.7월	
	사회보장사업 급여지급·사후관리 분야 기준 조사 및 표준화 방안 검토	'16.9월	
	사회보장사업 현장자문단 및 기준검토반 3차 자문회의 실시	'16.9월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서식 간소화) 마련	'16.9월	
4/4분기	사회보장사업 표준사업기준 기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16.11월	
	사회보장사업 표준사업지침 마련	'16.12월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발령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사회보장사업 지원대상자 및 일반 국민, 신청·접수 담당 읍·면·동 공무원 및 여러 사회보장사업의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시·군·구 통합조사담당 공무원 등
- (이해관계집단) 사회보장사업 기준 담당 사업부서

□ **기대효과**

- 표준사업기준 마련 등 기준관리를 통해 **다양한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 (지자체 담당자) 사회보장사업의 **각종 기준에 대한 숙지가 쉬워져** 맞춤형 복지서비스 상담 및 안내가 가능하고 **업무 효율성 증대**
 - (국민)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에 대한 **수급 가능성 예측이 쉬워지고**, 급여 탈락에 대한 **순응도가 높아져 복지 체감도 제고**
 - (시스템) 시스템 복잡성 완화에 따른 **정보 연계 오류 가능성 최소화**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능력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사회복지전달체계(정보화)(I-6-정보화①)			
① 사회복지전달체계(2639)	일반회계	693 (732)	765 ()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정보화)(300)	일반회계	226	180
▪ 사회보장정보원 운영(304)	일반회계	307	325
▪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정보화)(305)	일반회계	160	26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사회보장사업 표준사업 지침 마련 추진율	신규	신규	신규	100	사회보장사업 업무 프로세스별 주요 기준들에 대한 검토 및 지자체, 사업담당자들의 의견수렴을 바탕 으로 최종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Σ지침 마련 절차 진행 · 분야별 기준 표준화 과제 마련(×0.2) · 지자체 의견 조회(×0.2) · 사업부서 의견조회(×0.2) · 기준심의위원회 의결(×0.2) · 지침 완료 (×0.2)	표준사업 기준 마련 관련 보고서 및 회의 자료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율	신규	신규	신규	100	사회보장사업 관련 공통서식을 간 소화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적기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Σ고시 개정 절차 진행 · 개정안 마련 (×0.2) · 의견조회(×0.2) · 행정예고(×0.2) · 규제심사(×0.2) · 고시 발령 (×0.2)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략
목표
I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및 고도화(I-2-③)

□ 추진배경 (목적)

-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13. 1월 시행)에 따라 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의 통합·연계
가능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법정부,복지로)으로의 확장
-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기능 고도화 수행 후 안정화 필요
* 140개 국정과제 중 맞춤형급여 등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한 관련 국정과제 13개
- 지속적인 신규사업 지원 및 고도화 요구 발생에 대응하고,
사보장제도와 기술환경 변화에 발맞춰 혁신적 변화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
- 13개 기관 24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고위험 가구를 예측·
선별하고, 지자체를 통해 상담·조사 후 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 발굴 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이력을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각지대를 해소
-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기능 강화) 고용복지+센터의 고용-복지
담당자간 정보공유, 복지서비스 지원 기능 확대를 위한 각
전산망 연계·개선
- 고용복지 연계 : 고용-복지 담당자간 서비스대상자 정보공유,
읍면동과 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상자 상호 의뢰

- **복지기능 강화** : 복지 담당자의 행복e음 사용권한 확대 및 타시군구 거주자도 지원할 수 있는 업무기반 마련
- **업무편의 증진** : 통합로그인 체계 구축 및 행복e음에 +센터 담당자 전용 업무처리메뉴 신설
- **(민·관 협력 연계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공공과 민간 복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 개선
 - 공공과 민간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간 대상자, 보유자원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중복지원 방지 및 지역단위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 **(복지로 포털 서비스 편의기능 강화)** 국민들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온·오프라인에서 알기 쉽고 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복지로 포털 서비스 기능을 개선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서비스를 모바일까지 확대하여 국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능 확대
 - 복지로 나의 '복지서비스 찾기' 기능(단순검색 및 상세검색)을 전 복지사업으로 확대('15년 207개 → '16년 360개*)
 - * 사회복지사업의 신설 및 통폐합에 따라 서비스 대상 조정 발생 가능
- **(맞춤형 보육시스템 구축(행복e음))** 만 0~2세 보육료 지원사업이 맞춤형 보육*으로 개편('16.7.1 예정)됨에 따른 사회복지정보시스템 개편
 -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유아(약 75만명)를 대상으로 실수요 강제방식에 따라 종일반(12시간)·맞춤반(7시간)으로 구분
 - 종일반/맞춤반 신청, 종일반 해당 여부 조사를 위한 정보 연계 확대, 자격책정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아동 행복지원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 이력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 아동학대 사건의 지속 발생에 따라, 신고접수에 의한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에 발견하여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 보호법*('15.7.24,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 필요
 - * 제24조의2제2항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
 - 암호화 대상 :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주요 업무 DB 주민등록번호*
 - * 보유 건수 : 총 224억 건(통합 DB(82억), 연계 DB(11억), 자격 DB(16억), DW(115억))
- **(부적정 수급 관리 강화(확인조사))**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 내역을 최신화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조사(복지재정 누수 방지)
 - 정기확인조사 : 현재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기초생활 보장 등 13개 사업* 수급자의 자격, 급여결정에 활용되는 전체 소득재산 정보를 갱신하여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조사
 - * 기초생활보장, 기초/장애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감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초중고교육비지원,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 단주기확인조사 : '13년 감사원 지적*으로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 동안 월별 확인조사 실시
 - * 정기 확인조사는 소득·재산 정보가 변동된 사실이 지연 확인(최대 6개월)될 수 있어, 부적격자의 복지급여 지급 또는 과다지급에 대해 지적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16년 단주기 확인조사 시범 실시	'16.2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DB 암호화 위한 AP기능개선 사업 계약체결	'16.2월	
2/4분기	신규 온라인신청(한부모가족지원사업 등) 기능 개발 완료 및 오픈	'16.4월	
	'16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16.5월	
	정기 소득재산 확인조사('16년 상반기) 완료	'16.6월	
	'16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사업 계약체결	'16.6월	
3/4분기	맞춤형 보육 사전신청 기능 개통 및 기존 수급아동 자격전환	'16.6월	
	복지포털 포털 서비스 확대(상세검색 등) 구축 및 오픈	'16.7월	
4/4분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전용 행복e음 기능 구축	'16.9월	
	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사각지대발굴 상시 운용체계 구축	'16.10월	
	기초연금 이력관리 운영을 위한 행복e음 시스템 기능개선	'16.11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기아동 발굴모델 개발 연구용역 완료	'16.11월	
	정기 소득재산 확인조사('16년 하반기) 완료	'16.12월	
	민관협력 연계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16.12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DB 암호화 사업 완료	'16.12월	

전략
목표
I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지자체) 복지 대상자의 자격·수혜 이력 정보를 확인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중복·부정수급 방지
- (일반국민) 대국민 복지포털에 접속하여 해당 복지 서비스를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 이용

□ 기대효과

- 맞춤형복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도모하여 새로운 복지제도에 대한 시행착오 최소화

○ 지자체 복지업무 담당자의 업무 경감 및 복지업무의 효율적 수행 지원

○ 복지정책의 신뢰성 향상 및 복지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5	'16
사회복지전달체계(1-6-정보화①)			
① 사회복지전달체계(2639)	일반회계	-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300)		226	17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부적정 급여 절감액 (단위: 억원) (공통)	신규	신규	4,935	4,500	당초 목표치 2,650억원은 대통령 직인수위원회 채택사항이나, 적극적 목표 설정을 위해 과거 3년간 재정절감액 평균치 4,282억원 대비 5.1% 증가한 금액인 4,500억원을 목표치로 함(추계 수치의 성격상 15년 이후 목표치 동일)	연간 확인조사 등을 통한 중저자 수 × 보장별 평균 예상급여(연) *기초생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본인부담경감·자활, 청소년 특별지원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통한 복지제정 절감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복구 적기 처리율(%)	신규	신규	신규	163.5	과거 3년간 실적치 평균대비 2% 증가((141.2%('13년) + 178.1%('14년) + 165.1%('15년)) / 3) + 2%)	(기준장애복구시간 / 평균장애복구시간) × 100 *평균장애복구시간 = 장애복구시간의 총합 / 장애 발생건수 *기준 장애 복구 시간 = 4H(240min)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 모니터링 결과 -장애발생시각 : 정 부 통 합 전 산 센 터 NTOPS에 장애 접수된 시점 -기준장애복구 시간은 "장애발생 후 2 시간 내 현장 도착, 4시간 이내 조치완료" 기준이 통용되나, 사회보장정보원과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장애 대응 위한 1선 인력 상주를 전제하여 4 시간으로 설정	

성과목표 I-3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

(1) 주요 내용

□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활성화

- 국민의 잠재수요를 유효수요로 전환을 통한 사회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해 서비스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지속 추진
 - 아울러 사회서비스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체계 개선 필요
- 사회서비스 주요 전달체계인 바우처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확보 및 부정수급 예방체계 마련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확충 및 포괄보조 내실화

- 포괄보조 사업 내실화를 통한 지자체 사업기획 능력 향상 및 성과관리체계 확립
- 사업계획 수립·집행 관련 지자체 컨설팅을 통한 역량 강화
-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인식 개선

□ 사회서비스 품질제고 및 관리 효율화

- 사회서비스 수요의 지속적 증가 및 욕구의 다양화·개별화로 사회서비스 주요 공급주체인 사회복지시설 등 증가 추세
 - 이에 따라,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사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 강화

전략
목표
I

□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민간자원 활성화

- 책임과 배려에서 시작되는 나눔문화는 국민행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으로 매우 중요함
 - * 공공·민간 역할분담체계 정립 및 민간복지자원 총량 확대(국정과제 44-④)
 - 복지수요 증가에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익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및 질 제고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통해 “고용없는 성장”을 해소하고 생애 전주기별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시설 및 돌봄서비스 분야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품질 제고

성과목표·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사회서비스고용비중
(관리과제) 수요자중심의 사회서비스 활성화	①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②바우처카드 통합건수 ③임신·출산·육아바우처카드 통합
(관리과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확충 및 포괄보조 내실화	①사회복지시설보조금 대비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비율 ②시설평가 미흡시설(70점 미만) 품질관리 컨설팅을 통한 개선율 ③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규칙 개정 완료 ④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능개선
(관리과제)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①사회복지법인·시설 예결산 공시 비율 ②보조금 투명화율(공통) ③품질관리 평가개선율(공통) ④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정 비율
(관리과제)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민간자원 활성화	①나눔문화참여도 ②기부식품 등 모집총량 확대
(관리과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①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개수 ②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사회서비스이용비중 (%)	6.1	6.6	6.7	6.9	'15년 목표 달성으로 '16년 목표 상향 조정(6.9%)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의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일자리 비중	통계청 고용동향 발표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인구구조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저성장 고착에 따른 근로빈곤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 등장
 -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 및 품질관리 체계화를 통한 다양한 복지수용에 능동적 대응
- 성장률 저하와 고용없는 성장의 여파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중요성이 부각
 - 종사자 처우 개선, 고용 취약계층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미래 유망 및 융복합형 서비스 발굴 등을 통한 적극적 대응
-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부금 및 자원봉사 등 새롭게 증가하는 민간자원 활용이 강조
 - 일상에서 손쉬운 나눔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나눔환경 조성

전략
목표
I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활성화(I-3-①)

□ 추진배경 (목적)

- 저출산·고령화,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로 새로운 위험 등장
 - 이에 따라 돌봄, 간병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 패러다임도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전환
 -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수요 충족 및 국민 불안 해소 필요
- 국민의 잠재수요를 유효수요로 전환을 통한 사회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해 서비스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지속 추진
 - * 사회서비스수요공급실태조사('13년): 응답자의 80%가 사회서비스 이용으로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평가했으며, 사회서비스 질과 서비스 만족도와 서비스 이용의 향간에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사회서비스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체계 개선 필요
- 사회서비스 주요 전달체계인 바우처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확보 및 부정수급 예방체계 마련
 - 불필요한 바우처카드의 발급을 최대한 억제하여 하나의 카드로도 다수의 사회서비스 이용 가능토록 원카드 멀티서비스 기반 마련
 - 부정수급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비용임에도 현행 법령 상 당연히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제도적 한계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 마련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 사회서비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 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평가 및 평가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평가의 합리성 및 공정성 제고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사회서비스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 사회서비스 공통품질 최저기준 정립을 통한 기본적인 서비스 품질 확보 및 중복 평가기관의 평가 부담 완화 기반 마련
-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에 대한 심층조사 실시를 통한 정책개선 과제 발굴

○ '국민행복카드' 통합 확대 추진 및 대국민 홍보 실시

- 정부의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바우처카드인 '국민행복카드' 통합 확대 추진
- 대국민에게 '국민행복카드' 브랜드를 홍보하고, 이용방법 및 서비스 신청 방법 등 정보제공

○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체계 개선

-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 후 비용을 지급하는 '전자바우처 청구비용 사전차단시스템' 도입

전략
목표
I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2016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에 대한 공청회	1월	
	2016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에 대한 모의 평가	2월	
	사회서비스 공통품질 최저기준 정립을 위한 관련부서 등 회의	3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공적정보 연계(입원환자정보, 장기요양 서비스정보)	3월	
2/4분기	사회서비스 공통품질 최저기준 정립 위한 전문가 등 의견수렴	5~6월	
	2016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계획 시행 및 설명회	4월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미흡기관 역량강화 교육	4~5월	
	2016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현장평가단 구성 및 교육	5~6월	
	소규모 영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실시	5~8월	
3/4분기	바우처 통합카드(국민행복카드) 홍보	6월	
	부정수급 사전차단시스템 구축	7월	
	2016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평가 실시(자체평가, 현장평가)	7~10월	
	사회서비스 공통품질 최저기준 정립 마련 추진	7~10월	
	2016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자문회의	9월	
4/4분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공적정보 연계(사회복지시설 입소자·종사자정보)	9월	
	사회서비스 바우처 심층조사 실시	8~12월	
	여가부 아이돌봄지원사업을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10월	
	부내 7대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11월	
	2016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확정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사회서비스 이용자
- (이해관계집단) 사회서비스 제공인력·기관

□ 기대효과

- 하나의 카드만 발급받으면 모든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대 및 시스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정부예산 절감

- 의심결제내역의 급여 지급을 자동으로 보류하는 사전차단기능 도입을 통해 부정수급 사전 방지 및 지자체 업무부담 경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5	'16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I-6-재정④)			
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2635)	일반회계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304)		59	-

* '16년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지원사업으로 통합

전략
목표
I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종합 계획 마련	품질 관리 제고 방안 이행율 (100%)	품질 관리 제고 방안 이행율 (100%)	100%	'13년도 품질관리 종합계획 마련에 따라 '14년도, '15년도에 이어 '16년도 품질관리 제고를 위한 세부 이행을 성과목표로 설정	[품질평가지표 개선노력(×0.4)+ 제공기관 역량강 화(×0.3)+공통품 질 최저기준 정 립(×0.3)] ×100	내부 보고자료
바우처카드 통합 진수	신규 신규	신규 신규	6개 신규	14개	'16년 국민행복카드 통합을 검토 중인 8개 사업을 모두 연내에 완료 할 것을 목표로 설정 *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 언어발달, 부모 심리, 노인돌봄, 지역사회, 가사간병, 아이 돌봄(여가부)	국가 바우처 통합 카드(국민행복카 드)로 통합된 바 우처 사업 개수 *바우처 사업 개 수 = ∑사업별 통합추진율 ※ 통합 완료: 1개, 진행중: 1x추진 율(%)로 산출 예) 3개사업 통합 완료, 1개사업 80% 추진 = 3 + 1x0.8 = 3.8개	내부 보고자료

②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확충 및 포괄보조 내실화(I-3-②)

□ 추진배경 (목적)

- 저출산·고령화,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서비스 욕구는 지역·계층별로 다양하게 분출
 -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예방, 가족기능 지원, 고령자 소외예방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
- 사회서비스 유사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해 지자체가 지역 설정에 맞게 예산 집행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 도입(13)
 -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포괄 보조사업 내실화
 - 지자체 신규사업 개발을 위한 지속적 사업 설계 동기 부여와 신규 사업 개발을 통한 시장의 활성화 유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포괄보조 사업 내실화를 통한 지자체 사업기획 능력 향상 및 성과관리체계 확립
 - * 포괄보조 방식 도입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사업, 가사간병관리사지원사업 3개 내역예산 통합(2,237억원)
 - 사업계획 수립·집행 관련 지자체 컨설팅을 통한 역량 강화
 - 차년도 예산배분 관련, 성과평가결과 반영하여 성과기반 사업 추진 유도

○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인식 개선

- 제공기관 관리와 서비스 홍보 및 본인부담금 부담 비율 검토 등을 통한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유기적 참여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침 마련	'16.1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계획 및 위탁기관 선정	'16.3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자체 협의회 개최	'16.3월	
2/4분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자체 상반기 현장점검	'16.5월	
3/4분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 현장평가 실시	'16.9월	
4/4분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자체 하반기 현장점검	'16.11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자체 협의회 및 '17년 사업방향 설정	'16.11월	

전략
목표
I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종사자

- 사회서비스 확충 및 품질관리, 제공기관 육성 등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수요자의 실질적 선택권 강화 및 유효시장 창출에 따른 종사자의 고용의 질 향상 유도

○ (이해관계자) 지방자치단체 및 서비스 제공기관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포괄보조 전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필요성에 따라, 지자체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한 의견공유 활성화 예정
- 제공인력 기준, 서비스 표준안 등에 대한 제공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갈등 최소화

□ 기대효과

-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서민생활 보호, 복지수준의 제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 창출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I -6-일반재정④⑦⑧⑨)			
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2635)		2,157	2,256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303)	일반회계	21	19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생활)(305)	지역발전 특별회계	2,063	2,162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제주)(305)	지역발전 특별회계	67	68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세종)(305)	지역발전 특별회계	6	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수(명)	21,160	29,979	32,967	32,518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수 산출(내역 사업별 예산규모로 추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제공인력+가사간병관리사 지원 사업 제공인력 (중복제거)	전자바우처 시스템 추출	

③ 사회서비스 품질제고 및 관리 효율화(I-3-③)

□ 추진배경 (목적)

- 사회서비스 수요의 지속적 증가 및 욕구의 다양화·개별화로 사회서비스 주요 공급주체인 사회복지시설 등 증가 추세
- 이에 따라,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사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사회복지시설·법인의 운영 투명성 및 편의성 제고

- **(예결산 및 후원금 공시)** 예결산서,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 법인·시설 재무회계 투명성* 및 시설담당자 업무 편의성 제고

* 사회복지시설 등의 재무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제고

- **(시설보조금 모니터링)**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이용 활성화 및 거래내역 모니터링 추진을 통해 보조금 집행내역의 투명성 향상

* 시설보조금 규모 '12년 29,182억원 → '14년 36,072억원 → '15년 39,072억원

○ 사회복지시설 안전성 제고

- **(안전 예방활동 강화)**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주로 시설에 거주·이용함을 고려하여 시설종사자 안전교육*(16년 7,000명), 시설 개선사항** 지속 모니터링 실시 등

* 시설·전기·가스 안전전문기관(MOU 체결)과 합동으로 시·도 순회교육 실시 (5,000명, 4~5월) 및 사이버 교육 2,000명(연중)

**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계획('14.10)」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 인력 확충, 교육·훈련 확대 등 개선사항 모니터링

- **(안전점검의 체계화 및 점검부담 완화)** 상시적 안전점검 체계 구축, 안전 전문기관(시설·전기·가스) MOU 체결을 통해 종합점검 실시* (안전대진단, 하절기·동절기 안전점검) 및 불량시설 개선·기능보장 연계

* 시설 자체 및 지자체 전수점검 실시(연2회), 시설안전공단에 의한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연중, '16년 3,400개소)

○ 사회복지시설 관리 효율성 제고

- **(시설평가 내실화 및 시설 부담 완화)** 수요자 중심의 평가를 위한 품질지표 강화 및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평가 간소화

- **(사회복지분야 복무요원 배치 확대 및 직무교육 강화)** 사회복지시설 등에 사회복지요원의 배치를 확대하여 복지 서비스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직무교육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 민간중심의 민관협력 활성화

- **(민관협력 모델 발굴)** 복지자원 총량 확대를 위해 지역 거점 민간기관 중심의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 실시 및 민관협력 우수모델 발굴·확산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2015년 평가결과 공개	'16.1월	
	○ 2017년 평가지표 설명회 개최	'16.2월	
	○ 사회복지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시설·전기·가스안전공사)	'16.2월	장관님 참석
	○ 사회복지요원 직무교육(전문화) 과정 확대 운영 및 찾아가는 교육 실시	'16.2~12월	
	○ 민간주도형 민관협력사업 계획 수립 및 지자체 통보	'16.2월	
	○ 민간주도형 민관협력사업 참여기관 간담회 개최	'16.3월	
2/4분기	○ 사회복지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16.3~4월	
	○ 2016년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위원 교육	'16.4월	
	○ 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이용실적 점검	'16.4월	

	○ 사회복지시설 품질관리위원 및 대상시설 교육 및 컨설팅 실시	'16.4~10월	
	○ 민간주도형 민관협력사업 수행기관 현장 모니터링 실시	'16.4~6월	
	○ 사회복지시설 사·도 순회 안전교육 실시	'16.4~5월	
	○ '16년 사회복지무요원 배정비용 병무청 협의	'16.4월	
	○ '17년 사회복지 시설평가 개선을 위한 신규지표 확충	'16.4월	
	○ '17년 직무교육 표준교재(7종) 전면 개편 추진	'16.4~11월	
	○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무요원 배정인원 결정	'16.5월	
	○ 2015년 평가결과 우수 및 개선 시설 인센티브 제공	'16.5월	
	○ 2016년 사회복지시설 자체평가 및 현장평가 실시(신규 품질지표 시범 적용)	'16.5~7월	
	○ 사회복지시설 하절기 안전점검 실시(민관합동점검 포함)	'16.5~6월	
	○ 시설정보시스템 개선사업 사업자 선정 및 사업착수	'16.6월	
3/4분기	○ 민간주도형 민관협력사업 수행기관 현장 모니터링 실시	'16.7~9월	
	○ 사회복지무요원 현업적용도 조사	'16.9~12월	
4/4분기	○ 민간주도형 민관협력사업 수행기관 현장 모니터링 실시	'16.10월	
	○ 평가미흡시설 컨설팅 사후관리(추가컨설팅 및 교육)	'16.10월	
	○ 평가 관련 시설 정보시스템 보유 데이터 연계	'16.11월	
	○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예산산 공시율 및 보조금 카드 사용율 실시간 공유 기능 구축	'16.12월	
	○ 2018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의견수렴	'16.10월	
	○ 2016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확정	'16.12월	
	○ 사회복지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민관합동점검 포함)	'16.11~12월	
	○ 민간주도형 민관협력 표준모델 마련 및 확산	'16.12월	

전략
목표
I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사회복지시설 생활·이용자 및 일반 국민
- (이해관계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

□ 기대효과

-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5	'16
사회복지전달체계(I-6-일반재정⑥)			
① 사회복지전달체계(2639)	일반회계	7 (1707)	6 (1603)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312)		7	6
복지사업평가(I-6-일반재정②) ²⁾			
① 복지사업평가(2632) ³⁾	일반회계	12 (52)	11 (60)
▪ 사회복지시설평가 및 인센티브(300)		12	11
사회복지제도 운영(I-6-일반재정⑤)			
① 사회복지제도 운영(2636)	일반회계	475 (475)	636 (475)
▪ 사회복지무요원 직무교육(313)		98	105
▪ 사회복지제도 지원(314)		377	53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사회복지법인·시설 예산 공시 비율	(신규)	(신규)	(신규)	20.1%	- 현재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시율 대비 10%P 상향설정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시율
보조금 투명화율 (공통)	-	36.6	39.1	41.6%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인건비 제외) 비율은 '14년 36.6%, '15년 39.1%로 전년 대비 2.5% 증가 - '16년 목표치는 '15년 대비 2.5%P 상향 설정	시설에 교부한 보조금 중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한 금액 비율(인건비, 공공요금 등 제외)
*재정성과계획서 지표 명(사회복지시설보조금 대비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비율)						
품질관리 평가개선율 (공통)	91.7	84.2	60.0	86.3%	- 사회복지시설평가는 3년 주기로 동일 시설유형에 대해 평가하므로 평가주기인 3년에 맞춰 최근 3년간('13~'15)의 실적을 6:2:2 가중평균값에 3%P 추가 적용	품질관리시설의 평가 등급 상승률
*재정성과계획서 지표 명(시설평가 미흡시설(70점 미만) 품질관리 컨설팅을 통한 개선율)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무요원 배정 비율 (국정과제)	36.9	38.5	41.0	42%	-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무요원 목표 배정률(국정과제 설정 목표치)	사회복지무요원 배정비용(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무요원 배정인원 / 전체 사회복지무요원 배정인원) 달성률

④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민간자원 활성화(I-3-④)

□ 추진배경

- 책임과 배려에서 시작되는 **나눔문화는 국민행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으로 매우 중요함**

* 공공·민간 역할분담체계 정립 및 민간복지자원 총량 확대(국정과제 44-④)

- 복지수요 증가에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익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나눔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2016년도 나눔문화 확산 추진 방안, 수립 추진**

- 나눔정보 접근성 강화, 나눔단체 투명성강화, 나눔의 사회적 인식 제고, 계획기부 활성화 등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확대) 사업대상지역을 '15년 2개 시범 지역에서 '16년 전국 17개로 확대**

- 돌봄봉사자 우선 연계기준 마련, 운영 매뉴얼·교육자료 보완, 사업수행기관 기초 교육 실시 등 사업 내실화 추진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 **(기부식품 제공사업 육성) 식품, 생활용품 기부를 활성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 기여**

- 기부물품이 식품→식품·생활용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 기부식품의 품질개선 및 식품 안전사고 위험 감소를 위한 계획 기부* 확대

* 생산단계부터 기부를 목적으로 제품을 기부 받는 것으로 물품의 유통기한과 품질 확보 가능

- **(나눔문화 확산) '지역축제 나눔활성화사업' 지원(3월~), '2015 나눔 실태' 보고서 발표(7월), 대상별 특성에 맞는 나눔교육 지원(3월~)**

- **(나눔축제 지원) 기존 문화관광축제 등 활성화된 지역축제에 나눔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예산 지원***, 생활속 나눔문화 저변 확대

* ('16년 예산) 220백만원, 지역별 안배 고려, 사업당 2천만원 이내 지원할 계획

- **(나눔교육 지원* 강화) 나눔교육강사 양성, 지역별 나눔교육 지원, 수요자별 맞춤형 나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나눔단체의 전문성·투명성 향상 교육** 등을 통해 나눔인식 확산을 위한 토대 마련

*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 선정하여 추진(관련예산 550백만원('16))

- **(인식 개선) 나눔문화 확산 홍보 강화, 기업의 나눔 실천 지원을 통한 범사회적 관심 제고**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2016년도 나눔문화 활성화 추진방안' 수립	'16.3월	
	'지역축제 나눔활성화사업' 민간수행기관 공모	'16.3~4월	
	'16년 나눔교육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16.3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17개 지역 확대	'16.3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교육 실시	'16.3월	
2/4분기	'지역축제 나눔활성화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예산지원	'16.4~12월	
	나눔문화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사업 공모	'16.4~5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기초관리본부 현장 점검	'16.4월	

	상반기 행복나눔인 시상식	'16.6월	
3/4분기	나눔문화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사업 추진	'16.5~11월	
	2015 나눔실태 보고서 발표	'16.7월	
	'16년 나눔교육 사업 모니터링 실시	'16.7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대상 확대방안 마련	'16.10월	
4/4분기	나눔문화 관련 국민인식 설문조사	'16.12월	
	나눔국민대상 행사 개최	'16.10월	
	하반기 행복나눔인 시상식	'16.11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시스템 고도화 완료	'16.12월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17.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전국민
- (이해관계집단) 모금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NPO)

□ 기대효과

- 나눔의 제도적 기반 강화 및 생활 속 나눔 환경 조성으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 보완 및 사회통합 구현에 기여

전략
목표
I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민간자원 활성화(I-3-일반재정④)			
① 사회복지사업지원(2631)		70 (150)	82 (174)
▪나눔문화확산(312)	일반회계	13.4	12.8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308)	일반회계	56.6	69.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순증)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기부식품 등 모집 환산액 (억원)	1,297	1,403 (8.2)	1,393 (△1%)	1,493	과거 3년 (13년~15년) 실적치의 평균상승률을 전년 실적치('15년) 에 적용하여 목표치 산출	15년 실적치 (1,403억원)에 평균상승률 (7.2%)을 적용	매년 말일 기준 기 부 식품관리시스템 등록 수치 (매년 최종 집계마감 일은 차년 2월말일)
사회공헌활동 기부 은행 적립 포인트	-	-	-	194,752	'15년 시범사업 결과, 1개소 1달 실적(1,432)을 근거로 '16년도 목표 산정 * 17개소, 5월~12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시스템 등록자료 ('16.12.31.)	사회공헌활동 기부 은행 시스템

5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I-3-5)

□ 추진배경 (목적)

-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고용과 복지의 조화는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핵심 국정과제의 달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
 - *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국정과제 59),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국정과제 60)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통해 “고용없는 성장”을 해소하고 생애 전주기별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 * 제조업 중심 성장의 한계, 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향후 유망 일자리 창출분야(맥킨지 보고서, '13.4월)
- 사회복지시설 및 돌봄서비스 분야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추진현황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일자리(재정지원형) 사업 발굴, 기존 사업 확대를 통해 4.2만개 신규 일자리(복지부) 창출 추진 [(‘15) 121.2만개 → (‘16) 125.4만개]
- (보건복지관련 산업 일자리 조사) 보건복지 관련 산업 일자리 변화 추이 등을 파악하고,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통계조사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 (급여 상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 지자체가 이를 준수토록 유도하여 종사자 급여인상 등 근로여건을 개선
 - (종사자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을 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공무원대비 95%이상)하도록 매년 권고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권고
 - ※ ‘16년 권고기준(가이드라인) : 공무원 보수대비 96.1% 수준 제시(‘16.1월)
 - (준수 유도) 권고기준(가이드라인) 준수를 공개범위 확대(시도→시·군·구), 지역복지 평가시 종사자 처우개선 우수사례를 평가하여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 (유형별 분석) 인건비 산정의 기본이 되는 근무형태나 근무시간, 직무분석, 근무강도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시설종류별, 직무별로 적정 임금 등이 산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
 -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시설별, 직무별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16.3~8월)
 -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고보조시설 간 인건비 불균형 개선 유도
- (힐링프로그램)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여성종사자들의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한 ‘Mom(맘)편한 힐링타임’ 계획 수립·시행
 - 롯데그룹과의 Mou체결에 따른 지원(‘15년부터 5년간 매년 2억원 상당)으로 힐링프로그램(힐링강의, 문화단지 견학 등) 제공 예정

돌봄서비스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 (근로여건 개선) 돌봄서비스별 종사자의 적정 서비스 수가 인상 지원, 표준화된 노무관리업무 매뉴얼 마련 및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이용자 교육자료 개발 등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
 - (서비스 수가 개선 지원) 타서비스에 비해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를 유사서비스(노인돌봄, 가사간병 등)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유도(9,000원→9,800원)
 - (종사자 보호 강화) 표준화된 노무관리업무 매뉴얼 마련 및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제공인력 간 갈등 예방과 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용자 교육자료 개발·활용
 - (모니터링)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여건 등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제공기관 현장방문 등 모니터링 실시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6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시(권고)	'16. 1월	
	공공기관 대상 시간선택제 활성화 간담회	'16. 1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장방문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시설별, 직무별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16. 3월 '16.3~8월	
2/4분기	2016년 보건복지관련 산업 일자리 통계조사 연구 추진	'16. 4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이행 모니터링	'16.5~7월	
	제공기관의 표준화된 노무관리업무 매뉴얼 마련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실적 및 제도 개선사항 모니터링	'16. 6월 '16. 6월	
3/4분기	사회복지시설 여성종사자 대상 힐링프로그램 계획 수립·시행	'16.9~10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공개	'16. 9월	
4/4분기	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이용자 교육자료 개발	'16.11월	
	2016년 상반기 보건복지 관련 산업 일자리조사 결과 공표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실적 및 제도 개선사항 모니터링	'16.12월 '16.12월	

전략
목표
I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일반국민(사회서비스 수요자), 사회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종사자(사회서비스 제공자)
- (이해관계자) 해당 없음

□ 기대효과

-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미래형 사회 문제의 대응 및 해당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속 창출
- 고용-복지-재정 연계의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순증)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개수	83 천개	92 천개	110 천개	42 천개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13.7월) 및 '16년 예산에 따른 복지부 일자리 창출 목표(42천개) - '15년 대비 '16년 예산은 1300억 원 증가하여 추가 창출 가능한 일자리 개수로 42천개 설정	각 일자리 사업별 창출실적 합산	각 일자리 사업별 실적 보고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	-	5.39 %	3%	공무원 보수인상율(3%)을 고려하 여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을 상호 비교 측정하여 실질적 임금인상 등을 통해 지자체가 종사자 처우 개선에 스스로 노력토록 유도	시도별 전년대비 평 균 인건비 인상률	시도별 취합

성과목표 I-4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1) 주요 내용

□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및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장애등급제를 개편하고 장애종합판정체제로 전환 추진

-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장애인서비스가 ‘장애등급’을 통해 공급자 위주로 제공되는 것에서 탈피하여,
- 개인의 욕구, 기능제한, 사회적환경을 종합판정하여 장애인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 도입

○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사업 내실화

- 장애인 등록단계부터 복지욕구 및 생활능력 등을 종합사정 후 원스톱으로 공적·민간 서비스 연계/모니터링 수행

□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인편의 증진

○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 장애인 인권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 법령 제·개정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준비
-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실시
-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 장애인 편의 증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확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 2016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특성 분석 및 2017년 선정기준 연구” 추진
- 2017년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선정기준액 일부개정 고시

○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확대 지속 추진

-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 장애인연금 제도 관련 지자체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연금 미수급자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의 수급가능 여부 사전 안내서비스 추진
- 정책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홍보 추진

□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확대

○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형 일자리 제공 및 사업 활성화 추진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지속 추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및 생산시설 사후관리 강화

○ 장애인 보호고용 활성화를 위한 기능보장 및 컨설팅 지원

□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 광역지자체 단위 17개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복지·권익옹호 서비스 전달체계 최초 구축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 일반 의료기관에서 받기 어려운 장애인 치과치료 등 의료접근성 제고와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 치료지원 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 신고의무자교육 과정 개설
 - 발달장애인법상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시 신고의무자(초중등 교사,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직원 등) 교육안 개발

□ 중증장애인 돌봄 지원체계 구축

- 중증장애인 상시 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활동지원급여 다양화
 -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수요 높은 주간활동서비스 시범사업 실시하는 등 활동지원급여 다양화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지역 및 대상 확대
-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 제고
 - 활동보조인 신규교육 교재 개발, 보수교육 개선 연구 실시 등 교육 개선
- 활동지원기관 평가체계 정비 등 사후관리 강화
 - 3개년에 걸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주기·주요 평가항목 등을 개선하는 평가체계 정비
 -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전략
목표
I

성과목표-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율
(관리과제) 장애인 등록제도 개선 및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참여자 서비스 연계율 ·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사업 추진율
(관리과제)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인편의 증진	· 장애인 차별 인지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관리과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확대	· 장애인연금 수급률
(관리과제)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확대	· 중증장애인 취업율 · 장애인 일자리지원 만족도
(관리과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지원 공적 전달체계 구축
(관리과제) 중증장애인 돌봄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 활동지원 내실운영 기여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율(%)	46.2	48.9	50.2	52.2	최근 3년간의 평균 상승률 2%를 반영하여 적용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자 수 + 활동지원 수급자 수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수) / 등록장애인수	행복 e음 통계 활용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계에서는 장애등급제의 폐지,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
 - 장애인서비스 다양화 및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반영한 장애종합판정체제로 개편함에 있어 장애 당사자(장애단체)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의견수렴 추진
- 취약한 소득수준 및 낮은 경제활동으로 경제적 어려움 가중
 - *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198만원)은 전국가구소득(371만원)의 53.4%, 장애인 취업률(36%)은 전체 국민취업률(60%)의 59% 수준
 - 재정지원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근로조건 개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임금인상 등 지속 추진
- 집안일 등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의 28%가 타인의 도움이 필요
 - 도와주는 사람의 대부분은 배우자, 부모 등 가족구성원(84.2%)으로 활동보조인 등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
 - 수급자의 욕구 · 필요도를 반영한 맞춤형 활동지원급여 제공 및 응급안전시스템 구축 등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실화 추진

전략목표 I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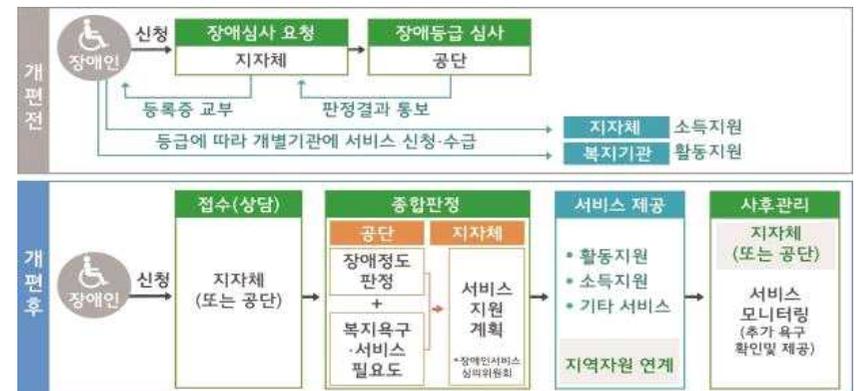
1 장애인 등록제도 개선 및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I-4①)

□ 추진배경 (목적)

- 장애인서비스 다양화 및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로 의학적 판정중심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의 욕구 및 사회 ·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장애종합판정체제로 전환 추진
- 장애인 등록부터 복지욕구를 사정하여 서비스를 통합 안내 · 연계하는 선제적 원스톱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장애등급제를 개편하고 장애종합판정체제로 전환 추진
 -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장애인서비스가 '장애등급'을 통해 공급자 위주로 제공되는 것에서 탈피하여,
 - 개인의 욕구, 기능제한, 사회적환경을 종합판정하여 장애인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 도입
 -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모형수정 보완 및 시범사업 실시(6개 지자체)



○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사업 내실화

- 장애인 등록단계부터 복지욕구(일자리, 재활서비스, 돌봄 등) 및 생활능력 등을 종합사정 후 원스톱으로 공적·민간 서비스 연계/모니터링 수행

- 서비스 제공 절차: 사례관리 중심의 서비스 제공



전략
목표
I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장애등급제 개편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 수정보완	'16.2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지역 지자체 협의	'16.3월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수행인력 채용 및 직무교육(기본)	'16.3월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관계기관 사업설명회	'16.3월	
2/4분기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복지지원 구축 및 업무매뉴얼, 전산시스템 개선	'16.3~4월	
	장애인단체 그룹별 2차 간담회	'16.4월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복지지원 구축 및 업데이트	'16.4월	
3/4분기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시작 및 모니터링 단 운영	'16.6월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사업 중간평가	'16.7~8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중간점검 보고회	'16.9월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사업 합동워크숍 개최(지자체)	'16.9월	
4/4분기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직무교육(심화)	'16.9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최종결과 보고 및 2차 시범사업 보완 반영	'16.12월	
장기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복지지원 구축 및 업무매뉴얼, 전산시스템 개선	'16.3~4월	
	장애종합관정체계 지자체 시범사업 실시 및 수정보완	'16년	
	장애종합관정체계 도입에 따른 서비스연계지원 도입	'16년	
	관련 법령 정비 및 장애종합관정체계 도입	'16~'17년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장애인 및 일반국민
- (이해관계집단) 장애인단체, 복지기관, 의료계

□ 기대효과

- 수요자 중심의 장애관정제도 개선으로 등급 부여로 인한 장애인 당사자의 낙인 의식을 해소하고 복지체감도 향상
- 장애인등록과 서비스 이용의 유기적 연결로 **이용자 중심의 One-Stop 서비스 구현**
- 기존 공공·민간 전달체계의 중복기능 및 미비점을 해소
- 장애인지원서비스 연계지원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장애인소득보장(1-2-일반계정①)			
① 장애인소득보장(1531)	일반회계	264 (7,195)	292 (7,020)
·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302)		264	29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참여자 서비스 연계율	-	-	47.4	49.4	1차 시범사업 서비스 연계율 47.4%를 근거로 함	(서비스연계자수 / 시범사업 참여자) × 100%	시범사업 수행 결과 보고서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사업 추진율	시범사업 참여율 93%	시범사업 참여율 91%	사업 참여율 93%	사업 참여율 93%	-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사업의 최근3년 평균 참여율* 근거 * '13~'15 평균 참여율 : 92.3%	(서비스 참여자 / '16년 지역별 신규 장애 등록자 중 서비스 안내자) × 100%	연계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전화 면접조사	

②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인편의 증진 (I-4②)

□ 추진배경 (목적)

-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고* 예방 및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후보호 체계 구축

* VIP 지시사항('14.3.18, 관리번호: 5730) : 장애인복지 및 인권침해 시정

** 염전노예 사건(14.2월), 인천 해바라기거주시설('15.1월) 등

- 장애인의 생활 전반에 걸쳐 불편요인을 해소하고 시설물 등의 이용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개선하고, 장애인의 시험편의 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 보장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 장애인 인권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 법령 제·개정

법령명	주요내용	완료시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 확대, 교육의 내용 규정	'16.6.3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사후 보호 역할을 수행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 기능 및 설치 방법 규정	'16.12.31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준비

- 「한국형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방안」 연구용역 추진(~10월)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계획 수립(~12월)

- 2016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실시(4월~12월)
 - 고용 및 교육 영역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실태를 모니터링 하고,
 - 2015년 모니터링 결과 이행 미흡기관을 대상 개선 안내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 조사

- 중앙 장애인권침해예방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위탁) 운영(연중)
 - 시설 이용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장애인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응 매뉴얼 제작
 -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개입 및 상담

-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실시

- 인권실태조사표·조사매뉴얼을 수정 보완하고 전문조사원을 추가 양성*하여 약 250개소 대상 실태조사(7월~10월)

* '16년 추가 양성 120명('15년 조사원 180여명 포함 300명 확보 예정)

** 사전준비 : 조사표·매뉴얼 마련(4월), 민간면담원 양성(6월), 조사팀 구성(6월)

-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시범사업 지속·확대 실시(연중)

- '15년도 설치한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4개소, 연중) 지속 운영 및 '16년도 신규 설치 확대(4개소, 7~12월) 운영

-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연중)

- 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비준국이 참석하는 연례회의 참석(6월)
-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방안 수립(1월)
- UN ESCAP(U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for Asia and Pacific) 아·태 지역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 로드맵인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12월)
- 인천전략 이행 위한 국제 장애인 지원사업 추진

사업 내용	완료 시기
• 국제 장애인 지원 사업 중장기 계획 개발 (연구)	7월
• 몽골 장애인 지원 사업 지속 추진	연중
• 라오스 장애인 지원 사업 지속 추진	연중
• 인도네시아 장애인 지원 사업 타당성 검토	~12월
• 장애인 단체의 국제협력 사업 지원	~12월
• 아·태지역 장애 전문가 초청 연수	~10월

-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을 광역시·도와 협력하여 상·하반기 개최(내용 : 장애인 학대(성범죄) 범죄에 대한 신고의무 및 신고 방법)
-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정당한 편의(의사소통 수단) 제공 홍보

○ 장애인 편의 증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 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개선을 위한 「장애인등 편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 (주요 개선내용) 건물 주출입구(문) 폭 확대(0.8→0.9m), 장애인화장실 면적(1.4×1.6→1.6×2.0m) 및 출입문폭(0.8→0.9m) 확대, 숙박시설의 장애인 객실비율 상향(0.5→1~3%) 조정, 신축 건물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제한 등
- 편의시설 운영 실태 모니터링* 및 실태 표본조사** 실시
 - * (모니터링) 사용승인 후 1년 이내 건물 중 일부(약 2,000개소)에 대해 편의 시설 설치 및 적정기준 유지 여부 등 점검
 - ** (표본조사) 관광숙박시설(상반기), 보건소·국립병원(하반기)

-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법령 제·개정

법령명	주요내용	완료시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 대한 시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을 정하고, 편의제공의 기준·내용·방법 규정	'16.6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시행규칙	• 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 기준 개선	'16.10월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사업계획 수립	16.1월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방안 수립	16.1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문조사원 양성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	16.2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표본조사(관광숙박시설) 실시	16.3~4월	
2/4분기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표 및 조사 매뉴얼 마련	16.4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문조사원 양성	16.6월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시범 운영 신규기관 공모·선정	16.6월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장애인식개선 교육 기관 확대, 장애인응시자 편의제공)	16.6월	
	「장애인등 편의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	16.4~6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표본조사(관광숙박시설) 실시 결과 보고	16.6월	
3/4분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연구 착수	16.7월	
	국제장애인지원사업 중장기 계획 연구보고서	16.7월	
	신규 설치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시범운영	16.7월	
4/4분기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표본조사(보건소, 국공립병원) 실시	16.9~10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운영 모니터링	16.9~10월	
	한국형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방안 연구보고서	16. 10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표본조사(보건소, 국공립병원) 실시 결과 보고	16.11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연구보고서	16.12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16.12월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16.12월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 및 설치 방법 등)	16.12월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16.12월	

전략
목표
I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내 장애인, 노인, 임산부, 개도국 장애인
- (이해관계자) 장애단체,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 편의증진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의무기관, 공공재활프로그램 시행 관련 기관

□ 기대효과

- 장애인 인권보호 수준 향상
 - 지역사회의 장애인식 수준 제고 및 장애인 차별 수준 개선
- 장애인 이동·접근권 및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 사회참여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5	'16
장애인복지시설확충(I-2-일반재정⑤)			
① 장애인복지시설확충(1536)	일반회계	4,651 (4,651)	4,714 (4,714)
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생활 지원(I-2-일반재정⑧)			
(1) 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생활 지원(1542)	일반회계	6 (63)	13 (72)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302)		6	1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장애인 차별 인지도 -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생활영역 별 장애인 차별인식조사 평균 점수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80	13년~15년도 실적 추이 반영 · 장애인차별 이해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7개의 생활영역별 장애인차별 인식수준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4점의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장애인차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	· 측정대상기간 : '16.9. ~ 10.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16.12월말 예정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지역, 성, 연령에 따른 비례 할당에 의한 무작위 추출에 의한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장애인차별인식조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관광숙박시설)	71.5	신규	신규	신규	73%	08년 조사(68.3%) 대비 '13년 조사(71.5%)의 설치율 및 그간의 의무적 설치해야할 편의시설 종류 확대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여 '13년 대비 1.5% 증가한 73%로 설정	설치된 편의시설 세부항목 수 /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세부항목 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표본조사(관광숙박시설)

③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확대(I-4③)

□ 추진배경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장애인연금법, '10.7.1 시행) 및 급여액 인상 및 대상 확대('14.7.1 시행)
- 중증장애인의 경우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수급 시기 등이 지연되거나 기회를 상실하기 않도록 미수급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장애인연금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 2016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 단독가구 93만원 → 100만원, 부부가구 148.8만원 → 160만원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 기초급여액 : 202,600원 → 204,010원
 - 2017년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선정기준액 일부개정 고시안 마련
 -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특성 분석 및 2017년 선정기준 연구” 추진
-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확대 지속 추진
 -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

전략
목표
I

- 장애인연금 제도 관련 지자체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 * 장애인연금 업무담당자 합동교육 및 워크샵 실시, 장애인연금 담당자를 위한 Q&A 책자 제작·배부
-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연금 미수급자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 * 장애인복지 권리구제 서비스 시스템(행복e음) 활용 독려, 지자체 현장점검 실시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의 수급가능 여부 사전 안내서비스인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 추진
 - * 장애인연금법 개정 필요
- 정책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홍보 추진
 - * 안내 전단, 포스터, 전광판, 장애유형별 맞춤형 홍보 등 진행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2016년 장애인연금 제도 관련 업무담당자 합동교육 실시	'16.1~3월	
	○ 행복e음 시스템 반영 및 기능개선 사항 요청	'16.1~3월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반영 및 안내	'16.1~3월	
	○ 장애인복지 미수급자 권리구제 관련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16.1~3월	
2/4분기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	'16.1~6월	
	○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를 위한 맞춤형 홍보 추진	'16.4~6월	
	○ 장애인복지 미수급자 권리구제 관련 일제정비 및 모니터링	'16.4~6월	
3/4분기	○ 장애인 소독보장업무 관련 지자체 현장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16.6~9월	
	○ 장애인연금 수급률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16.4~9월	
	○ 장애인연금 (종전장애수당, 부가급여, 직역연금) 특례자 정비	'16.1~9월	
4/4분기	○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특성 분석 및 2017년 선정기준 연구” 용역 추진	'16.4~12월	
	○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안) 마련	'16.5~12월	
	○ '17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안) 마련	'16.10~12월	
	○ '17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일부개정	'16.10~12월	
	○ 장애인연금 업무담당자를 위한 Q&A집 배부	'16.10~12월	
	○ 장애인연금 사업관련 유공자 표창 및 워크샵 실시	'16.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201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 (이해관계자) 장애인단체 및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기대효과

○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 확대

-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장애인소득보장(I-2-일반재정①)			
① 장애인소득보장(1531)	일반회계	5,618 (7,195)	5,483 (7,020)
• 장애인연금(305)		5,618	5,48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장애인연금 수급률	59.7%	64.5%	67.2%	67.3%	'14년 7월 제도 확대 이후 집중 안내 강화로 '14년 실적 대비 '15년도에 2.8% 증가하였으나, '16년 이후 장애인연금 수급률 증가추세는 둔화되고, 확인조사 주기 단축으로 탈락자가 증가되는 요인을 반영하여 '16년도 목표치를 67.3%로 설정 * 신규 장애인연금 수급자수 증대를 위해 권리구제 대상자 개별 안내 및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 고지의 무토록 제도개선 추진 <장애인연금 수급률 증가 둔화요인> - '16년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주기 단축(연 2회→연12회) - 공적자료(금융이자소득-2,000만원 이하) 연계 확대로 소득인정액 증대되어 수급권 탈락자 증가 - '16년 장애인연금 예산편성시 신청률 97%를 적용해서 실제 중증장애인의 67.9%에 대한 예산 반영됨.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 ('16년 말 기준)	행복e을 통해 활용

전략
목표
I

4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확대(I-4④)

□ 추진배경 (목적)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확대 필요

* 장애인고용률 36%(전체 60%,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 공공형 일자리 제공 및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생활안정 도모

* 사업추진의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형 일자리 제공 및 사업 활성화 추진

-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내실화 (16년 약 15,000명)

*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신규 일자리 개발, 조사·연구, 모니터링, 교육, 홍보 등 실시

- 사업 종료 후 일자리 유지를 위한 민간일자리 연계 지원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지속 추진

- 지역사회의 직업재활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한 맞춤형 직업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직업능력 향상 및 취업 지원(16년 약 6,900명)

* 상담, 평가,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등

-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 및 민간영역의 사업 발굴·지원

- 직업재활서비스 수행기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직업재활서비스의 품질 제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및 생산시설 사후관리 강화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 준수 독려 (우선구매 촉진 위원회 개최, 민관합동 워크숍 실시 등)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 생산시설 지정기준 준수 유도 및 처분 실효성 확보 위한 법령 개정

* 생산시설 재지정 제한 대상 기준 명확화 등 ('16.8.4 시행예정)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 구축을 통해 제도의 적절한 운영 도모

- 장애인 보호고용 활성화를 위한 기능보강 및 컨설팅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신·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지원을 통한 장애인 보호고용* 확대

* (보호고용)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 장애인 소득 향상 도모

* 경영상의 문제점 개선과 경영 합리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16년 44개소 예정)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 선정	'16.2~3월	
	장애인일자리사업 현장 모니터링 실시	'16.2~3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시설 선정	'16.2~3월	
	장애인일자리사업 신규 담당자 사업 설명회	'16.2~3월	
2/4분기	'16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추가 지원사업 선정	'16.4~5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규시설 대상 교육	'16.4~5월	
	2015년 우선구매 실적 국무회의 보고 및 2016년 우선구매 계획 공고	'16.5~6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중간관리자교육 및 수행기관 현장 평가	'16.5~6월	
3/4분기	우선구매 특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개정	'16.7~8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우선구매 교육 및 민관합동 워크숍	'16.7~8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규시설 대상 교육	'16.7~8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문인력 교육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자 워크숍	'16.8~9월	
4/4분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중간보고	'16.10~11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대회	'16.12월	
	장애인일자리사업 조사·연구 및 만족도 조사	'16.12월	

전략
목표
I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미취업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이해관계자) 장애인 관련 시설 및 단체, 민간 기업 및 공공기관 등

□ 기대효과

-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생활안정 지원
-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5	'16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확대(I-2-⑧)			
① 장애인복지시설 확충(1536)	일반회계	134 (4,673)	131 (4,715)
▪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330)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차치단체이전)		134	131
② 장애인일자리지원(1539)		662 (662)	707 (707)
▪ 장애인일자리지원(300)		662	707
③ 장애인직업재활지원(1631)		23 (23)	15 (15)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302)		23	15
④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1633)		183 (183)	185 (185)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300)		183	18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중증장애인 취업률 (%)	신규 21.1	22.8	23.7	23.7	15년도 취업률 실적치(22.8%) +지난 3년간(2013~2015년) 취업률 증가율의 평균(0.9%)	(중증장애인직업 재활지원사업을 통한) 취업인원 /상당인원*100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 원사업 실적보고서
장애인 일자리지원 만족도(점)	신규 83.8	83.1	84.4	84.4	'15년 실적(83.1점)+최근 3년간('13 년~'15년)장애인일자리만족도 평균 상승 점수(1.3점)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만족 도 + 중증장애 인직업재활지 원사업 만족도)/2	장애인일자리사업 만 족도 조사결과보고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 원사업 만족도 조사결 과보고서

5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I-4⑤)

□ 추진배경

- 발달장애(지적·자폐성장애, 약 20만명)는 장애의 특성상 장애가 일생동안 지속되며, 인지·의사소통 영역의 제약으로 인하여 교육, 고용, 일상생활 편의시설 이용 등에서 어려움 경험
 - △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 * 경제활동 참가율 : 지적장애인 28.5%, 자폐성장애인 12.8%, 장애인 전체 39%
 - * 지역사회생활 차별(음식점, 공연장 등 이용) 경험률 : 지적장애인 18.6%, 자폐성장애인 23.9%, 장애인 전체 7.3%
- 他장애 영역에 비해 일생에 걸친 별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15.11.21)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광역지자체 단위 17개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 영유아기·학령기·성인기 등 생애주기와 개인 상황에 부합하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서비스 연계하고, 범죄 등 발생시 현장 조사, 공공후견인 지원 등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 수행
 -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복지·권익옹호 서비스 전달체계 최초 구축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 일반 의료기관에서 받기 어려운 장애인 치과치료 등 의료접근성 제고와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 치료지원 체계 구축
 - 특히, 수도권에만 운영되는 공적 행동치료(국립서울병원, 은평시립병원, 서울시어린이병원) 인프라 확산하여 지역간 형평성 제고

전략
목표
I

○ 발달장애인법상 유관 부처 협력을 통한 발달장애인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 발달장애인 공공정보 접근성 제고(행자부, 민원 담당 공무원 교육), 범죄 피해시 조사 지원(법무부/경찰청, 전담 검사·경찰 지정), 고용 기회 확대(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 신설) 등 추진

○ 발달장애인 신고의무자교육 과정 개설

- 발달장애인법상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시 신고의무자(초·중·등 교사,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직원 등) 교육안 개발

○ 발달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후견법인 지정

- 스스로 법적 권리 행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은행 계좌 개설, 주거·근로 계약 등 조력하는 공공후견법인을 지정하여 후견 업무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발달장애인 권익보호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대구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16.2월	
	광주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16.3월	
2/4분기	유관 부처 의무이행 사항 점검	'16.4월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선정 공고	'16.5월	
	후견법인 지정 방안 수립·공고	'16.6월	
3/4분기	발달장애인 신고의무자교육 과정 개발	'16.6월	
	발달장애인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	'16.7월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선정·운영 개시	'16.8~9월	
4/4분기	공공후견법인 지정	'16.8월	
	17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완료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아동 및 성인 발달장애인(203천명, '14.12월 기준) 및 그 가족
- (이해관계집단) 발달장애인 당사자, 부모 등

□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 개인의 성장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의 권리보호와 발달장애인 친화적인 환경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5	'16
장애인생활안정지원(I-1-일반재정④)			
① 장애인선택적복지(1535)		40	94
		(550)	(583)
▪ 발달장애인지원(309)		40	9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발달장애인지원 공적 전달체계 구축	-	-	-	100 (신규)	발달장애인지원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개소수/17개 시도 *100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구축 (설치 완료시 100, 설치 미완료시 0)	

⑥ 중증장애인 돌봄 지원체계 구축 (I-4⑥)

□ 추진배경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11.10)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0.5

- 인공호흡기 분리, 화재 등으로 인한 중증장애인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장애인 돌봄과 안전 확보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
-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구성원들과 동등하게 생활하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부각으로, 법률 제정 및 제도 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여 활동지원제도를 정비하고 발전시킬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중증장애인 상시 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활동지원급여 다양화
 -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수요 높은 주간활동서비스 시범사업 실시하는 등 활동지원급여 다양화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지역 및 대상 확대
 - 중증장애인 안전 확보를 위해 화재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IT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 가구를 소방서와 연계
 - * ('14년) 32개 지역 35백명 → ('15년) 77개 지역, 76백명 → ('16년) 약 100개 지역, 100백명
-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 제고
 - 활동보조인 신규교육 교재 개발, 보수교육 개선 연구 실시 등 교육 개선

- 가산수당 도입을 통해 최종증장애인-활동보조인 연계 활성화

○ **활동지원기관 평가체계 정비 등 사후관리 강화**

- 3개년에 걸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주기·주요 평가항목 등을 개선하는 평가체계 정비

-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국민연금공단에 부정수급 조사 및 활동지원기관 평가 업무 전담반 운영 및 복지부·연금공단 등 합동점검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활동지원기관 평가계획 공고	'16.2월	
	주간활동서비스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16.3월	
	복지부·지자체·국민연금공단 등 합동 현장점검	'16.3월	
	활동보조 가산수당 지급	'16.3월	
2/4분기	주간활동서비스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등 사전준비 및 진행	'16.4월~7월	
	활동보조인 신규교육 커리큘럼 개편 및 표준교재 보급	'16.5월	
3/4분기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지역 및 대상 확대 실시	'16.7월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개선 연구용역 착수	'16.8월	
	복지부·지자체·국민연금공단 등 합동 현장점검	'16.9월	
4/4분기	활동지원기관 평가 및 평가지표 개발	'16.4~10월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개선안 마련	'16.12월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6.12월	
	주간활동서비스 시범사업 결과분석 및 본사업 시행안 마련	'16.12월	

전략
목표
I

□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장애인선택적복지(I-2-일반재정⑤)			
① 장애인선택적복지(1535)	일반회계	4,679 (5,496)	5,009 (5,870)
▪ 장애인활동지원(304)		4,679	5,00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장애인활동지원 내실운영 기여도	<신규>	<신규>	<신규>		100%	장애인활동지원이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 회생활 참여에 기여했 음을 산출하기 위함 - 제공서비스 품질제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활동지 원이용률 및 자립기여율 등을 복합적으로 측정	활동보조인 보수교육율(30%) +활동보조 이용률(20%) +활동지원 하위법령 개정(20%) +활동지원 자립기여율(30%)	바우처 시스템, 지자체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16년 61천명)
- (이해관계집단)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활동지원기관 등

성과목표 I-5 사회보장제도 총괄, 조정 강화를 통한 효과적 사회안전망 구축

(1) 주요 내용

□ **사회보장제도 지원체계 강화**

- 민간위원 참여 강화 등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실질적 사회보장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 사회보장 재정추계 개편방안 마련 및 독자 추계모형 개발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지속가능성 제고 지원
- 사회보장통계 등 과학적이고 적시성 있는 사회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으로 사회보장 정책의 효과적 수립 지원
- 복지가이드북 발간 등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조정 추진을 통한 중복·누락·편중 없는 사회보장제도 설계 유도
- 유사·중복되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조정·연계 추진으로 복지재정의 효율적 배분, 중앙과 지방정부 간 효과적 역할 분담 추진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체계적 현황 관리 및 평가를 통해 예산절감, 제도운영의 효율화 달성 및 중장기적 사회보장정책 방향 마련

전략목표 I

□ **사회보장제도 평가**

- 사회보장제도 전체에 대한 기본평가 및 쟁점별 핵심평가 실시를 통한 평가과제별 현황·문제점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 (기본평가) 국가사회보장사업을 생애주기·기능별로 27개 사업군으로 분류, 공통지표 중심으로 연간 2~3개 사업군 평가
 - (핵심평가) 지표보다는 주요 사회적 이슈·관심도가 높은 과제 등에 대하여 쟁점 중심 수시 평가
- 다부처관련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평가·제도개선안 마련을 통해 복지정책 칸막이 제거 및 체감도 높은 사회보장제도 구축

성과목표 ·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사회보장제도 총괄, 조정 강화를 통한 효과적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보장(실무)위원회 개최건수
(관리과제) 사회보장제도 지원체계 강화	민간위원 제안 아젠다 건수, 사회보장통계 발굴건수
(관리과제)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조정 건수
(관리과제) 사회보장제도 평가	평가 결과의 위원회 상정 여부, 평가결과 부처 권고이행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사회보장(실무)위원회 개최 건수	신규	신규	신규	4회	'15년 실적 대비 1회 상향 * '15년 사회보장위원회 2회, 실무위원회 1회 등 총 3회 개최	사회보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건수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공문 및 결과보고서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기본 틀 구축 및 지속적인 사회보장 관련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 복지 체감도는 낮은 수준
 - 그간 마련한 맞춤형 복지 틀을 내실화하여 복지 확대에 상응하는 복지 체감도 증진을 위한 노력 필요
- 사회보장제도의 분절적이고 분산된 추진으로 유사·중복적인 사업 난립 및 복지 사각지대 발생 상존
 - 팽창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각 부처·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효과성을 점검할 필요
- 기존 평가제도는 개별사업 효율성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부처 연계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한계
 - 다부처 연계 사회보장제도에 특화된 평가체계 구축 필요

전략
목표
I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사회보장제도 지원체계 강화(I-5-①)

□ 추진배경 (목적)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기본 틀 구축 및 지속적 사회보장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
 - *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 ('12) 92.6조원 → ('16) 123조원
 - ** 우리나라 전반적 복지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62%가 낮다, 38%가 높다고 응답 (「복지인식 조사」, '15.10.28~11.3, 보사연)
- 분절적이고 분산된 추진체계로 인하여 유사·중복적인 사업 난립 및 복지 사각지대 발생 상존
-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통해 다원화된 복지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

< VIP 말씀요지 ('15.11.11,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 >

- 사회보장위원회는 중복과 누락을 통합·조정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긴 안목에서 사회보장체계를 점검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견인차
-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사회보장정책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이뤄나가는 복지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할 필요
- 또한,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통계관리 등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여건과 수준 등을 평가하여 과학적이고 적시성 있는 사회보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내실화) 실질적 사회보장 컨트롤타워 기능·역할 수행을 위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내실화 추진
 - 민간위원 제안 “국민생활 밀착형 아젠다” 연구 추진(1~12월)
 - * 사회보장위원회 상정 및 보고
 - 국민체감도 높은 아젠다 발굴을 위한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 실시(~8월)
 - 사회보장(실무)위원회, 각 전문위원회 및 전문위원장 간담회 개최를 통한 사회보장 관련 정책 조정·협의 추진(1~12월)
- (사회보장 재정추계)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보장 재정추계 개편 추진
 - 사회보장 재정추계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 개선 등 사회보장 재정추계 개편방안 마련(5월)
 - '17년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한 독자 추계모형 개발(4~12월)
- (사회보장 통계관리) 사회보장정책 수행 기관(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 통계를 수집하여 사회보장통계 DB구축 및 연보 발간
 - 통계 운용지침 통보('15.12월) → 통계목록 및 통계 수집('16.2월) → 통계 구축 및 관리(5~11월) → 통계 종합하여 위원회 제출 및 연보* 발간(12월)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 (복지가이드북 발간) 사회보장 관련 정보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16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발간(2월)

전략 목표 I

- 가이드북 e-book 발간 및 시각장애인용 음성파일 배포(4월)
- 2017년 복지가이드북 발간계획 수립 및 관련 설문조사·의견수렴 실시(10월)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6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발간	'16.2월	
	사회보장통계 목록 및 통계 수집	'16.2월	
	사회보장(실무)위원회 개최	'16.2~12월	
	2016년 민간위원 제안 아젠다 연구 추진	'16.2월~12월	
2/4분기	기획전문위원회 및 재정·통계 전문위원회 개최	'16.4~6월	
	복지가이드북 e-book 발간 및 시각장애인용 음성파일 배포	'16.4월	
3/4분기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개편 방안 마련	'16.5월	
	기획전문위원회 및 재정·통계 전문위원회 개최	'16.7~9월	
4/4분기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 실시	'16.8월	
	'17년 복지가이드북 발간계획 수립,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 실시	'16.10월	
	사회보장 재정추계 모델 개발 완료	'16.12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연보 발간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일반 국민
-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지자체 등

□ 기대효과

- 민간위원의 안건 기획·작성 과정 참여 등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 국민 정책체감도 제고 및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 **사회보장 재정추계 기반강화**를 통해 **추계결과 내실화** 및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설계 지원**
- **사회보장 통계자료 제공**을 통한 **국민 관심 및 접근성 제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정책체감도 향상에 기여**
- 복지가이드북 등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사회복지사업지원(I-6-재정①)			
① 사회복지사업지원(2631)	일반회계	11 (150)	16 (174)
▪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304)		11	1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민간위원 제안 아젠다 건수	신규	신규	신규	4	○ 민간위원 제안 '국민생활 밀착형 아젠다' 보고서 분기별 1건 작성 목표	민간위원 제안 아젠다 건수	민간위원 제안 아젠다 보고서
사회보장통계 발굴 건수	신규	227	245	252	○ '15년 실적(245건, 11개분야*) 대비 3% 상향 설정 * 11개분야 : 가족, 보육 및 교육,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건강, 주거, 문화, 에너지, 환경, 노인·장애인, 사회재정	사회보장통계 연보자료에 게재된 통계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연보

②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I-5-②)**

□ **추진배경 (목적)**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을 목표로 하는 개정 「**사회보장 기본법**」 시행('13.1.27)에 따라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통합관리 및 조정·연계 요구 증대**
 - 중앙·지자체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 의무화 및 현행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조정·연계를 통해 **사업간 중복·누락 방지 및 사업의 운용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추진**
 - 2016년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 개정
 -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내실화 및 이행력 강화 방안 마련 (TF 구성·운영, 예산편성 지침 개정 등)
 - 지자체 담당자 대상 지침 교육, 컨설팅 및 사이버 교육 강의
 - 「신설·변경 협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의체 확대 개편 등 협의·조정 체계 개선
- **유사·중복되는 현행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조정·연계 추진**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 과제 적극 발굴
 - 사업 분석·검토 및 조정안 마련하고 국조실과 협업하여 조정·연계 추진

○ 중앙부처·지자체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체계적 현황 관리 및 평가

- 주기적 현행화를 통한 사회보장사업 현황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 「신설·변경 협의결과에 대한 분석 및 이력 관리 DB 구축을 통해 다양한 정보제공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2016년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 개정	'16.1월	
	중앙부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현행화	'16.1~3월	
	협의제도 내실화 및 이행력 강화를 위한 TF 구성·운영	'16.2~4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담당자 대상 지침교육 및 컨설팅	'16.2~4월	
	중앙부처 신설변경 사전협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지침 개정	'16.3~4월	
2/4분기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의체 확대 개편	'16.4~5월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현행화	'16.4~6월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관련 정보화 지원방안 연구 추진	'16.4~10월	
	지자체 공무원 대상 '사이버교육' 강의 제작·운영	'16.5~12월	
3/4분기	신설·변경 협의제도 관련 DB 구축	'16.7~12월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검토 협의체 운영	'16.7~12월	
4/4분기	신설·변경 사업 협의·조정 결과 등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16.10~12월	
	2017년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 개정안 마련	'16.12월	

전략
목표
I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일반 국민, 사업 급여 및 서비스 수혜자
-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및 지자체 담당

□ 기대효과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설계 단계부터 중복·누락·편중이 없는 사회보장제도 설계 유도 기대
- 중앙 및 지자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적 배분, 중앙과 지방정부 간 효과적 역할 분담 가능
-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로 예산절감, 제도운영의 효율화 달성 및 중장기적 사회보장정책 방향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사회복지사업지원(1-6-재정①)			
① 사회복지사업지원(2631)	일반회계	11 (150)	16 (174)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304)		11	1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조정 건수	-	-	361	400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매년 협의조정 건수가 증가 추세('13년 61건, '14년 81건, '15년 361건)이나, 최근 제도가 정착되는 시점임을 감안하여 '15년 실적(361건) 대비 10% 증가할 것을 목표로 설정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을 협의·조정한 건수	내부 문서

③ 사회보장제도 평가(I-5-③)

□ 추진배경 (목적)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한 기본 틀 구축 및 지속적인 사회보장 관련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체감도는 낮은 수준
 - 기존 사회복지사업의 효과성·제도간 연계 여부 등 전반적인 점검 필요
 - * 신규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유사·중복 방지를 위한 신설·변경 협의제도 추진 중('13~)
- 사업별·기관별 평가 위주의 기존 평가로는 다부처 관련 사회보장제도 평가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군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제도 필요

전략
목표
I

< 사회보장 평가·환류 관련 대통령 말씀 >

- “10:90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주시기 바람. 10% 정도를 정책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았다면, 90%는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데 노력을 쏟아야 된다는 것임” ('15.11.11,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 “많은 복지제도들을 도입했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하나 내실 있게 현장에서 잘 작동이 되고 있는가, 또 미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보완책 같은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거의 정책 만드는 데의 9배 정도를 내실을 기하는 데 써서 어떻게 평가를 하며 또 환류 되는 문제들을 점검하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됨” ('15.11.11,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13.1)*으로 사회보장제도 평가 근거 마련

-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2항제3호(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 「사회보장제도 평가 계획*」 수립,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의결('16.2월)
 - * 생애주기·기능별 기준에 따른 평가대상 사업군 분류 및 사업군 공통지표 개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주요내용) 사회보장제도 전체에 대한 기본평가 및 쟁점별 핵심평가 실시, 평가과제별 현황·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16.3~11월)
 - (기본평가) 국가사회보장사업*을 생애주기·기능별 기준에 따라 27개 사업군으로 분류, 공통지표 중심으로 연간 2~3개 사업군 평가
 - * 국가사회보장사업 및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 검토를 통해 대상사업 335종 선정

< 기본평가 대상사업('15년 기준) >

기능	정책목표	사업수	기관수	기능	정책목표	사업수	기관수
교육 (34)	초중고생 교육비지원	15	5	주거 (29)	주거비지원	9	4
	대학생 학비지원	8	3		주택개량지원	11	6
	성인평생학습지원	11	3		공공임대주택공급	9	2
돌봄 (73)	영유아 보육지원	13	3	고용 복지 (56)	여성	13	3
	아동돌봄지원	10	3		저소득층	9	5
	아동·청소년보호	29	3		중장년·노인	14	4
	성인돌봄지원	8	1		장애인	14	3
건강 의료 (71)	성인안전·보호	13	4	생활 지원 (41)	청년	6	2
	아동 건강지원	14	4		자립생활지원	11	5
	노인 건강지원	5	1		가족·지역복지서비스	11	4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27	3		문화·여가활동지원	14	5
생계 (31)	질환예방·치료지원	25	1	계	재해 및 기타피해 보호	5	5
	기초생활보장	9	2		7개 기능, 27개 사업군	335	18
	노인·장애인 생계지원	7	4				
	기타 생계지원	1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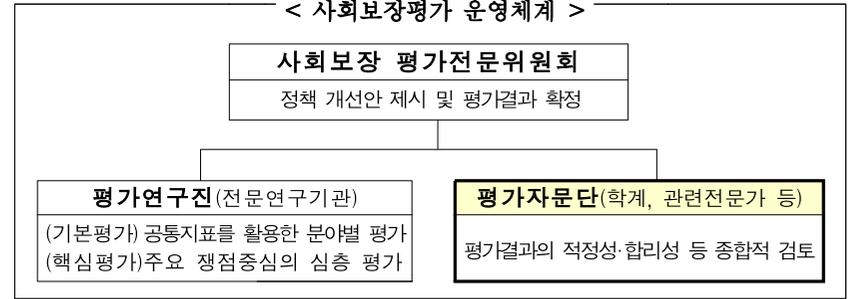
- ① (평가주기)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주기(5년)에 맞춰 사업군별로 평가
 - '16년 평가대상으로 건강의료(노인건강), 고용복지 사업군 선정
- ② (평가방법) 사업단계별 공통지표에 따라 성과 중심으로 평가
 - (설계) 사업군별·사업별 대상자 선정기준의 적절성, 사업간 관계 검토

- (투입·집행) 사업예산의 적절성, 지속가능성, 자원투입의 충분성 분석
- (산출) 수급률, 급여·서비스의 충분성 검토
- (성과) 전체 사업군 및 개별 사업군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사업군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선정, 성과가 부진한 사업군에 대한 원인 분석
- **(핵심평가)** 지표보다는 주요 사회적 이슈·관심도가 높은 과제 등에 대하여 쟁점 중심 수시 평가
- '16년 평가과제로 「아동·청소년·여성 및 가족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선정, 서비스 제공현황·지역별 분포·기능의 조정 및 연계 가능성 등 검토

○ (추진체계)

- (사회보장평가전문위원회) 평가과제 발굴 및 평가결과 확정, 사업 조정(사업간 연계 및 조정, 통폐합 등)·제도 재설계 방안 마련
- (평가연구진) 평가과제별로 연구용역 방식으로 평가 수행·제도 개선방안 제시
- (외부 평가자문단) 평가연구진의 평가내용·평가결과에 대한 종합 검증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합리성 등 확보
- 평가대상 과제별로 소관부처로부터 추천받은 학계·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 총 15~20인으로 구성, 자문회의 개최 추진

전략
목표
I



- **(의견수렴·갈등조정)** 관련부처·전문가·이해관계자 대상으로 회의 개최, 사회보장사업 현장방문 실시를 통해 문제점 및 제도개선 의견수렴(연중)
 - 평가 착수 단계에서부터 세부 평가방향 및 평가내용에 대한 소관부처 실무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갈등 발생 완화 추진
 - 평가 추진과정에서 현장방문 및 종사자 의견수렴 실시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 2016년 사회보장제도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과제 선정	'16.1월
	• 「아동·청소년·여성·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핵심평가 연구용역	'16.3월~8월
2/4분기	• 사회보장제도 노인건강분야 사업군 기본평가 연구용역	'16.4월~9월
	• 사회보장제도 고용복지분야 사업군 기본평가 연구용역	'16.5월~11월
	• 제6차 평가전문위원회 개최 및 평가 추진상황 중간점검	'16.6월
3/4분기	• 「아동·청소년·여성·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제도개선안 마련,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16.9월
	• 노인건강 사업군 제도개선안 마련,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16.10월
4/4분기	• 고용복지 사업군 제도개선안 마련,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16.11월
	• 제7차 평가전문위원회 개최	'16.11월
	• 2017년 사회보장제도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과제 선정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복지사업 및 서비스 이용자, 효율적 업무수행으로 인해 편의성 제고될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등
- (이해관계집단) 평가대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설치·운영자, 사회복지 관련 단체·협회 등

□ 기대효과

- 다부처관련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평가·제도개선안 마련을 통해 복지정책 칸막이 제거 및 체감도 높은 사회보장제도 구축
- 부처간·사업간 유사·중복, 누락, 편중 등 사회보장제도 비효율 해소 및 사업의 효과성·지속가능성 제고
- 복지사업·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복지제도 소외계층 발굴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사회보장제도 재설계 및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시 반영

*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3) 수립 시 활용 추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사회복지사업지원(1-6-재정①)			
① 사회복지사업지원(2631)	일반회계	11 (150)	16 (174)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304)		11	1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평가결과 의 위원회 상정여부	신규	신규	신규	2건	'16년 평가과제 2건의 평가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 상정 시에 만점을 부여	사회보장위원회 안건 상정 건수	사회보장위원회 내부 문서
평가결과 부처 권고 이행률	신규	신규	신규	50%	평가대상 부처의 협조 여부에 따라 달성 여부가 결정되는 지표로서,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평가결과 부처 권고 건수 대비 각 소관 부처의 이행계획(월단위) 제시건수가 50%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	평가결과 부처 이행계획 제시 건수 / 평가결과 부처 권고 건수 x 100	사회보장위원회 내부 문서

전략
목표
I

기본 방향

◇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료체계 구축

-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맞춰 다양한 원격의료 모델 개발·적용 및 부처간 협업 추진, 건강보험 수가개발 및 시범적용 등을 통한 원격의료 활성화 기반 마련 필요
- 병원간 분산된 진료정보 활용과 분절된 의료서비스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쇼핑 및 대형병원 쏠림 방지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요
- 신의료기술평가 평가기간 단축,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확대에 따른 환자의 보건의료서비스 혜택 강화
-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 등 수련환경 개선 및 효율적이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인력 양성·역할체계 개선
-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사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활용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공정한 품질 경쟁 유도

◇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질 제고

-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적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축소개편 추진
- 의료사고 피해구제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 및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국민·의료계의 기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유도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추진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추진 및 보험급여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적정성 평가, 보험 약품비 적정관리 등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국민의 건강생활 보장

- 담배규제 강화, 구강보건 인프라 확충, 건강식생활정책 강화 및 보건소의 건강증진 사업 허브화 등을 통해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증가하는 정신질환, 자살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정신보건사업 강화 및 마약, 알코올 등 중독폐해 감소를 위한 종합관리대책 구축 및 지원 강화
- 만성질환 증가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모형' 제시 및 시범사업 추진

◇ 질병관리 강화 및 필수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국민을 건강 위험 요소에서 보호

- **암환자·결핵환자**를 신속하게 발견·치료하여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중증심혈관질환** 신속 치료로 사망·후유장애 등 질병부담 경감
- 공공의료 패러다임을 국·공립병원이 제공하는 '소유' 중심에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의료 **인프라 확대**
-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에 응급의료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중증의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 바이오헬스 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을 수출·첨단기술산업으로 적극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
- 정밀의료, 줄기세포·재생의료, 신약개발 등 전략적 보건의료 R&D 강화 및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산업발전 기반 마련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6	7	31	55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I-1. 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제도개선 등 정책 추진율
① 원격의료 확산 및 활성화 추진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수 원격의료서비스 만족도
②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에 등록된 거점 의료기관 수 2016년 보건의료용어표준 신규 개발건수
③ 미래 환경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 추진율 간호인력 개편 법령 개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추진율
④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추진율
⑤ 의약품 유통 구조 선진화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건수) 의약품 유통정보 만족도 평가지수

전략목표 II

		의약품 의료기기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건수)
	⑥ 의료질평가 체계구축 및 확산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개선(고시 건수)
	⑦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	조정중재 개시건수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실적 이용고객만족도
	⑧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추진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 여부
II-2.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제도개선 및 보장성강화 추진율
	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절차 진행률
	②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공 기관수
	③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및 보험급여 제도 개선	연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율 연간 건강보험급여 제도 개선 추진율
	④ 보험약품비의 적정관리 및 약가제도 개선	약품비적정유지율 약가제도 개선 추진율
	⑤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정확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 수
II-3. 질병관리체계 강화 및 필수 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건강안전망 강화		암환자생존율 심장지생존율
	① 체계적인 국가암관리 정책 구현	국민암검진 수검률
	② 국가예방접종 지속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영유아 완전접종률
	③ 균형잡힌 공공의료 제공체계 구축	전체 가임인구 대비 분만 취약 가임인구 비율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평가 평균점수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평가 평균 점수

	④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 충족률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II-4.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국민건강증진 체감도
	① 흡연 예방 및 담배 규제 강화를 통한 흡연을 감소	중고등학교 흡연율 담배반출량
	② 정신건강증진체계 강화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시군구 자살예방 조례 제정 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서비스 효과율
	③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성과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서비스 만족도
	④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	서비스만족도 교육 참여율
	⑤ 건강한 구강보건 인프라 환경 조성	구강보건사업 만족도
II-5.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보건산업 육성 추진성과 달성률
	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외국인환자 유치 수(만명)
	② 한국의료의 글로벌 진출 강화	의료기관 진출 수
	③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인증기업의 R&D 비율 제약산업 수출액 증가율
	④ 전략적 보건의료(HT) R&D 강화	보건의료 연구개발 성과율
	⑤ 효율적 인체자원 관리	인체자원 관리 제도개선(공통) 뇌사장기기증자 수(공통)
	⑥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추진	보건산업 종합발전 전략 수립·운영 연구중심병원 연구비 비중
	⑦ 아시아·미주 보건의료서비스시장 진출 지원	정부간 협력을 통한 민·관합동성과 창출
II-6. 한의약 산업육성과 세계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지수
	① 한의약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내외 한의약 교류지수 한방해외의료봉사 진료 수
	②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논문실적지수 한의약해외환자유치수

전략목표 II

성과목표 II-1

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1) 주요 내용

□ 원격의료 확산 및 활성화 추진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국민 편의증진 및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필요성 대두
- 원격의료 확산을 통한 취약지 의료접근성을 향상하고 만성 질환에 대한 상시적·효과적 관리로 고령사회 대비 강화

□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 병원간 분산된 진료정보 활용과 이로 인한 분절된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과 더불어 국민 건강증진의 저해요소
- 의료서비스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쇼핑 및 대형병원 쏠림 등 지역사회 일차의료기능 약화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요

□ 미래 환경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

- 의료인의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면허취소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 간호인력간 업무구분 명확화 및 간호인력 질 향상을 위한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관리를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 새로운 의료행위 중 안전성을 갖춘 경우에는 더욱 빨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실시

□ 의약품 유통 구조 선진화

-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사용 및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필요

□ 의료질평가 체계구축 및 확산

-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적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축소개편 추진
- 선택진료제도 축소에 따른 손실 보상 방안으로 의료의 질을 평가하여 기관별 차등 보상을 위한 의료질평가지원금 도입(15.9월, 1,000억원)

□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시행

- 의료사고 피해구제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보건 의료 환경을 조성
-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국민·의료계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 필요

□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추진

- 병원 내 감염을 통한 메르스 확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C형 간염 확산 등 환자안전 사고 발생 등에 따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의 필요성 대두

-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최근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함께 급증 중이며, 입원환자가 감염 및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특별한 관리 필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제도개선 등 정책 추진율(%)	100	100	100	100	각 관리과제별 추진목표 100% 달성	당해 성과목표(II-1) 내 각 관리과제 목표 달성률의 합계/관리과제 수	각 성과지표별 추진 실적

전략
목표
표 II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원격의료 확산 및 활성화 추진(II-1-①)

□ 추진배경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국민 편의증진 및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필요성 대두
- 원격의료 확산을 통해 취약지 의료접근성을 향상하고 만성 질환에 대한 상시적·효과적 관리로 고령사회 대비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1) 국민체감형 원격의료 확산

-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
 - (도서벽지) 도서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지역 확대(11개소→20개소)(‘16.5월~)
 - (농어촌) 대도시 거점병원과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 간 응급원격협진 확대(30개소→70개소)(‘16.하)
 - (특수지) 격오지 군부대(40→63개소), 원양선박(6척→20척), 교정시설(30→32개소) 원격의료 확산으로 특수지 의료복지 실현(‘16.하)
- 국민생활 중심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근로자, 만성질환자, 농촌 창조마을 거주 노인대상 건강·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제공

2) ICT 기반 미래보건의료 정책로드맵 마련

- 원격의료 등 ICT 기반 미래 보건의료 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정책 추진기반 강화

* 학계, 의료계, 산업계, 언론계, 공공기관 등 “보건의료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 병행

전략
목표
II

3) 이해관계자 설득 및 원격의료 우수사례 등 대국민 홍보 추진

- 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합의 노력 강화
- 원격의료 우수사례 대국민 홍보 추진으로 국민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 등 입법 추진 분위기 조성 지원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범부처 원격의료 추진 TF 회의 개최	'16.2월	
	'16년 범부처 원격의료 확산 세부 실행계획 수립	'16.3월	
2/4분기	미래보건의료 포럼 개최	'16.5월	
	ICT 기반 미래 보건의료발전방안 연구용역 착수	'16.5월	
	원양선박 대상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	'16.5월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확대	'16.6월~	
	중소기업 근로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16.6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마련	'16.6월	
3/4분기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16.7월	
	격오지 군부대 원격의료 확대	'16.8월	
	농촌 창조마을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16.9월	
	교정시설 원격의료 확대	'16.9월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16.8~9월	
	의뢰-회송 연계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	'16.9월	
4/4분기	ICT 기반 미래 보건의료발전방안 연구용역 완료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일반국민
- (이해관계집단) 의료관련 단체(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기기 및 의료IT관련 업체 등

□ 기대효과

-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고혈압·당뇨 등 만성 질환자의 상시적 건강관리 등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도모
- 의료기기·정보통신기술 등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촉진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보건산업육성지원(II-3-일반재정①)			
① 보건산업육성지원(3033)	국민건강 증진기금	3.5	10.55
▪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3033-301)		3.5	10.5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수(개소)	148				278	원격의료 모델 다양화 및 확산을 통하여 원격의료 도입 추진 기반 마련 필요 - 15년 148개소 → '16년 278개소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벽지 (11~20개소) · 농어촌 응급협진(30~70개소) · 노인요양시설-만성질환 등 (21→ 58개소 이상) · 군부대(50~63개소) · 원양선박(6~20척) · 교정시설(30~32개소) · 농촌 창조마을(0~10개 마을) · 중소기업 근로자(0~5개소) </div>	법부처*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수 측정 * 복지부, 미래부, 국방부, 농림부, 해수부, 법무부, 고용부	보고서, 보도자료 등
원격의료 서비스 만족도(%)	77				80	원격의료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모델을 보완, 서비스 만족도 향상 추진 필요 - 16년 목표치는 '15년도 실적치 (77%) 대비 5% 상향하여 정함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 보도자료 등

② 진료정보교류 활성화(II-1-②)

□ 추진배경

- 병원간 분산된 진료정보 활용과 이로 인한 분절된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과 더불어 국민 건강증진의 저해 요소
 - * '11년 중복약물처방으로 260억 낭비(심평원, '13년), CT·MRI 등 중복촬영으로 연간 176억원 낭비(국회 김재원 의원, '14년)
- 의료서비스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쇼핑 및 대형병원 쏠림 등 지역사회 일차의료기능 약화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요
 - * '진료정보 표준화 및 의료기관간 정보시스템 공유체계' 차질 없이 추진 (VIP 지시사항, '15.12)

전략
목표
표 II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진료정보교류 확산)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시범사업을 연계·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 대상 시범사업 확대 추진
 - (시스템 구축) 의료기관간에 환자 진료기록·영상정보 등을 전달하는 전자적 의뢰·회송체계 구축(~'16.6월)
 - (시범사업 확대) 진료의뢰가 빈번한 거점 의료기관-협력병의원* 참여 확대 및 거점-거점(지역)간 정보교류확대 실시 ('16.6월~)
 - * (기존) 서울대분당-성남지역병의원, 근로복지공단병원-산재협력병원, 경북대병원-대구지역병의원 → (확대) 세브란스병원 및 협력 병의원 추가참여
 - ☞ 진료정보교류 확산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거점 및 협력병의원 지속·확대
 - (시범수가) 진료의뢰·회송 내실화 및 활성화 위한 적정 기준 및 보상체계 마련 위하여 진료협력병원 간 의뢰·회송 수가 시범 적용

○ (정보표준화) 표준에 기반한 의료정보의 생산·교류가 가능하도록 의료용어·서식 등 표준 개발 및 품질 관리 ('16년~)

* ('14.9월, 최초고시) 9개분야 용어 185,816건, 진료용그림 340건 → ('15.12월 개정) 9개 분야 용어 230,584건, 진료용그림 540건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진료정보교류 확산전략 및 계획수립	'16.1월	
	보건의료정보표준화 추진계획 수립	'16.1월	
	현장·학계·업계 참여 협의체 구성·운영	'16.3월	
2/4분기	거점병원 확대 및 지역간 교류 준비(시스템 구현 및 협력의원 선정 등)	'16.4월	
	진료 의뢰·회송 시범수가 적용	'16.6월	
	현장·학계·업계 참여 협의체 운영	'16.6월	
3/4분기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시행(서울~경기)	'16.7월	
	보건의료용어표준 확대 개발	'16.7월	
	현장·학계·업계 참여 협의체 운영	'16.9월	
4/4분기	진료정보교류 성과 등 세미나 개최	'16.12월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	'16.12월	
	현장·학계·업계 참여 협의체 운영	'16.12월	
	진료 의뢰·회송수가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	'16.12월	

전략
목표
표 II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국민) 진료정보교류로 의료비 절감, 환자진료정보에 대한 열람 및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자기주도형 건강관리 주도 가능
- (의료인/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로 질병진단 및 치료를 위한 기초정보 활용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 성장 유도, 의료인 전문성 향상 도모 등

□ 기대효과

- 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대기시간 감소, 진료절차 간소화) 향상
- 지속가능한 개인주도형 건강관리 기반 마련
- 중복검사(투약, 처방 등) 방지를 통한 진료비 절감, 의료 질 향상 및 국민 의료비 감소
-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진료정보교류사업의 전국적인 통합관리와 지속적 확산을 위한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정보화 거점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5	'16
보건산업육성지원 (II-3-일반재정①)			
① 보건산업육성 지원(3033)	기금	9.46	10.99
•의료-IT 융합산업육성 인프라 구축(300)	기금	9.46	10.99
보건의료정보표준화 (III-10-일반재정⑦)			
① 보건의료정보표준화(4348)	일반회계	5.07	4.82
•국가보건의료표준화(300)	일반회계	5.07	4.8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진료정보교류 참여 거점 의료기관 수			3개소	'16년도 국가단위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거점 의료기관수	진료정보교류시스템에 등록된 거점 의료기관 수	진료정보교류시스템 등록정보 조회
2016년 보건의료용어 준 신규개발건수			50000	'15년 보건의료용어표준 신규 개발건수(약44천건) 대비 약 10% 이상 상향 설정	2016년 보건의료용어표준 신규개발건수	자체 측정

③ 미래 환경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Ⅱ-1-③)

□ 추진배경 (목적)

- 최근 일부 의료인의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인한 집단감염 발생 사건 등을 계기로 의료인의 면허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면허취소 등 제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필요
 -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을 개선하고, 보수교육 이수율 강화하여 환자안전, 감염관리 등 대응을 강화할 필요
- 간호인력간 업무구분 명확화 및 간호조무사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의료법」 개정('15.12.29 공포, '17.1.1 시행)
 - 의료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인력 양성·역할체계 개선
-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이로 인한 의료인력 공백이 없도록 조치 필요
 -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통해 입원환자 안전문제 대응, 진료 질 향상이 가능하도록 세부 시행계획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 강화 >

-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일회용 주사용품 재사용,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이상의 형 선고,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 면허취소 사유 신설(의료법 개정 추진)

- 그 외 비도덕적 진료행위 범위를 구체화하고, 환자에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하여 처분기준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세분화(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가 계속될 경우 국민보건 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의료법 개정 추진)
-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장기요양등급자 등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의료인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 전문적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운영
 - 현행 중앙회 윤리위원회 활용하되, 외부인사 참여 강화, 복지부와 공동조사 등을 통한 공정성 확보
- 의료인 중앙회 및 지역 의사회, 보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비도덕적 진료행위 발굴 상시화

<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효과성 제고 >

- 의료인 면허신고 요건 강화
 - 3년마다 면허신고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신고 의무화
 - * 의료인은 보수교육(매년 8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
 - 의료인 상호간 견제와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동료평가제도' 시범 도입(의료계와 동료평가 도입방안 협의 마련)

○ 보수교육 내실화

- 의료법령, 의료윤리,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에 관한 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의무화
- 신분증 본인대조, 서명기입 의무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하고, 바코드 시스템 도입 등 자동 출결시스템 운영 확대
- 복지부 내에 '보수교육평가단'을 설치하여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의 적절성 평가 강화

< 간호인력 개편 >

○ 의료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추진

-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교육시간, 강사자격 등 **교육과정 표준화** 및 실습이수, 출결상황 확인 등 **평가기준 마련**하고,
- 교육과정, 실습교육 등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춘 **평가수행기관 지정 방안** 마련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 전공의법 하위법령 제정

- 이해관계자 및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전공의법 하위법령 제정TF' 구성 및 운영
- 전공의법 하위법령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련환경 평가**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운영방안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전공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 진행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 완료

전략
목표
II

○ 전공의 교육과정 개선

-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 및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개정
- 전문과목에 대한 전문역량 정의, **수련 프로그램 개정방안** 마련 및 **평가도구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 >

○ 시범사업 모형 개발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전문과목 자격** 및 **업무·역할** 논의 및 입원전담전문의 배치모형 검토
-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적용가능한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 보상체계** 관련 사항 검토
- **의료인력 활용 효율성**, 환자 **만족도**, **의료의 질** 개선, **비용** 편익 분석 등 시범사업 **평가지표** 및 **방법** 검토

○ 시범사업 진행

- 의협, 병협, 내과 및 외과학회 등 전문가 단체와 함께 (**가칭**)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
-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병원 규모별로 개발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모형** 적용
- 환자, 전공의, 의료기관, 입원전담전문의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만족도, 의료 질 개선 정도**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전공의법 하위법령 제정 TF' 구성	'16.3월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16.3월	
	장기요양등급자 등 실태조사 실시	'16.3월	
	전공의법 하위법령 연구용역 실시	'16.2~7월	
2/4분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 TF 구성	'16.3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용역 실시	'16.4~9월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개정	'16.6월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 추진(입법예고)	'16.5월	
	전문과목 전문역량 개발 관련 연구용역 실시	'16.4~11월	
3/4분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모형 개발	'16.3~5월	
	동료평가제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의료계 협의	'16.6월	
	의료법 하위법령(간호인력 개편 관련) 입법예고	'16.7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실시	'16.8~11월	
4/4분기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안 시행	'16.9월	
	보수교육평가단 설치·운영	'16.9월	
	입원전담전문의 본 사업 추진계획 마련	'16.12월	
	의료법 하위법령(간호인력 개편 관련) 개정	'16.12월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16.12월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운영	'16.12월	
	전공의법 하위법령 제정·공포	'16.12월	

전략
목표
II

- 의료계 내에서 스스로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발굴하여 징계하는 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적 자정노력 강화**

○ 간호인력간 업무범위 명확화, 간호조무사에 대한 질 관리 등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환자 안전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 개선**

○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통해 **입원환자 치료·관리 관련 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관리 강화** 효과

- 전공의 수 감소 및 수련시간 제한 등 제도변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의료기관의 **인력공백 문제**에 대해 **선제적 대응** 가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5	'16
의료인력 양성(III-10-일반재정①)			
① 의료인력 양성(4331)	일반회계	81 (159)	85 (181)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300)		81	85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전공의, 일반 국민, 환자 및 보호자, 의료기관
- (이해관계집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계, 간호계, 병협, 의협, 건강보험공단, 환자단체 등

□ 기대효과

-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 추진율			신규	100%	제도 개선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법령 개정여부, 의료계와 협의 등을 성과지표로 제시	①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여부(50%) ② 구체적 개선안 마련을 위한 의료계 간담회 실시(30%) ③ 보수교육 평가단 운영(20%)	정책보고서, 법령 개 정안 등 각 항목별 증 빙자료
간호인력 개편		100		100%	간호인력 개편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을 연내 개정 필요	①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여부(100%)	행정예고, 판보 등 각 항목별 증빙자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추진율(%)			신규	100%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교육 요건 강화를 위해 전공의법 하위법령 제정 및 임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등 연내 추진 필요	①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 과목 개정(40%) ② 전공의법 하위법령 제정 완료 (30%) ③ 시범사업 참여 임원전담 전문의 수 (30%) : 20명 이상	정책보고서 등 각 항목별 증빙자료

전략
목표
II

④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II-1-④)

□ 추진배경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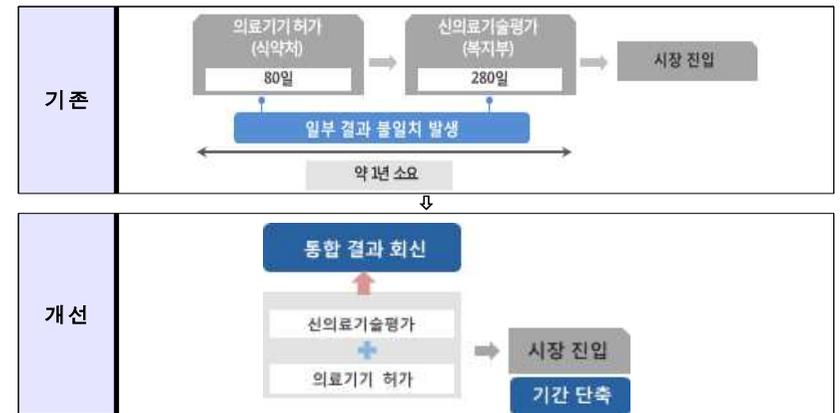
- 의료기기(연간 12,600건) 중 일부(245건)는 신의료행위에 사용되어
시장진입을 위해 의료기기 허가 후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필요
 - 의료기기 업체는 시장진입까지 장기간(1년) 소요로 인한 판매
지연과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 불일치 등 불만 제기
-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1.6)에서 그간 불만사항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방안 발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 운영 >

-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기기 허가의 연관성이 높은
경우, 통합 운영을 통해 동시에 검토하고 양자의 검토결과를
일치하여 하나의 결과를 3~9개월 빨리 회신

< 제도개선 전후 비교 >



-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 운영 시범사업 실시
 - (대상)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의 연관성이 높은 경우*는 시범사업 대상으로 포함
 - * ① 의료기기와 의료기술의 사용목적이 동일한 경우, ②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자료 심사 대상 등
 - (기간) 140일 이내에 평가·허가 통합 검토절차 완료하여, 기존의 소요기간 총 1년보다 기간 대폭 단축
 - (절차) 업체가 식약처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면 허가와 평가를 동시에 실시하고, 식약처가 조율된 '하나의 결과' 회신
 - (상호 협조) 복지부는 식약처에 의료기술 검토자료를 제공하고, 식약처는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의료기기 검토의견 설명
 - 복지부·식약처 공동 T/F 논의를 통한 시범사업 모형 마련, 관련 단체 등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민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시범사업 차질 없도록 준비

< 상호 협조사항 >

식약처 → 복지부(보의연)	복지부(보의연) → 식약처
평가위원회에 식약처 담당자가 참석 의료기기 검토의견을 설명(참고사항)	식약처가 임상시험 계획 승인시 보의연이 공동 참여, 의견 제공(7월)
식약처가 인정한 임상시험 자료는 신의료기술평가시 검토에 활용	신의료기술평가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토자료 제공

- 통합 운영 본사업 실시
 -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통합운영 대상, 절차 등의 본사업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법령 개정 추진(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등)

- 통합운영 관련 추가 제도개선을 통해 업체의 근거창출을 지원 하는 한편, 임상시험 등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개선
 - 통합운영 결과 탈락하는 사례는 ▲'조건부 기술'로 일정기간 우선 시술 허용하는 방안 등 검토
 - 업체가 하나의 임상시험 자료를 허가, 평가에 모두 활용하여 비용 절감(건당 4~10억원)이 가능하도록 ▲식약처 임상시험 계획 승인시 신의료기술평가 전문가 자문 실시, ▲의료기기법령상 인정되는 임상시험 자료는 신의료기술평가시 검토에 활용 추진

< 검사분야 평가 제외대상 확대 >

- (주요내용) 체외진단검사, 유전자검사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고려, 평가대상 최소화 추진
- 식약처 등 관계기관, 의료 전문가,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논의를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제외 범위 도출
 - 검사의 핵심원리, 방법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어 의료행위적으로 꼭 검증이 필요한 것만 평가하도록 개선(신의료기술평가 심의기준 (예규) 개정)

< 신의료기술평가 기간 단축 >

- 체외진단검사, 유전자검사는 평가기간을 280일→140일로 단축 하여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촉진
 - 검사분야는 검토의 유형화가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됨을 종합적으로 고려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통합운영 시범사업 방안 협의	'16.1~2월	
	통합운영 시범사업 실시	'16.2월	
2/4분기	검사분야 평가 제외대상 확대 실시	'16.6월	
	검사분야 평가기간 단축	'16.6월	
3/4분기	통합운영 본사업 실시	'16.7월	
	임상시험 계획 승인시 자문 실시	'16.7월	
	임상시험 자료를 신의료기술평가시 활용	'16.7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일반 국민, 의료기기 업체, 의료기관 등
- (이해관계집단) 의료기기 업체 등

□ 기대효과

- 통합운영을 통해 복지부·식약처 **통합검토만 받으면 바로 시장 진입**이 가능하여 **총 소요기간 3~9개월 단축**
 - 단순 동시진행이 아닌, 동일한 제품에 대한 **정부의 평가결과를 일치시켜** 결과의 신뢰도 제고 및 **업체의 불만 해소**
- **검사분야**는 기존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만 시장진입이 가능했던 대상 중 **절반 이상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 허가만 받으면 평가 없이 기존기술로 **즉시 시장진입** 가능토록 개선
- **검사분야**는 평가기간을 280일→**140일로 추가 단축**
- 경쟁력 있는 의료기술을 보유한 **업체의 근거창출을 지원**하고, **임상시험 등 비용 절감**을 유도하여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전략
목표
II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보건의료기술 평가연구(III-10-일반재정⑤)			
① 보건의료기술 평가연구(4339)	일반회계	118 (118)	106 (10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추진율		100	100%	주요 제도개선사항의 실시 여부를 성과지표로 제시	① 통합운영 실시 여부 (40%) ② 검사분야 평가 제외대상 확대 여부 (30%) ③ 검사분야 평가기간 단축을 위한 법령 개정 여부(30%)	법령 개정안, 관련 공문 등 각 항목별 증빙자료

⑤ 의약품 유통 구조 선진화(II-1-⑤)

□ 추진배경

-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사용 및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필요
 - 의약품·의료기기 안전 사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활용 및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한 품질 경쟁 유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의약품·의료기기 안전 사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활용

- 의약품 처방·조제시 **정보확인 의무화**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 *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한 정보제공 지속 확대
- 위조약품 및 의약품 오투약 방지를 위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본격 시행** 및 정보 활용 확대
 - * 의약품 일련번호 시행 가이드라인 마련(영문본 포함) 및 관련 설명회 개최
- **의료기기 안전성 및 부작용 정보의 의료기관 확대 제공**

②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부처간 협업 강화** 및 업계 자율시정을 위한 **공정거래규약 개정·홍보**
 - * 리베이트 자율규제 개선 TF 운영(복지부, 심평원 /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 **퇴장방지의약품 등 환자 진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유통제도 개선**
- 의약품 유통 효율화를 위한 **물류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전략
목표
II

③ 의약품 관련 국민 불편 해소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 **약사 면허 관리 개선** 및 연수교육 실효성 제고
- 약사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부과체계 개선**
- **다소비일반의약품 가격조사 개선**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의약품판매업자 **폐업신고 간소화**를 통한 편의 제고
- **약사법 민원·질의 회신 사례집 발간·지자체 배포**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다소비일반의약품 가격조사 시행지침 통보	'16.2월	
	약사법 민원·질의 회신 사례집 발간·배포	'16.2월	
	의약품 판매업자 폐업신고 간소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16.3월	
	약사·한약사 면허 관리제도 개선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16.3월	
2/4분기	과태료 등 부과체계 개선 방안 마련 (약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16.4월	
	퇴장방지의약품 공급개선 방안 마련 (약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16.4월	
	의약품 일련번호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설명회 개최	'16.5월	
	리베이트 분야 자율규제 개선 TF 운영, 공정경쟁규약 개정·홍보	'16.6월	
3/4분기	처방·조제시 의약품정보 확인 방안 마련 (약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16.8월	
	의약품 유통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약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16.8월	
	의료기기 안전성 및 부작용 정보의 의료기관 제공 방안 마련	'16.9월	
4/4분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의약품 정보 확대 제공	'16.10월	
	의약품 일련번호 활용 확대 방안 마련	'16.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일반국민
- (이해관계집단)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 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 의약품유통협회, 한국 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 기대효과

- 올바른 의약품·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투명화를 통한 건전하고 투명한 영업활동 및 관련 산업 발전 도모
- 의약품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 및 서비스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5	'16
의약품 유통 구조 선진화(III-10-정보화①) ²⁾			
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구축운영(4334) ³⁾		9.13	10.57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구축및운영(정보화)(500)	일반 회계	9.13	10.5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건수)			3,899	2,00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건수만 산정(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 건수 제외) * '15년 센터 제공 건수 : 2,288건	의약품 유통 정보 제공건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 센터 자료	
의약품 유통정보 만족도 평가지수	-	80	85	85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정보이용자 대상 만족도 평가점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 센터 자료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90	100	100	100	Σ 각 지표별 ①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협회 공정거래규약 개정 여부(25%) ② 퇴장방지의약품 등 유통제도 개선(25%) ③ 약사법령 위반시 벌칙 강화(25%) ④ 의약품 도매상 물류 위수탁 제도 개선(25%)	각 지표별 건수 합계	관계공문 및 입법절차에 따른 관련 서류	

전략
목표
II

⑥ 의료질평가 체계 구축 및 확산(II-1-⑥)

□ 추진배경 (목적)

-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적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축소개편 추진
- 선택진료제도 축소에 따른 손실 보상 방안으로 의료의 질을 평가하여 기관별 차등 보상을 위한 의료질평가지원금 도입 (15.9월, 1,000억원)

<연도별 추진 계획 개요>				
· (선택진료) 선택진료비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 부담 경감 및 선택권 제고 ('14~'17년)				
	14년	15년	16년	17년
선택진료 축소	선택진료 이용 비용 평균 35%축소	선택의사비율 80% → 67%(2/3)	선택의사비율 2/3 → 1/3	남은 1/3의사는 전문진료의사로 전환
건강보험 적용 (손실보전)	- 고도 수술·처치 수가 인상 등 (5,100억원)	- 환자 감염·안전관리 수가 조정(1,200억원) -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기관별 수가 (의료 질 평가지원금) 신설 ('15년 1,000억 → '16년 5,000억)		전문진료의사에 대한 가산제도 도입 (3,600억원)

- '16년 지원금 규모 확대(5,000억원)에 따라 평가영역별 지표 수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지표 확대 개발 및 적용
- 평가지원금 규모(5,000억원)등을 고려하여 평가 지표수 확대 등 검토
* (2015년) 5개 영역 37개 지표
- 의료계·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 구성하여 운영

- 선택진료 손실액 등을 고려한 제도설계를 기본으로 하되,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 마련안 검토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6.1월~	
2/4분기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개정	'16.4월	
	• 요양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16.4월	
3/4분기	• 이의신청 접수 및 지표값 검토	'16.4월~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16.7월	
4/4분기	•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접수」(고시) 개정	'16.9월	
	• 2016년 의료질지원금 지급	'16.9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환자
- (이해관계자) 의료질평가지원 대상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기대효과

- 선택진료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보전하되, 단순한 보전이 아닌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국가 전체 의료시스템의 질향상 견인
- 의료의 질 이외에도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및 상급기관의 경증환자 진료와 같은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개선**
- 기초 및 응용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 및 교육수련을 통한 **전체 의료체계의 질을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확산	-	-	-	-	관련 고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고시를 차질없이 개정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개정 -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접수」(고시) 개정 	고시개정 건수	관련 고시 개정문

7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II-1-⑦)

□ 추진배경 (목적)

- 의료사고 피해구제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보건 의료 환경을 조성
-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국민·의료계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신속·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감정제도 운영
 - 의료분쟁에 관한 심리, 조정절차 중 합의 및 조정결정·중재수행
 -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료사고 조사를 통한 감정으로 조정성립에 기여
- 의료계의 조정절차 참여 유도 및 제도이해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대국민 홍보 추진
 - 보건의료기관 대상 설명회,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등
 - 중재원 자체 인프라(의료인, 법조인 등) 활용을 통한 제도홍보
 - 찾아가는 일일상담실 운영, 지방 조정회의 개최
- 조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고객 만족도 개선
 -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및 불만사항 개선 반영 등

전략
목표
II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의료분쟁조정중재 사업계획 수립	'16.1월	
	시도보건소 담당자 설명회	'16.3월	
	조정·중재서비스	'16.1~3월	
2/4분기	찾아가는 일일상담실 운영, 지방 조정기일 개최	'16.1~6월(상반기)	
	조정·중재서비스	'16.4~6월	
	의료분쟁조정제도 홍보	'16.1~6월(상반기)	
3/4분기	조정·중재서비스	'16.7~9월	
	각하사건 설문조사	'16.9월	
	조정위원회 전체회의 및 운영위원회 개최	'16.9월	
	조정전문기구 등 유관기관 간담회	'16.9월	
4/4분기	조정·중재 처리	'16.10~12월	
	비상임 감정위원대상 감정단 전체회의	'16.11월	
	찾아가는 일일상담실 운영, 지방 조정기일 개최	'16.7~12월(하반기)	
	의료분쟁조정제도 홍보	'16.7~12월(하반기)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16.10~12월	
	사회공헌활동(진로탐색프로그램, 청소년멘토링 등)	'16.1~12월	
	수탁의뢰기관 권역별 방문 설명회	연 2회	
	진료과목별 의학회 간담회	연 2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보건의료인
- 이해관계자 : 시민단체, 의료단체, 법조인 등

□ 기대효과

-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
-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II-1-일반재정⑬)			
①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4337)	일반회계	106	100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300)		106	10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조정중재 개시 건수(건)	551	864	735	864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15.5%)+노력도(2%) 적용	신청인의 조정신청에 피신청인의 조정절차 동의로 조정절차가 개시되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건수	조정중재원 업무시스템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실적(건)	46	42	54	51	신규 지표인 점을 감안하여 최근 3년 평균치의 108% 상향 ①제도홍보건수(기자간담회 개최건수, 보도자료 배포 건수 등) ②제도교육건수(토론회, 설명회, 예방교육 실시 건수 등) ③일일상담실 개회건수	Σ 각 부분별 ①제도홍보건수 ②제도교육건수 ③일일상담실 개회건수	결과보고서 및 보도자료 등
이용고객만족도(점)	72.9	73.4	73.7	74.1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0.55%) 적용	(의료분쟁전문상담서비스 만족도 ×가중치(29.0%)) + (의료분쟁조정중재서비스 만족도 × 가중치(69.5%)) + (수탁감정서비스 만족도 × 가중치(1.5%))	외부 전문기관 설문조사 결과

전략
목표
표 II

Ⅷ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추진(II-1-⑧)

□ 추진배경

- 병원 내 감염을 통한 메르스 확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C형 간염 확산, 의약품 오투입 등 각종 환자안전 사고 발생 등에 따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의 필요성 대두
-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최근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함께 급증 중이며, 입원환자가 감염 및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특별한 관리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 (시설기준 마련) 음압격리병실, 중환자실·입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 환기설비 설치·환기기준 등 보완
 -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중 시설기준 정비
- (환자안전 시스템 구축)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보고 및 보고자료 학습 시스템,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교육 등을 규정
 - * 환자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 (상급종합병원 질 관리 유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의료 서비스 수준 평가 신설
 -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정비
- (감염관리 인증평가 신설) 감염관리에 대한 별도의 인증기준을 신설하여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능력 점검 제고

- (요양병원 인증기준 강화 및 중간현장조사 도입)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에 특히 취약한 요양병원의 인증기준 강화. 또한, 인증요양병원의 중간현장조사로 사후관리 철저

○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강화**

- (의료기관 안전 대진단 실시)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 전기 등 시설기준에 대한 안전 대진단 실시
- (일회용주사기 재사용 실태 점검) 의료기관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실태에 대한 실태 점검
-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점검) 생협 개설 및 사무장 유형 분석을 통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점검
- (요양병원 시설안전기준 이행사항 점검) 요양병원 화재 등 시설 기준 등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및 후속조치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음압격리병상 설치 기준을 위한 전문가 및 업계 의견 수렴	'16.2월, 3월	
	환자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16.2월~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선안 마련	'16.3월	
	요양병원 중간현장조사안 마련	'16.3월	
2/4분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음압격리병실 기준) 개정 입법예고	'16.4월	
	의료법 시행규칙 (중환자실·입원실 병상이격거리 등 기준) 개정 입법예고	'16.4월	
	생협 및 사무장 병원 실태조사 점검	'16.4~6월	
	환자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진행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16.5월	
	요양병원 인증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시범조사 시행	'16.5~6월	
	요양병원 중간현장조사 설명회 및 조사 실시	'16.5월	
	감염관리 인증기준 제정을 위한 전문가 및 업계 의견 수렴	'16.6월	
	요양병원 화재안전시설 설치 서면 조사	~'16.6월	
	의료기관 안전대진단 실시	~'16.6월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신고·접수 및 조사 실시	'16.4월~6월		

전략
목표
II

3/4분기	환자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16.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음압격리병실 기준 마련 :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및 규정(고시) 마련	'16.7월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안) 확정 및 공표	'16.7월	
	의료법 시행규칙 (중환자실·입원실 병상이격거리 등 기준) 개정안 시행	'16.9월	
	생협 및 사무장 병원 실태조사 점검	'16.7~9월	
4/4분기	감염관리 인증기준 개정(안) 확정 및 공표	'16.10월	
	요양병원 화재안전시설 설치 후속조치	'16.7~12월	
	생협 사무장병원 실태점검 결과분석 및 의심기관 기뢰조사	'16.10~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일반국민(환자), 의료기관, 의료인
- (이해관계집단) 의료기관, 의료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 **기대효과**

-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 감소된 환자사고 등에 따른 의료기관의 효율성 및 비용부담 절감, 전 국가적인 의료비 절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의료기관 평가 및 정책지원(III-10-일반재정③)			
①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4333-300)	일반회계		
▪ (320)의료기관 평가인증	일반회계	66	34.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점수)	-	-	-	100	법령 등 제도 개선 ①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15) ②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개정(15) ③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 ④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정(15) ⑤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정(15) ⑥ 감염관리 인증기준 제정(10) ⑦ 요양병원 2주기 인증기준 개정(10)	Σ 제도 개선 이행 여부 ① 15점 ② 15점 ③ 20점 ④ 15점 ⑤ 15점 ⑥ 10점 ⑦ 10점	관보제 등 공포사항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점수)				100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 ① 일회용 주사기 등 제사용 점검 여부(30) ② 생협,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 기관 실태점검 여부(50) ③ 요양병원 시설안전 개정 이행 실태조사 여부(10) ④ 의료기관 안전대진단 점검여부(10)	Σ 점검 여부 ① 30점 ② 50점 ③ 10점 ④ 10점	점검 보고서

전략
목표
II

성과목표II-2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1) 주요 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 부과대상 소득기반 확대, 재산·자동차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소득 중심 부과체제로 단계적 개편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간병을 병원의 입원서비스로 포함하여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확대를 통해 간병부담을 경감하고 입원서비스의 질 제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및 보험급여제도 개선

- 진료비 부담이 크고 적용대상이 많은 '비급여 항목' 중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급여화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진료비 부담 완화
- 환자가 감당해야 하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및 간병비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지속 추진

□ 보험약품비의 적정관리 및 약가제도 개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고가 신약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 등 늘어나는 약품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
- 글로벌 진출 신약(국내개발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가치 반영 등 신약의 가치 반영을 위한 건강보험 약가 제도 개선 추진

- 다양한 약가 사후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리화 방안 추진

□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및 가입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유도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급여 적정성 평가 및 가감지급 사업 지속 실시

성과목표·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제도개선 및 보장성강화 추진율 (%)
(관리과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절차 진행률 (%)
(관리과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수(개)
(관리과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및 보험급여 제도 개선	연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율(%)
	연간 건강보험급여 제도개선 추진율(%)
(관리과제) 보험약품비의 적정관리 및 약가제도 개선	약품비 적정유지율 (%)
	약가제도 개선 추진율(%)
(관리과제)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정확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수(건)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건강보험제도개선 및 보장성강화 추진율(%)	100	100	100	100	각 관리과제별 추진목표 100% 달성 -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연차적 추진으로 건강보험 사회안전망 강화 및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과 지속가능성 제고	성과목표내 목표 달성과제/ 관리과제 수	각 관리과제별 추진 증빙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전반에 대한 형평성 제고 요구의 증가
 -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 구체적인 개선방안 발표 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세대들의 반발 가능성, 재정규모에 대한 여론의 비판 우려가 상존
- '11년부터 재정 흑자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낮은 수가를 인상해 줄 것을, 환자들은 보다 높은 보장 수준을 요구
 - * '15년 건강보험 당기수지 4.2조 흑자, 누적적립금 16.9조원
 - 한편,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정책여건과 함께 4대 중증질환 급여항목 확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등 '14~18년 중기 보장성 계획 추진 등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도 공존
-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 하였으나, 특정질환 또는 특정계층에 혜택이 집중되어 질환·계층간 형평성 저해와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상존
 - 4대 중증질환 이외의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요구가 지속 제기
- 건강보험 재정누수방지 및 가입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요구도 지속
 - 의료 현장에서는 사후관리, 적정성 평가 등 자료제출에 많은 행정인력이 소요, 적정성 지표 선정과정 등에서 각종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

□ 갈등관리계획

- 부과체계 개편은 **대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으로 **최신 부과자료**를 활용한 **정밀한 시뮬레이션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 아울러, 개선안 발표시 반발이 예상되는 가입자·세대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단계적 개편** 및 **갈등관리·홍보 전략** 마련
- 과중한 의료비 부담의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에 대응하여 **보장성 우선순위** 및 **재원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 강화 및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14-18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추진중('15.2월~)
- 비급여 진료의 급여 적용, 선택진료비 및 급여기준 개선 등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의료공급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합의 노력 강화**
- **사후관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적정성 평가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의료 질 향상 지원사업 활성화,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선정** 등에 **의료계 참여 확대** 추진
 - 의·약단체와 간담회 개최, 교육 실시 및 거짓청구 사례공유 등을 통한 부당청구 사전예방 캠페인 및 유관기관 소통 강화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II-2-①)

□ 추진배경 (목적)

-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 부과체계 개편은 **다수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충분한 사전 검증**과 다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및 당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원칙과 내용**을 바탕으로,
 - 정밀한 시뮬레이션 등 **다각적 분석**을 지속 추진하여, 국민이 **수용가능**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정부 개선방안** 마련
- **최신 부과자료**를 활용한 개선방안 검토
 - 최신 부과자료('16. 2월)로 모의운영에 필요한 **DB 구축** 및 다양한 **개편방안 시뮬레이션** 실시
- 정부 내부 의견 조율 및 공론화 추진
 - 부과체계 개편 복지부 초안이 마련되면 관계부처(기재부, 국세청 등) 협의 등 **정부 내부 조율** 실시
 - 부과체계 개편 방향 **여·야 설명, 당정협의** 및 **기자설명회** 개최

○ 부과체계 개편 **홍보·상황관리 방안** 수립

- 국민수용성 제고 및 갈등관리를 위해 **대응전략 마련**, 필요시 복지부, 건보공단에 **상황관리 전담반** 구성·운영

○ 기타 부과체계 개편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부과체계 개편 사항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입자 허위신고 방지 등 현행 자격·부과제도 기반 정비 필요

- 보험금 회피 목적으로 **직장가입자를 허위 신고한 사용자**에게 가산금·과태료 부과, 가산금 징수 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
-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인정요건, 피부양자 제외사유 등 **외국인 가입자 자격기준 정비**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최신 보험료 부과자료로 분석자료 현행화 및 정밀한 시뮬레이션 실시	'16.3월	
2/4분기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복지부 초안 마련	'16.5월	
	관계부처 협의 등 정부 내부 조율	'16.6월~	
	당정협의 등 실시	'16.6월~	
3/4분기	부과체계 개편 관련 홍보, 상황관리 방안 수립	'16.7-8월	
	부과체계 개편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16.7-10월	
4/4분기	부과체계 개선 정부안 마련·확정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제도 개선의 **예측가능성**을 갖는 **모든 국민**
- (이해관계자) **제도개선의 영향**을 받는 건강보험 직장·지역 가입자 및 피부양자

□ 기대효과

-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여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의 기반** 마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절차 진행률 (%)	-	100	100	100	형평성 있는 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절차 추진	제도 개선을 위해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 준수 여부	- 자료 현행화 및 시뮬레이션 자료 - 관계부처 협의 및 당정협의 실적 - 기타 제도 개선 실적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개정 실적 등) - 홍보·상황관리 계획 자료

전략
목표
II

②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간병문제 개선)(II-2-②)

□ 추진배경 (목적)

- 외국과 달리 간병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지 않아 가족 간병 또는 간병인 고용 등 사적으로 해결하여 간병인 고용에 年 2조원('12년)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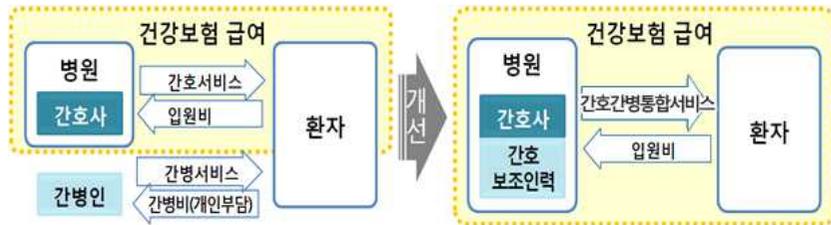
* 간병으로 인한 생업 중단, 간병인 고용 부담 등 환자·보호자 문제 발생 뿐 아니라 환자 안전·감염 등 입원서비스 질 저하 우려

- 간병 부담 경감 및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병을 입원 서비스에 포함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대책 발표('14.2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대책)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간호·간병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의 간호인력이 제공하고,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병실 내 상주를 제한
 -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로 팀을 구성하고, 병동 별로 단순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간병지원인력(병동도우미)을 배치
 - 간호인력이 현재보다 최소 2배 이상으로 확충되어 맞춤형 케어 가능

* 종합병원 50병상 기준, 현재 평균 간호사 15명이 근무 중이나,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 운영시 평균 32명(간호사 9명, 간호조무사 8명 추가)으로 확대



- 국고지원 방식 시범사업('13~'14년)을 통해 서비스 모형을 검증하고, '15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참여기관 확대 추진

* '13년 13개 → '14년 28개 → '15년 112개

-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구인난을 고려하여, 의무 적용이 아닌 병동 단위 자율참여 방식으로 확대 추진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명칭 변경(기존 포괄간호서비스) 및 의료기관·국가의 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 등 의료법 개정('15.12.29일)
- * 서비스 제공기관의 상세한 인력, 시설, 운영기준을 정하는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연내 전국 400개 병동까지 확대 목표,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종합병원·병원급은 '16.4월부터 신청·지정 추진(당초 '18년에서 조정)

* 급성기병원 중심으로 우선 보험적용을 확대

- 메르스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간병인, 환자가족 등이 병실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머무르는 간호 문화가 지적되면서 적극 확대 추진
- * 한국의 병간호 전통이 병원내 감염확산에 영향을 줬을 것(WHO사무총장) 메르스가 드러낸 감염 취약지대...한국적 병간호 문화...연합뉴스('15.6.10)

-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확대는 간호인력 대형병원 쏠림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고, 취약지역 확대를 위한 유인체계 마련

* 간호인력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 추가 간호인력 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간호등급 3등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감염 관리가 필요한 1~2개 병동 우선 확대

- 의료기관이 종별, 간호인력 확보정도 등을 감안해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인력배치기준 및 수가 조합 마련

- 취업교육센터(전국 6개소) 연계, 인건비 보상 등을 통해 간호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참여 초기의 운영상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도록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선도병원 운영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개선 인센티브 계획 마련	'16.1월	
	사업 지침 개정 (상급종합병원 참여확대 등 반영)	'16.3월	
	홍보추진계획 마련	'16.3월	
	사업 확대를 위한 대상별 간담회 등 실시	'16.3월~	
2/4분기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참여 신청 개시	'16.4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동영상 제작 및 방송송출 등 홍보 강화	'16.4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취약지 가산 수가 마련	'16.5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 운영	'16.5월~	
	사업 모니터링, 제도 발전 방향 등 연구용역 실시	'16.5월~	
3/4분기	사업 확대 추진	연중	
	급성기 외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공 모형 마련	'16.9월	
4/4분기	사업 확대 추진	연중	
	사업 추진 결과 보고	'16.12월	

전략
목표
II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입원 환자 및 보호자
- (이해관계집단)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존 활동 간병인, 병원 경영자, 국민

□ 기대효과

- 전문 간호 인력이 간병을 포함하여 양질의 입원서비스를 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간병부담 완화 및 입원서비스 질 제고**
- 병실 환경 및 사적 간병문화 개선을 통해 **병원내 감염예방 및 환자 안전관리 강화**
- 간호인력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휴 간호 인력에게 **재취업 기회를 확대** 제공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5	'16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I-1-일반재정 ²⁾) ²⁾			
①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4331-300) ³⁾	일반회계	70 (80) ⁴⁾	80 (85) ⁴⁾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수(개)	13	28	112	340	국고지원 시범사업 실적('13~'14년)과 '15년 건강보험 적용이후 참여병원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하여 설정	건강보험사업 참여 신청 결과 통계확인	건강보험사업 참여 신청 결과 통계(건강보험공단)	

③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및 보험급여제도 개선(Ⅱ-2-③)

□ 추진배경 (목적)

- ◆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 적용(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48-①)
- ◆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적용(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48-②)
- ◆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보고(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5.2.3)

-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
 -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 강화
 -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의료비 부담 가중으로 의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13.6월)
 -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추진
- 국민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 의료비의 보장성을 강화하더라도
 - 선택의료영역에 해당하나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
- 이에, 「3대 비급여 제도개선 기본방향」을 마련('14.2.11일 발표)하여 단계적으로('14~'17년) 의료비 부담 완화 추진
 - * (선택진료) 비급여 선택진료는 단계적 축소 후 건강보험 제도로 전환
 - * (상급병실) 일반병상 확대(4인실까지, 상·중70%의무)로 환자부담 및 병실환경 개선
 - * (간병) 병원의 입원간호서비스에 간병을 포함하고 건강보험 적용

전략
목표
II

- 의료현실, 환자 선택권 등을 반영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급여기준 운영의 합리성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으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 어르신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행 70세에서 65세로 확대(7월, 50%)
 - * 완전틀니(레진상) 12.7월, 부분틀니 13.7월, 치과임플란트 14.7월, 완전틀니(금속상) 15.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
 - 결핵 박멸을 위한 치료비 전액 건강보험 지원(7월)
 - * 현재 10%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면제 (비급여 제외)
 - 제왕절개 입원 본인부담 경감 (7월, 20→5%)
 -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분만 취약지 등)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 인상 (7월, 50→70만원)
 - 임신 초음파검사 급여 적용 (12월)
 - * 현행 비급여인 임신부 초음파에 대하여 세부기준 및 분류체계 마련 후 건강보험 적용
 - 환자 안전을 위한 치료재료의 보장성 강화 (12월)
 - *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는 1회용 치료재료,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 추진
 -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 (12월)
 - * 장애인 보장구 급여 품목 확대 및 기준금액 인상

- 휴대용 산소치료 요양비 지원 (12월)

* 가정산소치료 외, 외부활동시 필요한 휴대용 산소공급장치 요양비 적용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16년까지 **의학적 필요** 부분은 모두 건강보험 영역에 포함되도록 추진

- 필수적 의료는 급여,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의료는 본인부담율을 높여(50%~80% 등) 급여 추진(선별급여)

- 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등 200개 비급여 항목 급여 전환 추진

○ (3대 비급여 개선) 선택진료비 제도개선 지속 추진

-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 비율 67% → 33%로 조정

- 비급여 축소 대신 기관별 의료 질 수준에 따른 보상(의료질평가 수가) 확대 및 협력진료 강화 위한 수가 개선

○ 의료현실, 환자 선택권 등을 반영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 급여기준 관련 고시의 급여기준 항목 중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16년 보장강화 실행계획 수립	'16.1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항목 검토 및 협의체 구성	'16.2월~연중	
	선별급여 법적 근거 마련	'16.3월	
	선택진료 축소개편 관련 의료계 협의체 운영 개시	'16.3월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	'16.3월	
2/4분기	'16년 국민의료비 경감 홍보 계획 수립	'16.3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항목 검토 및 협의체 운영	연중	
	선택진료 법령 및 관련 수가 개편안 마련	'16.4~8월	
	선택진료 전년도 개편결과 모니터링	'16.4월	
3/4분기	전액본인부담 일괄 선별급여 전환	'16.6월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험 적용연령 65세로 확대	'16.7월	
	결핵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면제(10→0%)	'16.7월	
	제왕절개 입원 본인부담 경감(20→5%)	'16.7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강화	'16.7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항목 검토 및 협의체 운영	연중	
4/4분기	중증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확대	'16.9월	
	선택진료 축소 개편 시행 (건강심 심의의결, 법령개정 완료)	'16.9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추진	연중	
	선별급여 하위법령 개정	'16.12월	
	선택진료 개선관련 내부 점검·관리 회의 완료	'16.12월	
	급여기준 개선	연중	
	임신 초음파검사 급여 적용	'16.12월	
	환자 안전을 위한 치료재료 의료보장 강화(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1회용 치료재료 등 별도 보상)	'16.12월	
장애인 보장구 의료보장 강화	'16.12월		
휴대용 산소치료 요양비 지원	'16.12월		

전략
목표
II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이해관계집단) 의료소비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의료기관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기대효과

- 필수의료 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을 통한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 및 의료비 부담 완화
-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통하여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 기여
- 선택진료비에 대한 환자의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 및 선택권 제고
 - '16년 선택진료의사 비율 축소로 원치 않는 비급여 이용을 완화
- 의료현실, 환자 선택권 등을 반영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급여기준 운영의 합리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연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율(%)	100	100	111.6	100	'16년도 보장성 강화 목표 달성률 - 이르신 틀니, 치과임플란트 보험 적용연령 65세로 확대 - 결핵 치료비(비급여 제외) 건강보험 본인부담 면제 - 재활질개 입원 본인부담 경감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강화 - 장애인 보장구 의료보장 강화 - 휴대용 산소치료 요양비 지원 - 임신 초음파검사 급여 적용 - 환자 안전을 위한 치료재료 별도 보상	①('16년 보장성 확대 시행 항목수 / '16년 보장성 확대 계획 항목수(총8항목)) × 100% × 0.8	관련법령 개정안, 추진 계획, 건정심 안건 등
연간 건강보험급여 제도개선 추진율(%)	100	100	100	100	4대 중증질환 관련 급여 확대 목표 달성률 - 당초 '15년 계획 200항목에서 '16년도 추진 예정 항목(유전자 검사 87항목 등)을 조기 시행하여 목표 초과달성(258항목)한 점을 감안하여 200항목 책정	②(4대 중증질환 관련 급여 확대 항목 수/ 계획 항목 수(총 200항목)) × 100% × 0.2	관련법령 개정안, 추진 계획, 건정심 안건 등
					의료현실 변화 반영 등 급여기준 개선을 통한 국민의료 보장 강화 - '16년도 급여기준 개선 40항목	①(급여기준 개선 항목 수/ 계획 항목 수(총 항목)) × 100% × 0.4	
					선택진료 - '16년도 선택진료비 개선방안은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축소하는 것으로,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을 병원별 67% → 33%로 축소를 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등을 통하여 축소분 보전	②(급여기준 개선 항목 수/ 계획 항목 수(총 항목)) × 100% × 0.4 ③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 0.3	

전략
목표
표 II

4] 보험약품비의 적정관리 및 약가제도 개선(II-2-④)

□ 추진배경 (목적)

◆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요구(보장성 강화, 약제 접근성 제고), 국내 개발 신약 해외 진출을 계기로 촉발된 제약업계 요구(보험 약가 제도개선)를 반영한 보험약품비 적정관리 및 제도 개선 추진

① 보장성 강화, 약제 접근성 제고 등 사회적 요구 증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의약품의 급여화를 조속히 추진하여, 환자의 약제비 부담완화에 기여

○ (약제 접근성 제고) 재정건전성 제고, 신속 등재 절차 마련

- 건강보험 재정 손실분 징수,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개선(재평가 기준 마련)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신속 등재 절차 마련

② 제약업계 요구를 적절히 반영한 보험약가 제도 개선 추진

○ 최근 바이오의약품 약가 우대, 신약 적정가치 반영, 실거래가 제도 개선, 사후관리 약가 중복 조정 등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보험약가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 급증

○ 이에 정부, 유관기관, 제약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협의체(2개)'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보험약가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16.2월) 및 운영(~10월)

- '바이오의약품 약가 산정기준 개선 협의체' 구성('16.1월) 및 운영(~6월)

전략
목표
II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 (약제 급여기준 확대 및 개선) 환자부담은 크나 보장요구는 약해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소수환자 질환* 사용 약제 및 대상환자는 많으나 개별 체감도가 낮은 약제**(치료보조 약제 등)의 급여 강화

* 자가면역수포성 질환(천포장 등), 루프스신염 등

** 알부민주, G-CSF, X선 정맥조영제, 국소지혈제 등

- (위험분담제도의 보완 운영) 위험분담제도 운영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기준 마련 및 법령 개정 등 제도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 점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

* (위험분담제) 약제의 치료효과 및 재정영향에 대한 불확실성(Risk)을 건강보험 공단과 제약회사가 별도의 환급계약 등을 통해 분담하는 제도

○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 (건강보험 재정 손실분의 징수) 보험자 등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한 의약품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재정 손실액 산정방법 규정화

-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개선) 퇴장방지의약품의 지정 제외기준 마련, 일정 청구액 이상의 품목에 대해서는 원가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정 후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신속 등재 절차 마련

- 의약품 허가 심사(평균 115일) 및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평가(최대 120일) 기간 소요로 국내 개발 신약 등 신속 출시에 애로

→ 신약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신속 등재 절차 마련

○ **글로벌 진출 신약(국내 개발 신약)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 임상적 유용성이 대체약제와 유사한 국내 세계 최초허가 신약의 건강보험 약가 우대 평가기준 마련
- 국내 개발 신약 급여적정성 평가기간 단축(120일→100일)을 통한 신속등재 절차 마련
-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국내 개발 신약(가칭, '혁신신약')의 건강보험 약가 개선안 마련

○ **바이오의약품 가치 반영을 위한 약가산정 기준 개선**

- '바이오의약품 약가산정기준 개선 협의체' 구성·운영하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실시
- 바이오의약품 특성, 임상적 유용성 개선정도 등을 반영한 바이오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안 마련

○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합리성 제고**

- **(실거래가를 반영한 약가인하)** 약가 인하 주기조정, 가중평균가 산출 데이터 개선, R&D 투자 유인을 위한 감면률 적용 등 제도개선 추진
-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 제약업계 현장 소통을 통해 글로벌 진출 신약 등의 경우 약가인하 수준의 환급제 적용 방안 검토하는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 **(약가 사후관리 제도 합리화 방안 검토)** 다양한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리화 방안 검토

전략
목표
II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	'16.2월	
	바이오의약품 약가산정 협의체 구성	'16.2월	
2/4분기	국내 개발 신약 급여적정성 평가 기간 단축 절차 마련	'16.5월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16.6월	
	사용량·약가 연동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약업계 간담회	'16.6월	
3/4분기	위험분담약제 급여기준 확대 기준 마련 및 관련 법령 정비	'16.9월	
	사용량·약가 연동제 관련 법령 개정	'16.9월	
	건보재정 손실액 산정방법 규정 마련(건보법 시행령 개정)	'16.9월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개선안 마련	'16.9월	
4/4분기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 방안 마련	'16.12월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국내 개발신약의 약가 개선안 마련	'16.12월	
	사후관리 약가 인하 조정 등 개선안 마련	'16.12월	
	바이오의약품 약가 산정 기준 마련	'16.12월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개선안 마련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약가인하 또는 의약품 사용의 적정화를 통해 부담이 감소되고 건강이 증진되는 전 국민
- (이해관계집단) 의약품의 가격 산정 및 약가 인하 등에 따라 이윤에 영향을 받는 제약업계

□ 기대효과

-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

- 국내 개발 신약 약가 우대를 통해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과 양질의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 약가 사후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의약품 사용 적정 관리를 통한 재정 건전화 및 국민의료비의 감소
- 바이오의약품(개량생물의약품, 동등생물의약품 등) 개발 및 연구 개발 투자 유인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약품비 적정유지율	1.3% 이하	9% 이하	9% 이하	9% 이하	- '06~'15년 10년간 약품비 증가율 평균치(9.3%, '12~'13 제외) 및 약가일괄인하('12년 효과 등'을 감안하여 9%이하로 설정 * 약가일괄인하 전 가격으로 약품비를 보정하면 약품비 증가율(7.6%)과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강화, 위험분담제 운영,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보험약품비의 지속적 증가를 고려 <table border="1"> <tr> <td>'06</td><td>'07</td><td>'08</td><td>'09</td><td>'10</td><td>'11</td><td>'12~'13</td><td>'14</td><td>'15</td> </tr> <tr> <td>16.3</td><td>13.2</td><td>9.2</td><td>12.2</td><td>9.6</td><td>5.2</td><td>일괄인하</td><td>4.7</td><td>4.1</td> </tr> </table>	'06	'07	'08	'09	'10	'11	'12~'13	'14	'15	16.3	13.2	9.2	12.2	9.6	5.2	일괄인하	4.7	4.1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 ((당해년도 약품비-전년도 약품비)/전년도 약품비)*100	진료비통계지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6	'07	'08	'09	'10	'11	'12~'13	'14	'15																	
16.3	13.2	9.2	12.2	9.6	5.2	일괄인하	4.7	4.1																	
약가제도개선 추진율 (%)	-	-	-	100%	① 국내개발 신약 등 약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②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약가 산정 기준안 마련 ③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개선 방안 마련 ④ 보험약가 사후관리제 조정 방안 마련 ⑤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각 지표별 ① 각 항목별 내부보고 완료 (20%)*5개 항목	제도개선 관련 내부 보고 자료																		

전략
목표
표 II

Ⅴ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Ⅱ-2-⑤)

□ 추진배경 (목적)

- 재정누수방지 및 가입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제2항, 제98조, 제99조, 제100조

- 건보재정의 합리적 자원 배분 및 사용을 위한 급여 적정성 평가 및 가감지급 사업의 점진적 확대

- 건강보험 급여서비스의 의약학적 측면·비용효과성 평가 및 가감지급을 통해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유도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지속적인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 등 내실화도 병행 추진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63조/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정기조사(매월) 및 기획조사(상·하반기 각1회) 등 실시로 요양 급여의 불필요한 누수 방지 노력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높은 기관 및 처분불이행 의심 요양기관 등에 대한 사후 이행여부 등 조사

- 부당청구 주요사례 홈페이지 공유 및 설명회 개최 등 사전 예방활동 강화를 통하여 올바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문화 정착 노력

○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실시(상·하반기 각1회)

* 거짓청구 금액 1,500백만원이상 또는 거짓청구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 상반기('16.6.28~12.27), 하반기('16.12.28~'17.6.27)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활성화

-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자발적 참여확대 유도로 거짓·부당청구 관행 개선 효과 증대

○ 적정성평가 및 가감지급 사업 지속 추진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의료기관의 적정의료 이용 유도

- '16년 환자경험평가 신규 추진으로 1항목 확대(36 → 37항목)

- 질과 비용을 포괄한 8개 항목*에 대한 가감지급 사업 실시

* 8항목(급성기뇌졸중, 혈액투석, 고혈압, 당뇨병, 수술예방적항생제, 주사제 처방률, 항생제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 비율)

- 평가지표별 목표설정, 평가기준 및 등급 등 체계적 평가기반 조성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주요 쟁점사항 등 협의(심평원, 건보공단)	매월	
	요양기관 정기현지조사 계획수립 및 실시	매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협의 및 검토	매월	
	요양기관 협의체 및 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설명회 개최	매월(의뢰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및 가감지급 사업 계획 수립	'16.1월	
	1/4분기 업무정지처분 이행실태 점검	'16.2월	
	상반기 거짓청구 요양기관 1차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개최	'16.3월	

전략
목표
II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주요 쟁점사항 등 협의(심평원, 건보공단)	매월	
	요양기관 정기현지조사 계획수립 및 실시	매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협의 및 검토	매월	
	요양기관 협의체 및 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설명회 개최	매월(의뢰시)	
	2/4분기 업무정지처분 이행실태 점검	'16.5월	
	상반기 거짓청구 요양기관 2차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개최	'16.6월	
	상반기 기획현지조사 실시	'16.6월	
3/4분기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주요 쟁점사항 등 협의(심평원, 건보공단)	매월	
	요양기관 정기현지조사 계획수립 및 실시	매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협의 및 검토	매월	
	요양기관 협의체 및 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설명회 개최	매월(의뢰시)	
	3/4분기 업무정지처분 이행실태 점검	'16.8월	
	하반기 거짓청구 요양기관 1차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개최	'16.9월	
	4/4분기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주요 쟁점사항 등 협의(심평원, 건보공단)	매월
요양기관 정기현지조사 계획수립 및 실시		매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협의 및 검토		매월	
요양기관 협의체 및 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설명회 개최		매월(의뢰시)	
하반기 기획현지조사 실시		'16.10월	
4/4분기 업무정지처분 이행실태 점검		'16.11월	
하반기 거짓청구 요양기관 2차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개최		'16.12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항목별 자료수집분석 및 공개(해당항목)		'16.12월	
차년도 기획현지조사 대상선정 및 홍보		'16.11 ~ 12월	
주요 현지조사 대상 사례공유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의료수요자인 전체 국민

○ (이해관계집단) 평가 및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 등

□ 기대효과

-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통하여 재정 건전화에 기여
-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로 의료의 질 향상 및 건강보험재정의 합리적 자원 배분·사용 기반 조성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현지조사 대상기관 신정 정확도(%)	86.5	92.6	93.8	93.6	전년 목표치('15년 93.6%) 유지	거짓·부당청구 기관/현지조사 대상기관 × 100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수(건)	29	35	36	37	'16년 평가항목은 1개 항목을 신설 하여 37항목을 목표로 설정 - 급격한 평가대상 확대보다는 평가의 내실화 필요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	평가항목 수 (누적기준)	평가결과 보고서

전략
목표
II

성과목표 II-3

질병관리체계 강화 및 필수 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건강안전망 강화

(1) 주요 내용

□ 체계적인 국가암관리 정책 구현

- 암 조기발견 및 암치료를 제고 등 적극적인 국가암관리사업 수행으로 암환자 건강증진 기여
- 7대 암검진 권고안에 맞춰 국가암검진 제도를 정비하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암종 확대 및 폐암환자 지원방식 개편
- 가정형 호스피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추진 등 호스피스 지원체계를 다양화하여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국가예방접종 지속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 국가 예방접종에 지원 항목에 HPV를 추가하고, 노인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민간의료기관 위탁 지속 추진

□ 균형잡힌 공공의료 제공체계 구축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점검·관리
- 산부인과 설치 운영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분만실 설치 등 분만취약지 지원을 통한 가임인구 분만접근성 향상
-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수준, 경영 상태 등에 대한 운영평가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 제고

□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하되, 응급의료 수요에 적합한 **효율적인 응급의료 제공체계 구축**
-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심정지 등 신속한 응급처치와 후속 치료가 필요한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전문진료체계 구축**
-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응급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농어촌 군 소재 지역의료기관 운영지원 확대**

성과목표 ·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질병관리체계 강화 및 필수 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건강안전망 강화	- 암환자 생존율(%) - 심정지 생존율(%)
(관리과제) 체계적인 국가암관리 정책 구현	- 국민암검진 수검률(%)
(관리과제) 국가예방접종 지속확대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 영유아 완전접종률(%)
(관리과제) 균형잡힌 공공의료 제공체계 구축	- 전체 가임인구 대비 분만 취약 가임 인구 비율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평균점수 -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평균 점수
(관리과제)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 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 충족률 -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내 최종치료 기관 도착률

전략
목표
II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암환자 생존율(%)	66.3	68.1	69.4	70.1	암환자 5년 상대생존율 개선 추세 유지를 목표로 하고 2000-2004년도부터 2009-2013년도까지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의 5년 상대생존율을 이용하여 다항회귀분석 방법으로 산출한 2010-2014년도의 생존율 추정치인 69.8%에서 0.3%p 향상된 70.1%를 목표치 설정	2016년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의 결과로 제시되는 2010-2014년에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5년 상대생존율=암환자의 5년 관찰생존율÷동일한 성별, 연령군을 가지는 일반인구의 5년 기대생존율)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
심정지생존율(%)	4.0	4.8	4.8	5.0	최근 3년간 실적 평균값을 기준으로 목표치 설정 * 평가산식 : 표준형-상향지표 * 실적변화 : 13년(4.4%) - 14년(4.8%) - 15년(4.8%) * 기준치 : 15년 실적 4.8 * 목표치 : 기준치(4.8) + 평균증가폭(0.13) + 적극적 목표(0.7)=5로 설정	(자발순환이 회복되어 응급실 퇴실 또는 퇴원 시 생존한 심정지 환자수)×100/(심장정지로 최종 확인된 환자수)	소방방재청 구급활동 일지 중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를 받은 환자를 의료기관의 무기록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체계적인 국가암관리 정책 구현

- 암 생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암 발생을 또한 계속 증가 추세이고, 완화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양질의 완화의료서비스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에 대한 요구 계속
- 암검진제도 정비, 암환자의료비지원 확대 등 암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완화의료 수가제도 도입,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팀 제도화 등 완화의료 정책 적극 추진

□ 국가예방접종 지속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정책 대상자(12세 이하 아동 노인)가 무료예방접종 대상 및 시기를 정확히 인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정부부처·의료계·유관단체 등과의 협업 홍보 및 인터넷·SNS 등을 활용한 적극 홍보를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정보 확산 극대화 추진

□ 균형잡힌 공공의료 제공체계 구축

- 메르스 발생 등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 관심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는 미약한 상황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우, 민간의료기관과의 차별성 미흡, 적자 누적 등으로 경영 곤란이 지속되는 상황
- 공공보건의료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제도적 지원 강화

- 이와 함께 계층·지역·분야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만 취약지 지원 추진

□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에 응급의료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송서비스를 구축하여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중한 응급환자의 황금시간 내 최종치료를 위한 지역화 필요
 -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비롯한 각종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를 경험하면서 재난시 응급의료지원체계 강화 필요성 부각
-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에 기본적인 응급안전망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인력·시설·장비를 지원
 - 재난상황 전파 및 현장대응 신속성 제고하고 재난거점병원 확대로 신속한 현장 출동 및 다수 사상자 수용 및 재난의료 지원 전문인력 양성으로 지역별 재난대응체계 완비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체계적인 국가암관리 정책 구현(II-3-①)

□ 추진배경 (목적)

- 암은 평균수명 증가와 생활습관 변화로 매년 22만명 이상 발병하고 유병인구는 137만명에 달하는 국민 체감이 높은 질환
 - 암의 40%는 예방이 가능하고 30%는 조기진단으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0%도 완화의료 제공을 통해 정복이 가능
- * 암발생 건수 추이: 99년 101,032명 → 06년 154,583명 → 13년 225,343명
- 정부는 국민의 암부담을 줄이기 위해 암예방, 암검진 및 완화의료 사업에 걸친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 중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폐암 검진 도입)** 폐암 검진의 단계적 도입을 위하여 검진 대상자인 초고위험군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진행
 - * '17년 초고위험군 검진 실시, '18년부터 전면 도입
- **(의료비지원 사업개편)** 폐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한도액을 급여 100만원 → 200만원 으로 확대하고(3월~), 중위소득의 전면도입 등 의료비 지원 개편방안 마련(6월)
- **(완화의료 제도 확대)**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실시(3월), 요양병원 말기암환자 입원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추진(상반기), 비암성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연구 추진(12월) 등 제도확대

전략
목표
II

- **(제3차 암관리 종합계획 발표)** 암검진 확산, 호스피스 접근성 제고, 국가암관리자원 고도화 등을 위한 '16~20년 종합계획 발표 및 실행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국가암검진사업 실시	'16.1월	상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추진	'16.3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실시	'16.3월	상시
2/4분기	폐암검진 연구사업 추진	'16.4월	
	암 예방 홍보사업 실시	'16.5월	
	호스피스 전문기관 운영 평가체계 구축 연구	'16.5월~	
	3기 암관리종합계획 발표	'16.6월	
	요양병원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추진	'16.6월~	
	호스피스-연명법 개정에 따른 호스피스 제도 정비 연구 추진	'16.6월~	
3/4분기	암환자의료비지원 개편방안 마련	'16.6월	
	암 예방 홍보사업 실시	'16.9월	
4/4분기	폐암검진 파일럿테스트 실행	'16.10월	
	호스피스 전문기관 운영 평가 항목 공표	'16.11월	
	2014년 암등록통계 발표(시군구단위까지 확장)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전 국민(암환자 및 가족 포함)

□ 기대효과

- 암 예방 및 조기 발견, 치료 및 말기암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암 생존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5	'16
국가암관리사업 지원(III-3-제정(1))				
① 국가암관리사업 지원(3532)	국민건강증진기금		479	489
▪ 국가암관리(301)			252	263
▪ 암환자지원사업(303)			216	216
▪ 국제암연구소 분담금 납부(ODA)(308)			11	1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국민암검진 수검률 (%)	64.7	67.3	65.8	66.4	최근 3개년 수검률 실적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 - '15년도 실적(65.8%) 최근 3개년 실적의 연평균 증가율(0.5%)의 약20% 추가하여 적용	전국 성인 4,000명을 표본 추출하여 암검진 권고 기준에 따른 암검진 수검 행태를 조사	국민암검진 수검행태 결과	

전략
목표
표 II

② 국가예방접종 지속확대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II-3-②)

□ 추진배경 (목적)

- 국가 예방접종 지원 확대 및 안전한 예방접종으로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 * 국정과제 '맞춤형 임신·출산 비용 지원(62-1)'의 세부과제인 '만 12세 이하 필수 예방접종비 본인부담 폐지 및 항목확대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사업 지속 확대 추진
 - (전면무료접종) 민간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시행('14~)
 - * ('13년) 예방접종비용 일부지원(5천원 본인부담) → ('14년) 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
 - (항목확대) '12년 10종 → '13년 11종 → '14년 13종 → '15년 14종 → '16년 15종(HPV 추가)
 - * 만 12세 여아 HPV 백신 무료접종 실시 ('16.6월~)

* 예산 : '12년 731억원 → '13년 1,051억원 → '14년 1,816억원 → '15년 2,623억원 → '16년 2,787억원
 * 지원백신(15종)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폴리오, MMR, 일본뇌염 사백신, 수두, Td, DTaP-IPV, Tdap, Hib('13), 일본뇌염 생백신('14), 폐렴구균('14), A형 간염('15), HPV('16)

- 노인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전국 민간의료기관 위탁 추진 ('15.10월~)
 - * 기존 보건소에서만 시행하던 것을 민간의료기관(약 1만개소 이상)까지 확대
- 신규 국가예방접종 도입에 관한 기준마련 추진
 - * 국가예방접종사업 중장기 전략 개발 연구용역 시행('15.10월~'16.8월)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추진	'16.1월~	지속 추진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 계약	'16.3월	
2/4분기	예방접종 주간 행사 전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HPV 무료 시행) 적극 홍보	'16.4월	
	'16~'17절기 인플루엔자 관리지침 개정 및 배포	'16.4~5월	
	HPV 백신 추가를 위한 관련 고시 개정	'16.5월	
	HPV 백신 무료접종 실시	'16.6월~	
3/4분기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 및 지자체 분배	'16.8월~	지속 추진
	접종대상자 및 관련기관 협력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홍보	'16.8월~	지속 추진
4/4분기	2017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 및 배포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만 12세 어린이 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

* 아동 및 노인 등의 건강 보호는 물론 무료접종으로 인한 해당 가정의 비용 부담 감소

○ (이해관계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민간의료기관 및 백신 개발 제약사

□ 기대효과

○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추가적인 질병 부담 감소 및 국민 건강 증진

* 예방접종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가장 높은 질병 관리 정책 수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예방접종관리(III-14-일반재정②)			
① 예방접종관리(4836)	국민건강	2,623	2,787
▪ 국가예방접종실시(303)	증진기금	2,623	2,78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영유아 완전접종률 (%)	신규	신규	신규	92.0	영유아 완전접종률을 2020년까지 감염병 퇴치수준인 95%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2014.5월 신규 도입된 폐렴구균백신의 적기접종대상 고려하여 '14.1~'12월 출생아에 대한 분석결과인 91.6%에 대해 수학적 예측모델에서 현재 실적치보다 0.4% p 상향된 수치를 목표로 설정	[기본접종5종(B형간염 3차, DTaP 3차, 폴리오 3차, 폐렴구균 3차, Hib 3차) 완전접의 종자수 ÷ 접종대상자 수] × 100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 전산등록자료 활용	

* 영유아 완전접종률(%)은 항목확대에 따라 기존지표인 기본접종 3종에서 기본접종 5종으로 변경한 신규 도입지표로, 목표치 재설정함

전략
목표
II

③ 균형잡힌 공공의료 제공체계 구축(Ⅱ-3-③)

□ 추진배경 (목적)

-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충실한 수행을 위한 각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실천 계획 수립 및 관리 필요
- 분만취약지 산모는 산전·산후 진찰 및 분만을 위해 원거리 이동 또는 대도시 원정출산 등으로 분만환경 악화
 - 산부인과 감소로 인해 농어촌 산모의 주요합병증 발생률은 도시 지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 농어촌 산모는 유산, 자궁외 임신 및 기타 임신에 따른 합병증은 1.25배, 임신 중독증의 경우 1.15배 (2010.3, 건양대학교)
-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방의료원은 취약계층 및 시장기피 필수의료서비스 등 양질의 2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
 - 민간의료기관과의 차별성 미흡, 적자 누적, 경영혁신 노력 부족 등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미흡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공공보건의료기관별로 매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시행결과 평가
 -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수행 체계, 진료 질적 수준, 취약 지역·계층 진료,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실적 등 평가

- 분만 취약지* 지역에 분만실 설치 등 분만취약지 지원을 통한 분만 취약 가임인구 감축
 - 분만산부인과 12개소, 외래산부인과 14개소, 찾아가는 산부인과 5개소 운영
 - 분만산부인과 1개소, 외래산부인과 2개소 신규 선정·지원

* 관내 여부와 상관없이 60분 내 분만율이 30% 미만이고,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까지 60분 내 도달하기 어려운 가임여성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
-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지역 내 의료 수요 및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미충족 필수의료(재활, 화상, 완화의료, 고압산소치료 등) 기능 강화
 - 지방의료원의 운영목표 및 기능, 필수 공공의료사업, 필요한 진료역량, 경영관리 기준 등 필요한 표준화된 운영지침 마련
 - 지방의료원의 경영 상태,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한 운영평가 실시
 - 3년이상 당기 순손실 발생, 공공보건의료사업 비중이 현저히 낮은 지방의료원에 대해 운영진단 실시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대상기관 공모·선정	'16.2월	
	2016~2020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16.3월	
	2015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지침 및 계획수립	'16.3월	
2/4분기	의료 및 분만취약지 공모	'16.4~5월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및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공모	'16.4~5월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대상기관 공모·선정	'16.5~6월	
	공공의료기관별 2016년 공공보건의료계획 마련	'16.5월	
3/4분기	지방의료원 표준운영 지침 마련	'16.6월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용역 수행	'16.7~11월	
4/4분기	2015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우수사례 현장점검	'16.10월	
	2015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평가결과 도출	'16.11월	
	의료 및 분만취약지 사업기관 현장점검	'16.12월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현장점검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지역거점 공공병원 및 병원 이용자(국민),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지역 등 분만취약지 내 가임기 여성
- (이해관계자) 해당없음

□ 기대효과

-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실적을 지속 점검하여 각 기관의 공공의료 정책 협조도를 제고하고,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기여
- 분만 취약지역내 거주하는 산모에게 산전 진찰, 분만 등 산부인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분만환경 제공
-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공익성과 운영효율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5	'16
균형집합 공공의료 제공체계 구축(II-5-일반재정③)			
① 의료취약지 지원(2750)		59 (59)	64 (64)
▪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300)(舊 의료취약지 지원)	일반	59	64
② 지방의료원등 육성(2743)		690 (691)	660 (662)
▪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304)	일반	690	660
③ 공공의료기관평가 및 의료기술단 지원(2738)		22 (22)	27 (27)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운영(302)	건강기금	22	2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전체 가임인구 대비 분만 취약 가임인구 비율(%) *분만의료기관에 60분 내에 도달하지 못하는 가임인구	신규	신규	신규		1.8	'15년 분만 취약 가임인구 비율(1.9%) 대비 5% 감소	분만 취약 가임인구 / 전체 가임인구	헬스맵 (www.healthmap.or.kr) 분석 결과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평가 평균점수(점)	69.6	70.9	72.1	72.4	72.4	최근 5년(2011~2015년) 실적 증가율에 대한 평균값(0.6점)을 적용하여 목표치로 설정하여 2015년 목표치인 71.8점에서 0.6점 상승한 72.4점으로 책정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총점수 / 지역거점공공병원 수 - 측정대상: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 표본수: 전체 39개소 - 조사영역: 양질의 의뢰서비스, 합리적 운영, 공익적 보건 의뢰서비스, 공공적 관리 등	2016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분석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평가 평균 점수	신규	신규	신규		67.0	전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평가 평균 점수(66.8점) 대비 0.2점 증가토록 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추진 *16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기준 변경 등으로 평균점수 하락 가능성을 감안	전체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총점/평가 대상 공공의료기관 수	2015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점수 분석

전략
목표
II

④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Ⅱ-3-④)

□ 추진배경 (목적)

-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하되, 응급의료 수요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응급의료 제공체계 구축
-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심정지 등 신속한 응급처치와 후속 치료가 필요한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전문진료체계 구축
-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될 수 있도록 농어촌 군(郡) 소재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확대
-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AED) 활용율을 높여 심정지 생존율 향상
- 재난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및 배후 응급 의료지원체계를 대폭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응급의료기능 체계 개편 및 강화
 -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관리
 - 소아응급환자 전문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 중증외상환자가 24시간 365일 수술 및 진료 받을 수 있는 권역 외상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중증외상환자 생존율 제고
- * '15년 15개소→'16년 17개소
-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응급실 감염예방

- 대형병원 응급실 유입감소, 체류시간 단축, 환자분산, 중소병원 협력 시범사업 추진
- 격리병상·음압병상 등 감염예방 인프라 확충 및 운영 개선 추진
- 응급의료 정보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 빅데이터 기반 “응급의료 모니터링 시스템” 및 전원 조정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제공 기능 강화
-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
 - 응급의료 취약지 환자를 위한 ‘원격협진 네트워크’ 확대
 - 농어촌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개선
 - 야간·휴일 응급실이 아니면 갈 곳이 없는 농어촌 취약지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응급의료관리료) 본인분담률 경감(100% → 35~50%)
 - 경증 소아 환자를 위한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
- 국가재난의료 지원 체계 강화
 - 재난거점병원 확충(20개 기관→41개 기관) 및 시설장비 보강
 - 재난 시 대응 역량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 화학 재난 대비 독극물 중독치료 지원 체계 마련(해독제 구매 배포 및 독극물 정보센터 설치 운영)
 - 대형·장기 재난대비 이동형 현장 재난의료시설 설치
- 일반인 대상 응급처치교육,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홍보 활성화 및 자동제세동기(AED) 설치지원, 적정 관리를 통한 응급처치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초기 대응능력 향상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응급의료 전용헬기 신규 운항 개시(충남)	'16.1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사업비 교부	'16.3월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 (연구결과 및 만족도조사 결과 발표)	'16.3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참여 의향조사	'16.3월	
2/4분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16.4월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16.4월	
	2017년 응급의료 전용헬기 신규 운항 지역 및 사업자 공모	'16.4월	
	독극물 중독치료지원 거점병원 선정 및약품 불출	'16.5월	
	응급의료 전용헬기 신규 운항 개시(전북)	'16.6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공모 및 선정	16.6월		
3/4분기	권역의상센터 선정 공모	'16.9월	
	대형병원-중소병원 응급실 협력 시범사업	'16.9월	
4/4분기	이동형 병원 도입 완료	'16.12월	
	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	'16.12월	
	응급의료 빅데이터 구축	'16.12월	

전략
목표
II

-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응급실을 만들기 위한 응급실 환경개선
- 재난의료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별 재난대응체계 완비하고 재난상황 전파 및 현장대응 신속성 제고
-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자동제세동기 설치 확대 등을 통한 일반국민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II-2-재정①)			
① 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2831)	응급의료기금	268	223
▪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300)	"	39	39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지원(301)	"	34	34
▪ 국내외 재난의료지원(302)	"	90	138
▪ 자동제세동기 보급지원(316)	"	13	12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II-2-재정②)			
①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2832)	응급의료기금	147	157
▪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309)	"	2	12
▪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311)	"	14	14
▪ 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지원(313)	"	15	15
▪ 응급환자 전용헬기 운영지원(321)	"	116	126
응급의료기관 지원(II-2-재정③)			
① 응급의료기관 지원(2833)	응급의료기금	1350	1,375
▪ 응급의료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300)	"	35	37
▪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재단프로그램(303)	"	325	344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316)	"	294	298
▪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317)	"	444	443
▪ 고위험 산모·신생아지원(319)	"	141	154
▪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321)	"	111	99
응급의료기관 지원(II-2-정보화①)			
①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응급의료기금	9	9
▪ 응급의료정보망 구축(정보화)	"	9	9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응급의료종사자, 대국민(응급환자), 응급의료기관
- (이해관계집단)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종사자 등

□ 기대효과

-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중증응급환자 골든 타임 내 적정치료를 위한 체계 완비
- 선진국 수준 응급의료기관 개편으로 응급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와 중복 지원을 최소화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응급의료기관 필수 영역 충족률(%)	신규	83.9	81.9	86	전년도 법정기준 충족률(81.9%) + 최근 3년치 연평균 증가율(4.1%) = 86%	(법정기준 충족 총별 응급의료기관수/총별 응급의료기관수)×100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기관평가 결과 활용
중증응급환자 적정 시간내 최종치료 기관 도착률(%)	50.3	51.38	52.7 (잠정)	53.9	2013-2017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약 2%point씩 향상시켜 2017년 까지 6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설정 -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성과지표는 유형 분석 결과, 표준형-상향지표로서 최근 3년간 실적 평균값을 기준치로 목표치 설정 * 기준치 : 2015년 실적 52.7%(잠정치) * 목표치 : 기준치+평균 증가폭 = 52.7%+(52.7-50.3)/2 = 53.9(잠정치)	(발병 24시간 이내 환자 중 급성 심혈관 질환 2시간 이내, 허혈성 뇌졸중 3시간 이내, 중증외상 1시간 이내 내원하고 진료결과가 임원인 환자 수/발병 24시간 이내 내원한 급성심혈관, 허혈성뇌졸중, 중증외상 임원환자수) ×100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

전략
목표
II

성과목표II-4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1) 주요 내용

- 흡연 예방 및 담배규제 강화를 통한 흡연을 감소
 - 효과적인 흡연 억제를 위해 가격·비가격 정책 및 금연홍보·교육, 보건소 금연클리닉·금연상담전화 등 금연지원사업 추진
 - 정신건강증진체계 강화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 공공정신보건사업 및 사전예방적 정신건강증진정책 강화
 - 심도 있는 자살 원인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노인 등에 대한 선제적 자살예방 개입 체계 구축
 - 마약, 알코올 등 중독 피해감소를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및 예방·치료·재활 지원 강화
 -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지자체 보건소 및 하부기관(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역량을 건강증진에 집중
 - 지역주민 밀착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확산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 *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의 기능 중 진료사업을 제외하고, 금연, 절주, 신체활동 등 건강증진사업을 위주로 수행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

- 만성질환 증가와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일차의료의 새로운 모형 제시 및 시범사업 추진

□ **건강한 구강보건 인프라 환경 조성**

- 예방중심의 국민구강건강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 및 치과의료 이용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강보건 인프라 조성

성과목표 ·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국민건강증진 체감도
(관리과제) 흡연 예방 및 담배 규제 강화를 통한 흡연을 감소	- 중고등학교 흡연율(공통) - 담배반출량
(관리과제) 정신건강증진체계 강화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 시군구 자살예방 조례제정 수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서비스 효과율(공통)
(관리과제)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성과도 - 건강생활지원센터 서비스 만족도
(관리과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	- 서비스만족도 - 교육 참여율
(관리과제) 건강한 구강보건 인프라 환경 조성	- 구강보건사업 만족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국민건강증진 체감도	61.3	63.5	66.3	67.5	○ 인식조사의 특성상 수직적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 '18년까지 70점 달성을 목표로 전년 향상수준을 감안하여 매년 목표치 설정. - '13년 대비 '14년 실적 상승폭을 고려하여 '15년 및 '16년 목표치 설정	만 20세 이상 성인 10,000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 인지도, 성과도, 만족도, 참여도를 조사하여 종합점수 산출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설문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흡연 예방 및 담배 규제 강화를 통한 흡연을 감소**

- 금연정책 강화로 인한 흡연을 감소로 영업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업자와 흡연자 단체의 강력한 반발

□ **정신건강증진체계 강화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중증정신질환 중심의 정신보건의료체계, 관련 법·제도, 사회적 인식 등에 대한 개선 필요
 - 만성정신질환자 관리 및 장기입원 중심에서 정신질환 편견 해소·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전환
- 중독의 예방·관리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관련 업계 등 이해당사자 간 의견조율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합의 도출 유도

□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 진료 중심이던 보건기관의 기능을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지자체의 직속기관인 보건기관이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
- 건강생활지원센터 진료기능 제외에 대한 지역주민 이해 증진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유관 자원과 연계·협력체계 구축
 - * 의료기관 : 진료 및 상담서비스, 건강생활지원센터 :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서비스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

- 의료계는 만성질환의 적정관리 필요성에는 공감
- 다만, 진료행태의 변화와 이에 따른 보상의 적정성 등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여, 새로운 모형에 대한 의료계의 수용성 확보 필요

□ **건강한 구강보건 인프라 환경 조성**

- 지역사회 및 학교 공공 구강보건 인프라 시설 구축을 위해서는 보건소, 학교, 치과병원의 구축 의지 및 적극적인 협조 필요

전략목표 II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흡연 예방 및 담배 규제 강화를 통한 흡연을 감소(Ⅱ-4-①)

□ 추진배경 (목적)

-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고, '건강 100세 시대' 실현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환경 조성 필요
- 그 중 '흡연'은 가장 예방 가능한 제1 건강 위해요인으로, 흡연 억제를 위한 담배 규제·금연지원 정책 추진을 통해 **흡연을 감소 및 국민 건강 증진**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효과적인 흡연 억제를 위해 **가격·비가격 정책** 및 금연홍보·교육, 보건소 금연클리닉·금연상담전화 등 **금연지원사업 추진**
 -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담배 광고(후원, 판촉, 광고) 규제 단계적 추진
 -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책 조기 정착 유도**
 - 공중이용시설 금연 정착을 위한 단속 업무 체계화 및 정부 - 지자체 합동단속 강화(2회), 지역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전파
 - '담배 폐해'에 대한 직접적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여 흡연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금연 광고 추진
 -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금연길라잡이, 학교흡연예방 교육의 효율화, 내실화 추진
- 학교흡연사업 추진을 통한 **청소년 흡연 예방 사업 추진**

전략
목표
II

- 전체 초·중·고등학교 대상(11,000여개교) 학교흡연예방 프로그램 진행
- 지역사회(보건소 등) 연계하여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청소년 흡연예방 추진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FCFC 영향 평가 실시	'16.3월	
	경고그림 시안 10종 발표	'16.3월	
2/4분기	금연구역 지자체 합동 점검	상반기 2회	
	금연홍보 및 캠페인 사업자 선정	'16.4월	
	금연홍보 캠페인(금연의 날 행사 진행)	'16.5월	
3/4분기	경고그림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16.6월	
	금연홍보 캠페인(옥외캠페인)	'16.8월	
	금연홍보 캠페인(금연서포터즈)	'16.9월	
4/4분기	금연구역 지자체 합동 점검	하반기 2회	
	금연환경 조성 우수사례발굴 확산	'16.12월	
	경고그림 시행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 청소년 등 비흡연자를 포함한 일반국민
- **(이해관계집단)** 업연초 생산농가, 담배제조회사 및 담배소매인, 관련부처

□ 기대효과

- 흡연 인구의 유입을 억제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함으로써 흡연을 감소, 국민 건강 증진 및 사회적 비용 경감
-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제도 조기 정착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금연사업(Ⅲ-2-일반재정④)				
①	금연사업(3335)	기금	1,475 (1,475)	1,632 (1,632)
	▪ 국가금연지원서비스(301)		1,475	1,365
	▪ WHO FCTC국제분담금(304)		-	26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중고등학교 흡연율 (공통) (%)	(신규) 9.2	7.8	7.8	7.8	'15년 청소년흡연율은 7.8%로 HP2020의 청소년 흡연율 목표 지수인 남학생(12%), 여학생(6%)를 달성하였으나, 현재 신종담배 등의 출현에 청소년들이 새롭게 노출되는 환경 등을 고려, 현재 청소년 흡연율인 7.8%를 유지하는 것으로 산출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표본수 : 중·고 각 400개교 1,200개 학급(학년별 1개학급)
담배반출량 (백만갑)	4,340	4,563	3,115	3,300	05년 담뱃값 인상시 반출량이 3,943백만갑에서 06년에는 반출량이 4,281백만갑으로 반등(8.6%↑)함에 따라 15년 3,115백만갑에 8.6%반등분을 반영하면 3,380백만갑으로 3,300백만갑은 보다 높은 목표 수치 설정(5.9%↑)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징수 결정내역	부담금 정수내역

전략
목표
II

② 정신건강증진체계 강화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Ⅱ-4②)

□ 추진배경 (목적)

- 주요 정신질환의 유병률이 '06년 12.6%에서 '11년 14.4%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정신질환 추정자 수도 128만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필요

* WHO는 '04년 전 세계 질병부담의 13%를 정신질환이 차지하고 있으며, '30년 우울증이 고소득 국가 질병부담 1위 질환이 될 것으로 전망

- '14년 한국의 자살사망률은 표준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12년 시행)에 근거한 자살예방 정책 추진

* '14년부터 '18년까지 우리나라 자살률을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춘다면 연간 최대 1조 6천억원의 편익 예상(국회예산정책처)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자살고위험군 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 자살시도자, 취약계층 독거노인, 자살유가족 등 자살 취약계층 관리 체계 구축(1월~)
- 생명존중 문화 조성 : 맞춤형 자살예방 홍보 콘텐츠 개발, 전국민 참여형 자살예방 캠페인 진행, 자살예방 교육 강화(1월~)
- 심리부검 체계 구축 : 자살에 이르는 구체적 원인을 분석하여 근거기반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심리부검 수행(3월~)

- 정신질환 조기발견, 상담, 치료연계 등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해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신설 및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연중)**

* 정신건강증진센터 개소 수 : 224개소('15) → 225개소('16)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 광주광역시, 46억원('16년, 국비)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	'16.1월	
	심리적부검체계구축 사업 수행	'16.2월	
	지역사회기반 노인자살예방사업 수행	'16.3월	
	신규 노인돌봄미 자살예방 교육	'16.4월	
3/4분기	자살예방 공익 광고 송출	'16.8월	
	자살예방의날 주간 행사	'16.9월	
4/4분기	24시간 자살위기 긴급전화 129 위기대응팀 자살예방 역량강화 교육	'16.11월	
	2016년도 자살예방사업 실적 보고 및 2017년도 추진계획 수립	'16.12월	

전략
목표
II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정신질환자 등을 포함한 일반국민
- (이해관계자) 자살시도자, 정신질환자,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시설 등

□ 기대효과

-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정신건강문제로 인한 개인의 삶의 질 저하 예방**

-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전국민 참여형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과 지역사회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를 통해 **자살률 감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건강증진체계 강화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III-4-일반재정②)			
① 정신보건시설 확충(3633)	국민건강증진기금	441	447
		(441)	(447)
▪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300)		441	44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시군구 자살예방 조례제정 수	신규	6	13	13	'15년에 계획(10개)대비 130% 달성함에 따라 '16년에도 '15년도 실적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기초자치단체 조례제정 수	지방자치단체 공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서비스 효과율(공동)	39.6	71	48.1	52.9	최근 3년치('13~'15)의 평균치로 목표치 설정	r(초기 심층사정평가 당시 SDQ-Kr 점수 - 6개월 이후 SDQ-Kr 점수)가 호진된 아동청소년 수 / 심층사정평가 수행 이후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된 아동청소년 수*100		

③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II-4-③)

□ 추진배경 (목적)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목표인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국 3,495개 **지역보건기관의 건강증진 역량 강화 필요**

○ 보건소가 **지역 건강문제 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역보건법 전부개정 완료**

※ '15. 5 국회 통과, '15.11.19. 시행

○ 취약인구 집중 지역의 경우, 공공보건사업은 보건소 1개소만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취약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서비스 수요 충족에 미흡**

- 취약지역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건강관리 전담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필요**

* 사업추진의 근거(법령·규정·지침) 또는 환경변화 등에 따른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적 제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보건기관이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기반의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추진 체계 마련**

- **지역사회 단위의 전략적 건강증진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책임성있는 사업 수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보건기관 정보시스템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종합분석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건강증진 현황 분석 지원

○ **ICT를 활용한 보건기관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전략 마련**

- **만성질환 위험군 대상으로 첨단 ICT를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추진으로 보건소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모형 구축

○ 보건기관의 특성과 업무역할에 맞춘 **전문성과 업무추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급별 교육과정 개설·운영

○ 중앙정부와 지역 보건기관 간 정책공유, 의견수렴, 컨설팅 등 **양방향 소통 강화**로 지역보건기관 건강증진 역량 제고

-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건강증진 성과 공유, 우수사례 확산** 등 온·오프라인 의사소통 확대

○ 취약지역의 지역밀착형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전담기관으로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추진**

-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건축·설비비 및 보건 의료장비·차량에 대한 국고 지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설계, 의료장비 기술지원 강화**

-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 추진**

○ 주민 참여와 사업 확산을 위한 **우수 사례 발굴 및 전파**

- 사업추진 전략 및 우수사례 공유, 지자체 간담회 등 개최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 사업분야별 안내서 통보	'16.3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16.3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관리체계 개선 TF 구성·운영	'16.1~6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시도담당자 및 지원단 1분기 워크샵	'16.3월	
2/4분기	보건기관 직급별 교육과정 개설·운영	'16.4월~10월	
	보건기관 통합성과대회 개최	'16.5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설명회	'16.5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참여보건소 선정	'16.6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매뉴얼 제작 및 배포	'16.6월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지침 설명회	'16.6월	
3/4분기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16.7월	
	건강생활지원센터 역량강화교육과정 개설·운영	'16.7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담당 인력 교육 및 플랫폼 구축	'16.8월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위한 사업 대상기관 선정 평가	'16.9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매뉴얼 개정 및 배포	'16.10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설명회	'16.10월		
4/4분기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적절성 검토를 위한 현지조사	'16.10월~11월	
	건강생활지원센터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16.12월	
	건강생활지원센터 서비스 만족도 조사	'16.11월~'16.12월	
	'1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워크샵	'16.12월	
	'16년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현황 평가 및 체감도조사	'16.12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실시	'16.9~12월		

전략
목표
II

○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자원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활동의 거점 기능 수행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5	'16
보건소건강증진(III-2-일반재정②)			
① 보건소건강증진(3333)	국민건강 증진기금	1,006 (1,098)	854 (919)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300)		1,006	854
공공보건의료기반구축(II-1-일반재정④)			
② 공공보건의료기반구축(2735)	국민건강 증진기금	30 (30)	40 (40)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300)		30	4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성과도	66.0	68.0	70.1	72.0	○ '18년까지 75점 달성을 목표로 전년 향상수준을 감안하여 매년 목표치 설정. - '13년부터 실적 상승폭을 고려하여 '15년 및 '16년 목표치 설정 * ('13년) 66.0, ('14) 68.0, ('15년) 70.3'14년 성과도 향상점수(2.0점)를 감안하여 2.1점 향상된 70.1점을 목표로 설정	지역 보건기관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주관적 평가, 사업참여에 따른 건강개선 정도를 대국민 표본조사로 점수화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설문조사
건강생활지원센터 서비스 만족도	91.0	91.5	92.7	93.1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외부리서치기관 설문 조사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전 국민
- (이해관계집단) 전국 지역보건기관 및 유관 기관(교육청, 건강보험공단, 사업장 등) ·전문가 단체(관련 학회, 민간단체 등)
* 정책 · 사업의 수혜자와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기대효과

-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기관의 건강증진 역량 향상으로 체감도 높은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 구축

4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II-4④)

□ 추진배경 (목적)

- 만성질환 증가와 인구고령화에 따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예방 관리체계 필요성 증대**
- 기존 치료중심의 행위별 보상체제로 이루어져 왔던 **일차의료에 예방·상담이 추가되는 새로운 모형 제시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새로운 일차의료체계 모형 시범사업 실시**
 - 만성질환자에 대한 질환상담 및 건강관리상담 등 맞춤 서비스 제공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일차의료 시범사업 2분기 재등록 사업	'16.3월	
2/4분기	일차의료 시범사업 개선 모형 개발	'16.6월	
3/4분기	일차의료 시범사업 공청회	'16.9월	
4/4분기	일차의료 시범사업 평가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지역사회 내 만성질환자
- (이해관계집단)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 및 단체

□ 기대효과

-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모형 제시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1차 의료 활성화(III-10-일반재정③)			
① 1차의료 활성화(4335)	일반회계	7.3	5.1
▪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300)	일반회계	7.3	5.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서비스만족도(공통)	-	80	76.9	78	시범사업 초기 기간('15) 만족도 목표치와 실적 고려, 3차년도는 '15년도 실적치에 대비하여 만족도 목표치 상향 조정 * '14년 실적은 단기간(2개월) 실적 으로 목표치 산정에 반영 곤란	서비스 이용자 등 대상 설문지 작성	설문조사	
교육 참여율	-	-	-	75	전산시스템에서 산출된 전년도 실적과 2주기 재등록 사업 개시 등 사업 변동 사항을 고려하여 목표 산정	상담·교육 서비스에 참여한 환자/전체 등록 환자	전산시스템 산출	

전략
목표
II

5 건강안 구강보전 인프라 환경 조성(Ⅱ-4-5)

□ 추진배경 (목적)

- 예방중심의 국민구강건강 사업의 보다 효과적인 수행 및 치과 의료 이용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강보전 인프라 조성으로 국민구강 건강 향상 도모

*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구강보전 중점과제에 포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역사회 주민 구강건강증진 사업 수행기반 구축
 -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과 주민대상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증진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지속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장애인 치과의료 접근성 강화
 -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진료비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치과의료이용 기회 확대
- 아동·청소년 건강안 구강보전 환경 조성
 - 아동, 학부모, 교사대상 아동바른양치 실천 공모전 시행으로 구강건강의 중요성 확산
- 구강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 구강건강을 개선하고 바른 구강건강 실천 행태를 정착시키기 위한 치아우식 예방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전략
목표
II

- 효율적인 구강보전사업수행을 위한 '구강보전사업기본계획 수립'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구강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학교 구강보전사업, 노인·장애인·임산부·영유아 구강보전사업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 '구강보전의 날' 행사 실시

- '구강보전의 날(6.9)'이 구강보전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첫해가 되는 '16년도에 구강보전의 날 도입 취지를 감안해 뜻 깊은 행사 진행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16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구강보건분야 지침 개정 및 배부	'16.1월	
	'17년 구강보전 인프라 구축시설 지자체 수요조사	'16.3~4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16.3~4월	
2/4분기	'16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장 점검	'16.4월	
	아동구강보건실태조사('15) 결과 공표	'16.6월	
3/4분기	'16년 구강보전의 날 행사	'16.6월	
	'16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조사	'16.7~12월	
	'16년 보건소 구강보전사업 만족도조사	'16.7~12월	
4/4분기	구강보전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16.9~10월	
	'16년 구강보전인프라시설 설치 현장 점검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지역주민, 취약계층(아동, 노인, 장애인 등)
- (이해관계집단) 지자체(시도, 보건소), 학교(초등학교, 특수학교),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치과의료기관, 장애인협회, 치과의료인력 등

□ 기대효과

-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구강건강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양질의 구강관리 서비스 제공
- 사전예방적 구강건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 및 사회계층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저소득층의 구강건강 수준 및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치과의료 체계화(III-10-일반재정⑥)			
① 치과의료체계화(4343)	일반회계	22 (15)	16 (16)
▪장애인구강진료센터(302)		15	16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303)		7	-
보건소 건강증진(III-2-일반재정②)			
② 보건소건강증진(3333)	기금	(92)	(64)
▪구강건강관리(301)		92	6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구강보건 사업만족도	신규	신규	82.6	83	타 유사사업의 만족도를 감안하여 지표 목표치를 '15년 신규 지표 설정(80점)하였으며, 연차별로 목표치 상향 설정 *타유사사업: (활동지원 급여이용자 만족도 82점	보건소 구강보건 사업만족도 (사업수혜자 만족도(0.8)+공급자 만족도(0.2))(×0.7)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한 장애인의 사업만족도(×0.3)]	만족도 설문조사

성과목표II-5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1) 주요 내용

□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체계적 지원을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건전화를 통한 국제 신뢰도 제고, 유치 채널 다양화 및 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 기반 마련

□ 한국의료의 글로벌 진출강화

- 의료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간 협력강화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 구축
- 의료기관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역량 제고를 통한 기술적 경쟁력 제고
- 글로벌 임상시험 인프라 강화, 보건의료 분야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등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

□ 전략적 보건의료(HT) R&D 강화

- 보건의료 분야 R&D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개발 성과를 창출하고 의료현장 적용 및 산업화 촉진
- 유전체,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차세대 원천기술 및 고부가가치 가능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추진

전략
목표
II

□ **효율적 인체자원 관리**

- 생명윤리 기반 위에 보건의료 기술혁신에 따른 환경변화 및 현장수요를 고려한 제도개선 추진
- 장기, 인체조직 등 기증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보건산업육성 추진 성과 달성도(%)	-	-	-	100	성과목표내의 단위사업 중 사업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지수화	(외국인환자 유치 목표 달성률*25%)+(의료기관 해외진출 목표 달성률*25%)+(보건의료 연구개발 성과 달성률*20%)+(제약산업 수출액 증가 목표 달성률*15%)+인체자원 제도개선 목표 달성률*15%)	단위사업별 성과 목표 측정

전략
목표
II

- 바이오헬스산업은 성장둔화에 접어든 우리경제를 견인할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 중이나, 국가경쟁력 강화가 관건
 - 바이오헬스 산업 시장 선점 및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지원 및 규제개선 필요

□ **외국인환자 지원체계 강화 및 유치시장 건전성 제고 필요**

- 외국인환자 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중·장기적 종합계획 마련 필요

□ **한미 FTA 발효,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리베이트 쌍벌제('10.11)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약가인하('11.08)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직면**

- 제약산업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내수시장 위주의 영업방식에서 탈피,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 및 글로벌 시장진출이 필요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바이오기술 혁신에 따라 바이오헬스산업이 급성장할 전망이며, 신시장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전 세계가 주목

- * OECD는 바이오기술이 2030년에 전세계 GDP의 2.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 헬스산업, 향후 10년간 전세계 신규 부가가치 창출액의 40% 예상 (Bain & Co)
- * 전세계 헬스케어 시장은 1경('12년)으로, ICT(3.8천조원) 및 자동차(1.8천조원)를 합한 것보다 큰 규모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II-5-①)

□ 추진배경 (목적)

- 적극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09년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이후로, '15년 상반기 누적 100만명 달성
 -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의료통역사 등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 지속적인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유치시장 건전화 및 투명화 노력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법적 지원체계 완비 및 안정적 제도화
 -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시행('16.4~'17.3월)
 - 의료 해외진출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및 시행(6월)
 -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외국어 의료광고, 의료해외진출 신고,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6월) 및 인천공항 내 외국어 의료광고 사례 창출(7월)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5개년 종합계획 마련(10월)

전략
목표
II

○ 외국인환자 서비스 향상 및 만족도 제고

- 외국인환자 종합 지원 창구 개설·운영(명동, 91평 규모, 2월 개소식)
 - 한국의료 건강검진 안내 및 예약시스템 구축(1/4분기, 1차 오픈)
 - * 유형별 한국의료 건강검진 프로그램 분류·검색·예약기능 제공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시범평가 실시(상반기), 본격 평가(3/4분기)
- 시장질서의 건전화 및 글로벌 인지도 확대
- 외국인환자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반기별),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배상공제조합) 가입의무화(6월)
 - 의료통역 검정제도 수립 및 검정 실시(10월)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 개설·운영	'16.2월	
	한국의료 건강검진 예약시스템 구축	'16.2월	
2/4분기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실시	'16.4월	
	'의료 해외진출법' 하위법령 마련 및 시행	'16.6월	
3/4분기	'의료 해외진출법'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16.7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실시	'16.9월	
4/4분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5개년 종합계획 마련	'16.10월	
	의료통역 검정제도 수립 및 검정 실시	'16.10월	
	'Medical Korea 2016' 국제 컨퍼런스 개최	'16.10월	
	외국인환자 만족도 조사 실시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의료기관, 유치업체) 및 전국민

□ 기대효과

-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국내 의료수준의 해외홍보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 및 국익 향상**

- '16년 40만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생산유발 5조 6천억, 부가가치 유발 2조 3천억, 4만 2,882명의 고용창출**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5	'16
글로벌헬스케어 육성(I-1-일반재정 ²⁾ ²⁾			
①글로벌헬스케어 육성(3037)		139	
▪ 해외환자 유치 지원(300)		56	8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외국인환자 유치 수 (만명) (공통)	21	26.7	27.8	40	(‘13~‘15년) 연평균증가율 23.1%를 감안하여 전년 대비 12만명(25%) 증가한 40만명으로 도전적 목표치 설정 * ‘15년의 경우 메르스 등 외부 변수에 따라 목표치 32만명에 미달추정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의 유치 실적 합계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의 보고자료

전략
목표
II

② 한국의료의 글로벌 진출 강화(II-5-②)

□ 추진배경 (목적)

- 바이오헬스 7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제의료사업의 종합적 육성 및 안정적 제도화 기틀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의료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간 협력강화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 구축
- 지역별 맞춤형 특화전략을 통해 진출지역 다변화 및 진출분야 다양화
 - '16년 의료기관 진출 목표(155개) 달성 및 제약·의료기기·의료IT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진출*을 통한 연관산업 간 시너지 효과 창출
 - * 의료서비스(의료기술, 의료IT 건보 등)와 제조(건설, 제약, 의료기기 등)를 융합한 한국형 의료패키지 성공사례 창출
- 국제의료사업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밀착 지원으로 해외진출 촉진**
 - 의료 해외진출법상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규정 신설을 계기로 진출 **의료기관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 KMH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컨설팅 상시 지원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민관협업체 분과회의 개최	'16.1월	
	고위급 보건의료협력 중동방문	'16.2월	
2/4분기	이란 정상순방 계기, MOU 체결 등 한-이란 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	'16.5월	
	쿠웨이트 보건부 대표단 방한 계기, 한-쿠웨이트 환자송출 MOU 체결 등 한-쿠웨이트 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	'16.5월	
	아프리카프랑스 정상순방 계기,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16.6월	
3/4분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법」 설명회 개최	'16.7월	
	한-중동지역(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16.8월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사업(GHKOL) 시스템 오픈	'16.8월	
	의료시스템 PPP 진출 활성화 세미나 개최	'16.8월	
4/4분기	정책심의회위원회 개최	'16.9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5개년 종합계획 마련	'16.10월	
	'Medical Korea 2016' 국제 컨퍼런스 개최	'16.10월	
	'16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통계 작성	'16.12월	

전략
목표
II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해외 진출 의료기관, 제약·의료기기업체, 전국민
- (이해관계자) 진출(추진) 의료기관, 제약업체, 의료기기업체 등

□ 기대효과

- '15년 VIP 순방 후속조치 철저 이행 및 '16년 의료기관 해외 진출 목표(155개) 달성 및 진출 분야·지역 다양화
- 의료기관 진출, 외국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통한 한국 제약·의료기기 기업 진출 확대로 국부창출 및 일자리 확대

* '20년 약 1조3천억원까지(누적) 생산유발액이 증가하여, 두 배로 증가 예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글로벌헬스케어 육성(II-3-일반재정⑥)			
① 글로벌헬스케어 육성(3037)		81	91
		(139)	(178)
▪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301)	일반회계	81	9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의료기관 진출 수 (공통)	111	125	141	155	'15년 의료기관 조사결과 및 '20년 200개 의료기관 진출 목표달성을 위한 추세를 감안하여 설정	실태조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실태조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③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II-5-③)

□ 추진배경 (목적)

-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는 19.37 조원('14년 기준)으로 세계인구 고령화와 새로운 의료기술 출현 등으로 지속적인 시장 확대 전망
 -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으로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 의약품 시장의 지속적인 고성장 전망
 - * 파머징 국가(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2,492억 달러(11.9% 성장, '10~'15), '20년 3,450~3,750억 달러 전망(7~10% 성장 전망, '16~'20) (IMS Health)
 -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1,790억 달러 규모('14년 기준)로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15%('07) → 18%('11) → 23%('14)로 지속적인 성장 추세
 - * 100대 의약품 중 바이오의약품 비중 : 21%('06) → 44%('14) → 46%('20) (Evaluate Pharma 2015)
 - * 세계 10대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 1개('00) → 7개('13) : 휴미라(1위, 93억불), 레미케이드(2위, 82억불 등)

<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 현황 >

(단위 : 억달러,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연평균 성장률
세계시장	1,270	1,410	1,520	1,650	1,790	9.1
국내시장	15.2	14.6	17.6	20.3	18.8	16.06

* 출처 : 'EvaluatePharma의 World preview 2015, Outlook to 2020'

- 국내 제약사들은 신약개발보다 제네릭 생산에 치중해왔으나,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으로 R&D 투자 확대(1조 177억원, '14년 기준)등 변화 추세

- * 혁신형 제약기업 R&D 투자액 및 비율 : 8,633억 원(11.7%)('12) → 9,370억 원(12.1%)('13) → 1조 177억 원(12.4%)('14)
- 혁신형 제약기업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선진국 임상 시험 확대 → 향후 글로벌 제품이 지속 출시 기대
 - * 미국 24건, 유럽 17건, 기타국가 23건(멕시코, 베트남, 인도, 중국, 호주 등)
- 최근 고부가가치 국내 신약기술을 해외에 대규모로 수출하는 해외진출 성과 사례 증가
 - * '15년 제약기업의 해외 기술수출 총 26건으로 계약 규모 9조 3,065억 원(비공개 8건 불포함)
- 한미 FTA·약가제도 등 외부 환경 변화 및 해외진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약산업 육성 지원 필요
 - 해외시장 진출, 신약 R&D 투자 확대를 통해 '17년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 추진
 - * 해외수출시장 점유율(국내수출/전세계수출) : ('11) 0.45% → ('17) 2.14%

전략목표 II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

- 제약기업의 R&D 활성화 및 해외진출 확대 등 신약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형 제약기업 추가 인증 시행, '16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
 -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2년마다 시행, '12년 인증(43개사), '14년 추가인증 실시(5개사)

<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

- 신약개발 및 수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학위과정(석사급) 운영으로 특성화 전문인력 양성 확대

○ **해외계약전문가**(진흥원 상임 컨설턴트, GPKOL) 초빙을 통한 교육, 컨설팅, 비즈니스 미팅, 온·오프라인 기업자문을 통하여 효율적인 글로벌 진출을 위한 신약개발 역량강화 및 해외투자 확대

- **한-중 FTA**, 수출증가율 둔화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중국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한 **중국지역 제약 전문가 초빙**

* (진흥원 상임 컨설턴트) 16년 중국지역 전문가 포함 8명 초빙예정

- **GPKOL** 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컨설팅 및 정보제공 활성화**

* '16년 GPKOL 국제심포지엄 개최 (1회), GPKOL 온라인 자문(60건), GPKOL 기고문 게재 (60건) 목표

< 제약산업 정보포털 >

○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Virtual 수출지원센터'** 내 **수출 전략국별 콘텐츠 강화 개편 및 영문 홈페이지 신규 구축**

* 누적 정보구축건수 40,857건, 누적 정보제공(페이지뷰) 건수 4,657,717건 ('15.12.31기준)

< 블록버스터급 신약개발을 위한 R&D 지원 강화 >

○ **미래 제약·바이오 10대 특화지원을** 통해 글로벌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한국형 전문제약기업 성공모델 도출 및 전주기적 R&D 지원**

* '16년도 총 2개 과제에 대하여 20억원 지원 예정(6월)

○ 국제적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블록버스터급 신약개발** 및 해외진출 등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 지원**

* '16년도 총 8개 과제에 대하여 26.95억원 지원(4월)

전략
목표
II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2016년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사업평가	'16.2월	
	- 해외계약전문가 초빙 및 GPKOL위원 선정평가	'16.3월	
	- GPKOL 국제 심포지엄 및 비즈니스 미팅	'16.3월	
	-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신규과제 선정평가	'16.3월	
2/4분기	- 제 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 개최	'16.4~5월	
	- 2016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	'16.5월	
	- 제약산업 정보포털 위탁용역 발주 및 위탁사업자 선정	'16.4월	
	- '16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계획 공고	'16.4월	
	- 미래 제약바이오 10대 특화 유망지원 계속과제 연차평가	'16.5월	
	- 제 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 개최	'16.6월	
	- '16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	'16.6월	
	- 해외계약전문가 2016년도 상반기 성과평가	'16.6월	
3/4분기	- 해외계약전문가 초빙 및 GPKOL위원 선정평가	'16.6월	
	-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중간보고	'16.9월	
4/4분기	- 제약산업 정보포털 영문홈페이지 오픈	'16.11월	
	-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국고보조금 집행점검	'16.11월	
	-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결과보고	'16.12월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고도화 연구	'16.12월	
	- 혁신형 제약기업 정부포상	'16.12월	
	-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 신규과제 연차평가	'16.12월	
	- 해외계약전문가 2016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내 제약기업 및 기업 종사자, 취업 예정자, 국민

○ **(이해관계자)** 국내 제약기업 및 다국적 제약기업, 관련 협회

* 정책·사업의 수혜자와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기대효과

- 2017년 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및 해외 진출 확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5	'16
보건산업육성지원(II-6-일반재정①)			
① 보건산업진흥(3039) ³⁾	일반회계	619	333
▪ 제약산업 육성지원(300)	일반회계	94	91
보건의료연구개발 R&D(II-3-R&D①)			
① 보건의료연구개발(R&D)(3031)	국민건강증진기금	224,4	215,3
▪ 첨단의료기술개발(R&D) (305)	국민건강증진기금	79,1	73,6
제약산업특화지원-출연금		65	6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인종기업의 R&D 비율(%)	12.1	12.4	13.3	13.7	2015년 실적치(13.3%)에서 R&D 투자금 연평균 성장률 6.92%를 적용한 결과 2016년 목표치를 13.7%로 설정	$(\sum \text{의약품 연구개발비}) / (\sum \text{의약품 매출액}) * 100$	상장제약사의 각 연도별 분기보고서(3/4분기) 중 혁신형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실적치 제시
제약산업 수출액 증가율(%)	-	-	9.4	11	과거 3개년('12년~'15년) 국내 제약기업 완제의약품 수출액의 연평균 증가율(10.7%)을 반영하여 목표치를 11%로 설정	$(\text{당해년도 완제의약품 수출액} - \text{전년도 완제의약품 수출액}) / \text{전년도 완제의약품 수출액} * 100$	의약품수출입협회 공시자료 중 완제의약품 수출 통계자료 * 2015년 자료 : 연평균성장률 적용한 예측치

전략
목표
II

④ 전략적 보건의료(HT) R&D 강화 (II-5-④)

□ 추진배경 (목적)

- 세계 주요국들은 보건의료를 지속가능한 신성장분야로 인식, 중장기적 계획 추진으로 전략적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 * 정부전체 대비 보건의료 R&D 비중 : (美)22.5%, (EU)25.2%, (英)18.0%, (日)8.4%, (한국)7.1%
- 희귀·난치 질환 등 주요 질환 극복과 신·변종 감염병 대응 등 건강수준 향상과 안전사회 구축 필요에 대한 국민요구 증가
- 전략적 보건의료 R&D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기술 발전을 통해 보건산업 육성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전략적 R&D 투자 기반 마련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13~'17)」 실행을 위한 7개 부처 합동 '16년도 시행계획 수립(7월)
 - 성과중심 보건의료 R&D로의 전환 및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건복지부 R&D 관리기관 성과평가 시범실시(7월)

-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고부가가치 가능 분야 집중 투자

< 정밀의료 >

- 정밀의료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유전체 의학, 모바일 헬스케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융복합 정밀의료 종합 추진계획 마련**('16.하반기)

* 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국내 다부처·민관협력 R&D 사업 및 한·미 협력 R&D 사업 기획('16.하반기)

< 유전체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

- 복합유전자질환, 약물유전체 분야 **맞춤형 진단·치료법 개발을 위한 중개연구 및 인간유전체 이행연구 체계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 연구 지원
-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 유전자 발굴을 위한 **유전체 정보 분석 소프트웨어 등 분석 플랫폼 국산화** 지원
- 첨단바이오의약품(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의 후보물질 발굴 및 국내외 임상시험 지원

< 신약 >

-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비임상·임상지원** 등 투자 확대(계속)
 - * 표적 항암제, 백혈병·간질·치매 치료제, 당뇨병·관절염 등 만성질환 치료제
- 기초연구성과의 제품화 단절현상 해소와 **신약개발 R&D의 제품화 가속화를 위한 공동연구개발** 등 지원(계속)
- 신약개발기간과 비용단축을 통한 성공률 증대를 위한 바이오 이미징 융합기술개발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계속)

< 중개연구 >

- **질병지향적(Disease-oriented research)이고 임상적용 목적의 창의적 중개연구** 지원
 - * 질병중심 중개중점연구(4월), 질병중심 중개기반연구(7월) 지원 및 중개기반 연구 우수 종료과제의 연계지원(계속)
- **임상의과학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지원
 - * ‘한-영 보건의료기술교류사업’ 지원(계속), ‘한-미 보건의료인력교류사업’ 지원(계속)으로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중장기적 R&D 협력관계 구축

< 선도형특성화연구 >

- 연구개발의 사업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임상진입을 핵심목표로 하는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II단계 진입
 - * 경북대학교병원 「선도형 당뇨병 및 대상성질환 신약개발 연구사업단」 II 단계 지원(4월)

< 감염병위기대응연구 >

- 신·변종 감염병 등 국가위기상황에서의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지속적·장기적 투자 확대
 -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등 정부의 정책적 수요와 중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추진(4월)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신약개발지원 과제공고	'16.1월	
	질환극복기술개발 및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신규지원 과제 공고	'16.1월	
	정밀의료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16.3월~	
2/4분기	신약개발지원 공모과제 선정·지원	'16.4월	
	범부처신약개발단 협약 체결	'16.4월	
	질환극복기술개발 및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신규지원 협약 체결	'16.4월	
	선도형특성화연구지원사업 II단계 협약 체결	'16.4월	
3/4분기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신규과제 공모·선정	'16.4월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 계속과제 중간평가 실시	'16.7월	
4/4분기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16년도 시행계획 수립	'16.7월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하반기 계속과제 중간평가 실시	'16.11월	
	한·미 정밀의료 심포지엄 개최 및 추진계획 발표	'16.11월	

전략목표 II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산·학·연 소속 연구자, 연구기관, 기업, 병원 등
- (이해관계자) 산·학·연 소속 연구자, 연구기관, 기업, 병원 등

□ 기대효과

-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는 HT R&D 투자를 활성화를 통해 기술개발 성과를 창출하고 보건의료기술의 의료 현장 적용 및 산업화 촉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15	'16
보건의료연구개발 R&D(II-3-R&D①)			
① 보건의료연구개발(R&D)(3031)	국민건강 증진기금	212,756 (224,340)	193,664 (215,292)
▪질환극복기술개발(R&D)(300)		87,417	81,192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R&D)(301)		19,500	11,500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R&D)(304)		26,800	27,318
▪첨단의료기술개발(R&D)(305)		79,039	73,654
보건의료연구개발 R&D(II-3-R&D②)			
① 보건의료연구개발(3031)	일반회계	85,050 (103,485)	86,987 (113,237)
▪임상연구인프라조성(R&D)(302)		42,930	52,010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R&D)(307)		8,460	-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R&D)(308)		8,700	10,000
▪보건의료서비스(R&D)(313)		3,000	2,921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R&D)(317)		13,460	15,806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진출사업(R&D)(321)		7,500	6,250
▪질환유전자분석플랫폼기술개발(R&D)(322)		1,000	-

전략
목표
II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보건의료 연구개발 성과율(%) (공통)	신규	신규	신규	100%	'16년도 논문과 특허성과 측정 시 질적 성과지표를 도입 (미래부 권고사항)하고, 성과 목표치는 국가 R&D 표준치* 보다 높게 설정 * ① 논문의 표준화된 순위 보정 영향력지수 : 60, ② : [[Σ논문 표준화된 순위 특허 SMART등급 : 4.7 ** ① 논문의 표준화된 순위 보정 영향력지수 : 58.85, ② 특허 SMART등급 : 4.64	①논문의 표준화된 순위 보정 영향력지수 달성율 × 0.5)+(②특허 SMART 등급 달성율 × 0.5) ①논문의 표준화된 순위 보정 영향력지수 달성율 : [[Σ논문 표준화된 순위 보정 영향력지수/Σ논문 SCI 발표건수(JCR 활용)]/60] × 100% *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의료기기기술개발사업,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②특허 SMART등급 달성율: [[Σ등록 특허 SMART / Σ특허등록건수]/4.7] × 100% *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의료기기기술개발사업,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NTIS 제출 기준

5 효율적 인체자원 관리(II-5-5)

□ 추진배경 (목적)

- 첨단의료기술 개발, 인체자원 활용 연구 수요의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부족으로 장기 이식대기자 증가, 인체 조직 수입 문제가 지속되어 기증 활성화 필요
 - * 장기등 이식대기자 수(명) : ('10) 18,189 → ('15) 27,112
 - * 인체조직 생산(수입비율)현황 : ('09) 56,333개(75%) → ('14) 96,200개(75%)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생명윤리 기반 위에 보건의료 기술혁신에 따른 환경변화 및 현장 수요를 고려한 제도개선 추진
 - (효율적 인체자원 관리 제도개선) 생명윤리법, 장기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16년 4건 목표)
- ①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수적인 코호트 연구 등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 활성화(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
- ② 국제적 의학추세를 반영, 간장이식대상자 세부 선정기준을 개선하여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장기법 시행령 개정)
- ③ 공공조직은행 지정·운영 등 세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인체조직 이식재 공공성 강화(인체조직법 시행규칙 개정)

전략
목표
II

- ④ 현장수요를 반영, 해부가능자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의술·의학 발전 도모 및 기증자 예우 근거 등을 마련하여 시신 기증 활성화(시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뇌사장기기증자 수) 장기구득기관 및 조직기증지원기관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한 기증 활성화 추진 ('16년 480명 목표)
 - * <관련예산현황> (장기구득기관 운영지원) '16년 65억원, (조직기증지원기관 운영지원) '16년 39억원, (장기 및 인체조직 홍보) '16년 25억원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장기이식정보시스템 정보입력보완(간장이식대기자 선정기준 개선)	'16.3월	
2/4분기	· 해부 관련 전문가 자문(시체해부 자격기준 개선)	'16.4~5월	
	· 인체조직법 시행규칙 개정(공공조직은행 지정·운영 등)	'16.6월	
	· 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간장이식대기자 선정기준 개선)	'16.6월	
	· 연구자 및 전문가 의견조회(코호트 연구자 등 개인정보 활용)	'16.6월	
3/4분기	· 시체해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체해부 자격기준 개선 등)	'16.8월	
	·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코호트 연구자 등 개인정보 활용)	'16.9월	
	· 간장이식대기자 선정기준 개선효과 검토	'16.11월	
4/4분기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집중 홍보	'16.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장기·인체조직 등 이식대기자 및 기증자, 관련 연구자
- (이해관계자) 장기이식 병원, 인체자원 활용 연구자, 국민 등

□ 기대효과

- 인체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관리의 공공성 강화 및 연구 활성화 촉진
- 장기·인체조직 등 이식대기자에게 필요한 장기·조직 등 공급을 통해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5	'16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지원(II-1-일반재정②)			
①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지원(2731)	일반	163 (163)	167 (167)
▪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관리(305)	일반	47	43
▪ 장기 및 인체조직관리(정보화)(500)	일반	4	4
▪ 장기구득기관운영지원(302)	일반	59	61
▪ 인체조직기증활성화지원(303)	일반	53	59

전략
목표
II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인체자원 관리 제도 개선 (공통)	신규		4건	인체자원 관리 제도개선 건수 -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완료건수	개정안 마련 (×0.3)+규제심사 (×0.2)+법제처심사 (×0.3)+개정공포 (×0.2)	하위 법령 등 공포 또는 시행문서	
뇌사장기기증자 수 (공통)	416	446	501	480	뇌사자 사망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뇌혈관 질환 및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여 장기기증 가능한 뇌사자 자체가 감소하는 등 부정적 외부변수가 발생하였으나, 최근 3년간 실적 평균(454명) 대비 480명으로 상향하여 '16년도 목표치 설정(5.7% 상향) * '15년 신규 인력 충원, ISODP(세계 장기기증 및 구득학회) 개최, 홍보 효과 등으로 예외적으로 '14년 대비 12.3% 증가('12~'14년 평균증가율 4.4%)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된 연간 뇌사장기기증자 수 집계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된 연간 뇌사장기기증자 수 집계	장기이식정보시스템 (장기이식관리센터)

Ⅵ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추진(II-5-⑥)

□ 추진배경 (목적)

- 인구 고령화와 IT·BT 등 기술진보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관리”로 변화, 개인맞춤의료 시대 가시화
- 세계는 헬스케어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 우리나라도 보건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발전 전략 마련 및 보건산업 육성 필요
 - 세계적 경기둔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보건산업은 급격히 성장*
* ('10)7.9조 → ('15)8.9조 → ('20)11조달러로 증가예상(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우리나라는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인프라 보유, 최근 신약개발·해외진출 성과 등 고려시 보건산업 강국 잠재력 충분
- '16년 연두업무보고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계획” 발표(1.18)로 보건산업 분야별 성숙도를 고려, 보건산업 전 부문의 연구개발→사업화→수출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전략 수립·운영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바이오헬스(보건산업)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 관계부처·의료계·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 등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으로 민관협력 강화(2~12월)
 - 민관협의체 산하에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별 실무작업 TF* 별도 구성·운영
* ①총괄반, ②제약반, ③화장품반, ④의료기기반, ⑤정밀의료반, ⑥재생의료반, ⑦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반

- '16년 연두업무보고(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계획) 후속조치 이행 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분기별)
- 정책토론회·현장간담회 등 개최로 충분한 현장 의견수렴 진행 및 부처 간 바이오헬스 정책 공유·의견조화로 관계부처합동 대책 마련 추진(연중)

○ 보건산업 정책 총괄 및 종합발전전략 수립

- 보건산업 정책개발 및 보건의료 관련 과학기술 정책 조정 및 총괄(연중)
 - * 보건의료분야 규제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신산업투자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등 제도개선·규제 발굴 등 총괄

- 바이오헬스 7대 강국 진입을 위한 관계부처합동으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16~’20)” 수립(9월)

- * 산업 간 융복합 추세에 대응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등 분절적 대책을 넘어 보건산업 전반을 조망하는 복지부 최초의 증장기계획

- 국가정책조정회의, 국무회의 등에 “보건산업 종합발전 전략” 상정·발표(9월)

- 보도자료 배포, 브리핑, 언론 기고 및 인터뷰 등 정책 홍보(9월)

○ 연구중심병원 활성화 추진

- 연구중심병원 재지정(4월) 및 연구중심병원 협의회 등을 통한 성과 공유·확산(반기별)

전략
목표
II

- 병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확대 및 연구수익의 병원 재투자 방안 마련 (‘16.하)
- 창업선도대학 및 창업보육센터 신규 선정 시 연구중심병원을 우대하여 연구중심병원을 활용한 창업 촉진 추진(‘16.하. 중기 청협업)

○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

-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의료창업 등 바이오헬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하반기)
- 기술개발→ 창업 → 성장 → 재투자에 이르는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11월)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연두업무 보고	'16.1월	
	바이오헬스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16.2월	
	연두업무보고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	'16.2월	
	바이오 산업생태계 확충방안 발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6.4월	
2/4분기	연구중심병원 재지정	'16.4월	
	바이오헬스 민관 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16.5월	
3/4분기	연구중심병원 성과발표회 개최	'16.5월	
	의약품·의료기기 글로벌 시장창출 전략 발표(무역투자진흥회의)	'16.7월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간담회 실시	'16.7월	
	바이오헬스 민관 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16.8월	
4/4분기	연두업무보고 후속조치 이행 추진실적 점검	'16.8월	
	“보건산업 종합발전 전략” 수립·발표	'16.9월	
4/4분기	연구중심병원 성과발표회 개최	'16.11월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구축 민관협력 강화	'16.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연구기관, 보건산업 관련 기업, 의료기관, 전국민 등
-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관련 협회, 보건산업 관련 기업 등

□ 기대효과

-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 등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신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보건산업의 미래 모습을 제시
 -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인은 의료 창업·연구개발 등 다분야에서 활동하게 되는 한편,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등 한국 의료의 한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보건의료연구개발(II-3-R&D(2))			
① 보건산업육성(3000)			
▪ 연구중심병원 육성(3031-310)	일반회계	170	262.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보건산업 종합발전 전략 수립·운영	-	-	<산규>	수립	바이오헬스 민관협의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한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발전 전략('16-'20) 수립	전략 발표 여부	발표 관련 자료 (보도자료 등)
연구중심병원 연구비 비중	-	-	<산규>	11%	연구중심병원(10개)에서 제출한 목표치의 전체 평균값으로 설정 * 연구중심병원 평가지표 중 하나 (상급종합병원 5%, 종합병원 3%)이며, R&D 예산의 핵심적 성과지표 중 하나임	연구중심병원 의료수익 대비 총 연구비 비율	연차평가 결과보고

전략
목표
II

7 아시아·미주 보건의료서비스시장 진출 지원(II-5-7)

□ 추진배경 (목적)

- 거대 시장인 중국·러시아와 최근 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 의료기관, 제약기업 등의 진출 활성화
- 외국정부와의 의료협력관계 구축(G2C) 및 금융지원·컨설팅 제공 등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정상순방, 보건의료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정부·민간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여 보건의료서비스시장 개척의 교두보 마련
- 양해각서(MOU) 및 협력약정 체결 등으로 한국 의약품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서비스 시스템 개발과 기술 이전 및 상호 인력·정보 공유 기회 확대
- 국내 의료서비스와 보건산업의 대외적 인지도 제고를 위한 해외 의료인 및 신흥국 보건부 인허가 관계자 연수* 제공
 - * 중남미 등 신흥국 보건의료 관련 허가 당국자가 참가하는 K-Pharma Academy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인허가 관리에 대한 신뢰 구축
- 국내 의료기관, 제약기업 등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해 정책 금융 지원 강화
-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14년, 1350억)’ 등 이미 조성된 펀드의 투자 촉진을 위한 정보제공의 기회* 마련
 - * Invest Fair 행사(투자 세미나, 기업 설명회(IR), 1:1 상담회 등으로 구성) 개최로 기업과 펀드 운용사 간 네트워킹 및 투자상담 기회 제공

전략
목표
II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신규조성(‘16년 1월)
- ICT 기반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제약기업 등의 수출 현지화를 위한 핵심 분야별 컨설팅 지원
- 병원정보시스템(HIS, Health Information System), 모바일 의료서비스 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해외 진출 모델 개발
- R&D 기획, 해외 M&A, 해외 합작회사 설립(joint venture), 해외 라이선싱, 마케팅, GMP, 해외 인허가 획득 지원 등의 맞춤형 컨설팅 실시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조성	'16.1월	
	Invest Fair 개최	'16.3월	
2/4분기	멕시코 정부와 MOU체결 등 보건의료분야 협력체계 구축	16.4월	
	K-Pharma Academy 개최	'16.4월	
3/4분기	몽골 정부와 MOU체결 등 보건의료분야 협력체계 구축	'16.7월	
	러시아 정부와 MOU체결 등 보건의료분야 협력체계 구축	'16.9월	
4/4분기	중남미 보건의료 협력사절단 파견	'16.10월	
	연간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평가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해외 진출 의료기관, 제약·의료기기업체, 전국민
- (이해관계자) 진출(추진) 의료기관, 제약업체, 의료기기업체 등

□ 기대효과

○ 외국정부와의 포괄적 보건의료분야 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국내 의료기관과 제약기업 등이 해외진출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당국가의 진입장벽 완화

- 국내 선진의료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CIS의 한국의료 진출 가능성 증대

- 제약시장 규모 629억 달러(약 70조 6870억 원, '11년 IMS기준)의 중남미 국가 대상 수출기회 확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글로벌헬스케어 육성(II-3-일반재정⑥)			
① 글로벌헬스케어 육성(3037)		81	91
▪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301)	일반회계	(139) 81	(178) 91
보건산업진흥(II-3-일반재정⑧)			
① 보건산업진흥(3039)		300	0
▪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305)	일반회계	(618) 300	(332) 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추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정부간 협력을 통한 민·관합동성과 창출	4	15	33	43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목표치 30% 상향	해외진출대상국가에 대한 정부(민간 포함)의 양해각서, 협력약정, 합의서 체결건수	보건의료 협력사절단 파견 등의 기회를 통해 체결한 양해각서 및 협력약정 등 체결건수	

성과목표II-6

한의학 산업육성과 세계화

(1) 주요 내용

□ 한의학 산업육성

- 한의학 과학화·표준화를 통한 한의학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 한의학 해외환자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신수요·신시장 개척
- 토종자원에 의한 한약재 기반구축·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등을 통한 한의학산업육성 기반구축

□ 한의학 세계화 추진

- 국내외 한의학 상호 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 인지도 향상 및 세계전통의약 시장 기반 마련
- 국제적인 한의학 고유 콘텐츠 개발·보급·확산을 통한 한의 지식자원 보호
- 전통의약 국제 역할 강화 및 한의학 ODA 사업을 통한 한의학 국제적 위상 제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한의학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연구지수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8	5년간 30개 주요질환 한의임상진료지침개발을 위한 '16년 근거기반(문헌연구), 근거창출(임상연구)연구지수 *근거기반연구지수 13×0.3 + 근거창출연구지수 7×0.7 = 8.8	근거기반(문헌연구)연구지원건수 (0.3)+근거창출(임상연구)연구지원건수(0.7)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전통의학 시장은 확대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경쟁적으로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적으로 전통의학 육성

- ◇ (중국) 중의약을 정부 육성 중점분야로 선정, 중의약을 세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중의약사업발전 계획 수립, 중의약 중심의 ISO 표준)
- ◇ (일본) 민간기업 중심의 제제 생산으로 고품질 한약 개발 세계시장 진출 (Herbal Medicine 전세계 생산량의 약 11% 차지)
- ◇ (미국) 대체보완의약분야 정부의 집중 육성 지속(오바마케어법에 대체의학 시술비용 건강보험 적용)
- ◇ (유럽) Herbal Medicine 안전성 유효성 검증 강화 및 의료서비스 품질제고 EU 차원 공동 규제 추진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표준화된 치료서비스 요구 증대

- 의료기관별 상이한 진료방법과 근거 부족한 치료법 등으로 국민신뢰 저하 및 국제화의 걸림돌로 작용
 - * 한방진료 불만족 요인 34.8%는 한의사마다 다른 치료방법이 차지(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2011)

□ 국내 한의약 시장을 성장 추세이나 한약산업 규모는 저조한 상태

- 중국, 일본, 대만 등은 한약제제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인정하여 '90년대부터 한약제제 정책 및 연구개발에 투자
 - * 전통약제 산업규모 : 한국(0.28조,13년), 중국(21조,12년), 일본(1.5조,13년), 대만(0.27조,14년)

- ⇒ 세계전통의학 시장의 지속적 성장 규모를 감안하여 세계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의 강력한 한의약 산업화 및 세계화 정책 추진 필요**
- 한의약 R&D 투자를 확대 및 한의약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해 재정적, 제도·정책적 지원 강화

전략
목표
II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한의약의 국제의료경쟁력 강화(II-6-①)

□ 추진배경 (목적)

- 고령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은 세계 전통의학시장의 지속적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한의약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을 위한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을 통한 국제 보건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의약 세계화 추진

- ◇ 국정과제 9-7] 한의약 세계화 추진
 - 세계전통의학시장 대표 브랜드 도약을 위한 '한의약 세계화 전략 추진'

- ◇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 추진
 -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세계화 국내 기반구축)** 세계전통시장의 대표브랜드 성장을 위해 한의약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제도 지원
 - 한의 지식재산(의방유취 등) 보호를 위한 중장기 한의약 고유 콘텐츠 개발 및 연구 로드맵 마련(12월)
 - ISO 국제 표준화 대응을 위해 '한의약 표준화 전략 로드맵' 활용하여 한의약 국제 표준안 개발(10월)
 -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진출 가이드북 발간(12월) 및 한의약 세계화 포럼 개최

- **(학술·교육을 통한 한의약 확산)** 한의약의 국제인지도 제고 및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 해외 전통의약 전문가 대상 국내 초청 한의약 영문 강의를 통해 한의약 기초이론 및 임상 소개(10월)
 - 일본, 미국 동의보감 아카데미를 통한 수요자 중심(민간, 전문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하여 한의약에 대한 이해 증진(9월)
- **(전통의약 국제역할 강화)** WHO,WPRO 전통의약 활성화 지원 및 한의약 ODA 사업을 통한 한의약 국제적 위상 제고
 - 세계보건기구에 기술관(한의사) 파견하여 국제사회 전통의약 정책 지원 및 한의약 역할 강화
 - 수원국 보건의료 증진 및 한의약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한의약 해외의료봉사 및 해외공공보건사업을 통한 건강증진프로그램 보급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16년 한의약 세계화 추진계획 수립	'16.2월	
	'16년 한의약 ODA 추진계획 수립	'16.2월	
2/4분기	동의보감 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개발	'16.6월	
3/4분기	1차 한의약해외의료봉사	'16.8월	
	23차 한의약해외의료봉사	'16.9월	
	해외공공보건사업 추적조사	'16.9월	
	동의보감 아카데미 운영	'16.9월	
4/4분기	4차 한의약해외의료봉사	'16.10월	
	전통의학 전문가 초청연수	'16.10월	
	한의약세계화포럼 개최	'16.11월	
	해외진출가이드북 발간	'16.12월	

전략
목표
II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한방의료기관 및 관련단체, 국민
- (이해관계자) 대학, 연구기관, 한방의료기관 및 관련단체

□ 기대효과

- 한의약의 세계 대표브랜드화 추진을 통해 한국보건의료의 국제적 위상 제고
- 한의약의 해외 저변 확대 전략을 통한 국내 한의약 시장 국제 확대 및 전문인력의 진출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5	'16
한의약 세계화 및 홍보(II-4-일반재정①)			
① 한의약 세계화 및 홍보(3233)	일반회계	47 (47)	41 (41)
▪한방해외의료봉사활동(ODA)(301)	일반회계	4	4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302)	일반회계	38	31
▪WHO 전통의약활성화 지원(ODA)(308)	일반회계	5	6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311)	일반회계	-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국내의 한의약 교류지수	신규	신규	350	360	해외한의약교류지수(350명) + 한의약국내교류지수(10명) *해외한의약교류지수 : 동의보감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한의약 교류 *한의약 국내 교류지수 : 국제전통의학전문가 국내 초청 연수를 통한 한의약 교류 *15년 계획(306명 약 20%상향 목표)	해외한의약교류지수 + 한의약국내교류지수	한의약 세계화 실적보고서	
한방해외의료봉사 진료 수	11,440	9,724	11,516	11,550	전년도 동일 예산 수준 및 전년도 실적 고려하여 목표치 소폭 상향	한방해외의료봉사 활동 진료환자수	한방 해외의료봉사 실적보고서	

② 한의약산업육성 및 기술개발(Ⅱ-6-②)

□ 추진배경 (목적)

○ 한의약 과학화·표준화를 통한 한의약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 한의약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를 통한 한의약 경쟁력 강화
- 한의학과 현대의학간의 융합의료기술을 통한 융합의료 핵심 기술(융합형 신약 등) 개발, 창조적 미래산업 육성

◇ 국정과제 9-④ 전략적 보건의료(HT) R&D 투자 확대
-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R&D)

○ 한의약분야 해외환자유치·해외진출 기반으로 한의약의 세계화

- 한의약 해외환자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신수요·신시장 개척

◇ 국정과제 9-⑦ 한의약 세계화 추진
- 한의약 해외환자유치지원 및 한의약해외거점 구축

○ 토종자원에 의한 한약재 기반구축·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등을 통한 한의약산업육성 기반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확산

- 과학적 검증과 표준화를 통한 한의약에 대한 대내외 신뢰 향상
- 교육 및 보장성 강화 등 사후활용까지 연계한 추진으로 한의약 과학화 기반 조성 및 국민들의 한의약 접근성 제고

○ 전통 한의약의 강점과 현대의학을 융합한 융합형 신약(치료 기술) 및 양방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치료제제·의료기기 개발

- 양·한방 융합 전임상·임상연구를 통해 4대 중증질환, 만성 질환(당뇨, 고혈압 등) 및 난치성 질환 등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 4대 중증질환,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등) 및 난치성 질환 등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술

- 한약제제·한방의료기기 개발 등 고부가가치 한방소재 제품화 지원 및 산업화 촉진

- 연구전문 인력 양성, 다기관 임상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선진국 수준의 임상시험센터 육성

* '13년 1개(의약품) → '14년 1개(의료기기) → '15년 1개소(의약품, 누계 3개소)

- '한의씨앗연구'를 통한 혁신도약형·창의적 우수과제 발굴 및 연구자 맞춤형 소규모 연구비 지원

- 한의약 관련 기관의 연구참여 촉진 및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 한의약분야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한방 병·의원 역량 강화, 홍보·마케팅 등 지원

- 한의약 해외진출 거점 구축, 해외현지 설명회 등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 지원 및 국제경쟁력 강화

○ 한의약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강화

- 연구자의 수요가 큰 천연물질을 한약재에서 분리·정제하여 은행으로 구축, 연구 활성화 지원

- 나고야 의정서 발효 대비 토종 한약재 유전자원 확보 및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사용을 위한 규격 설정
- 혼합단미제의 다양한 제형 개발 및 제조단계별 규격설정, 건강보험 적용 반영
- 생물전환기술을 한약자원에 접목시켜 신규 활성물질(생물전환 대사체) 확보 및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여 연구 활성화 지원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16년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지원사업 계획 수립	'16.1월	
	'16년 한의약 R&D 추진계획 마련	'16.1월	
	'16년 한의약 R&D 사업공고	'16.1월	
	'16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세부과제 공고	'16.2월	
	'16년 상반기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	'16.2월	
	'16년 한의약 R&D 신규과제 접수	'16.2월	
	'16년 한의약 R&D 신규과제 선정평가	'16.3월	
2/4분기	'16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세부과제 선정평가	'16.4월	
	한의약 특화프로그램 지원	'16.5월	
	'16년 한의약선도/양·한방융합기반 기술개발사업 계속과제 중간평가(1차)	'16.5월	
3/4분기	'16년 한의약 R&D 연구성과 점검(1차)	'16.7월	
	'16년 한의약산업육성 기반구축사업 중간평가 실시	'16.7월	
	한의약 홍보존 운영	'16.8월	
	'16년 한의약선도/양·한방융합기반 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2차)	'16.9월	
4/4분기	'16년 한의약선도/양·한방융합기반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중간평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세부과제 포함)	'16.12월	
	'16년 한의약 R&D 연구성과 점검(2차)	'16.12월	
	'16년 한의약산업육성 기반구축사업 연차평가 실시	'16.12월	
	해외현지 한의약 홍보회 개최	'16.12월	

전략
목표
II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민
- (이해관계집단) 대학, 연구기관, 양·한방의료기관, 민간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등)

□ 기대효과

- 한의약 과학화·표준화·제품화 연구개발을 통한 한의약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및 국가경쟁력 확보
- 한방 병·의원 등 한의계의 해외환자유치사업 활성화
- 한의약 관련 기초연구를 통해 한의약산업 육성 및 대외경쟁력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5	'16
한의약산업육성 및 기술개발(II-6-②)			
① 한의약산업지원(3234)	-	95	122
▪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BTL정부지급금)(301)	일반회계	25	24
▪ 한의약산업육성(302)	일반회계	70	98
② 한의약 세계화 및 홍보(3233)	-	9.5	10
▪ 한의약세계화 추진(302)	일반회계	9.5	10
- 한의약 해외환자유치지원			
③ 한의약연구 및 기술개발(3231/3237)	-	182	207
▪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3231)	국민건강 증진기금	107	132
▪ 양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R&D)(3237)	일반회계	75	7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논문질적지수	신규	신규	신규	67.72	한의학선도기술개발사업 을 통해 생산된 논문이 투고된 학술지의 IF영향 력지수(Impact Factor) 현황을 종합 분석 - '15년 실적(65.74)을 활 용하여 연간 3% 증가 율이라는 도전적인 목 표를 바탕으로 '16년 목표값 67.72 설정	논문 질적 지수 = 논문당 평균 mriIF 값 구분 내 용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기준 으로 분야 내 저널 순위를 사용하여 mriIF 개념 분야 내에서 특정 학술지가 차지하 는 위상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 나로서, 최소값을 0, 최대값을 100으 로 표준화한 지표임 의미 mriIF가 100에 가까울수록 해당 저널이 속한 분야 내에서 순위가 높 고, 0에 가까울수록 분야 내 순위가 낮음 측정 산식 $mriIF_i = 100 \times \frac{N-R_i}{N-1}$ N : 해당분야 내 학술지 수 R _i : 해당분야 내 논문게재 학술지의 순위	• NTIS연구성과관리 시스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성과관리시스템 • 게재논문 사본증명서
한외과 해외 환자 유치인원 (명)	9,554	11,743	12,000	18,000	'13년 신규사업으로 추 진하여 '15년 15,000명을 목표 설정하였으나 메르 스 등 예기치 못한 외부 변수가 발생하여 '15년 실적 12,000명으로 예상 하며, '16년에는 해외홍 보회, 마케팅 강화 등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 치활동으로 50% 증가한 18,000명으로 설정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기관의 유치실적 합계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기관 보고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
략
목
표
II

전략목표 III 저출산 극복과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기 본 방 향

-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및 인식·문화 개선 등이 필요
 - 범정부 차원의 인구위기 대응을 실질화하기 위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의 차질 없는 이행에 주력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15.12.23)에 따라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에 걸친 전 국민 대상 노후설계서비스 본격화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동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 강화
 - 난임가정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미숙아·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한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 건강한 어르신은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치매 등 요양 필요 어르신은 돌봄을 받는 노후가 될 수 있도록 맞춤형 노인복지 추구
 - 재가생활 지원을 위해 수급자의 욕구와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실화 도모
 - * 치매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제도',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 치매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운동법 보급 등
 - 노인일자리수 확대 및 연중 일자리 확대로 저소득 노인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
 - * 노인일자리 '14년 28만개(재능나눔 3만개 미포함) → '15년 34만개 → '16년 39만개
연중일자리 '14년 2.5만개 → '15년 3.5만개 → '16년 4만개

- 안부·안전확인 강화 및 독거노인 서로 돌볼 수 있는 체계 마련 등 독거노인 돌봄 지속 추진

* 독거노인 돌봄 '13년 27만명 → '14년 36만명 → '15년 45만명 → '16년 47만명

◇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고 다양한 수요에 맞춰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육지원체계 강화

- 취업모 등 실수요 중심의 맞춤형 보육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근로유형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 부모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공공성이 강한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보급하며,
 -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평가인증 체계를 개편하는 등 제도의 내실화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 연금운영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 국민연금 장기재정목표 설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반 마련 및 급여제도 개선으로 국민연금 신뢰기반 구축
- 취약계층 연금보험료 지원 및 실직자, 경력단절 주부 국민연금 혜택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 장기적 관점의 기금운용체계 구축으로 국민연금 장기 운영방향 확립
- 기초연금제도 내실화 등을 통한 급여의 적정성 강화

전략
목표
III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5	7	19	45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II-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효과성
	①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마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인지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효과성
	② 임신·출산 지원 강화	체외수정시술지원건수 고위험임산부 지원자 증가율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자 증가율 신생아 장애예방 검사율
	③ 저출산·고령화 대응 체계 추진기반 조성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심층 점검 핵심과제 평가 추진(점) 저출산 관련 정책·제도개선(건)
III-2.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		한국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
	① 아동행복도 제고를 위한 공적책임 강화	아동정책 만족도 아동정책 총괄·조정 건수 달성률 아동복지법령 개정
	②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공적책임 및 입양인 사후관리 강화	아동권익중심의 입양체계 개선율
	③ 취약아동 돌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	지역아동센터 이용서비스 만족도 드림스타트 사업지역 확대 개소수
	④ 아동권리 및 아동안전 증진	아동학대 재학대 발생률 감소 실종아동 가족 인계율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 참여자 만족도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II-3.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참여자수	
		보호독거노인수	
		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① 국가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조기검진률	
		치매관련 공공보건 서비스 이용자 수	
	② 독거노인 돌봄 강화	보호독거노인수	
	③ 노인 사회참여 확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수	
		시니어인턴십 취업 성공률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	장기요양경신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등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신규 도입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복지용구 고시개정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매뉴얼 마련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기전 강화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제고	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III-4. 맞춤형 보육지원 강화 등 무상보육 정책의 내실화		어린이집 시설이용만족도
	①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강화		보육료지원 만족도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 추진율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수	
		보수교육이수자의 교육이수 역량	
② 효율적인 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③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평가인증 유지율	
		보육통합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III-5.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운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공적노후소득보장 지급률	

전략
목표
III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① 국민연금 신뢰기반 구축	포럼 개최수(의견수렴 실적)
		홍보건수
		연금수급자 만족도
	②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보험료 납부자율
	③ 장기적 관점의 기금운용체계 구축 및 운용역량 강화	해외·대체투자비중
		운용체계 개선율
	④ 기초연금제도 내실화	기초연금 지급률
		기초연금 지급희망자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행

성과목표 III-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1) 주요 내용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및 인식·문화 개선 필요

- 범정부 차원의 인구위기 대응을 실질화하기 위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의 차질 없는 이행에 주력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 각 부문의 역량 결집을 위해 종교계, 기업, 시민사회, 지자체와의 협력 및 자원 동원 활성화
-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가치관 형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맞춤형 홍보 및 인구교육 활성화 추진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15.12.23)에 따라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에 걸친 전 국민 대상 노후설계서비스 본격화

OECD 국가 최저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일·가정 균형이 어려운 고용문화, 취약한 임신·분만환경 해결 필요

* '14년 합계출산율이 1.21명까지 하락하였으며, OECD 평균(1.67명, '13년) 대비 크게 미흡한 상황

- 난임가정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미숙아·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한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전략목표 III

성과목표·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효과성
(관리과제)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마련	①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인지도 ②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효과성
(관리과제)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①체외수정시술지원건수 ②고위험임산부 지원자 증가율 ③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자 증가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효과성(공통)	-	-	80.4	81.6점 (100만점)	2015년 대비 1.5% 상승	전문가 대상 효과성 측정	효과성 조사결과 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외부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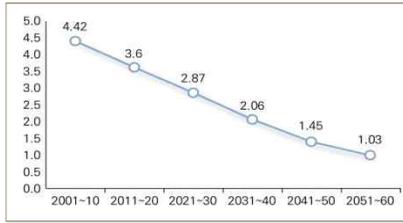
- 초저출산 장기화로 인해 지속가능한 성장 저해 초래 우려
 - 지난 10년간 약80조원의 재정을 투자, 출산율을 1.2명 수준까지 일부 반등시켰으나, 초저출산 기준인 1.3명 미만에서 장기간 정체
 - 초저출산 장기화는 인구구조 고령화* 추세를 앞당겨, 생산인구 급감 등 경제 성장과 사회적 활력 저해 초래

* ('17) 생산가능인구 감소 → ('18) 고령사회 진입 → ('20) 베이비부머세대 65세 진입 → ('26) 초고령사회 진입 → ('31) 총인구 감소

생산가능 인구 추이 (1970년~2040년, 통계청)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경제시스템분석학회, '14)



- 사회경제적 환경,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인식·문화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

* ▲ 미혼자 결혼의향 감소 : ('14) 76.0% → ('15) 68.4% ▲ “자녀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인식 증가 : ('14) 16.3% → ('15) 18.1% (국민인식 조사결과, '15)

- 고령화 시대 도래에 따라 사전에 노후를 준비하는 노후설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 대다수의 국민(72.7%)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준비 수준 미흡**
- 특히,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준비도 측면에서 **개인·세대간 편차·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으로, **생애 통합적 접근 필요**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 (갈등요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기업, 지자체 등과의 협력 중요**

- 다만, 각 부처별 시각차*, 기업·노동계 등과의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인해 효과적 정책 이행이 곤란한 상황 발생 우려

* (예) 고용, 교육, 주거 등 구조적 대책 관련 부처별 정책우선순위와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의 우선순위 충돌

** (예)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노동개혁, 일·가정 균형 정책 관련 기업 부담 등

- (갈등관리 계획) 기본계획 과제에 대한 **현장중심 점검, 의견 수렴, 정책 토론회 등 소통기회 확대**,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 BH, 국무조정실 등을 통한 **쟁점과제 정책조정회의 활성화**
- 경제계와 **일·가정양립 민관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하여 **정책과 현장간의 간극을 좁히고** 실천 가능하도록 정책을 지속 보완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마련(III-1-①)

□ 추진배경

- 전사회적 인구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 수립
 - 만혼·비혼, 취업모의 낮은 출산율을 저출산의 핵심문제로 진단, 청년고용·주거, 일·가정 양립 일상화 등 구조·문화 대책에 중점
 -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후 삶의 질 보장, 생산인구 감소 대비, 고령친화적 사회·경제체질 개선 등 종합적 대응책 모색



전략
목표
표 III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인 향후 5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달려 있는 상황
 - 초저출산 탈피 및 고령사회 연착륙을 위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지원이 매우 중요
- 또한, 저출산 극복은 개인과 사회의 인식·문화가 바뀌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맞춤형 홍보, 민간·지역과의 협력, 인구교육 활성화 등 다각적 노력 필요
- 아울러, 100세 시대를 맞아 길어진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삶의 전 영역에 걸친 종합적 노후준비 기반 구축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점검·평가시스템 강화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핵심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평가시스템 구축
 - 추진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장 점검, 국민의견 수렴,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
 - * 보건사회연구원에 「기본계획 점검·평가단(단장: 보사연 원장)」 설치·운영
 - 점검·평가 결과는 정부내 공유, 보완대책 수립을 위해 장관급 회의체* 안건으로 상정, 보완 대책은 기본계획 과제로 포함, 지속 관리
 - * 국가정책조정회의, 사회관계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등

'16년 점검·평가대상 핵심과제

- ▶ 임신·출산 지원사업(고위협산모·신생아통합지원센터,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난임수술지원)
- ▶ 맞춤형 돌봄 지원 강화(초등돌봄, 아이돌봄, 베이비시터 관리)
- ▶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실천여건 개선(대체인력지원, 공동직장 어린이집, 스마트근로감독 등)
- ▶ 고령자 사회참여 활성화(노인공익활동, 고령자 자원봉사지원체계)

○ 이행상황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과제별 점검 주기를 연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단축, 부진과제 진도 관리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최 중앙정부·지자체 성과보고대회 개최, 점검·평가 결과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

②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각적 인식·문화개선 노력 확대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동참·협력 활성화

- 「인구의 날(7.11)」을 「인구주간(7.9~7.17)」으로 확대 운영,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역량결집 계기로 활용

* 각계 저출산 극복 행사, 17개 시도별 릴레이 토론회, 기획보도·기고 등 이슈화

- (종교계) 종단별 결혼·출산친화 교육 활성화, 작은 결혼식 확산, 「종교문화축제」 개최 추진*, '생명존중', '가족의 소중함' 메시지 확산

* 4월 중 종교지도자협의회 총회 참여, 종교문화축제 주제로 '저출산 극복' 채택 제안 예정

참고 : 종단별 주요 협력 프로그램

- ▶ (기독교) 교계 지도자 인구교육, 결혼장려 청년·대학생 세미나, 출산장려 행복캠프
- ▶ (천주교) 라디오 정규프로그램 "생명은 사랑입니다" 편성, 가톨릭대 교양과목 편성
- ▶ (불교) 만남템플스테이, 가족상담 및 출산장려 교육, 다둥이 가정 만들기 프로그램

전략
목표
표 III

- (경제계)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구성·운영(3월~), 경제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3대 핵심과제** 추진(3월~)

* 복지부·고용부·여가부, 경제5단체 참여, 일·가정 균형 모니터링, 민관합동 캠페인 등 추진

** (경총) 전환형 시간선택제, (전경련) 남성육아휴직, (중기중앙회) 대체인력지원

- (시민단체) 「저출산 극복 시민운동 협의체」 구성·운영('15.12월~), 공동 캠페인, 시민단체별 연간 릴레이 캠페인* 기획·추진

* (예) 5월: 가정의 달 계기 '가족의 가치' 재조명 캠페인, 8월: 포용적 가족관 형성, 9월: 고비용 양육문화 개선, 10월: 임신부·난임가족 배려, 11월: 작은결혼식 확산

- (지자체) 지역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구축, 17개 시도 네트워크별 지역 특화 프로그램* 추진 지원(3~12월)

* 장난감·육아용품 대여, 출산장려 문화공연, 미혼남녀 만남, 아빠참여 프로그램 등

○ 인식개선 메시지 확산 및 맞춤형 홍보 강화

- 만혼·비혼 추세 완화를 위한 결혼친화적 가치관 변화 유도를 위한 공익캠페인 제작 및 송출

* 결혼을 통해 얻게 되는 삶의 소중한 가치들과 행복에 대해 언급해 결혼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인식개선 시행, 30대 미혼직장여성 타겟팅 검토

** 홍보대상의 연령을 감안한 매체활용 및 N포세대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컨셉으로 제작

- 두 자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아이 좋아 둘이 좋아' 공익캠페인 지속 확산

* "가장 행복한 교육은 둘이 함께 자라는 것"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둘이 함께 자랄 때의 이점을 강조하는 2014년 캠페인 재활용

** 지상파 TV 뿐 아니라, 극장, 옥외전광판, 모바일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계획

- **아빠의 가사·육아 분담 문화 확산**을 위해 **100인의 아빠단*** 운영, **아빠 육아 대국민 이벤트 및 웹툰 연재** 등 추진

* 초보아빠 100인으로 구성, 아빠육아 관련 온라인 미션 수행 및 오프라인 멘토링 진행, 100인의 아빠단 우수사례는 네이버 모바일 맘앤키즈 존을 통해 확산

- 정책수혜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홍보 콘텐츠** 제작·확산

* 임신·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 포털사이트 내 육아관련 페이지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기적 홍보

* 육아전문지, 정부 무료매체 등 활용해 임신부의 날, 난임가족의 날 등 주요 계기별 이슈와 정책을 함께 소개하는 해설기사 연중 지속 추진

○ **학교 및 사회인구교육 확대**

- 초·중고 인구교육 연구/선도학교, 대학강좌 개설 확대

* 연구/시범학교 : ('15) 12개교 → ('16) 15개교, 대학강좌 : ('15) 5개교 → ('16) 7개교

-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을 통한 **대학생, 사회초년생, (예비) 신혼부부, 군장병** 등 대상 **사회인구교육 활성화**

- **인구교육 홈페이지*** 운영,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인구교육 인프라 확대

* 인구교육 자료 및 성과 공유·확산, 설문조사 등 정책지원 기능

** 퇴직 공무원·교사, 관련분야 강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전문강사로 양성 (연간 150명)

③ **100세 시대 노후준비 지원체계 강화**

○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국민들의 종합적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노후설계서비스 체계** 구축

○ **노후준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노후준비 분야별 연계시스템** 구축 등 추진기반 강화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점검·평가개선방안 수립	'16.3월	
	2016년 저출산·고령사회 인식개선관련 홍보계획 수립	'16.3월	
	2016년 인구교육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16.2월	
	인구교육 홈페이지 오픈(인구교육포털)	'16.3월	
2/4분기	기본계획 이행점검을 위한 정책현장방문 실시	'16.5월~	
	아이좋아 돌이좋아 공익캠페인 송출	'16.6월	
	민간단체 공동캠페인 및 릴레이 캠페인 시행	'16.5월	
	학교인구교육 애니메이션 자료 보급(초중고 총30편)	'16.6월	
3/4분기	기본계획 핵심과제 점검·평가결과 장관급회의체 상정	'16.8~9월	
	인구주간(7.9~7.17) 운영 및 전사회적 대응 메시지 확산	'16.7월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캠페인 송출	'16.9월	
	인구교육 포럼 개최(인구교육 활성화방안 전문가 포럼)	'16.10월	
4/4분기	기본계획 핵심과제 점검·평가결과 장관급회의체 상정	'16.10~11월	
	중앙부처·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성과평가 보고대회	'16.12월	
	노후준비5개년 기본계획 수립	'16.12월	

전략
목표
표 III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

○ 이해관계 집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관계부처, 기업, 노동계, 지자체 등

- (인구교육) 교육부, 지방교육청 및 일선 학교,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군부대, 민간 기업체 등

- (노후설계) 민간 보험 및 금융회사, 국민연금공단, 교육부 등 중앙부처, 지자체

□ 기대효과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초저출산 탈피, 지속가능한 고령사회로의 성공적 전환**
- 맞춤형 홍보, 사회 각부문별 협력 활성화, 인구교육 확산 등을 통해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노후설계서비스 강화로 **자기주도적 노후 준비 기반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저출산대응인구정책(IV-3-일반재정②)			
① 저출산대응인구정책(2533)	일반	8	13
▪ 인구교육추진지원(300)		8	13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IV-3-일반재정③)			
②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2537)	일반	36	33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301)		34	31
▪ 고령화 대비 자립지원 지자체 기반 구축(330)		2	2

전략
목표
표 III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 인지도 (공통)	47.2	48.3	51.3	54.35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3년평균 상승률(2%)+추가 (1%) 반영	일반인 대상 인지도 조사(50%) + 전문가 대상 효과성 조사 (50%)	일반국민 대상 인지도 조사결과 보고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 효과성 (공통)	-	-	80.4	81.6점	작년대비 추가(1.5%) 반영		효과성 조사결과 보고서	

② 임신·출산 지원 강화(III-1-②)

□ 추진배경 (목적)

- OECD 국가 최저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일·가정 균형이 어려운 고용문화, 취약한 임신·분만환경 해결 필요**

* '14년 합계출산율이 1.21명까지 하락하였으며, OECD 평균(1.67명, '13년) 대비 크게 미흡한 상황

- 프랑스, 스웨덴 등 인구정책에 성공한 국가 수준의 **저출산 분야 예산 확대**로 결혼에서 출산까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환경 개선 등 공동육아 분위기 조성**



<주요국의 출산율 및 저출산 분야 예산 비중>

국 가	'11년 출산율	GDP 대비 예산비중('09)
프랑스	2.00명	3.98
스웨덴	1.98명	3.75
영국	1.98명	4.22
한국	1.21명('14년)	1.01
OECD 평균	1.70명	2.61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에 따른 저출산 분야 예산은 '11년 7.4조 '13년 13.5조, '15년 14.7조로 점진적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정과제 총괄 추진) 140대 국정과제 중 **'62. 행복한 임신과 출산'**은 기재부, 고용부, 국토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7개 과제· 16개 사업**으로 구성

* 복지부는 4개 과제, 10개 사업을 1본부·4국·7과에서 수행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예산 증액에 따른 지원단가 인상 적용	'16.1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고위험 임신부 지원 사업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한 지원신청율 및 사업인지도 제고	'16.3월	
	201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 배부	'16.2월	
	2016년 모자보건사업 담당자 교육	'16.2월	
2/4분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구매처 및 카드사 확대	'16.6월	
	선천성 대상이상 지원 기준 변경 검토	'16.6월	
3/4분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효과성 분석 및 평가 연구 최종 결과보고	'16.7월	
	고위험 임신부 지원 사업 효과성 분석 및 평가 연구 최종 결과보고	'16.7월	
	모자보건법 하위법령 개정(난임시술 질 관리)	'16.7월	
4/4분기	고위험 임신부 지원 사업 전문가 자문 및 지자체 회의, 담당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사업내용 개선·보완	'16.12월	

전략
목표
표 III

- 맞춤형 임신·출산 비용지원, 분만취약지 지원,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부처내·부처간 정책 조정 및 현황점검
- **(모성·영유아 건강보호)** 임신부 등록관리,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을 포함하여 **소관 국정과제 중점 추진**
- **(난임부부 지원)** 일정 소득 이하(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의 난임 가정을 대상으로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 난임시술 질 관리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15.12월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16.7월)
- **(기저귀·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정**에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 분유의 경우에는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
- **(고위험 임신부 지원)**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 중독증 등 고비용이 드는 **고위험 임신부들에 대한 별도의 진료비 지원**
 - *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신부에게 비급여 진료비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내)
- **(영유아 건강관리)** 신생아 대상으로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난청 조기진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 및 영아 사망 예방**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범정부 출산지원대책 수립은 정책 효과가 사회 전체에 미치므로, 일반국민이 수혜자에 해당

□ 기대효과

- 범정부 출산·육아지원대책 수립을 통해 결혼·임신·출산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직장보다 가정을 우선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개별 국정과제의 경우, 저소득층(기저귀·분유지원), 난임가정, 고위험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취약계층의료비지원(III-1-일반재정①)				
① 취약계층의료비지원(2631)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307)	국민건강 증진기금	177	178	
		177	178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 지원(IV-3-일반재정①)				
① 모자보건사업(2535) ▪ 모자보건사업(302)	국민건강 증진기금	473	484	
		473	484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 지원(IV-3-일반재정②)				
①저출산대응인구정책(2533)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305)	일반회계	50	200	
		50	20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체외수정시술지원건수	34,264	40,515	46,240	40,000	'16년도 가용 예산을 기준하여 목표설정 * '17년 부터 난임시술 전반기 대해 건강보험 적용됨에 따라 '16년도 시술수요 감소 전망	2016년 체외수정 시술 지원건수 (지원결정통지서 기준)	지자체 실적보고	
고위험임산부 지원자 증가율	-	-	-	10%	'15년도 신규사업임을 감안하여 목표 설정('15.7월 시행)	당해연도 지원자수 / 전년도 지원자수 × 100	지자체 보고자료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자 증가율	-	-	-	10%	'15년도 신규사업임을 감안하 여 목표 설정('15.10월 시행)	당해연도 지원자수 / 전년도 지원자수 × 100	지자체 보고자료	
신생아 장애예방 검사율	-	-	-	98.2	'16년도 신규 성과지표임을 감 안하여 목표치 설정	장애예방검사인원/ 연간 출생아수×100 ※ 장애예방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선 별 검사	지자체 보고자료	

전
략
목
표
표
III

② 저출산·고령화 대응 체계 추진기반 조성(III-1-③)

□ 추진배경

- 전사회적 인구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 수립
 - 초저출산 탈피 및 고령사회 연착륙을 위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지원이 매우 중요
-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가 사회전반에 걸쳐 매우 방대하므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만으로는 한계
 - 각 부처와 지자체의 법령·정책 등이 결혼·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조정 필요
- 또한, 저출산 극복은 개인과 사회의 인식·문화가 바뀌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
 -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민간·지역과의 협력 등 다각적 노력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점검·평가시스템 강화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핵심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평가시스템 구축
 - 추진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장 점검, 국민의견 수렴,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
 - * 보건사회연구원에 「기본계획 점검·평가단(단장: 보사연 원장)」 설치·운영

〈 '16년 점검·평가대상 핵심과제 〉

- ▶ 임신·출산 지원사업(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지원센터,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난임시술지원)
- ▶ 맞춤형 돌봄 지원 강화(초등돌봄, 아이돌봄, 베이비시터 관리)
- ▶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실천여건 개선(대체인력지원, 공동직장 어린이집, 스마트근로감독 등)
- ▶ 고령자 사회참여 활성화(노인공익활동, 고령자 자원봉사지원체계)

○ 이행상황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과제별 점검 주기를 연 단에서 분기 단위로 단축, 부진과제 진도 관리 강화

②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통계 등의 평가·분석 추진

○ 저출산·고령화 관련 국민인식조사 실시(9월~)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정책수요 파악을 통해 유관 정책 및 홍보 방향 수립

○ 저출산 관련 정책·통계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발굴(9월~)

- 수요자 중심의 정책 효과 분석을 통한 현장중심형 정책 및 제도 개선과제 발굴

- 저출산 정책 관련 기존 통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 및 저출산 관련 정책통계집 마련

○ 인구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 인구영향평가모델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실시(~12월)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과제 〉

- ▶ 저출산고령화 관련 주요 분야 정책신설·변경시 저출산·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저출산·고령사회영향평가제도 도입
- 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한 후 제도 도입 추진

* 임신·출산 의료지원, 아동·가족, 고용, 교육, 주거, 돌봄, 일·가정 양립, 세제 등 분야별 세부모형 개발 및 평가 시뮬레이션 연구 추진('17)

-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사전 검토 추진

③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동참·협력 활성화

○ (종교계) 중단별 결혼·출산친화 교육 활성화, 작은 결혼식 확산, 「종교문화축제」 개최 추진*, '생명존중', '가족의 소중함' 메시지 확산

* 저출산 극복 복지부-종교계 실무간담회 실시(5월)

○ (경제계)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구성·운영(3월~), 경제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3대 핵심과제** 추진(3월~)

* 복지부·고용부·여가부, 경제5단체 참여, 일·가정 균형 모니터링, 민관합동 캠페인 등 추진

** (경총) 전환형 시간선택제, (전경련) 남성육아휴직, (중기중앙회) 대체인력지원

○ (시민단체) 「저출산 극복 시민운동 협의체」 구성·운영('15.12월~), 공동 캠페인, 시민단체별 연간 릴레이 캠페인*, 저출산 Issue 포럼 기획·추진

* (예) 5월: 가정의 달 계기 '가족의 가치' 재조명 캠페인, 8월: 포용적 가족관 형성, 9월: 고비용 양육문화 개선, 10월: 임신부·난임가족 배려, 11월: 작은결혼식 확산

○ (지자체) 지역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구축, 17개 시도 네트워크별 지역 특화 프로그램* 추진 지원(3~12월)

* 장난감·육아용품 대여, 출산장려 문화공연, 미혼남녀 만남, 아빠참여 프로그램 등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평가대회 개최(12월)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점검·평가개선방안 수립	'16.3월	
2/4분기	'16년 시행계획 1분기 이행실적 모니터링	'16.4월	
	기본계획 이행점검을 위한 정책현장방문 실시	'16.5월~	
	인구영향평가 도입기반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	'16.5월~	
3/4분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상반기 중앙-지방 현장소통 추진	'16.6~7월	
	'16년 시행계획 2분기 이행실적 모니터링	'16.7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하반기 중앙-지방 현장소통 추진	'16.8~9월	
	민간단체 릴레이 캠페인 추진	'16.8~11월	
4/4분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실시	'16.9~12월	
	'16년 시행계획 3분기 이행실적 모니터링	'16.10월	
	민간협의체 '저출산 Issue' 포럼 실시	'16.10월	
	인구영향평가 도입기반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완료	'16.11~12월	
	저출산 대응 전국 네트워크 성과보고대회 개최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
- 이해관계 집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관계부처, 기업, 노동계, 지자체 등
 - (인구영향평가) 관계부처, 지자체 등 공공 행정기관
 - (민관 협력체계 구축) 종교계, 경제계, 시민단체, 지자체 등

□ 기대효과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초저출산 탈피, 지속가능한 고령사회로의 성공적 전환

○ 현장중심의 제도개선 및 통계 분석을 통해 저출산 대응 추진 정책의 효과성 제고

○ 사회 각 부문별 협력 활성화를 통해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IV-3-일반재정③)			
②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2537)	일반	36	33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301)		34	3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저출산·고령사회 시행 계획 심층점검 핵심 과제 평가 추진(집)	-	-	-	100	100	심층점검 핵심과제 평가 진행과정의 충실도	∑ 각 지표별 ① 관계부처 회의 × 0.2 ② 전문가 자문회의 × 0.2 ③ 현장점검 추진 × 0.2 ④ 결과보고서 작성 × 0.2 ⑤ 위원회 안건 상정 × 0.2	핵심과제 평가 결과보고서
저출산 관련 정책·제도 개선(건)	-	-	-	2	2	분기별 1건 추진	저출산 분야 정책·제도·통계 등 개선 과제 발굴 건수	개선과제 발굴 보고서

전략
목표
표 III

성과목표 III-2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

(1) 주요 내용

- 아동 중심의 아동정책 비전 제시 및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
 - 현 정부의 아동정책 비전 제시 및 아동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중기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 부처별, 기능별로 분리된 아동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
 - 입양전반의 국가책임강화를 통해 요보호 아동의 가정보호를 강화하고, 국내입양가정 지원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아동권리 증진 및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돌봄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및 돌봄 연계체계 강화
- 드림스타트 전국 확대 및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아동의 양육환경 및 발달상태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실종·유괴 예방, 아동 안전과 권리 증진 등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전략
목표
III

성과목표·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	한국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
(관리과제) 아동행복도 제고를 위한 공적책임 강화	①아동정책 만족도 ②아동정책 총괄·조정 건수 ③아동복지법령 개정
(관리과제)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공적책임 및 입양인 사후관리 강화	아동권익중심의 입양체계 개선을
(관리과제) 취약아동 돌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	①지역아동센터 이용서비스만족도 ②드림스타트 사업지역 확대 개소수
(관리과제) 아동권리 및 아동안전 증진	①아동학대 재학대 발생률 감소 ②실종아동 가족 인게울 ③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 참여자 만족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한국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	-	74.0	90.4	78	"2015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연구 조사결과 보고서" ¹⁾ 를 통하여 발표한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의 최근 5년간 평균 점수가 74.86 ²⁾ 점이므로, 목표를 전향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점으로 '16년 목표치 설정	"2016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에서 '15년 주관적 행복지수 점수	2016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¹⁾ 한국방정환재단 및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0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유니세프의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를 모델로 한 국제비교 연구 조사결과

²⁾ '09~'15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 추이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목표치)
64.3	65.1	66.0	71.4	72.5	74.0	90.4	78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저출산, 여성 경제활동 증가, 가족형태 다변화, 아동 양육부담 가중 등 양육 환경 변화에 따라 아동정책 재검토

- 미래 인적자본의 역량강화 관점에서 아동기 전반에 대한 전략적 투자방안 마련 및 아동정책 비전 제시
- 아동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가구 아동까지 정책대상 확대

□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 노력 강화 필요**

- 입양에 대한 편견해소 등을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홍보 확대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 지속 요구, **방과후 돌봄 연계체제에 대한 관계자들의 수용도 제고** 등 현안 과제 상존
 - 지원 시설 수 확대보다 **운영비 인상 중점 추진**
 - 돌봄서비스기관, 관련단체,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컨설팅, 워크숍 등 실시

□ **드림스타트 서비스 대상이 시군구 내 일부지역으로 한정되어 아동의 거주 읍면동에 따라 서비스 수혜 형평성 문제 야기**

- 시·군·구 내 **전체 읍면동 지역으로 서비스 대상 확대 추진**

□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국가 책임 및 대책 요구 증대**

- **아동학대에 대한 잘못된 사회 인식 전환**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지속 추진

(4) 기타

□ **참고자료**

- 2016년도 아동분야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2013년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보건복지부)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아동행복도 제고를 위한 공적책임 강화(III-2-①)**

□ **추진배경 (목적)**

- 아동정책 대상과 범위를 요보호아동 중심에서 탈피하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 미래세대 육성관점에서 부처별, 기능별로 분리 수행중인 **아동 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
- 현재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아동정책 비전 제시 및 아동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립한 범정부 차원의 **중기계획* 이행관리**
 - 아동정책 기본계획 '16년 시행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보고 안건 상정('16.3월)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행실태 및 정책성과를 보고·평가·공개하며, 소관부처 주관의 다양한 정책 성과 홍보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한 보고 및 점검 정례화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16.3.22공포, '16.9.23.시행) 되어 이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16.9월)

- 정책대상인 아동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동총회 등을 통해 정책수혜자(아동)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16.11월)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아동정책 기본계획 '16년 시행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상정	'16.3월	
2/4분기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 관련 지자체 담당자 등 간담회	'16.4월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16.5월	
3/4분기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16.8월	
4/4분기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16.9월	
	아동정책실무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개최	'16.11월	
	아동정책 만족도 조사	'16.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정책대상 아동
- (이해관계자) 아동정책 관련 부처, 아동복지 관련 기관·단체,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

□ 기대효과

- 아동발달주기 및 다양한 욕구 등을 고려한 중장기 맞춤형 지원 대책을 통하여 정책체감도 향상
-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안정적 보호가 가능한 사회시스템 재정비

전략
목표
표 III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아동정책 만족도	-	-	-	7.5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아동 및 이해관계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7.5점 이상의 만족도를 목표로 설정	아동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점수 (10점만점)	"대한민국 아동총회"에 참석한 아동대표들과 아동복지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아동정책 총괄·조정건수	-	2	4	5	아동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전년대비 회의 개최횟수 25% 증가한 횟수를 목표로 설정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등 포함) 등을 통한 아동정책 총괄·조정 횟수	회의결과 보고서 등 근거자료 제출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	-	100 (신규)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을 위한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적기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여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절차 추진 자료

* 성과지표 달성률 측정방법 : 각 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한 점수의 총합

☞ (각 지표별 가중치) 아동정책 만족도(*0.2), 아동정책 총괄·조정건수 달성률(*0.4),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0.4)

②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공적책임 및 입양인 사후관리 강화 (Ⅲ-2-②)

□ 추진배경 (목적)

- 입양절차 전반의 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요보호아동의 권익·복지 증진 및 입양인 사후관리 지원
 -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양육방식은 「친가정보호 → 국내가정보호 → 국제입양」 順으로, 국내입양의 우선적 추진
 - 국외입양아동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헤이그협약 가입에 따른 이행입법 마련 등 입양제도 확립은 물론,
 - 국외입양인의 정체성 확립을 포함한 입양인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입양인 사후관리 강화
-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 국경과제 80-4. 입양아동의 안전 및 권익 보호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입양가정 경제적 지원 강화 및 입양에 대한 다각적 홍보 확대
 - 입양아동 양육수당 금액 인상을 위한 '17년 예산확보 추진(6월~)
 - * ('16) 만 16세 미만, 월 15만원 지원 → ('17) 만 16세 미만, 월 20만원 지원
 - 입양에 대한 국내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실시(4~12월)
 - 입양의 날(5.11) 및 입양주간(5.11-17) 행사를 통한 아동중심의 입양문화 정착 및 입양에 대한 편견 해소 추진(5월)
 - * 입양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자료(상반기) 및 반편견 입양교육 실시, 온-오프라인 연계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한 홍보(연중), 지속적인 언론기고(연중) 등

전략
목표
표 III

- 국외입양 아동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해 “헤이그국제아동 입양협약” 이행 준비
 - 협약 비준 대비 기관별 기능 개편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운영(~9월)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마련을 위한 관계자 협의 등 제정 추진(~12월)
- 국내외입양인 사후관리 강화
 - (입양인 뿌리 찾기 지원) 입양DB의 조속한 구축 및 자료의 체계적 보존
 - * 입양특례법 이전 발생한 입양정보 약 23만건 중 '15년 말까지 80천여건 구축, 폐쇄·입양업무 종결기관 발굴 및 입양정보 영구보존 작업 추진(연중)
 - (입양인 정보공개청구 제도 개선) 국내외 입양인 친생부모 찾기 등 입양정보공개청구 제도 개선을 위한 매뉴얼 개정·배포(3월)
 - (사후서비스 사업) 국내외 입양인 사후서비스 사업 현장점검(하반기)
- 아동권익 향상을 위한 입양기관 실무역량 강화
 - 입양기관 업무 입양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상·하반기 점검 실시(11월)
 - 입양기관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하반기)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6년도 입양인 사후관리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수행기관 공모	'16.3월	
	16년도 입양실무매뉴얼 개정·배포	'16.3월	
2/4분기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 행사 실시	'16.5월	
	16년도 입양인 사후서비스사업 현장점검 계획 수립	'16.6월	
3/4분기	입양관련 기관간 기능개편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운영	'16.6월	
	반편견입양교육 상반기 평가 실시	'16.7월	
4/4분기	입양관련 기관간 기능개편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운영	'16.9월	
	16년도 입양기관 지도·감독	'16.11월	
	16년도 입양인 사후서비스사업 현장점검 실시	'16.12월	
	국내입양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물 등 제작	'16.12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부처협의 실시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내외 입양인, 국내입양가정, 입양아동의 친부모 등
- (이해관계자) 국내외 입양기관, 입양인 단체 등

□ 기대효과

-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 강화를 통해 최상의 아동 이익 실현
 - 입양전반의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입양체계 개선 및 이를 통한 아동의 안전과 권익 보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입양아동 가족지원(IV-1-일반재정(10))			
① 입양아동 가족지원(6364)	복권기금	207 (207)	210 (210)
▪ 입양아동 가족지원(346)	복권기금	207	210
가정입양 지원(IV-1-일반재정(3))			
② 가정입양지원(1333)	일반회계	44 (44)	48 (48)
▪ 중앙입양원 및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301)	일반회계	44	48

전략
목표
III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아동권익중심의 입양 체계 개선율(%)	(신 규)		57.7	100 (목표치 달성 기준을 100으로 변경)	요보호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양체계 정립을 위한 종합 지표 마련 ①국내입양 비율 65% (가중치40) ②입양인 입양정보 DB 구축율 51.2% (가중치40) ③반편견입양교육 만족도 91% (가중치20)	각 세부항목의 합	- 연간 국내입양아동 현황 - 입양정보 DB 구축 결과 - 반편견입양교육 실시 결과

< '16.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작성 방법 >

- 성과지표 : “아동권익중심의 입양체계 개선율”
 - 내용
 - ① 국내입양 비율 (30%) : 1년간 입양특례법으로 가정법원에서 허가된 아동 중 국내입양아동 비율 ('16년도 목표 : 65%)
 - ② 입양인 입양정보 DB 구축비율(50%) : 총 23만여건(최종목표치)을 100%로, 연차별 구축비율 마련 ('16년도 목표 : 51.2%)
-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 구축건수 | 10,000 | 35,000 | 79,653 | 119,653 | 159,653 | 199,653 | 233,681 |
| 비율 | 4.3 | 15.0 | 34.1 | 51.2 | 68.3 | 85.4 | 100 |
- ③ 반편견입양교육 만족도 (20%) : 교육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16년도 목표 : 91%)

③ 취약아동 돌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Ⅲ-2-③)

□ 추진배경 (목적)

- 맞벌이, 한부모 등으로 방과후 홀로 방치될 수 있는 아동들에 대한 **안전한 보호망**을 구축하여 비행, 범죄 노출을 예방
 - 보호, 민간후원 연계, 급식, 상담 등 **취약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계층간 양극화 해소 및 사회 통합에 기여
- '07년부터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양육 환경과 발달 상태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아동의 문제를 조기 진단·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 강화**
 -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협력 및 아동복지기관협의체를 통한 서비스 통합·조정 등 드림스타트 중심의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서비스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 자원 개발 및 자원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
- **국정과제**

59-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인상 등 근로여건 개선 :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63-4. 방과후 돌봄사업 기능 강화 및 연계체제 강화 : 범정부 방과후돌봄 서비스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80-2. 드림스타트의 전국 확산 및 통합서비스지원 기능 강화 : 아동 삶의 전 영역에 걸쳐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전체 시군구, 시군구 내 전 읍면동으로 사업지역 단계적 확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및 돌봄 연계체계 강화**
 - **(돌봄서비스 수준 향상)** 운영비 지원 확대, 제2기 시설평가 등
 - ('15년) 4,113개소, 월443만원 → ('16년) 4,113개소, 월458만원
 -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운영비 감액·중단 등
 - **(돌봄서비스 연계 강화)** 돌봄서비스기관, 관련 단체,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컨설팅, 공동연수·워크숍 등 실시
- **드림스타트 전국 확대 및 통합서비스 체계 강화**
 - 아동 삶의 전 영역에 걸친 포괄적 서비스가 개인·가구 특성에 따라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기능 확대
 -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여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을 통합·조정하여 서비스 연계
 - * 복지대상자 정보가 이미 개인별·가구별로 구축되어 있는 '행복e음'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활용하여 **대상자 발굴 및 관리**

전략
목표
III

< 주요 기능 >

- ▶ 지역 내 복지자원 관리 및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
- ▶ 지원 대상 아동 발굴 및 아동별 욕구 사정
- ▶ 서비스 조정·연계: 현금, 바우처, 학대피해자 보호, 급식 등
- ▶ 초기상담, 지원계획, 서비스 지원·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
- ▶ 요보호아동 판정·분류·보호체계 결정·연계

- 드림스타트 사업지역을 빈곤아동이 많은 읍면동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센터 지원기능을 강화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15년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확정·보급 및 교육 실시	'16.1월~2월	
	○ 거점형, 특수목적형, 토요일영 센터 선정	'16.1월~2월	
	○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실시('15.12월 기준)	'16.1월~5월	
	○ 시설평가(신규시설 진입평가 및 기존시설 심화평가) 계획 확정 및 실시	'16.1월~6월	
	○ 시설종사자 교육 및 운영컨설팅 계획 확정 및 실시	'16.1월~10월	
	○ 특례시설 평가 실시 (상시)	'16.2월~10월	
	○ 지역돌봄운영협의체 컨설팅 실시 및 운영현황 점검	'15.2월~12월	
	○ 드림스타트 '15년도 사업운영 점검 실시	'16.1월~3월	
	○ 드림스타트 실무자교육 : 신규직원 교육 및 기존직원 전 문화교육	'16.2월~12월	
	○ '16년 상반기 전국 드림스타트 팀장 추진협의회 개최	'16.3월	
2/4분기	○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조사 실시	'16.3월~10월	
	○ 지역별 돌봄계획수립을 위한 지표개발 및 아동비용 편익조사 연구	'16.3월~11월	
	○ 통합자원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별 외부 자원연계 현황 조사	'16.4월~5월	
	○ 평가 미흡시설 대한 컨설팅 실시	'16.4월~10월	
	○ 아동복지교사 교육운영, 실적 및 성과관리	'16.4월~10월	
	○ '16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운영 우수사례공모	'16.4월~8월	
	○ 드림스타트 '15년도 사업운영 점검 결과 통보	'16.4월	
	○ 드림스타트 업무지원시스템·홈페이지 기능개선 보완	'16.4월~6월	
	○ '16년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 실시	'16.5월	
	○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모니터링 및 상시 컨설팅 운영	'16.6월~10월	
	○ 드림스타트 '16년도 점검 미흡지역에 대한 개별 지원	'16.5월~6월	
	○ '16년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분야 컨설팅 실시	'16.5월~9월	
	○ 드림스타트 '17년도 점검지표 등 점검방식 개선(안) 마련	'16.6월~10월	

전략
목표
표 III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3/4분기	○ 지역아동센터 심화평가 실시	'16.7월~9월	
	○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실시	'16.7월~10월	
	○ 2기 '16년도 평가지표 등 개선	'16.7월~12월	
	○ 지역아동센터 이용서비스 만족도 조사	'16.8월~11월	
	○ 드림스타트 상반기 운영 실적 조사	'16.7월~9월	
	○ '16년 드림스타트 우수사례 공모전 추진	'16.7월~9월	
	○ 드림스타트 '16년 사업 효과성 연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16.8월~11월	
	○ '17년 아동복지교사 채용 및 지원 계획 수립	'16.9월	
4/4분기	○ '17년 사업지침 개정을 위한 지자체, 유관단체 및 현장의견수렴	'16.10월~12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능개선	'16.10월~1월	
	○ 지역아동센터 우수프로그램, 우수UCC 시상 및 유공자 표창	'16.10월~12월	
	○ '17년 아동복지교사 채용 및 지역아동센터 매칭	'16.10월~12월	
	○ '16년 하반기 드림스타트 추진협의회	'16.11월	
	○ 드림스타트 '16년도 사업 현장점검 실시	'16.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지역아동센터

- (수혜자) 지역사회 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 (이해관계집단) 지역아동센터(아동이용시설), 아동복지교사, 지역 아동센터 관련협회 등 유관단체

○ 드림스타트

- (수혜자) 취약계층* 아동(12세 이하) 및 그 가족, 임산부

*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

□ 기대효과

- 학교와 가정 및 민간기관들과 연계하여 방과후 방치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망을 지역사회 단위에서 구축
- 학령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견인,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양육부담 경감 등 지역내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도모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사회비용 절감효과 기대
- 사업실시 시군구 드림스타트 기능 확대 및 시군구 내 지원대상 지역 확산을 통해 복지수혜의 형평성 제고
- 지역 내 복지자원과의 연계·조정체계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효과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방과후활동지원(IV-2-일반재정①)			
① 방과후활동지원(1431)	일반회계	1,377 (1,377)	1,427 (1,427)
▪ 지역아동센터 지원(300)		1,377	1,427
드림스타트 지원(IV-2-일반재정②)			
① 드림스타트지원(1434)	일반회계	658 (658)	668 (668)
▪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302)		658	66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지역아동센터 이용 서비스만족도(점)	-	신규 87.4	85	<산출근거> '15년도 실적 및 별도 자료 (패널조사결과)를 감안하여 85점설정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패널조사 별도 실시) 초등학교 4학년의 이용 만족도 '14년 85.2점, '15년 84점	○ 측정산식 ·대상: 시설서비스 이용아동(학부모) ·표본수: 아동 10% ·시기: 연도말 ·문항: 아동 보호, 학습, 문화, 친구 대인관계, 아동참여인권 등 18여개 항목	-이용아동만족도 실적보고자료
드림스타트 사업지역 확대 개소수		신규	3,137	-드림스타트 사업실시지역을 전체 읍면동의 9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3,486개소(전체 읍면동수) × 90% = 3,137개소 * '15년 실적(3,049) 대비 2.9% 증 (신규 사업지역 88개 시군구) ** 「'17년까지 드림스타트 사업지역 전체 읍면동 확대」를 행정부 국정 과제로 추진중	(대상) 전체 229개 시군구 (조사시기) 당해 연도 말 (조사방법) 지자체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중 드림스타트 사업 실시지역(읍면동)수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전략
목표
III

④ 아동권리 및 아동안전 증진(Ⅲ-2-④)

□ 추진배경 (목적)

-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신고 활성화, 학대 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를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실종·유괴 예방 및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체계 구축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아동의 안전과 권리에 대한 국민의식 향상 교육 및 홍보, 어린이날·아동학대예방의 날 등 행사를 통한 아동인권 증진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 조기발견 강화, 신속대응 및 처벌 강화, 학대 피해아동 보호·지원 및 재학대 방지
- **실종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장기실종 아동 등의 가족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가족상담·의료비 등 지원 및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실종가족 사례관리 강화
- **아동의 안전과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안전사고예방, 아동권리, 아동학대예방 등 교육·홍보 연계 추진
 -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행사, 아동권리포럼, 대한민국아동총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및 주간행사 등을 통해 아동 권리에 대한 국민의식 향상 및 제도 개선 모색

전략
목표
Ⅲ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부모인식 개선 대토론회	'16.3월	
	○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미실시 영유아 양육환경 점검	'16.3월	
	○ 실종아동 가족 상담 및 의료비지원	'16.1월~12월	
	○ 실종·유괴예방교육 및 홍보	'16.1월~12월	
	○ 아동권리포럼, 아동총회, 어린이주간 추진계획 수립	'16.3월	
2/4분기	○ 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 TV광고 송출 등 대국민 캠페인	'16.4월	
	○ 산후조리원, 소아과 등 홍보리플렛 배포 등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강화	'16.4월	
	○ 실종아동 가족지원, 각종 홍보활동 등 전개	'16.4월~	
	○ 아동안전 체험콘텐츠 보완 및 체험교구 개발	'16.4월~	
	○ 아동안전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16.4월~	
	○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행사	'16.5월	
3/4분기	○ 아동권리포럼 개최	'16.4월~	
	○ 학대가정 위험도 평가척도 개선	'16.7월	
	○ 조기개입, 서비스 연계·의뢰에 필요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16.8월	
	○ 아동안전 체험 및 교육 콘텐츠 보완 개선	'16.7월~	
4/4분기	○ 아동총회 본대회 및 지역대회 개최	'16.9월~	
	○ 아동학대 예방의 날 및 주간 행사	'16.11월	
	○ 실종아동 가족 등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실시	'16.10월~	
	○ 아동안전교육 실태 및 만족도 조사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아동 및 그 가족

□ 기대효과

- 아동학대 예방,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사후관리 등 일련의 전 과정에 대한 실효성 제고
- 실종아동 조기발견체계 구축 및 장기실종 아동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해체 예방
- **아동안전 및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IV-1-일반재정⑥)				
① 아동학대피해자보호 및 지원(1137)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195	156
			(195)	(156)
▪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300)			195	156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IV-1-일반재정⑦)				
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6363)	복권기금		59	29
			(59)	(29)
▪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 지원(345)			59	29
실종예방 등 아동안전 증진(IV-2-일반재정③)				
①실종예방 등 아동안전 증진(1332)	일반회계		10	10
			(10)	(10)
▪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301)			10	10
아동·청소년 정책연구 및 통계조사(IV-5-일반재정①)				
①아동·청소년 정책연구 및 통계조사(1031)	일반회계		353	335
			(353)	(335)
▪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303)			353	335
아동·청소년 참여·인권증진(IV-5-일반재정②)				
①아동·청소년 참여·인권증진(1032)	일반회계		494	374
			(494)	(374)
▪ 아동인권 증진 지원(304)			494	374

전략
목표
III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아동학대 재학대 발생률 감소(%)	14.4	10.2	10.6	10.5	최근 3년간 재학대 발생률 11.7%와 전년도 실적인 10.6%를 고려하여 0.1%p 감소	당해 연도 아동학대 판단 사례 중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되었던 건수/당해년도 아동학대 판정 건수 × 100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실종아동 가족 인계율 (%) (공통)	신규	신규	97	99	'15년 실적 및 기재부(재정관리총괄과)의 성과계획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실종아동 발생자 중 가족으로 인계된 현황 (가족인계자 수 / 실종발생자수*100)	경찰청 제공 통계자료
아동안전사고 예방 교육 참여자 만족도 (%)	95.3	93.4	94.5	92	예방교육의 실질적인 효과와 현실에서의 활용성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목표치 설정(4개년도 실적치 및 기재부(재정관리총괄과)의 성과계획서 검토의견을 감안하여 산정)	교육참석 부모 및 교사 등 대상 (교육만족도 점수(100점 만점/전체 응답자 수)	최종 사업결과보고서 (사업위탁 수행기관)

(1) 주요 내용

□ 치매예방, 조기발견 및 꾸준한 관리를 통해 요양시설 입소를 감소

- 치매예방수칙과 치매예방 운동법 확산·배포 및 손쉬운 치매 자가체크 지원
- 보건소에 치매환자 등록 및 치매환자 가족에게 치매 돌봄정보 제공 및 정서적 지지 등을 위한 상담
- 중앙(1개소)·광역치매센터(13개소) 운영 및 미설치 시도에 광역 치매센터를 설치하여 전국적 치매관리전달체계 확립
- 의사, 간호사, 보건소 치매상담전문요원, 치매환자 가족 등에 대하여 치매와 관련된 전문교육 실시

□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강화

- 고독사·자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 거동불편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체계 강화
- 독거노인 상호돌봄체계 구축

□ 노인 사회참여 확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337 → 387천명)
- 재정지원 일자리는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여 성과를 극대화 하고, 민간 기업의 자발적 노인 고용을 활성화
- 노인취업교육 강화로 참여노인 취업역량 제고 (노인취업교육 센터 6 → 8개소)

□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 추진

- 장기요양 갱신절차 간소화 마련 시행
- 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복지용구 급여제도 개선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적용 매뉴얼 마련
-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기전 마련

□ 요양시설 서비스의 전문화 및 인력배치 기준 합리화

- 소규모(12인)단위, 요양보호사(치매교육*) 추가 배치**, 공용 생활 공간 설치를 통해 가정같은 곳에서 자율적 일상생활이 가능 하도록 지원
- 촉탁의 자격 제도개선 및 주기적 구강건강 관리
- 시설 규모에 따라 입소인원, 업무특성, 채용률 등을 고려하여 세부조정, '필요수'의 정수화 또는 규정삭제

전략
목표
III

성과목표·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①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참여자수 ②보호독거노인수 ③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관리과제) 국가치매관리체계 구축	①치매조기검진률(%)(공통) ②치매관련 공공보건서비스 이용자 수(만명)
(관리과제) 독거노인 돌봄 강화	보호독거노인수(만명)
(관리과제) 노인 사회참여 확대	①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수(만명) ②시니어인턴십 취업성공률
(관리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	① 장기요양갱신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등 ②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신규 도입 ③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④ 복지용구 고시개정 ⑤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매뉴얼 마련 ⑥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기전 강화
(관리과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 제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만족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①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참여자수	24	31	37	38	- 노인일자리 종합계획('13. 7월)에서 제시한 연도별 노인일자리 확충 계획 및 '16년도 예산 지원 기준에 따라 일자리 창출 목표치 설정 <연도별 노인일자리 확충 계획('13)> (단위 : 만명)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13</td> <td>'14</td> <td>'15</td> <td>'16</td> <td>'17</td> </tr> <tr> <td>23</td> <td>28</td> <td>33</td> <td>38</td> <td>43</td> </tr> </table>	'13	'14	'15	'16	'17	23	28	33	38	43	노인일자리 전산시스템(세누리시스템) 등목실적	시·도별 사업결과 보고
'13	'14	'15	'16	'17													
23	28	33	38	43													
②보호독거노인수 (만명)	22	36	46.8	47	- '16년 독거노인 보호 사업 목표 수혜자 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응급안전돌봄서비스 및 사랑잇기 서비스, 친구만들기, 노노케어 전체 수혜자 수	취약노인 지원시스템 및 바우처 시스템상 수혜자 수										
③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88.8	89.1	89.7	90.3	- 기준치 : 2년 평균 89.4% ('12년 미실시) - 목표치 : 최대값+(최대값-2년 평균값) / 89.7 + (89.7 + 89.4) = 90.3 - '15년 목표치 산출의 구체적 근거를 상세히 제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조사대상: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 - 조사시기: 상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전략
목표
III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 퇴직 및 고령으로 인해 노인의 사회활동은 위축되고, 높은 노인 빈곤율로 일자리 참여 욕구는 높으나 정부지원은 수요에 비해 부족
 - 노인의 경륜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15. 337천명 → '16. 387천명) 및 민간 기업의 자발적 노인 고용을 활성화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고령화사회 진입 후 특히, 후기 고령자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치매 노인 및 다양*해진 노인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필요

※ 85세이상 인구비율 '14년 1.0%, '20년 1.6%, '50년 7.7%

65세이상 인구비율 '14년 12.7% '20년 15.7% '50년 37.4%

* 베이비부머 중 노후 일자리 참여 욕구 : 63.9%

베이비 부머 희망 노후생활 : 자원봉사(16.8%) 소득창출(18.8%) 자기계발(7.5%)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국가치매관리체계 구축(Ⅲ-3-①)

□ 추진배경 (목적)

- 인구 고령화 심화에 따라 치매환자도 빠르게 증가하여, '16년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자는 10.0%, 686천명으로 추정
- 치매환자의 의료 및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은 연평균 10~20% 증가 추세이며,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비 등 사회적 부담도 증가하여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11.7조원으로 추정
-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적 정책 추진을 위하여 「치매관리법」 제정('11.8월),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12~'15)」 수립('12.7월) 및 이행 완료
- 치매환자 가족지원, 중앙·광역치매센터 설치 근거 등을 담은 「치매관리법」 개정('15.1),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이 편하고 안전하고 살아가기 위한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 수립·발표('15.12)하여 '16년 본격 추진 중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치매예방) 치매예방수칙 333, 치매예방운동법의 지속적 확산·보급 및 꾸준한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치매예방실천지수 개발
 - 건강백세운동교실 및 노인건강마일리지 시범사업(12개 지역)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꾸준한 운동 실천 및 치매 예방 지원

- (치매검진) 치매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 지원, 고위험군에 대하여 협약병원과 연계하여 진단 및 감별검사 지원
 - 스마트폰용 자가검진 도구인 “치매체크앱”을 통해 손쉬운 치매 자가체크 지원
- (치매관리) 치매확진 후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하는 경우 소득기준 충족 시 월3만원 이내 치매진료비와 약제비 지원
- (치매상담)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운영하여 치매환자 가족에게 치매 돌봄정보 제공 및 정서적 지지 등을 위한 상담
- (인식개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환자 가족을 지지하는 ‘치매파트너즈’ 모집 및 지역사회 치매환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치매안심마을’ 운영모델 개발 추진
 - 치매극복 걷기대회(4월), 치매 극복의 날(9.21) 등을 통해 생활 속 건강한 습관형성 및 치매예방의 중요성 홍보
- (인프라 확충) 중앙(1개소)·광역치매센터(13개소) 운영 및 미설치 시도에 광역치매센터를 설치하여 전국적 치매관리전달체계 확립
 - 치매환자에 전문적 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증상악화 지연 및 가족의 부담경감을 목표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기능보강사업 지원
- (치매전문교육) 의사, 간호사, 보건소 치매상담전문요원, 치매환자 가족 등에 대하여 치매와 관련된 전문교육 실시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치매안심마을 운영모델 개발 연구계획 수립	'16.1월	
	건강백세운동교실 및 노인건강마일리지 시범사업 추진	'16.3월	
2/4분기	치매전문교육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교육 실시	'16.4월	
	신규 광역치매센터 설치계획 수립 및 지자체 통보	'16.4월	
	치매극복 걷기대회 개최	'16.4월	
3/4분기	공립요양(치매)병원 기능보강 수행기관 공모·선정	'16.7월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개최	'16.9월	
4/4분기	국가치매관리워크숍 실시	'16.11월	
	신규 광역치매센터 개소	'16.12월	
	치매예방실천지수 개발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치매환자 및 가족, 일반국민, 의사·간호사·보건소 치매상담전문요원 등 치매관련 종사자
- (이해관계자) 중앙·광역치매센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공립요양병원, 치매관련 종사자 등

□ 기대효과

- 치매예방, 조기발견 및 꾸준한 관리를 통해 요양시설 입소율 감소 등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
- 치매환자 가족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을 통해 부양 부담 경감

전략
목표
표 III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치매관리사업 지원 (IV-7-일반재정①)			
① 치매관리사업 지원(2234)	국민건강 증진기금	142	158
▪ 치매관리체계 구축(301)		(142)	(158)
취약계층의료비지원 (III-1-일반재정①)			
① 취약계층의료비지원(2631)	국민건강 증진기금	351	351
▪ 노인건강관리(304)		(165)	(17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치매조기검진률(%) (공통)	신규 23	24.2	24.5	24.5	2015년 실적은 24.2%로, 선별검사실적은 전년 대비 약 5% 증가를 목표로 하되, 노인인구가 매년 약 3.7% 증가함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1.3% 상향 조정 (15) (선별검사 1,583,258건 + 치매체크업 다운 20,379건=1,603,637명) / 만 65세 이상 노인 6,624,120명	(치매선별검사 건수+치매체크업 다운건수) / 만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지자체 및 중앙치매센터 실적보고
치매관련 공공보건 서비스 이용자 수 (명)	신규 188	188	188	191만	전년 대비 '16년 예산 증액을 (1.7%)과 유사한 수준으로 목표치 상향 조정	치매검진 지원 인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인원 + 치매상담콜센터 상담 건수	지자체 및 치매상담센터 실적보고

② 독거노인 돌봄강화(Ⅲ-3-②)

□ 추진배경 (목적)

○ 취약 독거노인의 급증으로 정서적 지원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

* 독거노인 추이 : ('15)144만명 → ('25년)225만명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 타당성 및 신뢰성을 갖춘 현황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지원 필요

○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인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체계 미흡

-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심층평가'(기재부)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전문성 미흡 및 직무·사회복지 관련 교육 강화' 필요성 제기

→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직무·보수교육 강화를 통한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수혜자 만족도 제고 필요

○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를 위하여 농림부 및 일부 지자체에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사업을 추진 중

- (인프라) 농촌 위주 시행으로 도시지역 인프라가 미흡

- (콘텐츠) 취사·여가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노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콘텐츠 부족

→ 공동생활홈 표준모델 및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보급 필요

○ 기존 서비스(안부확인, 재가복지)는 사회적 연계, 자살예방 등에 한계

* 친구와 연간 1~2회 또는 접촉을 거의 하지 않는다 : 도시 6.8% / 농촌 4.6%('14 노인실태조사)
 * 경로당 이용률 : 도시 17.2% / 농촌 54.3%('14 노인실태조사)
 * 무연고 시신처리 : ('11) 682건 → ('12) 719건 → ('13) 878건('14 김춘진 의원실 자료)
 ※ 독거노인의 사회관계망 구축이 절실한 상황

→ 이웃 간의 관계가 소원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도심지역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상호 돌봄체계 마련이 필요

○ 취약 독거노인 급증으로 정부이외의 다양한 자원의 참여·협력이 필요

-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및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현황조사표 개정(16년 4월) 및 전국 현황조사 실시(5~6월)

- 요보호 독거노인 판정도구로서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현황조사표 개정* 및 표본조사(3~4월) 실시

* '독거노인돌봄기본사업 개선방안 연구' 용역 진행('16. 1. 28 - 4. 30)

- 현황조사(5~6월)를 실시하여 요보호 독거노인의 정확한 규모 파악

* 시·군·구 별 대상자 확정 후 지자체 별 예산 배정·확정내시(12월)

○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직무·보수교육 강화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 자살예방 gatekeeper 교육(2~4월)을 통해 자살 고위험 독거노인 발굴 및 유관기관 연계 강화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6월~11월)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이해, 노인학대예방, 치매예방, 노인의사소통 및 상담 등 교육

○ 공동생활홈 서비스 모형 개발

- 독거노인이 함께 거주하며 결식·외로움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시형 공동생활모델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16. 상)

○ 독거노인 상호돌봄체계 구축

- 사회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특성별*로 분류한 후 그룹별 심리치료·건강·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사회관계 복원 지원

* 은둔형 고독사위험군, 활동제한형 고독사위험군, 우울형 자살고위험군 등

- 전국 80개 기관을 선정, 자문단을 통해 대상자 선정·프로그램 기획 등 멘토링 및 정기적 점검 실시

○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등 민·관 협력 확대

- 민·관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안부확인, 후원물품 전달 등의 서비스 제공

* ('14)84개, 54억원→('15)92개, 88.6억원→('16)100여개 기업·단체와의 후원 결연 목표

- 민간기업·단체와의 후원 협약식(5월) 및 재협약식(11월) 개최

*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효사랑 큰잔치(5월), 사랑나눔의 장(11월)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노인돌봄서비스 지침 시행	'16.3월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사업실시	'16.1월~12월	
	생활관리사 자살 예방 gate-keeper 교육 실시	'16.2월~4월	
2/4분기	독거노인 현황조사 실시	'16.5월~6월	
	독거노인 사랑잇기 협약식 및 어버이날 효사랑 큰잔치 개최	'16.5월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모델 개발 연구용역 실시	'16.5월~7월	
3/4분기	하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	'16.7월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시범사업 수행기관 1차 점검 실시	'16.8월~10월	
4/4분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평가진행	'16.10월~12월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	'16.11월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사랑나눔의 장 행사 개최	'16.11월	

전략
목표
표 III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65세 이상 1인 가구(독거노인)
- (이해관계집단) 지자체,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등

□ 기대효과

- 취약 독거노인 대상으로 안부확인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생활 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립생활 능력을 지원하는 등 독거노인의 삶의 질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노인돌봄서비스(I -1-재정①)			
①노인돌봄서비스(2134)	일반회계	1,313 (1,313)	1,534 (1,53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보호독거노인 수(만명)	22	36	46.8	47	'16년 독거노인 보호 사업 목표 수혜자 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합 서비스, 응급안전돌봄미 서비스 및 사랑잇기 서비스, 친구만들기, 노노케어 전체 수혜자 수	취약노인지원시스템 및 바우처시스템 상 수혜자 수

전
략
목
표
III

③ 노인 사회참여 확대(III-3-③)

□ 추진배경 (목적)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노인 사회활동 및 일자리 지원 확대 : 337 → 387천명
 - 공익활동(262천명), 재능나눔 활동(40천명), 시장형(85천명)
- 재정지원 일자리는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여 성과 극대화
 - 민간 취업이 곤란한 저소득 고령노인에게 공익활동을 우선 지원하고 참여자 시·군·구 통합 선발로 변경
 - 재능나눔활동은 재능을 보유한 쏠 노인으로 참여자격 확대
 - 시장형사업은 공익활동 개편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고 성과 중심으로 운영
- 민간 기업의 자발적 노인 고용을 활성화
 - 기업대상 노인일자리 수요조사 실시 및 노인 근로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기업을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기준 마련
 - 노인취업교육센터 확대 및 강화로 참여노인 취업역량 제고 (6 → 8개소)
 - 공공기관 등과 민관협력을 통해 다양한 비재정 노인일자리 창출
 - 노인 구인구직 포털을 활용한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16.1월	
	'16년 노인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등 사업 시행	'16.3월	
2/4분기	'16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등 사업 추진	'16.4월	
	'1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	'16.6월	
3/4분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장점검	'16.8월	
	고령자친화기업, 시니어인턴십 현장점검	'16.9월	
4/4분기	민간 노인일자리 활성화 추진(기업수요조사 등)	'16.10~12월	
	'17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의견수렴	'16.11월	
	'1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 (이해관계자) 지자체, 사업수행기관*, 민간기업
 -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종합사회복지관 등 약 1,200여개

□ 기대효과

- 사회활동 및 일을 통해 노인 4苦(빈곤, 질병, 고독, 역할상실) 완화 등 활력있는 노후생활에 기여하고, 노인 문제에 따른 사회적 부양부담 경감

<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 평가(2011, 보사연) >

- ① 심리적 효과 : 참여노인의 60%는 자아효능감, 우울, 삶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고,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74.7%가 만족한다고 응답('12. 노인실태조사)
- ② 사회관계 개선 : 비동거 자녀, 친척, 친구와 만나는 빈도가 높아졌으며(6개월간 0.44회 증가)
- ③ 의료비 감소 : 참여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적었고(6개월간 117천원) 참여 후 의료비 지출도 감소(101천원)
- ④ 경제적 효과 : 월 평균 18만원 가구소득 증가 효과가 있었고, 가구 빈곤 14.7% 감소 효과 : 최저생계비 미만 절대빈곤율 71.1 →56.4%

전략
목표
표 III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노인일자리 지원(IV-4 일반재정⑤)			
① 노인일자리지원(2139)	일반회계	3,561 (3,561)	3,907 (3,907)
▪노인일자리 운영		3,561	3,90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수 (단위 : 만명)	24	31	37	38	노인일자리 종합계획('13.7월)에서 제시한 연도별 노인일자리 확충 계획 및 '16년도 예산 지원 기준에 따라 일자리 창출 목표치 설정 <연도별 노인일자리 확충 계획(13)> (단위 : 만개)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tr><td>'13</td><td>'14</td><td>'15</td><td>'16</td><td>'17</td></tr><tr><td>23</td><td>28</td><td>33</td><td>38</td><td>43</td></tr></table>	'13	'14	'15	'16	'17	23	28	33	38	43	노인일자리 전산시스템(새누리시스템) 등록 실적	시·도별 사업결과보고
'13	'14	'15	'16	'17													
23	28	33	38	43													
시니어인턴십 취업 성공률(%) (공통)	28.4	37.5	52.4	54	'14년 시니어인턴십 사업 실적 분석결과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적용)	(취업자 / 시니어인턴십 참여자 전체) *10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결과보고서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Ⅲ-3-④)

□ 추진배경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08.7월) 이후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제도를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고,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등으로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장기요양 갱신절차 간소화 마련 시행

- 고령의 수급자 특성상 동일등급 유지비율이 높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낭비 제거를 위해 갱신절차 개선 방안 마련

* 현재 장기요양 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최초 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갱신절차를 적용중임

○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제도 도입

- 중증의 치매노인(1~2등급)을 집에서 돌보고 있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연 6일 범위 내에서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수급자의 욕구와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간호-목욕 통합서비스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복지용구 급여제도 개선

- 수급자에게 양질의 복지용구 급여를 위하여 복지용구 급여 유효기간(인증제)도입 및 다양한 품목 급여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적용 매뉴얼 마련

- 일선 장기요양 기관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공무원 눈높이에 맞춘 업무처리지침 매뉴얼(공무원용) 및 기관이 회계 처리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기관용) 마련 및 안내

○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기전 마련

-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설치 신고만으로 지정이 간주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지정을 받도록 하며 지정제를 내실화하고
- 평가거부 기관, 평가결과 연속 최하위 기관 등에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복지용구 급여기간(인증제) 도입, 품목 확대, 내구연한내 급여 지급 등에 관하여 제도 검토	'16.3월	
2/4분기	○ 장기요양 갱신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16.상반기	
	○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규칙 적용 매뉴얼 마련	'16.상반기	
	○ 통합재가서비스 모델개발 연구 용역	'16.상반기	
3/4분기	○ 복지용구 제도개선 마련을 위한 고시개정안 의견수렴 및 개정안 마련 추진 등	'16.4~6월	
	○ 진입·퇴출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안) 마련	'16.4~6월	
4/4분기	○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16.하반기	
	○ 복지용구 제도 개선 반영 고시 개정 발령	'16.7월	
4/4분기	○ 장기요양 갱신절차 간소화 관련 법령 개정	'16 하반기	
	○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신규 도입	'16.12월	
	○ 진입·퇴출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안) 발의	'16 하반기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중 등급판정 인정자(수급자) 및 가족
- (이해관계자) 보험자(건보공단), 공급자(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제공인력(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 기대효과

- 반복적인 갱신조사 생략에 따른 국민 불편 감소, 갱신조사 간소화에 행정비용 절감 및 인력 절감 효과
- 치매노인을 집에서 모시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 하여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키기 보다 재가에서 돌볼 수 있게 됨
- 장기요양 대상자가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상태·욕구에 맞는 통합재가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소규모 영세한 방문요양기관 중심의 공급체계를 통합재가기관 중심으로 개편, 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 수급자에게 양질의 복지용구 급여 및 대여 제품의 안전성 담보와 공급업체의 적극적 제품개발과 수급자의 다양한 급여 제품 욕구 충족
- 불명확한 회계처리기준으로 인한 일선 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처리를 지원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하는 지자체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역할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매뉴얼 마련

전략
목표
III

-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기준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성실기관에 대한 적정보상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5	'16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III-3-일반재정④) ¹⁾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2231)	일반재정	5,972	6,342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303)		5,972	6,34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장기요양갱신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등	-	-	신규	법령 개정	갱신절차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행 할 수 있는 법령의 개정 여부가 중요하여 목표 설정	관련 문서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신규 도입			신규	서비스 신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시행	24시간 방문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신규	시행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시범사업 실시 여부 시범사업 실시 보고서
복지용구 고시개정			신규	개정	복지용구 유효기간 품목 급여 확대 등에 관한 고시개정	고시개정 고시개정 관련 문서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매뉴얼 마련			신규	매뉴얼 마련 및 안내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규칙 적용 매뉴얼 마련	매뉴얼 마련 여부 재무회계규칙 매뉴얼 보고서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기준 강화			신규	법률개정(안) 발의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기준 강화를 위해 법 개정 필요	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여부 관련 문서

5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제고(III-3-5)

□ 추진배경 (목적)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인프라 확충은 되었으나
 - 단일한 시설 유형으로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 및 신체적·정신적 기능 상태에 따른 **적정한 서비스 제공은 미흡**
 - 특히, 급여이용자의 54.3%가 치매환자(14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치매맞춤형 서비스 부족
 - ☞ **치매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 제공 및 전문 인력 배치, 인지기능 유지,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16년도 연두 업무보고)
-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평가 내실화 및 치매 전문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교육 체계마련추진
 -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전달체계 고도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평가 부족
 - 다양한 환경에서 체계화된 치매전문교육 시스템 및 제공인력 부재
-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존의 정수기준을 필요수로**(예; 1명 → 필요수) 완화하여 **시설장의 재량에 따라 채용**
 - 시설장은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투입비용으로 인식하여 해당인력 미채용**, 타 직종이 대리수행함에 따라 **서비스 질 저하**
 - ☞ **‘필요수’를 정수화하여 서비스 질 개선 및 인건비 지급의 합리성 제고 필요**(‘16년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 구강건강 유지 및 악화방지 등을 위한 관리체계 미흡
 - 노인의 구강보건은 **영양공급 등 건강유지와 직결된 사항**으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 촉탁의처럼 구강건강을 위한 치과촉탁의 활동 근거 및 주기적 관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악화방지 등을 돕기에는 미흡**
 - *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이론5시간, 실기8시간) : 구강, 두발, 손발청결 돕기 등
 - ☞ **치과촉탁의 등을 통한 체계적 구강건강 유지·관리 필요**
(‘16년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시설 서비스 전문화 : 치매전담실 운영 >

- **치매전담실을 도입하여 맞춤형 케어 제공**
 - 소규모(12인)단위, 요양보호사(치매교육*) **추가 배치****, **공용 생활 공간 설치**를 통해 가정같은 곳에서 자율적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 * 기존 5등급 치매전문교육 개편(‘16.3월) 및 교육실시(‘16.4월)
 - 기존 교육과정을 공통과정과 시설 유형별 과정, 직무과장으로 세분화
 - ** 치매 유닛 2명당 요양보호사 1명 / 현행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 장기요양기관 평가 내실화 및 치매전문교육 체계마련 >

- 현장중심의 평가지표 적용 및 절대평가 실시
- 치매노인의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전문교육 체계마련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안정적 수급확보 필요

< 시설 인력배치 기준 합리화 : 필요수 인력의 정수화 >

○ 수가 표준모형의 인력 배치기준과 일치되게 정수화

- 수가표준모형은 특정 규모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시설 규모에 따라 입소인원, 업무특성, 채용률 등을 고려하여 세부조정

- '필요수'의 정수화 또는 규정삭제, 기존에 '필요수' 직종 채용시 지급되었던 가산금(필요인력 배치 가산제도)을 폐지

< 시설의 의료서비스 연계 강화 : 치과축탁의 자격 제도개선 >

○ 축탁의 자격 제도개선 및 주기적 구강건강 관리

- 축탁의 자격에 '치과의사'를 추가하여, 축탁의로서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시설에서는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주기적으로 관리

< 장기요양 부당청구 예방체계 구축 >

○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을 사전에 감시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부당청구 감시시스템 구축('16. 상)

○ 장기요양정보공유협의회(장기요양기관-지자체-건보공단)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예방교육 실시(연간)

○ 장기요양기관과 부당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 보험홈페이지'에 주요 부당청구사례 게시('16. 상)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치매 전문교육 추진계획안 수립	'16.1월	
	○ 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설명회	'16.1~2월	
	○ 치매전문교육 공지 및 신청	'16.2~3월	
	○ 필요수의 정수화 추진안 마련에 대한 장기요양위원회 보고	'16.3월	
2/4분기	○ 필요수, 치매전담실 등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입법예고)	'16.4~6월	
	○ 교육실시 및 교육현장 점검	'16.4~6월	
	○ 부당청구 감시시스템 구축	'16.6월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 게시	'16.6월	
3/4분기	○ 필요수, 치매전담실 등 법적근거 마련 완료	'16.9월	
	○ 치매전담실 운영	'16.9월~	
	○ 교육실시 및 교육현장 점검	'16.7~9월	
4/4분기	○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실시평가	'16.4~10월	
	○ 교육결과 종합보고 및 분석	'16.11~12월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전예방 교육	'16.12월	

전략
목표
표 III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 시설 종사자

* 정책 · 사업의 수혜자와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기대효과

○ 장기요양기관 관리방식을 하드웨어 중심에서 서비스 질 중심으로 전환,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 종사자 권익보호를 통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제고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치매전문교육을 통한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인지활동 기능 향상

- 치매전문 서비스 제공인력 수급의 안정적 확보 및 전문성 강화
- 평가결과 공개로 수급자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확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5	'16
노인요양시설 확충(III-3-일반재정④) ²⁾			
① 노인요양시설 확충(2232) ³⁾	일반회계	325 (전체단위 사업비) ⁴⁾	276 (전체단위 사업비) ⁴⁾
▪노인요양시설 확충(301)		320	271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309)		5	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88.8	89.1	89.7	90.3	- 기준치 : 2년평균 89.4%(12년 미실시) - 목표치 : 최대값+(최대값-2년 평균값)/89.7+(89.7+89.4)=90.3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조사대상: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 - 조사시기 : 상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전략
목표
표 III

성과목표 III-4 맞춤형 보육지원 강화 등 무상보육정책의 내실화

(1) 주요 내용

□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강화

-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만0~5세 대상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등 무상보육을 차질 없이 추진**
 -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환수 등 수시 사후관리 시행
-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지원 방식 다양화**
 -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되 취업 등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 충분하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편 추진
-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주요 요인으로 보육교사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관리 강화, 처우개선 추진

□ 효율적인 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국가 책임 보육 강화를 위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속**
- 신축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인근 민간 어린이집의 반발 등을 고려 **다양한 확충방식 추진**
 - 신축과 함께 민간의 어린이집 기부채납, 기존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적극 추진

□ 보육서비스의 품질 관리

-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적극적인 지원 및 질 관리를 통해 보육의 질 향상 도모
 -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재(再)선정 관리 체계 개선 추진
- 다양한 보육서비스 욕구에 맞게 정보인프라를 개선하고 부모와 어린이집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정보시스템 강화 추진

성과목표·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맞춤형 보육지원 강화 등 무상보육 정책의 내실화	어린이집 시설이용 만족도
(관리과제)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강화	①보육료 지원 만족도 ②맞춤형 보육체계 개편 추진율 ③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수 ④보수교육이수자의 교육이수 역량
(관리과제) 효율적인 방식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
(관리과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①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②평가인증 유지율 ③보육통합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어린이집 시설이용 만족도(5점척도)	3.85	3.90	3.97	4.05	'13년→'14년(0.5증)→'15년(0.7증)까지 증가치를 고려하여 '16년 목표치를 0.8점 증가한 4.05로 설정	어린이집 이용 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5점 만점 환산)	부모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저출산·고령화 등) 낮은 합계 출산율('14년 1.21)로 인한 미래 영유아 수 감소 전망(영유아 '00년 3,969천명 → '20년 2,709천명)

*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71, 프랑스 2.0, 스웨덴 1.91, 영국 1.96, 미국 2.12('08년)



- (수요자 측면) 무상보육으로 양육 부담은 경감되었으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요구 증대
- (공급자 측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된 누리과정 관련 예산의 안정적 지원, 보육료 현실화 등 시설운영 자율성 확대 요구

* 보육료 적정수준 인상, 보육교사 처우개선, 12시간 운영 개선 등

- (지방자치단체) 매년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부담에 대하여 국가책임 보육을 고려 국고부담 확대 요구

□ **갈등요인**

- (수요자→정부)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와 요구는 계속 높아지는 반면,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은 다소 미흡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구축 및 맞벌이·가구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요구**
- (수요자→어린이집)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욕구 강화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강화 요구**
 - 급식·안전, 학대예방 등에 대해 **부모들의 신뢰도 미흡**
- (어린이집→정부) 정부의 맞춤형 보육 도입 등 저가 보육정책 및 규제 강화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매우 어렵다는 입장

□ **갈등 관리계획**

- (수요자)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 다양한 보육 욕구에 맞게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로 개편 추진**
 - 정보공시 및 어린이집 재무회계 컨설팅을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운영상 신뢰성 강화
- (공급자) 지속적으로 **보육현장과 소통**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규제개선 노력을 병행
 - 아동학대, 영유아의 안전, 건강 등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되, 시설운영의 자율성 증대 및 **보육료 현실화 등 지속**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강화(Ⅲ-4-①)**

□ **추진배경 (목적)**

- 부모들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제공** 및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보육 지원방식 다양화**
-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전체 영유아에 대한 시설 이용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유아보육법 제34조, 국정과제 64 : 무상보육확대)
-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관리 및 교육 강화 필요**
-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에 부합하여 **처우 개선, 보조인력 배치 등 근로환경 개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다양한 어린이집 이용행태와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육'으로 보육 체계 개편**
 - * 취업, 자영업, 다자녀, 임신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아동은 종일반(하루 12시간) 서비스 제공
 - * 적정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아동은 맞춤반(하루 7시간) 서비스 제공하고 긴급한 보육수요 발생 시 이용 가능한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 지원
- 자격 유형 및 인정 기준, 자격신청·전환 절차 등 제도 마련
- 자격별 보육료 지원 단가·지급 방식 등 제도 개편
- 운영시간, 반 편성 등 어린이집 운영 방식 개편

○ 만 0~5세 아동에게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소계층 보육료 지원('13년~계속)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소계층 양육수당 지원('13년~계속)
-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환수 등 수시 사후관리 시행
- 안정적인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집행 및 재원 확보를 위해 지자체 예산 확보 상황 및 집행 실적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실시

○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 '16년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시간제보육 확대에 따라 이용률 제고 위한 홍보 강화
- 시간제보육 이용편의성 제고 위해 시스템 개선
-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또는 관리기관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아동 등록

○ **보육교사 자격관리 및 교육 강화**

- 우수 신규교사 양성을 위해 인성·상호작용 필요 과목을 대면 과목으로 지정하고 대면교육 실시, 보육실습시간 확대 등 자격 기준 강화
- * 현행 보육교사(2급) 자격기준: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서 17과목 51학점 이수(전체 온라인 교육 인정), 이 중 보육실습 4주 이수 필요
- 현직교사의 인성·자질 향상을 위해 인성 평가·교육 실시, 법정 보수교육과정 개편, 보수교육기관 평가를 통한 질 관리

○ **보육교사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 영아반 담임교사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준(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추진('15년 17만원→'16년 20만원)
- 담임교사 업무부담 완화 및 보육공백 방지를 위해 영아반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확대('15년 13,146명→'16년 13,380명)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맞춤형 보육 제도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	1~2월	
	'16년 지자체 지방비 확보 현황 및 계획 모니터링	1월	
	보조교사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 계획 수립	1월	
	보육료 지원 제도 개선 및 '16년 보육사업 지침 마련	2월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규정 마련 및 홍보	2월	
	맞춤형 보육 대상 아동 가구원 정비	3~4월	
	시간제보육 서비스 신규제공기관 지정	3월	
	'16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 선정안내 개정·배포	3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중복 수급자 확인 및 사후 관리	3월	
	보육교사 보수교육과정 개편(지침 개정) 및 운영 매뉴얼 보급	3월	
2/4분기	인성 교육·평가 및 보수교육기관 평가 계획 수립	3월	
	맞춤형 보육 자격기준 안내	4~5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예산 집행상황 모니터링(1분기)	4월	
	맞춤형 보육 자격 전환 신청·접수	5~6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중복 수급자 확인 및 사후 관리	6월	
	시간제보육 아동 등록 시스템 개선(관리기관 등록 기능)	6월	
3/4분기	현직교사 인성평가 지표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4~6월	
	보수교육기관 평가지표 및 활용방안 개발	4~6월	
	맞춤형 보육 제도 개편 시행	7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예산 집행상황 모니터링(2분기)	7월	
	현직교사 인성평가·인성교육 실시	7월~	
	보수교육기관 평가 실시	7월~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를 위한 양성과정 및 보육실습 운영매뉴얼 연구 실시	9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중복 수급자 확인 및 사후 관리	9월	
시간제보육 아동 등록 시스템 개선(제공기관 등록 기능)	9월		
4/4분기	보육료 및 양육수당 예산 집행상황 모니터링(3분기)	10월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를 위한 양성과정 및 보육실습 운영매뉴얼 보급	10월	
	보육료, 양육수당, 시간제 보육 만족도 조사 실시	11~12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중복 수급자 확인 및 사후 관리	12월	

시간제보육 '16년 홍보실적 점검	12월	
현직교사 인성평가·인성교육 실시, 사업실적 점검	12월	
보수교육기관 평가 실시, 사업실적 점검	12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보조·대체교사 채용 지원, 사업실적 점검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보육료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아동
- 양육수당 지원대상 : 시설 미이용 만0~5세 아동
- 시간제 보육 지원 대상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자녀 등
단시간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 보육교사 처우 지원 대상 : 현직 보육교사

- 이해관계자 : 영유아 양육 부모,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보육교사 양성(교육)기관 종사자(대학, 학점인정기관, 3급 양성기관 등), 자격취득 희망자 등

□ 기대효과

-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 및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다양한 형태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선택권 강화**
- 보육교사 양성제도 개편 및 처우개선을 통하여 **우수 보육인력 확보와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전략
목표
표 III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영유아보육료 지원(IV-4-일반재정②)			
① 영유아보육료 지원(3133)	일반회계	31,452	31,186
		(31,452)	(31,186)
▪ 영유아보육료 지원(331)	일반회계	31,377	31,066
▪ 시간차등형보육 지원(336)	일반회계	75	120
가정양육수당 지원(IV-4-일반재정⑥)			
① 가정양육수당 지원(3141)	일반회계	12,115	12,192
		(12,115)	(12,192)
▪ 가정양육수당 지원(300)	일반회계	12,115	12,192
어린이집 관리(IV-4-일반재정③)			
① 어린이집 관리(3135)	일반회계	19	27
		(265)	(309)
▪ 교원양성지원(354)	일반회계	19	27
어린이집 지원(IV-4-일반재정④)			
① 어린이집 지원(3140)	일반회계	6,913	8,168
		(7,354)	(8,865)
▪ 보육교지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404)	일반회계	6,913	8,16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보육료 지원 만족도 (%) (공통)	62.9	67.9	72.7	69.9	'13~'15년 연평균 증가율을 감안하여 산출	어린이집 이용자 대상 설문 조사 결과 "만족" 이상 답변 비율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맞춤형보육체계 개편 추진율 (%)	-	-	신규	100	보육료 자격을 종일반-맞춤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보육료 지원 체계 개편 필요	Σ 각 지표별 ① 종일반 자격 기준 마련 *0.3 ② 보육료 자격 일제 전환 *0.3 ③ 맞춤형보육 제도 안내 지침 제작 *0.4	보고서, 지침, 보도 자료 등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수 (개)	신규	97	243	380	시간제보육 확대계획에 따라 목표치 설정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지정 건수(누계)	보육통계
보수교육 이수자의 교육이수 역량 (점) (공통)	-	-	신규	85	'16년 신규 지표인 점을 감안, 보수교육 이수자 평가점수를 85점으로 설정 *보수교육(승급)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7(보수교육 실시 기준)에 따라 80점 이상의 평가점수 필요	'16년 보육교사 보수교육(승급) 이수자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산출	보육통합시스템 통계

전략
목표
표 III

② 효율적인 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III-4-②)

□ 추진배경 (목적)

-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및 공공 보육인프라 확보를 위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 중이나,
 - 신축에 소요되는 **지자체 부담*이 크고**, 인근 민간어린이집의 반발 등으로 지속 확충에 애로
 - * 국비 최대지원액(2억5천만원)은 실제 신축 비용의 10~20% 수준
-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기존 시설을 활용한 확충 추진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신축 방식 외에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기부채납,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 무상임대 방식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 확충(~'16.12)**
 - 기부채납한 기업 근로자 및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에게 **입소 우선권 부여, 국공립어린이집 입지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 ('15) 사항 적극 홍보
 - * 지자체가 부지·건물 매입·기부채납 시 단독·공동주택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허용
 - 지자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간담회 개최 등 실시(연중)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국공립어린이집 입지조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 반영한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16.3월	
2/4분기	'16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추가 수요조사 및 대상선정	연중	
3/4분기	'16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추가 수요조사 및 대상선정	연중	
4/4분기	'16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추가 수요조사 및 대상선정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어린이집 이용 아동 및 부모, 지자체 공무원
- (이해관계자) 어린이집 대표자, 원장, 보육교직원

□ 기대효과

- 효율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공공보육인프라 구축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민간매입, 기부채납, 기존시설 리모델링 등 국공립 전환 방식의 확충을 통해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회계구분 ¹⁾	'15	'16
효율적인 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Ⅲ-4-2일반재정②)			
① 어린이집 기능보강(3134)	일반회계	40,234 (40,234)	36,681 (36,681)
▪어린이집 기능보강(341)		6,787 (6,787)	6,447 (6,447)
▪어린이집 확충(344)		33,446 (33,446)	30,234 (30,234)

전략
목표
표 III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	75	150	150	150	전년 실적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15.12)상 중장기 확충 목표('14~'25년까지 매년 150개소 확충)로 산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선정 개소수	지자체 사업계획서 및 선정 결과 통보서	

③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Ⅲ-4-③)

□ 추진배경 (목적)

-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적극적인 지원 및 질 관리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유효기간이 만료된 공공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재(再)선정 관리 체계 마련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지난 10년간 보육서비스의 전반적 질 향상에 기여
 - 다만, 평가인증 어린이집 질 유지 수단인 확인점검이 '12년 400개소에서 '15년 2,800개소로 7배 증가하여 업무과정의 효율화 필요
- 다양한 보육서비스 욕구에 맞게 정보인프라를 개선하고, 부모와 어린이집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정보시스템 강화 추진
 - 다양한 어린이집 이용행태와 보육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보육 추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편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지정('16년 150개소 이상) 및 품질관리 교육 운영
- 공공형 어린이집 재선정을 위한 과정관리 방안 마련

② 어린이집 평가인증 실시('16년 11,126개소)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 부모들의 합리적인 어린이집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인증 실시
- 확인점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 마련 등

③ 수요자 중심의 보육체계 개편 대국민 인식제고 및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전면개편 추진

-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맞벌이 가구 등 보육수요층에 대한 충분한 보육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발생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보육료 지급·결제·정산 등의 지원시스템 개편으로 어린이집 운영 효율성 향상 및 이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
 - 필요에 따라 적정히 지원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개편과 관련하여, 부모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개선**
 - **모바일을 포함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을 개편하여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 편의성 제공**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행정지원시스템(지자체), 어린이집지원시스템(어린이집), 대국민포털(아이사랑), DW 등을 대상으로 개편 추진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편을 위한 사업공고 및 계약 추진	'16. 1월	
	2016년도 평가인증 신청·접수	'16. 1월	
	맞춤형보육 홍보 마이크로페이지 오픈	'16. 3월	
	맞춤형보육 홍보 기획기사 추진	16. 3월	
2/4분기	평가인증 현장관찰 시작	16. 4월	
	공공형어린이집 신규선정 지침 배포	'16. 4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맞춤형보육 홍보 영상 제작 및 광고	'16. 5월	
	맞춤형보육 지자체 등 관계자 교육	'16. 5월	
	맞춤형 보육 지침에 따른 시스템 설계·분석·개발 및 테스트 진행, 지자체 및 어린이집 대상 교육 등	'16. 6월	
3/4분기	시스템 개편 및 오픈, 사용자 민원응대, 시스템 안정화 등	'16. 7월	
	공공형어린이집 신규선정	'16. 7월	
	맞춤형보육 시행에 따른 성과 홍보	'16. 9월	
4/4분기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지원	'16. 12월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을 위한 과정관리방안 마련	'16. 12월	
	평가인증 업무 개선방안 마련	'16.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아동 및 부모, 대국민(포털 사용자) 등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전국 시도·시군구 보육담당자 및 어린이집(43천개소), 대국민(포털사용자) 등
- (이해관계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지자체 담당자 등

□ 기대효과

- 우수 민간 어린이집 등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선정·운영 기준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및 업무방식 개선**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어린이집 질 관리체계 구축
- **'16.7월 시스템 개편 및 서비스 오픈**을 통하여, **맞춤형 보육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제도 개편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혼란 방지 및 제도의 조기 안착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5	'16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IV-4--일반재정③)				
① 어린이집 관리(3135) ³⁾	일반회계	160 (266)	97 (309)	
	▪ 보육전자바우처 운영(361)	일반회계	62 (62)	-
	▪ 보육사업관리(보육전자바우처 운영(350))	일반회계	- (14)	20 (78)
	▪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371)	일반회계	98 (98)	77 (77)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IV-4--일반재정④)				
② 어린이집 지원(3140)	일반회계	441 (2,217)	487 (8,655)	
	▪ 공공형 어린이집(403)	일반회계	441 (441)	487 (487)

※ 보육전자바우처 운영사업 중 2016년부터 기존 시스템 운영은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정보화)사업으로, 기능개선은 어린이집관리로 재원을 이관하여 관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만명)(공통)	-	8.6	9.3	9.7	○'16년 공공형 150개소 신규지정 고려 = 150개소 × 30명* * '15년 신규신청 기관 평균 현원 : 30명	○공공형어린이집 이용아동 수 (현원 합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평가인증유지율(%)(공통)	70.7	75.5	79.9	77.5	○ 불확실한 정책환경 속에서 신규 인증 및 인증 취소·종료, 유효기간 만료 및 재인증 신청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유보통합 예정으로 신규 인증 신청 어린이집수가 지속 감소 추세	○인증유지 어린이집 시설 수 / 전체 어린이집 시설 수 * '16년 인증유지 어린이집 개소수 = ('15년 인증유지 - (인증만료+대표자변경 및 폐지)+ 재인증+신규인증) 개소수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 통계자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자만족도(점)(공통)	73.9	76.9	76.2	75.6	○최근 3년간 실적 평균치로 산정	○측정산식 = (조사항목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완전한 점수들의 합계) / 항목수 ○측정대상자 및 표본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집 원장 ○측정문항 : 시스템 구성 및 이용 편의성, 기능개선 노력 정도 등에 대한 만족도 측정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자 설문결과 활용

전략
목표
표 III

성과목표III-5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운영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1) 주요 내용

□ 국민연금 신뢰기반 구축

- 국민연금 장기재정목표 설정을 위해 '장기재정목표 설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명확한 재정목표에 따른 기금운용 및 제도개선 방향 제시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
- 급속한 고령화 및 연금수급자 증가에 대응하여 수급자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의 형평성 및 적정성 강화를 위한 급여제도 개선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신규가입 및 가입기간을 지원하는 제도 추진으로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
 - 규모 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국민연금 가입이 저조한 취약계층에게 가입지원 확대
 -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실업크레딧을 지원하고,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추후 납부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보 지원

□ 장기적 관점의 기금운용체계 구축 및 운용역량 강화

- 기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등 중장기 관점의 투자전략을 마련하여 안정적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국민노후자금인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기여

- 기금규모에 걸맞은 운용체계와 우수인력을 갖추는 등 안정적인 운용성과 창출 기반 마련

□ 기초연금제도 내실화

- 만 65세 이상 신규 도래자 신청안내문 발송 등으로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기초연금 미수급 사각지대 해소
- 기초연금 필요재원 확보를 통한 기초연금의 안정적 지급

성과목표 ·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운영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공적노후소득보장 수급률
(관리과제) 국민연금 신뢰기반 구축	① 포럼개최수 ② 홍보건수 ③ 연금수급자 만족도(점)
(관리과제)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보험료 납부자 비율
(관리과제) 장기적 관점의 기금운용체계 구축 및 운용역량 강화	①해외·대체투자비중 ②운용체계 개선율
(관리과제) 기초연금제도 내실화	기초연금 수급률 67% 달성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공적노후소득보장 수급률	84.2	86.0	집계 중	86.3	14년 실적에 '09년부터 '13년까지 연평균 증가율(0.4%) 증가 반영 「16년 목표치 = ('14년 실적) + ('14년 실적)*0.4%」	공적노후소득 보장제도 수급자 /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해당 기관(복지부, 행안부, 국방부, 교과부) 자료종합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 환경 분석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미래세대 부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 2057년 이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1명이 수급자 1명 이상 부양
 - * 국민연금 제도부양비(가입자 수 대비 수급자 수): 100%('57), 106.6%('60)



전략
목표
표 III

- 국민경제의 성장 잠재력 둔화와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 국내 경제가 저금리·저성장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주식·채권 등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에 한계
 -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금운용 전략을 재검토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에 대응하여 시장 모니터링 등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 기금규모 증가 및 국내시장 대비 기금비중의 증가로 국내시장 운용 제약
 - * 국내 주식시가총액 차지 비중 : ('10) 4.4% → ('15) 6.6%
 - 새로운 투자방식을 모색하고, 수익원천 다양화 및 자산배분 체계를 개선하여 환경변화에 탄력적인 대응 필요

□ **갈등요인 분석**

- (정책 견해 差) ▲국민연금 재정목표, ▲공적 연기금 역할 (의결권 행사, 책임투자 강화) ▲기금운용체계 개편 등과 관련하여
 -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국회 간 견해 차이에 따른 갈등 존재
 - * 주요 대립견해 : ▲적정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공적연기금 개념·원칙·방법 등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에 대한 다수 법안 발의
- (국민연금 신뢰) 장기 재정운영 원칙 설정을 위해서는 소득 대체율, 보험료율, 급여 수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 하나
 - 기금소진 우려에 따른 신뢰 저하, 보험료 인상 기피 등으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한계
- (세대 간 갈등) 현 세대 노인 빈곤 문제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후세대 부담 증폭 우려로 현세대·후세대 간 갈등 심화

□ **갈등관리 계획**

- (사회적 합의) 견해 차이를 줄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실시
 - 국민연금 장기재정목표 수립을 위한 ‘장기재정목표 설정 위원회’ 구성
- (적극적 홍보) 국민연금/기초연금 혜택과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국민 신뢰 기반 구축
 - * 두루누리 확대,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 추후납부 제도 개선, 장애·유족 연금 개선

(4) 기타

□ **기금운용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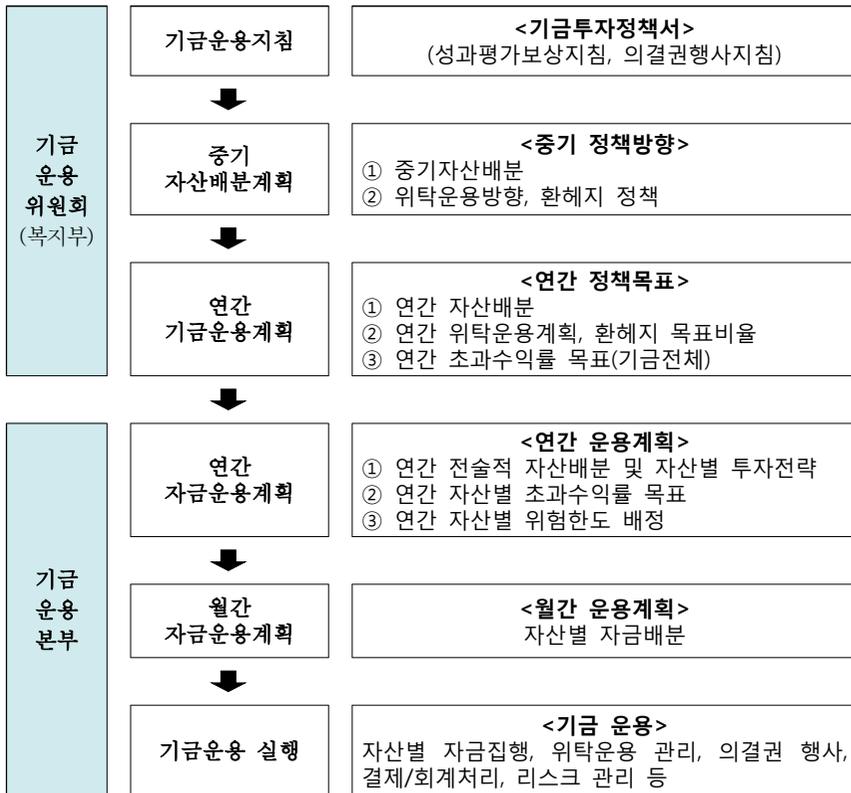
- 보건복지부가 기금의 관리·운용의 주체
 - 기금운용에 대한 주요 정책사항 심의·의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장관)」* 설치·운영
-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기금의 관리·운용 수행
 - 기금운용 전담조직으로 「기금운용본부」* 설립('99.11)

□ **기금운용 프로세스**

- (계획 : Plan) 기금운용 전반을 규율하는 기금운용지침을 수립 하고, 이에 따라 자산배분 등 주요 운용계획 수립
 - 5년 단위의 중기자산배분(SAA : Strategic Asset Allocation)*을 매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간 기금운용계획 수립
 - * 향후 5년간의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의 투자 비중 결정
 - 위탁운용, 환헤지, 의결권행사지침 등 투자행위의 주요내용 결정
- (실행 : Do)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투자를 집행하는 단계로,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 창출
 - 기금운용계획의 허용범위 하에서 기금운용본부에서 단기 투자여건을 고려하여 전술적 자산배분(TAA : Tactical Asset Allocation)* 실시
 - * 초과수익 창출을 위해 중기자산배분상 주어진 허용범위 안에서 단기적으로 자산배분 비중 변동

- (평가 : See) 매년 기금운용의 성과를 평가·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 등 보상 실시 및 운용상 피드백

<기금운용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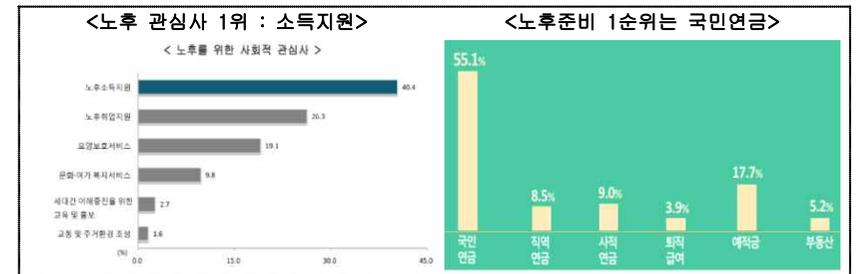
전략
목표
표 III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국민연금 신뢰 기반 구축(Ⅲ-5-①)

□ 추진배경 (목적)

- 우리 국민의 노후 주된 관심사는 노후소득 보장(40.4%)이며, 노후대비 수단으로는 국민연금을 가장 의지(55.1%) <통계청 국민인식 조사>



-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이래 가입자가 2,157만명으로 증가, 수급자도 10년 만에 두배 증가('06년 186만명 →'15년 383만명) 하는 등 전국민 핵심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성장
- 그러나 아직까지 사각지대가 많고 가입기간이 짧은 문제로 연금수준이 낮아 국민연금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역할에는 한계
- 한편, 저부담-고급여 방식의 제도설계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저출산·고령화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 2044년부터 수지적자 발생, 2060년 기금고갈 (제3차 재정계산 전망)

- ⇒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 없이 정책 추진 필요

- 급여의 형평성·적정성 강화를 위한 **급여제도 개선** 및 수급자의 **높이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민연금 장기재정목표 설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반 마련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및 제도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지속 실시**하여 충분한 의견수렴
 - ‘**장기재정목표 설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목표 논의를 추진하고 제4차 재정계산 실시를 위한 사전작업 진행
 - * 재정목표설정 : 재정 안정화와 소득보장 강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연금 재정운영 방식과 적정 보험료, 소득대체율 등 결정**
- 전업주부 추후납부,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등 **국민연금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대국민 홍보 강화**
 - 노인빈곤 실태 심층분석 등 연구 추진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마련 추진
 - 적용제외 기간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가입대상기간의 1β 이상 보험료 납부 시 장애·유족연금 지급**
 -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조정 비율 상향(20%→30%)**
 - **장애 인정범위 확대** 및 **심사기준의 합리성 제고**로 장애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심사결과에 대한 만족도 향상
 - 국민연금재심사 위원 및 **의학자문단을 재구성**하여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지속적 발굴

전
략
목
표
III

- **재심사위원회 결정시 기한 내(60일) 처리율을 제고**하여 수급권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강화

<제도개선 주요내용>

- ▶ **경력단절 전업주부**에 추후납부 허용으로 **연금수급 기회 확대**
- ▶ **장애·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인상(20→30%) 등으로 **급여수준 인상** 도모
- ▶ **실업크레딧 사업 시행, 두루누리 지원확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 노인빈곤실태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실시(*16.2~11)

- **행복하고 체계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내실화**
 - 국민연금과 개인·퇴직연금 등 공·사연금을 한 곳에서 조회하고,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공·사연금 종합포털 구축 및 정보연계 확대 추진**
 - * 국민연금 “내연금” 사이트에 금감원 사적연금포털 연계(1단계), 주택·농지연금 및 직역연금 등 다른 연금정보도 연계 확대 추진(2단계)
 -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 등 각 분야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통한 **튼튼한 노후설계 지원**
 - 재무설계 상담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 수렴·개선으로 **대부 신청자의 재무설계 상담 강화**
 -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만족도 조사와 연계 추진
- **안정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공적연금 연계제도 활성화**
 -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된 노후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공적연금 연계제도 활성화 및 홍보 강화**
 - * 신청자/수급자 : (*13년) 3,764/489명 → (*14년) 4,739/731명 → (*15년) 6,052/1,004명

- 연계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및 실무협의회·담당자 워크숍을 활성화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보완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국민연금재심사 운영 결과 분석 및 계획 수립	'16.1월	
	전문가 포럼	'16.3월	
	국민연금 현황 및 실적 보도자료 배포	'16.3월	
	노인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16.3월~	
2/4분기	전문가 포럼	3회	
	공·사연금 종합포털 구축 및 정보연계 확대 추진	'16.4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의학자문단 재구성	'16.4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위원 재구성	'16.5월	
	국민연금 제도개선 보도자료 배포	'16.6월	
	노인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16.4월~	
3/4분기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 개정	'16.6월	
	전문가 포럼	3회	
	공적연금 연계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16.8월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16.8월	
	국민연금 제도개선 보도자료 배포	'16.9월	
4/4분기	노인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중간발표	'16.9월	
	전문가 포럼	3회	
	국민연금 제도개선 보도자료 배포	'16.12월	
	노인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결과 발표	'16.12월	
	분할연금 제도 개선·시행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민연금 가입자(2,157만명), 수급자(383만명) 및 경력 단절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980만명)
- (이해관계 집단) 국민연금 가입자, 수급자(직접적 이해관계자) 학계, 연구원 등 전문가 및 시민단체

□ 기대효과

- 장기재정목표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금소진 우려 등 불신 해소 및 갈등 예방
- 국민연금 제도개선 시 수혜 대상자 및 지원액 증가로 노후 소득보장 강화
 - ☞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강화
- 수급자의 눈높이에 맞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제공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성 및 만족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전략
목표
표 III

성과지표	실적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포럼 개최수 (의견수렴 실적)	10	10		10	전년도 실적(10회)과 유사한 수준으로 '16년 목표를 설정하고 보다 내실있는 운영 추진 * 3월부터 월 1회 수준 개최	개최 실적/목표	포럼 개최 자료
홍보건수 *중견 '법령개정 추진율' 지표를 대체		신	규	4회	국민연금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분기별 1회)	보고자료 배포 건수	홈페이지 게시자료
연금수급자 만족도(점)	90.1	89.9	84.0	84.3	'15년 실적+[(100-'15년 실적)*2%] ○ '15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고객만족도 측정 항목의 고도화 등으로 변별력 제고)에 따라 목표치 조정 ○ 전년도 목표를 최소 목표로 설정하고 100점을 최대 목표로 설정 - 최대목표와 최소목표 차이의 2%를 목표치로 설정	외부 전문기관 설문조사 결과	외부 전문기관 설문조사 결과 보고

②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Ⅲ-5-②)

□ 추진배경 (목적)

- 국민연금 가입자 21,501천명 중 **납부예외자 4,506천명**(21.0%), **장기체납자 1,093천명**(5.1%) 등 사각지대 존재('16.1월)

국민연금 적용대상 21,501천명		
납부예외자 4,506천명 21.0%	소득신고자 16,995천명	
	장기체납자 1,093천명 5.1%	보험료납부자 15,902천명 74.0%

* 그 외 무소득배우자, 기초수급자 등은 적용제외

- 또한, 임금 수준·성별 등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국민연금 가입현황(통계청, '15.4월) >

	계	임금 수준별				
		~100만원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만원~
근로자 수 (천명)	18,145	2,279	6,937	4,773	2,615	2,477
국민연금 가입률	68.7%	12.7%	69.7%	81.5%	91.9%	96.7%

* ▲ 임금근로자 가입률(통계청, '15.4월) : (여성) 62.2%, (남성) 74.1%,

▲ 적용제외자('15.4월 기준) : (여성) 62.2%, (남성) 37.8%

- 따라서 임시·일용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 국민연금 가입이 저조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제도권 편입을 유도하고,
- 연금수급권 확보가 어려운 경력단절 여성 및 실직자 등의 가입기간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및 소득신고자 확충>

-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내실화 (국정과제, 경제혁신3개년계획)
 - 국민연금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상향(기존 50% → 개선 60%) 등을 통해 국민연금 신규가입 확대 유도
 - 고액재산가·고소득자는 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 대상 근로소득 기준은 완화(현행 월 140만원 미만)하는 등 지원 대상 선정기준 개선
 -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사용으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10인 이상이 되더라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등 소규모사업장 판단기준 개선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제도개선(국정과제)
 - 고액재산가·고소득자는 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 수준은 상향(현행 월 최대 40,950원 지원)하는 등 사업 내실화
 - 지원대상 '농어업인'에 대한 범위 재검토 등 제도개선방안을 농림부 등 관계기관과 검토
- 단시간·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계획)
 - 복수사업장 합산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희망시 사업장가입 허용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국세청·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자료 입수시기 단축, 실태 조사 확대 등을 통해 일용근로자 가입 확대 노력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보 지원>

○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하여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함으로써 실직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구체적·직접적 혜택 안내를 통해 실제 대상자의 지원신청 적극 유도
- 실업크레딧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분석, 수혜사례 발굴 등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 검토

○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추후납부 허용**

- 적용제외 기간에 대한 추후납부를 허용(현재는 납부예외 기간만 가능)하여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연금수급권 확보 지원
-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및 하위 법령, 세부 사업시행 지침 등 마련,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추진

○ **가입자의 연체금 납부부담 완화를 통한 성실납부 지원**

- 연체금 산정방식을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방식으로 변경하여 연금보험료의 조속한 납부 유도 및 연체금 부담 완화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상향 관련 법적근거 마련	'16.1월	
	○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 판단기준 개선 관련 법적근거 마련	'16.1월	
2/4분기	○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 사업장가입 허용 관련 홍보 확대	'16.4월	
	○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근로소득 기준 완화 검토	'16.6월	
	○ 연체금 산정방식 개선(월할→일할계산)	'16.6월	
3/4분기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제도개선 검토	'16.7월	
	○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시행 및 대국민·정책대상자 홍보	'16.8월	
4/4분기	○ 고액재산가·고소득자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제외 관련 법적근거 마련	'16.11월	
	○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추후납부 허용 관련 법적근거 마련	'16.11월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제도개선방안 마련	'16.12월	
	○ 실업크레딧 제도개선방안 검토	'16.12월	
	○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근로소득 기준 완화 관련 예산 확보 및 법적근거 마련	'16.12월	

전략
목표
표 III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단시간·일용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및 실직자 등
- (이해관계자) 노동계, 사용자단체 등

□ **기대효과**

- 국민연금 가입 누락 및 가입기간 단절을 방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5	'16
국민연금 제도운영사업(IV-9-재정②)				
① 국민연금 제도운영사업	국민연금기금		189 (321)	289 (450)
▪ 국민연금사각지대 축소			65	70
▪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124	22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보험료 납부자율	77.9	78.4	79.1	79.3	자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16년 목표치	사업장+지역(소득신고)+임의(계속)가입자/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공단 생산 통계

전략
목표
표
III

③ 장기적 관점의 기금운용체계 구축 및 운용역량 강화(III-5-③)

□ 추진배경 (목적)

-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익성 제고 필요(국민연금법 제102조)
- 이를 위해 합리적인 기금운용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 관점의 투자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역량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기금 관리·운용체계의 내실화 및 합리적 개선 추진
 - 현행 관리·운용체계의 틀 내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내실화** 추진
 - * 연간 회의 개최횟수 상향, 회의수당 인상, 위원회 가이드북 제작·배포, 위원에 대한 안건 사전설명회 개최 등
 - **장기적 관점**에서 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운용체계의 **전문성, 독립성 및 책임성** 제고 추진
- 수익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자산배분 개선
 - 시장 여건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여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17~'21년 중기자산배분안** 마련
 - 투자위험 분산 및 수익 다변화를 위해 국내투자('15년말 75.9%) 중심의 기금 포트폴리오를 **해외 및 대체투자 확대**로 다변화
- 장기적 수익제고를 위한 **주주권행사 및 책임투자 내실화**

- 국내주식에 대한 **배당관련 주주권행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배당관련 권리행사 기준 및 절차 내실화**

* 배당관련 반대 의결권 행사 기업, 배당실적이 낮은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적용

- **장기 수익성 제고 등 기금운용의 원칙에 따른 책임투자 이행방안*** 검토

*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기업의 책임투자요소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국내주식 투자시 활용 추진

○ 기금운용본부 **역량강화**를 통한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 **기금운용본부 전복이전**에 대비, 적정 **운용인력 조기 확충** 및 시장대비 상대적 **보수수준 향상**

- 해외·대체투자 확대 등에 따른 **인력확충 및 해외사무소 기능 강화**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201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 마련	'16.1월	
	·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관련 추진현황 점검	'16.3월	
	· 헤지펀드 성과평가 벤치마크 설정	'16.3월	
	· 국민연금기금 중기자산배분TF 운영	'16.3월	
2/4분기	·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 등 마련	'16.4월	
	· 국민연금기금 중기(17~21)자산배분(안) 마련	'16.6월	
	· 기금운용위원회 가이드북 제작·배포	'16.6월	
	· 국민연금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정책제언 후속조치 계획(안) 마련	'16.6월	
3/4분기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역량강화 추진(조직·인력)	'16.7월	
	· 기금운용본부 해외사무소 업무현황 점검	'16.9월	
4/4분기	· 국민연금기금의 '17년 목표 초과수익률(안) 수립	'16.11월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 추진	'16.12월	
	· 국민연금기금 대체투자 성과평가 벤치마크 개선안 마련	'16.12월	
	· 기금운용체계 개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16.12월	

전략
목표
표 III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단체 포함) 및 수급자, 위탁운용사 및 거래금융기관, 투자기업 등

□ 기대효과

○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 등 기금의 장기재정안정성 제고
○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신뢰증진으로 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
○ 금융전문인력 양성, 금융시장 선진화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해외·대체투자 비중(%)	24.1	26.6	28.7	28.8	과거 실적과 중기자산배분계획(2016~20년)에 근거하여 목표치를 설정	(해외채권+해외주식+대체투자금액/국민연금기금·금융자산금액)×100	국민연금기금운용현황 보고서
운용체계 개선율 (%)	100	100	100	100	운용체계개선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선추진사항을 모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운용체계 개선 완료건수/운용체계개선 추진건수)×100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선관련 보고서 및 공문 등

④ 기초연금제도 내실화(Ⅲ-5-④)

□ 추진배경 (목적)

- 현세대 노인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도입('14.7)하여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

* 기초연금 수급자수 : ('14.7) 424만명 → ('15.1) 438만명 → ('15.12) 448만명

- 그러나 일부 미신청자 및 신청 탈락에 따른 조기 수급포기자, 거주불명등록자 등 기초연금 미수급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재원의 확보가 요구됨

- 꼭 필요한 어르신이 한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안내 및 홍보, 예산확보와 제도개선 등 내실화에 집중할 필요

* (2016년 연두업무보고) 선정기준 완화 및 사각지대 발굴 등 기초연금 보장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수급자수 지속 확대 및 기초연금 미수급 사각지대 해소 노력
 - 선정기준액 상향조정('16.1)으로 수급자 범위 확대
 - 만 65세 이상 신규도래자 신청안내문 발송,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찾아뵙는 서비스 및 거주불명등록자 실태조사 등 수급자 발굴 및 신청 지원
 -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도입*('16.1)하여 수급희망자가 신청 탈락 후 조기 수급포기로 생기는 사각지대를 사전에 방지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신청탈락자)에 대해 매년(5년간) 이력조사를 실시하여 선정기준 변경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질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

- 언론,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등 홍보 추진

- 기초연금 필요재원 확보를 통한 기초연금의 안정적 지급

- 관계기관(기재부, 국회 등)과 긴밀한 협의 및 지자체와 협력 강화 등 소요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시행	'16.1월	
	2016년도 선정기준액 상향조정	'16.1월	
	선정기준액 조정에 따른 기존탈락자 대상 재신청 안내	'16.1월	
	지자체공무원 기초연금 사업안내 지침 교육 실시	'16.2월	
	기초연금 연간조사계획 수립	'16.2월	
2/4분기	2016년도 기준연금액 상향조정	'15.4월	
	기초연금(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등) 홍보	'16.6월	
	2017년도 기초연금 소요예산 편성 및 제출(기재부)	'16.6월	
3/4분기	기초연금 통계집 발간	'16.7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16.8월	
	거주불명등록자 실태조사 및 신청안내	'16.9월	
	기초연금 홍보	'16.9월	
4/4분기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자 DB 구축	'16.12월	
	기초연금 사업평가 및 유공자 표창	'16.12월	
	2017년도 기초연금 소요예산 확보(국회)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
- (이해관계자) 전 국민

□ 기대효과

- 기초연금 수급자 지속 발굴로 수급자수 확대
- 안정적인 노후소득 지원으로 노후생활 안정 및 노인빈곤 완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15	'16
노인생활안정(IV-6-일반재정(1))			
① 노인복지지원(2131)	일반회계	75,824	78,692
▪ 기초연금 지급(300)		75,824	78,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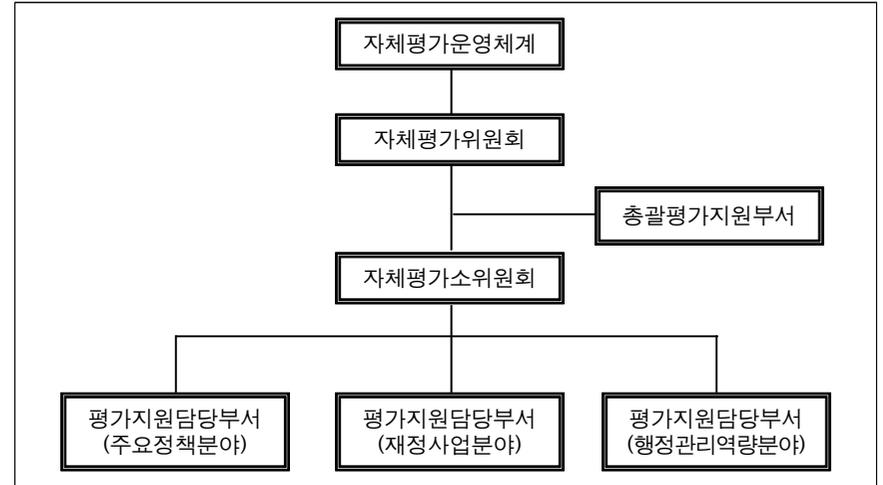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기초연금 수급률 (단위:%)	신규	기초 연금 도입	66.4	67.0	'15년도 수급률 및 직역연금 수급자, 거주불명등록자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목표치 상향 설정	'16년 12월 기초연금 수급자수 / (기초연금 월별 통계)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행	신규	신규	신규	시스템 구축 및 시행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를 위한 보완 지표로 선정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부 등 확인

IV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점검체계



전략
목표
표 III

□ 자체평가위원회

○ 구성

- 위원장 : 민간위원
- 위원 : 실장급 내부위원 및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제11조 1항) :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소위원회 : 주요정책(보건의료정책 I, 보건의료정책 II, 사회복지정책, 인구정책), 재정성과, 기관역량 등 총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소위원회 구성

-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이상 개최하고, 소위원회는 필요 시 수시개최

○ **임무**

구분	임무	비고
자체평가위원회	·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심의 ·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심의·의결	
소위원회	· 추진계획 대비 실적 점검 · 자체평가 실시	자체평가 부문별로 소위원회 구성·운영
평가총괄지원부서	·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 추진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보완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실적 입력상황 관리 및 내용 점검·보완
소위원회별 평가지원담당부서	· 소관 분야 과제 실적 점검 · 평가위원 현장점검 지원	소관분야 과제 담당부서에서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실적 등을 제대로 입력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입력된 내용 등을 점검·보완

□ **점검방법**

○ **주요정책분야**

- 주요정책과제에 담당부서에서 분기별 추진 실적 작성 후 평가지원담당부서에서 작성된 내용 점검 및 보완
- 소위원회를 분기 또는 반기별로 개최하여 추진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상반기에는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고 하반기에는 자체평가결과 등을 심의·의결

○ **재정사업 및 행정관리역량분야**

- 재정사업 및 행정관리역량분야 담당부서에서 반기별 추진 실적 작성
- 평가지원담당부서에서 작성된 내용 점검 및 보완
- 자체평가소위원회를 분기 또는 반기별로 개최하여 추진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자체평가 실시
- 하반기 자체평가총괄위원회에서 자체평가결과 등을 심의·의결

□ **점검일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주관부서
주요정책분야 점검	· 추진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작성 내용 보완	분기별 실시	평가지원담당부서
재정사업 및 기타 역량 분야 점검	· 추진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작성 내용 보완	반기별 실시	평가지원담당부서
소위원회	· 추진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자체평가 실시	수시	평가총괄지원부서
자체평가위원회	·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심의·의결 · 자체평가결과 심의·의결	반기별 실시	평가총괄지원부서

환류 등 관련 계획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정부업무평가와 부내평가를 연계하여 개인의 주요 업무가 조직의 성과로 드러나도록 평가체계 설계
- 정부업무평가항목을 부서단위의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부서단위의 평가결과를 개인평가항목에 반영
 - *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부서평가·개인평가 가점 반영 등 실시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관리과제를 통합성과관리시스템(BSC)에서 점검·관리
 - * 통합성과관리시스템(BSC)으로 목표달성도 및 매분기 추진계획 대비 이행 여부를 점검
- 우수과제 확산 및 부진과제 개선
 - 평가결과 우수사례의 경우 적극적인 부내·외 홍보 등으로 확산시키고, 부내 학습자료 등으로 활용
 - 부진사례는 차기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시 수정 반영
- 최종 평가결과를 인사, 예산, 보수체계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성과중심의 문화정착 유도
 - 평가결과는 승진심사 시 반영하고 실적과 능력 위주의 특별승진 확대
 - 평가결과를 성과급 지급기준으로 활용*하고 성과연봉 및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
 - * 부서평가 결과를 4급 이상 50%, 5급 이하 70% 반영
 - 재정사업 부문의 평가결과를 예산안 편성 시 반영

환류
등
관련
계획

3. 변화관리 계획

① 창의·실용의 행정문화 조성 및 확산

- 지속적인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
 - 생활불편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국민 체감형 행정제도개선 추진
 - 자체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발굴·확산으로 제도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
-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크로스미팅을 통해 부서 간 업무협업 및 소통 활성화
-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지원
 - * 공통 및 전문직무과정별 맞춤형 교육, 민간전문교육기관·국내 우수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훈련방안 발굴, 자발적 교육 프로그램인 복지사랑방 운영 활성화

② 청렴문화 확산 및 대국민서비스 강화

- “공정하고 따뜻한 Clean 보건복지부” 구현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계획 수립
 - 전방위적인 반부패 청렴 인프라 및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반부패 추진과제의 공유와 확산체계 마련
- 행정서비스 및 민원 정책품질 강화 및 범위 확대
 -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한 신규행정서비스의 적극적 발굴 확대
 - 국민 체감형 민원서비스 개선 관리 강화

③ “소통과 칭찬”, “가정 친화적” 인 조직 문화 조성

- 조직 화합, 직원 사기 진작 및 격려를 위해 민원처리 우수직원 포상, 칭찬게시판 운영 등 다양한 직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여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
-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노력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도모
 - 출산·양육시기 유연근무 활성화, 일한만큼 여가와 휴식 보장, 가정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

④ 지속적 변화관리와 능동적 대응능력 향상 노력

- 변화의 촉매제로 기능하도록 변화관리 평가 운영
 - 부처 특성 및 2016년 기관운영 방향과 일치시켜 평가항목을 마련함으로써 주요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유도
 - 핵심과제, 주요 국정과제 등의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역량을 집중하는 철저한 평가관리체계 구축
- 확산과 공유를 통해 기관차원의 지속적인 기관역량 향상 유도
-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업무성과와 연계할 수 있도록 포상 등의 인센티브제도 마련·시행

환류 등 관련 계획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① 현장의견 수렴 방안

- (정책기획 단계) 이해관계자·관련단체·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당청 등 관련기관 간 협의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나 관련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검토를 실시
 - 당청,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미실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의 진행
- (정책 집행·환류 단계) 정책집행 과정의 모니터링 수행
 -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집행현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개선사항 등을 정책에 반영
 - * 정책에 대한 PCRM(Public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중심 행정서비스를 위한 양방향 의사소통), 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수행

② 부내평가를 통한 환류

- (자체평가) ‘의견수렴의 적절성’의 평가를 강화하고, 상황변화 대응의 적절성에서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대응을 강조
 -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 수렴의 충실성,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 적절성, 자체평가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 노력, 현장모니터링의 적절성을 평가
- (성과포인트) 국정과제, 정상화과제 등의 평가결과를 성과포인트로 부내평가에 반영하여 국민의 정책만족도 평가 결과를 반영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 목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3	성과목표	16	19	-	-	6 (31.6%)	13 (68.4%)	16 (84.2%)
	관리과제	71	139	-	-	48 (34.5%)	91 (65.5%)	118 (84.9%)

2.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맞춤형 복지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						
1.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①전국 세대 수 대비 복지 수혜 세대수 비율 (%)	(행복e음상 복지수혜 세대수/전국 세대수**)*100 - 기초생활수급자+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자활+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차상위장애수당+한부모지원+청소년특별지원+영유아보육+긴급지원(행복e음) **안전행정부 발표 전국 세대수	5.5	정량	결과	
2. 효율성 높은 복지전달체계 구축 운영으로 국민중심의 복지행정 구현	①행복e음을 통한 복지급여서비스 지급건수(만건)	행복e음 통한 복지급여, 서비스 지급건수 누계(월단위)	9,457	정량	산출	
3.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	①사회서비스이용 비중 (%)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의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일자리 비중	6.9	정량	결과	
4. 장애인소득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①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율(%)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자 수+활동지원 수급자 수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수) / 등록장애인수	52.2	정량	결과	
5. 사회보장제도 총괄 조정 강화를 통한 효과적 사회안전망 구축	①사회보장(실무)위원회 개최 건수	사회보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건수	4회	정량	산출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I. 보건의료체계 개혁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보장						
1. 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①제도개선 등 정책 추진율(%)	당해 성과목표(II-1) 내 각 관리과제 목표 달성률의 합계/관리과제 수	100%	정량	결과	
2.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①건강보험제도개선 및 보장성강화 추진율(%)	성과목표내 목표달성률/관리과제 수	100%	정량	결과	
3. 질병관리체계 강화 및 필수 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①암환자생존율(%)	2016년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의 결과로 제시되는 2010-2014년에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 (5년 상대생존율=암환자의 5년 관찰생존율 ÷ 동일한 성별, 연령군을 가지는 일반인구의 5년 기대생존율)	70.1	정량	결과	
	②심정지생존율(%)	(자발순환이 회복되어 응급실 퇴실 또는 퇴원 시 생존한 심장정지 환자수)×100/(심장정지로 최종 확인된 환자수)	5.0	정량	결과	
4.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①국민건강증진 제감도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설문조사(만 20세 이상 성인 10,000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 인지도, 성과도, 만족도, 참여도를 조사하여 종합점수 산출)	67.5	정량	결과	
5.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①보건산업육성 추진 성과 달성도(%)	(외국인환자 유치 목표 달성률*20%)+(의료기관 해외진출 목표 달성률*20%)+(보건의료 연구개발 성과 달성률*20%)+(제약산업 수출액 증가 목표 달성률*20%)+인체지원 분야과제 목표 달성률*20%	100	정량	산출	
6. 한의약산업육성성과세계화	①한의표준임상진료 지침개발 연구지수	5년간 30개 주요질환 한의임상진료지침개발을 위한 근거기반(문헌연구), 근거창출(임상연구)연구지수	8.8	정량	결과	
III. 저출산 극복과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①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효과성	전문가 대상 효과성 측정 * 2015년 대비 1.5% 상승	81.6	정성	결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적	
2.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	①한국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	"2016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 결과보고서"에서 '15년 주관적 행복지수 점수	78	정량	결과	
3.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①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참여자수	노인일자리 전산시스템(새누리시스템) 등록실적	38	정량	산출	
	②보호독거노인수 (만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응급안전돌봄서비스 및 사랑잇기 서비스, 친구만들기, 노노케어 전체 수혜자 수	47	정량	산출	
	③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조사대상 :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 - 조사 시기 : 상반기	90.3	정량	산출	
4. 맞춤형 보육지원 강화 등 무상보육 정책의 내실화	①어린이집 시설이용 만족도	성과목표별로 제시한 측정방법 등을 인용하여 제시	4.05	정성	결과	
5.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운영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①공적노후소득보장 수급률	공적노후소득 보장제도 수급자 /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86.3	정량	결과	

3.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적	
I. 맞춤형 복지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							
1.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활성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①복지정책 총괄·조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①복지정책 총괄·조정 건 수	관계부처 회의의 안전 상정 및 종합보고서 등	10	정량	결과	
		②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복지담당공무원 외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통해 복지지원 요청 접수한 건수	120 만명	정량	결과	
	②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 강화	①신규수급자 발굴률(공통)	(신규수급자수/총 수급자수) ×100	10.22%	정량	산출	
		②평균 현금급여 증가액	연간 현금급여 총 지급액 / 해당 가구수	6만원	정량	결과	
		③긴급복지 지원건수	긴급복지 지원건수	184천건	정량	산출	
	③맞춤형 자활경로 설정을 통한 탈빈곤 지원	④긴급지원의 신속성	총지원 건수 중 3일 이내 지원 결정 비율 (단, 의료지원은 5일 이내)	93.5%	정량	결과	
①자활성공률(%)		탈수급자(자활특례 포함)+취업·창업자/자활사업참여수급자(근로유지형 제외)	34.3%	정량	결과		
④의료급여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보장성 강화	①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진료비증가율 (감소지표)	(('16년 1인당 진료비/'15년 1인당 진료비) -1) × 100	5.31	정량	결과		
2. 효율성 높은 복지전달체계 구축 운영으로 국민중심의 복지행정 구현							
①수요자중심의 지역 복지전달체계 구축		①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연계 가구수	각 지자체에서 행복e음 시스템에 자료 입력 및 자료추출	342,307	정량	결과	
		②사례관리대상자 만족도(공통)	사례관리 대상자 샘플 추출 후 전화 만족도 조사 실시	88.63	정성	결과	
②복지사업 기준관리		①사회보장사업 표준 사업지침 마련 추진율	Σ지침 마련 절차 진행 · 분야별 기준 표준화 과제 마련(×0.2) · 지자체 의견 조희(×0.2) · 사업부서 의견조희(×0.2) · 기준심의위원회 의결(×0.2) · 지침 완료(×0.2)	100	정량	결과	
		②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율	Σ고시 개정 절차 진행 · 개정안 마련(×0.2) · 의견조희(×0.2) · 행정예고(×0.2) · 규제심사(×0.2) · 고시 발령(×0.2)	100	정량	결과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③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범정부) 확대 및 고도화		①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한 부적정 급여결감액 (억원)(공통)	인간 확인조사 등을 통한 중지자 수 × 보장별* 평균 예상급여(연) * 기초생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본인부담 경감·자활, 청소년특별지원	4,500억	정량	결과	
		②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장애복구 적기 처리율(%)	(기준장애복구시간/평균장애복구시간)×100	163.5%	정량	결과	
3.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							
①수요자중심의 사회서비스 활성화		①사회서비스 품질관리	[품질평가지표 개선노력 (×0.4)+제공기관 역량강화 (×0.3)+공통품질 최저기준 정립(×0.3)] ×100	품질관리 제고방안 이행율 (100%)	정량	결과	
		②바우처카드 통합건수	국가 바우처 통합카드(국민 행복카드)로 통합된 바우처 사업 개수	14개	정량	결과	
②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확충 및 포괄보조 내실화		①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제공인 자리수(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산모신생아건강 관리사지원사업 제공인력 +가사간병관리사지원사업 제공인력(중복제거)	32,518명	정량	결과	
③사회서비스 품질제고 및 관리 효율화		①사회복지법인·시설 예결산 공시 비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시율	20.1%	정량	산출	
	②보조금 투명화율 (공통)	시설에 교부한 보조금 중 보 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한 금액 비율(인건비, 공공요금 등 제외)	41.6%	정량	결과		
	③품질관리 평가개선율 (공통)	품질관리시설의 평가등급 상승률	86.3%	정량	결과		
	④사회복지분야 사회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 전체 사회복지요원 배정인원) 달성률	사회복무요원 배정비율(사회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 전체 사회복지요원 배정인원) 달성률	42%	정량	결과		
④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민간자원 활성화		①기부식품 등 모집 환산액	15년 실적치(1,403억원)에 평균상승률(7.2%)을 적용	1,493억원	정량	결과	
		②사회공헌활동 기부 은행 적립 포인트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시스템 등록자료	194,752	정량	결과	
⑤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①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개수	각 일자리 사업별 창출실적 합산	42천개	정량	결과	
		②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시도별 전년대비 평균 인건비 인상률	3%	정량	결과	

성과
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4.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①장애인 등록제도 개선 및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①장애등록제 개편 시범사업	(서비스연계자수 / 시범사업 참여자) × 100%	49.4%	정량	산출
			②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사업 추진율	(서비스 참여자 / '16년 지역별 신규 장애 등록자 중 서비스안내자) × 100%	93%	정량	산출
		②장애인인권보호강화 및 장애인편의 증진	①장애인 차별 인지도	-측정대상기간: '16.9.~10.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16.12월말 예정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 방법: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지역, 성, 연령에 따른 비례할당에 의한 무 작위 추출에 의한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1.80	정성	산출
			②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관광숙박시설)	편의시설 설치시설 수 /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 수	73%	정량	산출
		③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확대	①장애인연금 수급률 (%)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18세이상 중증장애인 수 ('16년 말 기준)	67.3	정량	산출
		④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확대	①중증장애인 취업률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을 통한) 취업인원/ 상당인원*100	23.7	정량	산출
			②장애인 일자리지원 만족도(점)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만 족도 +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사업 만족도)/2	84.4	정성	산출
		⑤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①발달장애인지원 공적 전달체계 구축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개소수/17개 시도)*100	100	정량	결과
		⑥중증장애인 돌봄지원 체계 구축	①장애인활동지원 내실 운영 기여도	활동보조인 보수교육율(30%)* +활동보조 이용률(20%)+활동 지원 하위범형 개정(20%)+ 활동지원 자립기여율(30%)*	100	정량	산출
5. 사회보장제도 총괄, 조정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①사회보장제도 지원체계 강화	①민간위원 제안 아젠다 건수	민간위원 제안 아젠다 건수	4건	정량	산출
			②사회보장통계 발굴건수	사회보장통계 연보자료에 채택된 통계수	252건	정량	산출
		②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①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조정 건수	중앙·지자체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을 협의·조정 한 건수	400건	정량	산출
		③사회보장제도 평가	①평가 결과의 위원회 상정 여부	사회보장위원회 안건 상정 건수	2건	정량	산출
			②평가결과 부처 권고이행률	평가결과 부처 이행계획 제시 건수/평가결과 부처 권고 건수 × 100	50%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I. 보건의료체계 개혁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							
1. 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① 원격의료 확산 및 활성화 추진		①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수	법부처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수 측정	278개	정량	결과	
		② 원격의료서비스 만족도(%)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80%	정성	결과	
②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①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에 등록된 거점의료기관수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에 등록된 거점의료기관 수	3개소	정량	결과	
		② 2016년 보건의료용어 표준 신규 개발 건수	2016년 보건의료용어표준 신규 개발 건수	50,000건	정량	산출	
③ 미래 환경에 맞는 의료 인력 양성		① 의료인면허관리 제도 개선 추진율	의료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간담회, 보수교육 평가단 운영	100%	정성	결과	
		② 간호인력 개편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	100%	정량	결과	
		③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추진율	고시개정, 하위법령제정, 시범사업참여 입원진단 전문의수: 20명이상	100%	정량	결과	
④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①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추진율	통합운영 실시 여부, 검사 분야평가 제외대상 확대 여부, 평가기간단축을 위한 법령개정 여부	100%	정량	결과	
⑤ 의약품 유통 구조 선진화		①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건수)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건수	2,000건	정량	결과	
		② 의약품 유통정보 만족도 평가지수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만족도 평가지수	85%	정성	결과	
		③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각 지표별 건수 합계	100%	정량	결과	
⑥ 의료질평가 체계구축 및 확산		①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확산	고시개정 건수	100%	정량	결과	
⑦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		① 조정중재 개시건수(건)	신청인의 조정신청에 피신청인의 조정절차 동의로 조정절차가 개시된 건수	864건	정량	결과	
		②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실적(건)	각 부분별 제도홍보건수, 제도교육건수, 일일상담실 개최건수	51건	정량	결과	

성과 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③ 이용고객만족도	(의료분쟁전문상담서비스 만족도×가중치(29.0%))+ (의료분쟁조정중재서비스 만족도×가중치(59.5%))+ (수탁감정서비스 만족도 × 가중치(11.5%))	74.1점	정성	결과	
⑧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도 등을 통한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추진		①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점)	환자안전 관련 법령, 고시 등 제도개선(7개 항목)	100%	정성	결과	
		②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점)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일화용주사기 제사용 점검, 사무장병원 불별의료 기관 실태점검, 의료기관 안전대진단)	100%	정성	결과	
2.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절차 진행률(%)	제도 개선을 위해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 준수 여부	100%	정성	결과	
		②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병통합사업 참여 신청 결과 통계확인	340개	정량	결과	
③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및 보험급여 제도 개선		① 연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율(%)	Σ 각 지표별 ①('16년 보장성 확대 시행 항목수/ '16년 보장성 확대 계획 항목수(총 8항목)) × 100% × 0.8 ②(4대 중증질환 관련 급여 확대 항목 수/ 계획 항목 수(총 200항목)) × 100% × 0.2	100%	정량	산출	
		② 연간 건강보험급여 제도개선 추진율(%)	Σ 각 지표별 ①(급여기준 개선 항목 수/ 계획 항목 수(총 40항목)) × 100% × 0.4 ②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 축소 법령 개정 완료 × 0.3 ③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 0.3	100%	정량	산출	
④ 보험약품비의 적정관리 및 약가제도 개선		①약품비적정유지율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 ((당해년도 약품비-전년도 약품비)/전년도 약품비) × 100	9%이하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약가제도 개선 추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Σ 각 지표별 내부보고 완료 ①국내개발 신약 등 약가 제도 개선방안 마련× 0.2 ②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약가 산정 기준안 마련 × 0.2 ③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 방안 마련× 0.2 ④보험약가 사후관리제 조정 방안 마련× 0.2 ⑤퇴장방지의약품 제도 개선 방안 마련× 0.2 	100%	정량	결과	
	⑤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정확도(%) ②요양기관 적정성 평가 항목수(건) 	(거짓·부당청구기관/현지조사 대상기관) × 100	93.6%	정량	결과	
			평가항목 수 (누적기준)	37건	정량	결과	
3. 질병관리체계 강화 및 필수 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건강안전망 강화							
	①체계적인 국가암관리 정책 구현	①국민암검진 수검률 (%)	전국 성인 4,000명을 표본 추출하여 암검진 권고 기준에 따른 암검진 수검 행태를 조사	66.4	정량	결과	
	②국가예방접종 지속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①영유아 완전접종률 (%)	[기본접종 5종(B형 간염 3차, DTaP 3차, 폴리오 3차, Hib 3차, PCV 3차) 완전 접종자수 ÷ 접종대상자 수] × 100	92.0	정량	결과	
	③균형잡힌 공공의료 제공체계 구축	①전체 가임인구 대비 분만 취약 가임 인구* 비율(%)	분만 취약 가임인구/전체 가임인구	1.8	정량	결과	
		②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평균점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총점수/지역거점공공병원 수 - 측정대상: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 표본수:전체39개소 - 조사영역:양질의 의료 서비스, 합리적 운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공공적 관리 등 	72.4	정량	결과	

성과 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③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평균 점수	전체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총점/평가 대상 공공의료기관 수	67.0	정량	결과	
	④응급의료 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①응급의료기관 필수 영역 충족률(%)	(법정기준 충족 종별 응급의료기관수/종별 응급의료기관수)×100	86	정량	결과	
		②중증응급환자 적정 시간내 최종치료 기관 도착률(%)	(발병 24시간이내 환자 중급성 심혈관 질환 2시간 이내, 허혈성 뇌졸중 3시간 이내, 중증외상 1시간 이내 내원하고 진료결과가 입원인 환자 수/발병 24시간 이내 내원한 급성 심혈관, 허혈성뇌졸중, 중증외상 입원환자수) × 100	53.9	정량	결과	
4.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①흡연 예방 및 담배규제 강화를 통한 흡연을 감소	①중고등학교 흡연율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	7.8	정량	결과	
		②담배반출량 (백만갑)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결정내역	3,300	정량	결과	
	②정신건강증진체계 강화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①시군구 자살예방 조례제정 수	'15년에 계획(10개)대비 130% 달성함에 따라 '16년에도 '15년도 실적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13	정량	산출	
		②아동청소년 정신 보건사업 서비스 효과율	최근 3년치('13~'15)의 평균치로 목표치 설정	52.9	정량	산출	
	③지역특성에 맞는 건강 증진사업 활성화	①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성과도	지역 보건기관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주관적 평가, 사업참여에 따른 건강 개선 정도를 대국민 표본 조사로 점수화	72.0	정량	결과	
		②건강생활지원센터 서비스 만족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제공 받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93.1	정량	결과	
	④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	①서비스만족도	서비스 이용자 등 대상 설문지 작성	78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교육 참여율	상당교육 서비스에 참여한 환자/전체 등록 환자	75	정량	결과	
	⑤건강한 구강보건 인프라 환경 조성	①구강보건 사업만족도	보건소 구강보건 사업만족도 (사업수혜자 만족도(0.8) + 공급자 만족도(0.2)) \times (0.7)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한 장애인의 사업 만족도 \times (0.3)]	83	정량	결과	
5.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①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①외국인환자 유치 수 (만명)(공통)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기관의 유치실적 합계	40만명	정량	결과	
	②한국의료의 글로벌 진출 강화	①의료기관 진출 수 (건)(공통)	실태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55건	정량	결과	
	③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①인증기업의 R&D 비율(%)	{(Σ의약품 연구개발비) / (Σ의약품 매출액)} *100	13.7%	정량	산출	
		②제약산업 수출액 증가율(%)	(당해년도 완제의약품 수출액 - 전년도 완제의약품 수출액) / 전년도 완제의약품 수출액*100	11%	정량	결과	
	④전략적 보건의료(HT) R&D 강화	①보건의료 연구개발 성과율(%) (공통)	(①논문의 표준화된 순위 보장 영향력지수 달성율 \times 0.5)+(②특허 SMART등급 달성율 \times 0.5)	100%	정량	산출	
	⑤효율적 인체자원 관리	①인체자원 관리 제도개선(공통)	개정안 마련(\times 0.3)+규제 심사(\times 0.2)+법제처심사(\times 0.3)+개정공포(\times 0.2)	4건	정량	산출	
		②뇌사장기기증자 수 (공통)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된 연간 뇌사장기기증자 수 집계	480	정량	산출	
	⑥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추진	①보건산업 종합발전 전략 수립·운영	전략 발표 여부	수립	정성	결과	
		②연구중심병원 연구비 비중	연구중심병원 의료수익 대비 총 연구비 비율	11%	정량	결과	
	⑦아시아·미주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	①정부간 협력을 통한 민·관합동성과 창출	해외진출대상국가에 대한 정부(민간 포함)의 양해각서, 협력약정, 합의를 체결건수	43	정량	결과	
6. 한의약 산업육성과 세계화							
	①한의약의 국제의료 경쟁력 강화	①국내외 한의약교류 지수	해외한의약교류지수+한의약 국내교류지수	360	정량	결과	
		②한방해외의료진료 봉사진료수	한방해외의료봉사활동진료 환자 수	11,550	정량	산출	

성과 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①논문질적지수	논문 질적 지수 = 논문당 평균 mnrIF 값	67.72	정량	결과	
		②한의해외환자유치 인원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기관의 유치실적 합계	18,000	정량	결과	
III. 저출산 극복과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①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	①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인지도 (%)	일반인 대상 인지도 조사(50%) + 전문가 대상 효과성 조사(50%)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3년평균 상승률(2%)+추가(1%) 반영	54.35	정량	결과	
		②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효과성 (점)	작년대비 추가(3점) 반영	83	정량	결과	
	②임신·출산지원 강화	①체외수정기술 지원 건수(건)	2016년 체외수정기술 지원 건수(지원결정통지서기준)	40,000	정량	결과	
		②고위험임산부 지원자 증가율(%)	당해년도 지원자수 / 전년도 지원자수 \times 100	10	정량	결과	
		③저소득층 기저귀·분유지원자 증가율 (%)	당해년도 지원자수 / 전년도 지원자수 \times 100	10	정량	결과	
		④신생아 장애예방 검사율(%)	장애예방검사인원 / 연간 출생아수 \times 100	98.2	정량	산출	
	③저출산·고령화 대응 체계 추진기반 조성	①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심층점검 핵심과제 평가 추진(점)	Σ각 지표별 ① 관계부처 회의 \times 0.2 ② 전문가 자문회의 \times 0.2 ③ 현장점검 추진 \times 0.2 ④ 결과보고서 작성 \times 0.2 ⑤ 위원회 안전 상정 \times 0.2	100	정량	산출	
		②저출산 관련 정책·제도개선(건)	저출산 분야 정책·제도통계 등 개선과제 발굴 건수	2	정량	결과	
2.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							
	①아동행복도 제고를 위한 공격적임 강화	①아동정책 만족도 (점)	아동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점수(10점만점)	7.5	정량	결과	
		②아동정책 총괄·조정 건수(건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등 포함) 등을 통한 아동정책 총괄·조정 횟수	5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③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 (여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여부	100	정량	결과	
	②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공적책임 및 입양인 사후관리 강화	①아동권익증진의 입양체계 개선율 (%)	요보호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양체계 정립을 위한 종합지표 ①국내입양 비율 65% (가중치40) ②입양인 입양정보 DB 구축율 51.2%(가중치40) ③반편견입양교육 만족도 91%(가중치20)	100	정량	결과	
	③취약아동 돌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	①지역아동센터 이용 서비스 만족도(점)	- (대상) 시설 전체 이용아동 (학부모 포함) 10% 표본 - (시기) 연도말 - (문항) 아동 보호, 학습, 문화, 친구대인관계, 아동 참여인권 등 18여개 항목	85	정량	결과	
		②드림스타트 사업 지역 확대 개소수	- (대상) 전체 229개 시군구 - (조사시기) 당해연도 말 - (조사방법) 지자체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중 드림스타트 사업실시지역 (읍면동)수	3,137	정량	결과	
	④아동권리 및 아동안전 증진	①아동학대 재학대 발생률 감소(%)	당해 연도 아동학대 판단 사례 중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되었던 건수/당해년도 아동학대 판정 건수 × 100	10.5	정량	산출	
		②실종아동 가족 인계율(%) (공통)	실종아동 발생자 중 가족으로 인계된 현황 (가족인계자 수 / 실종발생자수* 100)	99	정량	산출	
		③아동안전사고 예방 교육 참여자 만족도 (%)	교육참석 부모 및 교사 등 대상 (교육만족도 점수(100점 만점/전체 응답자 수)	92	정량	산출	
3.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①국가치매관리체계 구축	①치매조기검진률(%) (공통)	(치매선별검사 건수+치매체크업 다운건수)/만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24.5	정량	산출	

성과 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치매관련 공공보건 서비스 이용자 수 (만명)	치매검진지원 인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인원 + 치매상담콜센터 상담건수	191	정량	산출	
	②독거노인 돌봄 강화	①보호독거노인수 (만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응급안전돌봄서비스 및 사랑잇기 서비스, 친구만들기, 노노케어 전체 수혜자 수	47	정량	산출	
	③노인 사회참여 확대	①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수 (만명)	노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세누리시스템) 등록실적	38	정량	산출	
		②시니어인턴십 취업 성공률	(취업자/시니어인턴십참여 자전체)×100	54	정량	산출	
	④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	①장기요양신청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등	장기요양보험법령 개정 완료 여부	개정	정성	결과	
		②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신규 도입	24시간 방문요양 급여제공	신설	정성	결과	
		③통합게가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시범사업 실시 여부	시행	정성	결과	
		④복지용구 고시개정	고시개정	개정	정성	결과	
		⑤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매뉴얼 마련	매뉴얼 마련 여부	신설	정성	결과	
		⑥장기요양기관 진입 퇴출기전 강화	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안) 발의 여부	개정(안) 마련	정성	결과	
	⑤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제고	①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조사대상 :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 - 조사 시기 : 상반기	90.3	정량	산출	
4. 맞춤형 보육지원 강화 등 무상보육 정책의 내실화							
	①수요자 중심의 무상 보육 기반 강화	①보육료 지원 만족도 (%) (공통)	어린이집 이용자 대상 설문 조사 결과 "만족" 이상 답변 비율	69.9	정성	결과	
		②맞춤형보육체계 개편 추진율(%)	∑ 각 지표별 ①종일반 자격기준 마련 *0.3	100	정성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보육료 자격 일제 전환 *0.3 ③맞춤형보육제도 안내 지침 제작 *0.4				
		③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수 (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지정 건수(누계)	380	정량	산출	
		④보수교육 이수자의 교육이수 역량 (점) (공통)	'16년 보육교사 보수교육 (승급) 이수자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	85	정량	산출	
	②효율적인 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①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신청 개소수	150	정량	산출	
	③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①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만명)	'16년 공공형 150개소 신규 지정 고려 = 150개소 × 30명* * '15년 신규신청 기관 평균 현원 : 30명	9.7	정량	산출	
		②평가인증유지율(% (공통)	불확실한 정책환경 속에서 신규 인증 및 인증 취소· 종료, 유효기간 만료 및 제인증 신청을 등을 고려 하여 산출 ※ 유보통합 예정으로 신규 인증 신청 어린이집수가 지속 감소 추세	77.5	정량	산출	
③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자만족도(점) (공통)		최근 3년간 실적 평균치로 산정	75.6	정량	결과		
5.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운영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①국민연금 신뢰 기반 구축		①포럼 개최수(의견 수렴 실적)	개최 실적/목표	10회	정량	산출	
		②홍보건수	보도자료 배포 건수	4회	정량	산출	
		③연금수급자 만족도 (점)	외부 전문기관 설문조사 결과	84.3	정성	결과	
②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①보험료 납부자 비율	사업장+지역(소득신고)+임 의(계속)가입자/국민연금 가입자	79.3	정량	산출		
③장기적 관점의 자금운용 체계 구축 및 운용역량 강화	①해외·대체투자 비중(%)	(해외채권+해외주식+대체 투자금액/국민연금기금 금융자산 금액)×100	28.8	정량	산출		

성과 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④기초연금제도 내실화		②운용체계 개선율 (%)	(운용체계개선 완료건수/ 운용체계개선 추진건수) ×100	100%	정량	산출	
		①기초연금 수급률 (%)	'16년 12월 기초연금 수급자수 /'16년도 노인 인구수* × 100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11) 기준	67.0	정량	산출	
		②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행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부 등 확인	시스템 구축 및 시행	정성	결과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I. 맞춤형 복지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		
1.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①복지정책 총괄·조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복지정책간 연계·통합 강화(연두 업무보고)
②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강화		·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국정 43)
③맞춤형 자활경로 설계를 통한 탈빈곤 지원		·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국정 57)
④의료급여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보장성 강화		
2. 효율성 높은 복지전달체계 구축 운영으로 국민중심의 복지행정 구현		
①수요자 중심의 지역복지전달체계 구축		· 주민센터를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한 허브기관으로 개편(국정 44-2) · 공공·민간 역할분담체계 정립 및 민간복지자원 총량 확대(국정 44-4)
②복지사업 기준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국정 44-3)
③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 확대 및 고도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및 고도화(국정 44-3) · 공공·민간 역할분담체계 정립 및 민간복지자원 총량 확대(국정 44-4)
3.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		
①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활성화		· 범부처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국정 60-1) · 사회서비스 산업화 기반 마련 및 시장활성화 방안 마련(국정 60-2) · 사회서비스 재정지원 및 제공방식 효율화(국정 60-3)
②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확충 및 포괄보조 내실화		· 사회서비스 재정지원 및 제공방식 효율화(국정 60-3)
③사회서비스 품질제고 및 관리 효율화		· 공공민간역할 분담체계 정립 및 민간복지자원 총량 확대(국정 44-4) ·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국정 59-2)
④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민간자원 활성화		· 공공민간역할 분담체계 정립 및 민간복지자원 총량 확대(국정 44-4)
⑤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 범부처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국정 60-1)
4.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①장애인 등록제도 개선 및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권리 보장(국정 50-1)

연
계
현
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②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인권 증진	· 공공의료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국정 50-5)
	③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확대	·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국정 50-4)
	④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확대	
	⑤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국정 50-3)
	⑥중증장애인 돌봄지원 체계 구축	· 중증장애인 상시보호를 위한 통합 돌봄 제공체계 마련(국정 50-2)
5. 사회보장제도 총괄, 조정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①사회보장제도 지원체계 강화		·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복지정책 간 연계통합 강화(국정 44-1) · 사회보장위원회가 통일 이후 복지제도 연구(지시 15-21-070) · 맞춤형복지 홍보 강화(업무 2-1)
②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복지정책 간 연계통합 강화(국정 44-1)
③사회보장제도 평가		·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복지정책 간 연계통합 강화(국정 44-1)
II. 보건의료체계 개혁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		
1. 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①원격의료 확산 및 활성화 추진		· 신의료·융합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정보화 기반 조성(국정 9-3)
②진료정보교류 활성화		
③미래 환경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		
④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⑤의약품 유통 구조 선진화		
⑥의료질평가 체계구축 및 확산		
⑦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		
⑧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도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추진		
2.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①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국정48-5)
②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적용(국정48-1) · 선택진료비 개선 및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확대(업무 12)
③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및 보험급여제도 개선		·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 적용(국정 48-1) · 어르신 입플란트 급여적용(국정 48-2)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초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 비급여 개선 추진 철저(지시 15-21-042) · 고액중증의료보장강화(업무11) · 선택진료비 개선 및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확대(업무 12)
	④보협약품비의 적정관리 및 약가제도 개선	
	⑤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3. 질병관리체계 강화 및 필수 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건강안전망 강화		
	①체계적인 국가암관리 정책 구현	
	②국가예방접종 지속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국정 62-3)
	③균형잡힌 공공의료 제공체계 구축	· 현대화된 공공의료 제공체계 구축(국정 49-4)
	④응급의료 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 생명을 살리는 손길, 응급의료체계 개선 (국정 49-3)
4.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①흡연 예방 및 담배 규제 강화를 통한 흡연을 감소	·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 마련(국정49-1)
	②정신건강증진체계 강화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 마련(국정49-1)
	③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 마련(국정49-1)
	④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	· 국민중심의 효율적 의료공급체제로 개편(국정49-2)
	⑤건강한 구강보건 인프라 환경 조성	
5.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①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기반조성(국정 9-5) · 보건의료서비스업 육성(경제혁신-48) ·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충(핵심-21) · 외국인환자 유치 촉진(업무 5-가-①)
	②한국의료의 글로벌 진출 강화	·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확대(국정 9-6) · 보건의료서비스업 육성(경제혁신-48) ·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충(핵심-21) ·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업무 5-가-②)
	③계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 '17년 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 (국정 9-1) ·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 육성(업무 5-다-①)
	④전략적 보건의료(HT) R&D 강화	· 전략적 보건의료(HT) R&D 투자 확대 (국정 9-4) · 보건의료서비스업 육성(경제혁신-48)
	⑤효율적 인체자원 관리	· 정밀·재생의료 산업 활성화(업무 5-가-②)
	⑥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추진	
	⑦아시아·미주 보건의료서비스시장 진출 지원	

연
계
현
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초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6. 한의약산업육성파괴체계		
	①한의약의 국제의료경쟁력 강화	· 한의약 세계화추진(국정 9-7)
	②한의약산업육성및기술개발	· 한의약 세계화추진(국정 9-7)
Ⅲ. 저출산 극복과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①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마련	· 맞춤형 출산정책 거버넌스 구축(국정 62-9) · 노후설계교육 및 고령자 사회공헌활동 활성화(국정 47-3) · 지시 15-21-050
	②임신·출산 지원 강화	· 맞춤형 임신·출산 비용 지원국정(62-1) · 고위험 임신부 지원 강화국정(62-2)
	③저출산·고령화 대응 체계 추진기반 조성	
2.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		
	①아동행복도 제고를 위한 아동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②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공적책임 및 입양인 사후관리 강화	· 입양아동의 안전 및 권리 보호 강화 (국정 80-4)
	③취약아동 돌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	· 드립스타트센터의 전국 확산 및 통합서비스지원 기능 확대(국정 80-2)
	④아동권리 및 아동안전 증진	· 아동인권 보호 및 아동안전 강화 (국정 80-1)
3.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①국가치매관리체계 구축	· 국가치매관리체계 확립(국정 48-7)
	②독거노인돌봄 강화	· 독거노인돌봄 강화(국정 48-8)
	③노인 사회참여 확대	·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국정 47-2)
	④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	· 국가치매관리체계 확립(국정 48-7)
	⑤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제고	
4. 맞춤형 보육지원 강화 등 무상보육 정책의 내실화		
	①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강화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국정 63-1) · 0-5세보육 국가완전 책임제실현 (국정64-1) · 시간제보육서비스 등 다양한 수요 반영 노력 추진(대통령 지시사항 0006865) · 취업모 등 실수요 중심 맞춤형보육 지원(업무12-1) ·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업무12-2)
	②효율적인 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국정 63-1) · 부모만족도가 높은 어린이집확충 (업무12-3)
	③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국정 63-1) · 0~5세보육 국가완전 책임제실현 (국정64-1) · 아동학대 근절대책 수립 관련 현장의견 반영 등(대통령지시사항0006865) · 부모만족도가 높은 어린이집확충 (업무12-3,4)
5.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구축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①국민연금 신뢰 기반 구축	
	②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국정 57-1) ·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추후납부 허용(업무3-2-3) · 저소득 근로자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업무3-2-4)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도입(업무3-2-5) · 시간제근로자 등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확대(업무3-2-6)
	③장기적 관점의 기금운용체계 구축 및 운용역량 강화	· 국민연금 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 (업무3-2-2)
	④기초연금제도 내실화	·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국정 47-1) ·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업무3-2-1) · 기초연금(지시 ('15.1.6))

연
계
현
황